기본연구 2007-04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Ⅲ)

2007. 12

남정호 · 육근형 · 이구성 · 김종덕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남정호 : 제1장, 제5장, 제6장

◈ 연구진
- 육근형 : 제2장, 제3장, 제5장
- 이구성 : 제3장, 제4장, 제5장
  영문요약보고서
- 김종덕 : 제5장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강 대 석 (부경대학교 교수)
◈ 서 병 문 (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 교수)
◈ 이 정 철 (숭실대학교 교수)
◈ 조 성 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 허　　식 (한국해양연구원 대외협력실장)
◈ 윤 현 수 (해양수산부 해양생태팀장)

* 연구자문위원은 산·학·연·정 순임

머 리 말

서해연안의 남북 접경해역에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하려는 노력이 어느덧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2005년 첫해 연구를 시작하면서 과연 이 연구의 제안이 어떻게 남북 간에 실현될 수 있을지 어느 누구보다 궁금했습니다. 평화, 번영, 보전의 가치를 담은 해양평화공원이라는 제안이 비록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 할지라도 남북 간 충돌의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서해 접경해역에, 게다가 50여 년간 서로 다르게 살아온 남과 북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아닐지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2000년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에 두 번째 만남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 연구의 제안들이 그 안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발전의 큰 흐름은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는 다른 한편에서 꾸준히 깊어지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관계는 국내외 정세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단단한 기반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나타난 위협요인과 우리 사회 내적인 갈등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고, 마침내 2007년 10월 4일 남북의 두 정상은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동으로 하나 되던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는 다르게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상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어느 한쪽의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이해를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남북 간 교역량은 그 동안 꾸준히 증가했고 남북을 오가는 방문객의 수도 해가 지날수록 늘어났습니다. 남한에게 북한은 중요한 사업 파트너가 되었고, 북한에게 남한은 가장 큰 교역국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사이에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안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서해 접경지역의 해상경계획정을 둘러싼 남북한 간 갈등문제입니다.

2007년 남북의 정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새로운 남북협력의 틀을 제시했습니다.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는 특별지대 사업은 이 연구가 지난 3년 여간 연구하고 제안한 내용의 상당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해양평화공원'이 서해접경 지역의 사회경제, 정치군

사, 생태환경의 특성과 미래 잠재력을 고려한 남북 간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서, 그 제안의 많은 부분이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물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해접경지역은 남북 간의 갈등이 가장 첨예한 지역이고, 자칫 그 동안 이뤄온 남북 간 평화와 협력의 틀을 헛되이 무너트릴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남북의 정상이 관심을 같이 했다는 사실은 민족의 통일과 미래에 밝은 빛을 던져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북은 이곳에 보다 공고한 협력의 고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지정에 더해 민간선박의 해주직항 통과, 해주경제특구 조성, 해주항 개발,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공동이용 등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협력의 강화가 해상경계 문제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남북 간 갈등의 불씨를 꺼 주리라 기대합니다. 이미 이를 위해 남북의 실무자가 만났고 그 만남은 정기적인 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해양평화공원은 3Ps, 즉 생태와 환경의 보호(Protection), 정치·군사적 긴장의 완화(Peace), 통일경제의 번영(Prosperity)을 위한 토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해양평화공원의 세 가지 기본원칙 중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해양평화공원의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정상회담의 결과물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위한 이행사업 어느 곳에도 서해접경해역의 우수한 생태계 및 환경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군인들이 민간인의 접근을 차단하며 50년 이상 지켜온 보호구역은 없습니다. 서해접경지역은 수십 년간 남북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여 어렵게 얻은 생태자원의 보고(寶庫)입니다. 또한 선진산업 국가에 진입하려는 우리에게는 물론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한강하구-연평도-백령도와 같이 다양한 생명이 가득하고 생동감 넘치는 땅과 바다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50년 넘게 민족의 아픔을 아로새기며 뭇 생명을 키워온 이곳의 땅과 바다, 그리고 생명을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경제발전과 평화정책에 더해 환경보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해양평화공원 연구는 3년의 연구를 마무리하고 실천의 단계로 나가고자 합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구체화된 경제번영 및 평화정착과 더불어, 앞으로는 환경보전이라는 시대의 큰 요구도 함께 녹아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노력의 한편에서 이 연구가 충실한 자료로서 앞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3차년도 연구를 수행한 남정호 부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육근형 책임연구원, 이구성 연구원, 김종덕 부연구위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문위원으로서 이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베를린 자유대학 Mark Suh 교수, 부경대학교 강대석 교수, 해양수산부 윤현수 팀장, 숭실대학교 이정철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연구위원, 한국해양연구원 허식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한 국제기구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해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해 국제자문단(International Advisory Group)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해주신 IUCN의 Mr. Peter Shadie, Mr. Treveor Sandwith, NOWPAP의 Dr. Jeungsook Park, UNESCO의 Mr. Salvatore Arico, YSLME의 Mr. Yihang Jiang, WWF의 Dr. Jose A. Ingles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7년은 물론 그 동안 이 연구를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과 북이 Korea라는 이름을 함께 쓰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기는 하나 그 덕분에 우리는 원시적인 자연생태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접경지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우리 민족의 성품처럼 우리의 서해접경해역에도 새로운 기회가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2007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이 정 환

목 차

ABSTRACT ——— i

요 약 ——— v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
2.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수행 방법 ····· 5
   1) 선행연구 고찰 및 이 연구의 특징 / 5
   2) 연구 수행방법 / 9
3. 해양평화공원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 13
   1)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의 개념 및 틀 / 13
   2) 해양평화공원 지정요건 및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필요성 / 15
   3)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해양평화공원 / 19
4. 2005～2006년 연구성과 종합 및 향후 추진계획 ····· 24
   1) 기존 연구성과 종합 / 24
   2) 연차별 및 분야별 연구성과(2005～2006년) / 25

제2장 서해연안 접경지역 및 남북협력 현황 ——— 32

1.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현황 ····· 32
   1) 자연환경 및 생태계 현황 / 33
   2) 사회경제 및 이용개발 현황 / 45
2. 서해접경 연안 관련 법·제도 및 남북협력 현황 ····· 49
   1) 북한 해양환경보전 관련 법·제도 현황 / 49

2) 북한 연안·해양 환경관리 주요 제도 / 53
3)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제도 현황 / 59
4) 서해연안 접경해역 남북협력 현황 / 61

제3장 해양평화공원 및 남북관계 인식조사 ——— 66

1. 인식조사의 개요 ····· 66
2.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2005년) ····· 68
1) 지역주민 설문조사 / 68
2) 전문가 설문조사 / 72
3) 설문결과 종합 / 75
3. 일반국민 인식조사(2006년) ····· 76
1) 개요 / 76
2) 주요 결과 분석 / 76
4. 2007년 지역주민 인식조사와 과거 조사 결과 종합 ····· 81
1) 개요 / 81
2) 주요 결과 분석 / 82

제4장 국내외 관련 사례 및 시사점 ——— 91

1. 국내 사례 ····· 93
1) DMZ 일원 접경보호지역 지정 :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 / 93
2. 국외사례 ····· 98
1) 홍해 해양평화공원 / 98
2) 지중해 보니파시오(Bonifacio) 국제해양공원 / 106
3) 인도네시아 - 필리핀 산호 삼각지(Coral Triangle) 해양평화공원 / 116
4) 예멘-에리트레아 공동어업합작회사(Joint Fishing Company) / 121

제5장 해양평화공원 추진 방안 ——— 132

1. 해양평화공원 추진 여건 종합 ····· 133
   1) 2005~2006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추진 여건 / 133
   2) 해양평화공원 추진 여건 변화 / 134
   3)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여건 종합(SWOT) / 139
2.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정책방향과 원칙 ····· 141
   1) 기본정책방향 / 141
   2) 추진원칙 / 146
3.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략 ····· 150
   1) 전략 1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체계 개선 / 151
   2) 전략 2 : 개발과 보전 사이 조화 메커니즘 구축 / 156
   3) 전략 3 : 해양수산분야 관리역량 및 지식기반 강화 / 160
   4) 전략 4 :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접근 / 165
   5) 전략 5 : 연안특성을 고려한 권역구분 및 권역별 정책방향 추진 / 171
   6) 전략 6 : 남한 내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인식증진 / 173
4. 단계별 추진체계 ····· 17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79

1. 결 론 ····· 179
2. 정책제언 ····· 180
   1) 공동어로·평화수역과 남북한 해상경계설정 현안 분리 접근 / 181
   2) 공동어로·평화수역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동관리·경비단 (Co-Rangers) 운영 및 합작회사 설립 준비 / 182
   3) 해주항을 아시아의 미항, 지구촌 평화의 항만으로 개발 / 183
   4) 해주경제특구 개발 콘텐츠 차별화 및 환상형(環狀形) 연안관광 추진 / 184
   5) 민간선박 해주직항로 통과에 따른 유류오염방제긴급계획 (oil-spill contingency plan) 공동 수립 / 185

참 고 문 헌 ——— 186

부록 1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191

부록 2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 194

부록 3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200

부록 4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202

부록 5 :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 204

부록 6 :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합의서 ——— 207

부록 7 : 유엔 「한반도 평화, 안보, 통일」을 위한 결의안 채택 ——— 209

부록 8 : EU 남북정상회담 지지 성명서 발표 ——— 213

부록 9 : ASEAN+3국(한·중·일) 한반도 평화체제지지 성명서 ——— 215

부록 10 : 북한에 분포하는 중요 습지대 ——— 219

부록 11 : 북한의 자연보호지역 ——— 223

부록 12 : 서해연안 접경지역 보호구역 지정현황 ——— 225

부록 13 : 서해연안 접경지역 문화재 분포현황 ——— 228

부록 14 : 강도전도(江都全圖) ——— 231

부록 15 : 환경보호법 ——— 232

부록 16 : 바다오염방지법 ——— 240

부록 17 : 간석지법 ——— 244

부록 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 253

부록 19 : 개성공업지구법 ——— 260
부록 20 :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 269
부록 21 : 개성공업지구 개발 규정 ——— 276
부록 22 : 개성공업지구 수질환경관리 준칙 ——— 279
부록 23 : 서해연안 접경지역 주민설문 조사서 ——— 290
부록 24 : 국제자문단회의 운영규칙(Terms of Reference) ——— 299
부록 25 : 국제자문단회의 대표자 공식 임명 편지 ——— 306

표 목 차

<표 1-1> 환경 및 자원관리 남북협력관리 선행연구 현황 ····· 6
<표 1-2> 선행연구와 차별성 ····· 7
<표 1-3>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체계 및 일정 ····· 20
<표 1-4> 약점·위협요소 및 기본원칙에 근거한 2006년 정책제안(안) ····· 26
<표 1-5>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방향, 추진전략 및 정책제안(안) ····· 28
<표 1-6> 해양평화공원 추진 연차별 주요 사업 내용(2005～2009년) ····· 31
<표 2-1>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한 갯벌 면적 ····· 34
<표 2-2> 서해연안 접경해역 COD수질현황 ····· 35
<표 2-3> 서해연안 접경해역 총질소 수질현황 ····· 35
<표 2-4> 서해연안 접경해역 용존무기인 수질현황 ····· 36
<표 2-5> 서해연안 접경지역 출현 조류 현황 ····· 39
<표 2-6> 서해연안 접경지역 보호구역 지정 현황 ····· 43
<표 2-7> 서해연안 접경지역 관련 행정구역 ····· 45
<표 2-8> 서해연안 접경지역 인구변화율 ····· 46
<표 2-9> 북한의 해양환경 및 자원보호 관련 법률 현황 ····· 51
<표 2-10> 북한의 주요 해양수질환경기준 ····· 54
<표 2-11> 연안·해양 환경관리 관련 연성지침 ····· 55
<표 2-12> 개성공단 관련 법률 및 규정 ····· 60
<표 2-13> 개성공단 관련 관리준칙 ····· 61
<표 2-14> 해양수산분야 협력 합의문 채택 남북장관급회담 현황 ····· 64
<표 2-15> 제1차 남북수산협력 실무협의회 합의서('05.7.25～27) ····· 65
<표 2-16> 남북한 국방장관 회담 서해연안 관련 회담결과('07.11.27～29) ··· 65
<표 3-1> 설문조사 개요 ····· 67
<표 3-2> 개성공단 가동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정도 ····· 75
<표 4-1> 접경지역 보전·관리 형태 ····· 91
<표 4-2> DMZ 내부 남측지역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 93

<표 4-3>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계보전 추진 내용 ····· 94
<표 4-4>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 95
<표 4-5> RSMPP 프로그램의 부문별 성과 ····· 105
<표 4-6> 국제해양공원을 통한 협력분야 ····· 110
<표 4-7> 예멘 어업생산량 ····· 123
<표 4-8> 에리트레아 어업생산량 ····· 124
<표 4-9> 예멘-에리트레아 경제지표 비교 ····· 129
<표 5-1> 2005～2006년 연구에서 제시한 해양평화공원 추진여건 ····· 133
<표 5-2>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일정 이행가능성 평가 ····· 153
<표 5-3>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일정 조정(안) ····· 154
<표 5-4>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한 추진체계 정비(안) ····· 155
<표 5-5> 서해연안지역 용도구역제 추진방향 ····· 158
<표 5-6> 전략환경평가 시행 방향 ····· 160
<표 5-7> 해양수산공동개발센터 운영 방향 ····· 162
<표 5-8> 서해연안 공동조사 추진 방향 ····· 164
<표 5-9> 남북한 해양수산전문가 포럼 운영방향 ····· 165
<표 5-10> 국제협력 추진방향 ····· 171
<표 5-11>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소권역별 특성 및 정책방향 ····· 173
<표 5-12>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인식증진 방향 ····· 176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목적 및 연차별 연구목표 ····· 4
<그림 1-2> 연구의 지리적 범위 ····· 10
<그림 1-3> 연구 추진체계 및 방법 ····· 12
<그림 1-4>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의 틀 ····· 15
<그림 1-5> 해양평화공원 추진 필요성 ····· 18
<그림 1-6>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한 합의 사항 ····· 20
<그림 1-7> 해양평화공원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관계 ····· 24
<그림 1-8> 해양평화공원 연구성과 종합 ····· 25
<그림 2-1> 연구의 지리적 범위 ····· 32
<그림 2-2> 중국 내 물범 출현 및 서식지 ····· 40
<그림 2-3> 백령도 주변 물범 출현지역 ····· 40
<그림 2-4> 남한 꽃게 생산 추이(1996～2006년) ····· 42
<그림 2-5> 전국 대비 서해5도 꽃게 생산량 비율 ····· 42
<그림 2-6> 서해연안 접경지역 보호구역 지정 현황 ····· 44
<그림 2-7> 개성공업지구 전경 ····· 49
<그림 2-8> 북한의 정치체계기구표 ····· 56
<그림 2-9> 북한의 행정기구표 ····· 57
<그림 2-10> 남북 연안해양 관련 정부기관 ····· 58
<그림 2-11> 연도별 남북교역액 추이 ····· 62
<그림 3-1> 꽃게 어획량의 변화(좌 : 꽃게, 우 : 기타 수산물) ····· 68
<그림 3-2> 어획량 감소 원인 ····· 69
<그림 3-3> 접경해역 남북한 공동관리 가능성 ····· 69
<그림 3-4> 서해상 남북 군사 충돌 재발 가능성(좌 : 전체, 우 : 세대별) ···· 70
<그림 3-5> 접경지역 해양환경 상태 평가 ····· 71
<그림 3-6> 물범 등 희귀생물자원의 보호 필요성 ····· 71
<그림 3-7> 정부지원 필요 분야 ····· 71

<그림 3-8> 남북한 긴장강도 ····· 72
<그림 3-9> 남북협력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 ····· 73
<그림 3-10> 해양분야 중 남북협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 ····· 73
<그림 3-11> 해양평화공원 지정 타당성 ····· 74
<그림 3-12>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77
<그림 3-1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변화 여부 ····· 77
<그림 3-14> 대 북한 인식변화의 구체적 양상 ····· 77
<그림 3-15> 현재 긴장강도가 가장 높은 권역 ····· 78
<그림 3-16> 서해연안에서 긴장강도가 가장 높은 권역 ····· 78
<그림 3-17>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문제점에 관한 견해 ····· 79
<그림 3-18> 해양에서 남북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견해 ····· 79
<그림 3-19> '해양평화공원' 지정 사업에 대한 견해 ····· 80
<그림 3-20> 해양평화공원의 기대효과에 대한 견해 ····· 80
<그림 3-21> 설문조사(2005～2007년) 주요 내용 ····· 81
<그림 3-22> 북한에 대한 일반 인식 비교 ····· 82
<그림 3-23>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비교 ····· 83
<그림 3-24> 남북 간 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인식 ····· 83
<그림 3-25>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 84
<그림 3-26> 남북 군사충돌 재발가능성에 대한 인식변화 ····· 85
<그림 3-27> 남북 군사충돌 원인에 대한 인식비교 ····· 85
<그림 3-28>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인식 ····· 86
<그림 3-29> 남북 경계수역 어로활동 규제 주체에 대한 인식 ····· 87
<그림 3-30> 꽃게자원 회복을 위한 주요 대책에 대한 인식 ····· 87
<그림 3-31> 접경연안 정부지원 필요 분야에 대한 인식 ····· 88
<그림 3-32> 접경해역 우수 생태계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 ····· 89
<그림 3-33> 해양평화공원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90
<그림 3-34> 남북경계수역의 해상 집판장 설정에 대한 의견 ····· 90
<그림 4-1> 전세계 접경보호구역 수 추이 ····· 92
<그림 4-2>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실행계획 ····· 95

<그림 4-3>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 기대 효과 ····· 97
<그림 4-4> 아카바 만의 지리적 개관 ····· 99
<그림 4-5> 아카바 만 총질소 변화(1974～2000년) ····· 100
<그림 4-6> RSMPP 관리체계 ····· 103
<그림 4-7> 보니파시오 해협 위치 ····· 107
<그림 4-8> 보니파시오 해협 선박기인 오염 사례 ····· 108
<그림 4-9> 보니파시오 국제해양공원 지정 위치 ····· 109
<그림 4-10> 보니파시오 해협 해상교통 규제 지역 ····· 112
<그림 4-11> 프랑스 해양생태계 보호지역 ····· 114
<그림 4-12> 산호 삼각지(The Coral Triangle) ····· 116
<그림 4-13> 술루-술라웨시 참치 이동로 ····· 117
<그림 4-14> 인도네시아-필리핀 산호 삼각지 해양평화공원 지정 지역 ····· 118
<그림 4-15> 인도네시아-필리핀 해양평화공원 추진원칙 및 목표 ····· 119
<그림 4-16> 예멘-에리트레아 지정학적 위치 ····· 122
<그림 4-17> 예멘-에리트레아 영유권 분쟁 도서 ····· 124
<그림 4-18> 예멘-에리트레아가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 127
<그림 4-19>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정한 해상경계선 ····· 128
<그림 4-20> 예멘-에리트레아 어업생산량 비교 ····· 130
<그림 5-1> 서해연안 접경지역 해양평화공원 추진 방안의 구조 ····· 132
<그림 5-2>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SWOT 분석(2007년) ····· 140
<그림 5-3>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정책방향 ····· 142
<그림 5-4>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원칙 ····· 147
<그림 5-5>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략 ····· 151
<그림 5-6> 해양평화공원 단계별 추진체계(주요 사업 요약) ····· 178

ABSTRACT

Toward Establishing the Marine Peace Park in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The historic joint declaration on South-North Korean relations, peace, prosperity signed by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has opened a new era of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Peace and Cooperation Zone in the West Sea (hereafter the SPCZ) has made a significant breakthrough in easing military tension in the West Sea and building a cooperative mechanism to manage the fishing grounds and fisheries resources. More importantly, a fundamental institutional framework for realizing a peace settlement and economic prosperity in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was to be constructed.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come a global agenda and it is thus vital to maximize the synergy effects in inter-Korean cooperation. Accordingly,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sector should be promoted as a high priority.

However,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has not yet been realized, even though the two countries share common maritime areas and have experienced similar oceanographic changes in the past. Political-military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has been alleviated due to continuous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For instance, a variety of bilateral initiatives to protect a rich heritage of natural resources in the Demilitarized Zone (DMZ) have been developed or implemented. Yet,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hereafter 'the area') has seen naval clashes on two occasions (1999 and 2002) over blue crab catches and jurisdiction over shared sea areas. In addition, interest in systematically managing ecosystems and sustainable use of coastal and marine resources of the area is not very high due to the area's unique characteristics. Furthermore, it has been closed off to socio-economic uses by long-lasting military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To strengthen cooperation regarding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o reduce politico-military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increase mutual economic benefits for the local communities, the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a research institute responsible for developing national policies on the marine sector and fund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itially suggested a co-managed marine protected area system (COMPAS), followed by its practical initiative,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MPP), in 2003. The MPP initiative was finally adopted as a national marine policy by the ROK government in 2005.

The MPP Korea aims to help the two Koreas achieve a peace settlement, the protection of precious costal and marine ecosystems, and the realization of economic prosperity in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The MPP Korea is a co-managed, multi-purpose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and cultural resourc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firm base for peace promo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is project is being conducted from 2005 to 2009. The project for the third year (2007) was aimed at extending the scope of the SPCZ in the West Sea. This will provide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establishing the MPP Korea, and suggest appropriate strategi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effectively promoting the MPP Korea.

The work undertaken during the first year was mainly devoted to collecting information and data on socio-economic conditions in the area, and to analyze these data using a SWOT framework to foster inter-Korean cooperation in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al management. In the second year, major efforts were put into the development of basic principles and strategies to facilitate the MPP Korea. And finally, the policy directions for the MPP Korea and the practical measures to establish the SPCZ in the West Sea were developed in the third year.

The applied research methods to implement the project were :

- Collection and analysis of information, and data from published materials, and statistics from a variety of resource suppliers (universities,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es, and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particularly dedicated to the transboundary protected area and regional seas).
- Conducting the surveys on public awareness toward the MPP Korea and related

issu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 2007, about 100 local people participated in the survey on the MPP Korea. The survey results were compared to those of 2005/2006.

- Operation of the Domestic Advisory Group (DAG) : Experts specialized in inter-Korean relations from research institutions, academia, NGOs, and civic society have been giving valuable advice to the MPP Korea. The DAG meeting has been held twice annually since 2005.
- Regularly holding an international workshop and th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IAG) Meeting : The second international workshop and the IAG meeting were successfully held in June 2007 in Seoul. These activities are contributing to building a strong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MPP Korea. Moreover, the number of IAG members was extended from four to five, since a representative from WWF Indonesia recently joined the IAG.
- Conducting case studies: Similar cases such as the Red Sea Marine Peace Park in the Gulf of Ababa (Gulf of Eilat), the Indonesia-Philippines Transborder Marine Peace Park in the Coral Triangle, the International Marine Park at the Mouth of Bonifacio Strait, the Mts. Sorak-Geumgang International Peace Park on the Korean Peninsula, and Yemen-Eritrea Joint Fishing Company were thoroughly examined to crystallize the MPP initiative.

The MPP Korea will be further promoted by three policy directions namely, “adding and strengthening protection of contents of the SPCZ in the West Sea” ; taking different approaches in deal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fishing zone and the sea border delimitation on the West Sea” ; and “holding a balance between large-scale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and small-size local economic development projects”.

Incremental, iterative, integrated and non-political approaches are the basic principles to facilitate the MPP Korea. And the six promotion strategies are developed based on the above policy directions and basic principles. The strategies to designate a Marine Peace Park in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of the Korea Peninsula designed to :

- Improve an institutional system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PCZ in the West Sea
- Revis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enhanc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marine and coastal management sector
- Establish a coordination mechanism between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 Strengthen the knowledge-base for supporting decision-making processes
- Form an Advisory Council for promoting major stake holders' participation, and raising public awareness within South Korea, and
- Take a detour approach through strong international partnership with relevant international/regional entities

In addition, this report recommends policies to relevant ministries, government agencies and major stake holder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cently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and changed condi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First, a different approach should be taken to deal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fishing zone and designation of a maritime peace zone and delimitation of the sea border line in the West Sea. Second, the operation of Co-Rangers and a Joint Fishing Company needs to be considered to guarantee security in the area and to wisely utilize fisheries resources between the two Koreas. Third, Haeju Harbor will be developed as a peaceful port and national tourism site. Fourth, Haeju Special Economic Zone must be differentiated from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circle tours around West Sea are required to be developed for boosting the local economy. Fifth, it is recommended that the two Koreas are to jointly establish an oil-spill contingency plan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from increased maritime traffic in the near future.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안·해양 환경과 자원에 대한 국가 간 협력관리는 다양한 국제기구의 틀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 또한 경계를 초월한 국가 간 공동협력관리는 21세기 자연환경보호와 자원관리의 이정표가 될 것임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정상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이하 서해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한 것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음

○ 그러나 개발과 보전 사이의 조화와 균형, 서해상의 군사보장 조치 실현, 남북협력 방향에 대한 남한 내 이견 조정, 남북협력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여전히 남아있음

○ 육상공간에서 경제 분야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물리적 접근의 어려움, 남북한 정치·군사적 갈등, 자료부족 등으로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남한과 북한이 지난 40년 동안 진행한 연안개발의 영향을 받지 않아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이 서식하고 있음

○ 향후 남북관계가 발전할 경우 교류와 협력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며, 육상의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개발여건이 비교적 유리한 서해연안으로 개발압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 이 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정치·군사적 특성, 물리적 접근의 어려움, 주요 수산자원(꽃게)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역발전이 다른 연안지역에 비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반세기 넘게 지속된 정치·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고 육상 중심, 경제개발 중심의 남북협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함

○ 이 연구는 접경 국가 간의 공동협력관리 모델인 '해양평화공원(Marine Peace Park)' 구상을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예정된 이 연구에서 제3차년도인 2007년 연구에서는 지난 2년간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10·4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포함함

2.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수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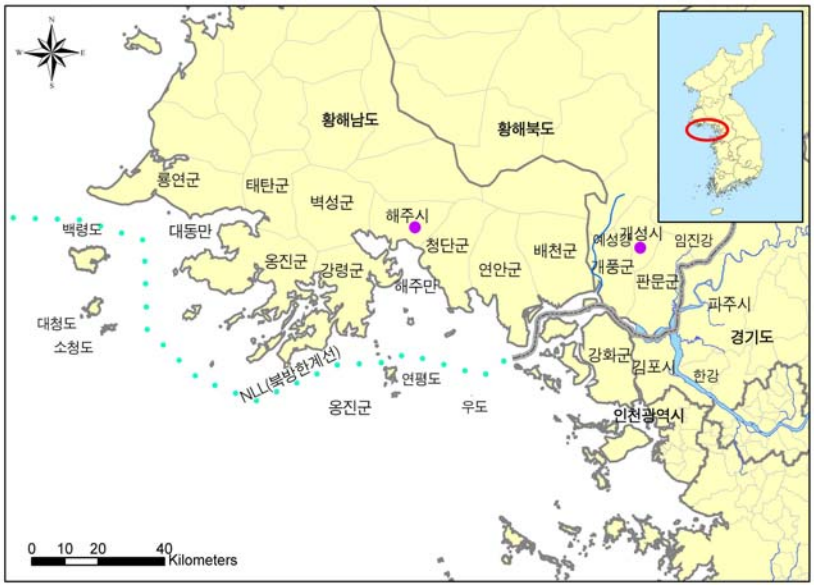
○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물리적 접근이 제약된 서해 5도와 북한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남북한 교류 및 협력 수준이 높지 않아 다음과 같은 한계와 특징이 있음
- 첫째,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군사적 특수성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 연안·해양에 대한 기초 자료가 매우 부족함
- 둘째, 북한 지역의 관련 자료(사회·경제 현황, 연안해양 정책 자료, 법·제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
- 셋째, 이 연구의 목적이 남북한 사이의 경계에 관한 법적 효력을 분석하는데 있지 않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지 않음
- 넷째, 이 연구는 정책방향을 제안 및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물적 토대(practical 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다섯째, 남한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 도출 및 국제기구와 협력관계 구축이 해양평화공원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므로 2008년부터는 실무분야 정책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지리적 범위는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해역과 이 해역과 관련한 법·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연안도서, 접경연안 해역의 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연안 비무장지대임

- 남한은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전역,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일부, 북한의 행정구역은 황해남도 룡현군, 옹진군, 대탄군, 강령군, 벽성군, 해주시, 청단군, 연안군, 배천군, 개풍군, 개성시, 판문점임

연구의 지리적 범위



○ 이 연구는 국내외 다양한 관련 자료 수집·분석, 전 국민 대상 인식조사 및 지역주민 설문조사 실시, 국내 전문가 자문단 운영, 국제세미나 개최 및 국제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홍해 해양평화공원 및 필리핀-인도네시아 술라웨시 해,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 등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수행함

3. 해양평화공원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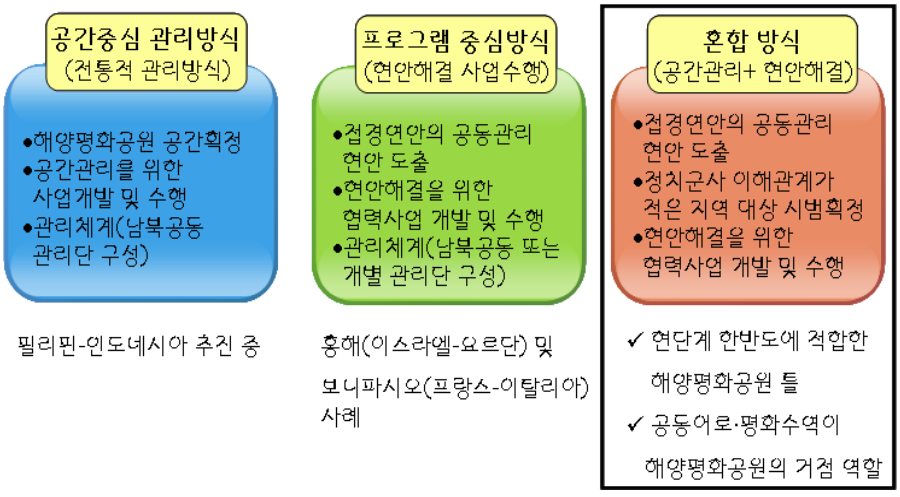
○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은 평화정착과 생태적 가치 보전에 충실하면서도 '낙

후한 지역경제 발전, 안보불안 해소를 통한 남북경제 공동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발전 전략임

> ❑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의 개념**
>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여「접경연안의 생물종다양성, 수산자원, 문화자원을 보호하고(Protection),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Peace), 통일경제 번영(Prosperity)의 토대를 구축할 목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다기능 복합 공간」

○ 해양평화공원은 ⅰ) 공간을 획정하지 않고 해당공간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틀, ⅱ) 공간을 획정하지 않고 접경지역에서 공동의 현안 또는 관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틀, ⅲ) 정치, 군사적 이해관계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간을 획정하거나 남한과 북한이 독자적으로 공간을 획정하고 현안해결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틀 3가지 형식이 있음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의 틀



○ 그러나 '10·4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로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성이 높은 틀은 평화수역을 거점으로 해양수산분야 협력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혼합방식'임

○ 서해 해양평화공원은 저어새, 물범, 노랑부리백로 등 한반도 고유의 생태적 가치 보존 및 서해특별지대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육상중심 개발압력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서해안 경제벨트와 생태벨트의 균형 잡힌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함

○ 또한 '서해상의 남북한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한 해양환경보전 및 자원관리 분야에서 협력 토대 구축',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남북협력사업에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해양평화공원은 추진되어야 함

○ 서해특별지대를 구성하는 사업은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 '민간선박 해주직항 통과', '해주경제특구 조성', '해주항 개발', '한강하구 공동이용(골재채취)'임

○ 서해특별지대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추진위원회 산하 '해주경제특구, 해주항 개발, 공동어로, 한강하구' 네 분야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함

○ 서해특별지대 설치 의의는 다음과 같음
- 서해특별지대는 해양평화공원의 목표 중 평화정착(peace)과 경제적 번영(prosperity)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인프라임
- 남북한 해상경계를 둘러싼 갈등을 우회적 방식(avoidance strategy)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사구시적 대책임
-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정치·군사적 긴장고조지역으로 인식된 한반도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외국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
- 서해특별지대는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남북한 공동의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촉매제로 기능할 것임
- 정상회담 선언문 채택에 이어 총리회담 및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 것은 서해특별지대가 남북한 공동발전의 주춧돌이 되었음을 뜻함
-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한 경제적 실리를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서해연안지역을 선택한 것은 남북한이 이 지역의 정치·군사적 가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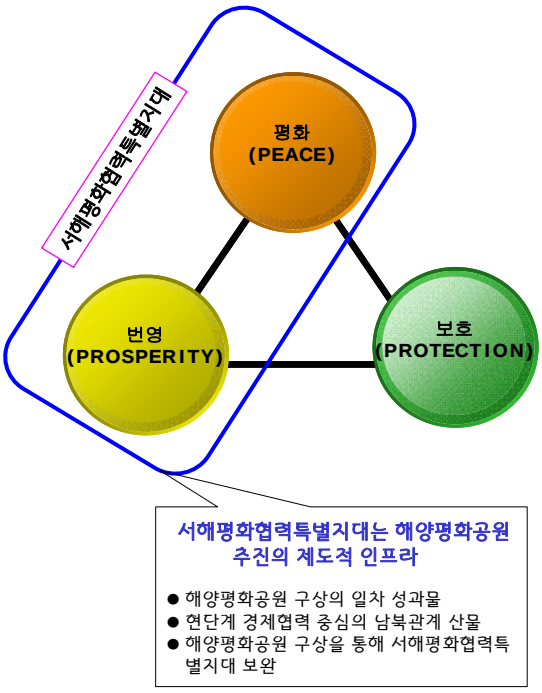
x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것임

○ 반면 서해특별지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서해연안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부족 등으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는 데 한계가 있음.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생물종다양성 거점(biodiversity hotspot)으로서 서해 연안지역에 대한 인식 부족
- 해주항 개발, 해주경제특구, 한강하구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생태적 피해정도와 남북한 해양수산 분야 부가가치의 손실규모를 고려하지 않음
- 남북한 해양협력 효과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콘텐츠 부족
- 서해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산하에 환경과 생태계를 이용한 남북한 공동발전을 담당할 분과위원회 부재
- 공동어로 활동으로 얻게 될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원보전 조치가 마련되겠지만 당분간 그 수준은 경제협력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

해양평화공원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관계



○ 서해특별지대는 해양평화공원 구상의 일차 성과물로서 현 단계에서 연안·해양환경 및 자원보전 분야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경제협력 중심의 남북관계에서 비롯한 것임. 앞으로 해양평화공원은 서해특별지대의 한계(연안·해양환경 및 자원보전 분야 미포함)를 보완하는 틀이 될 것임

4. 2005~2007년 연구성과 종합 및 향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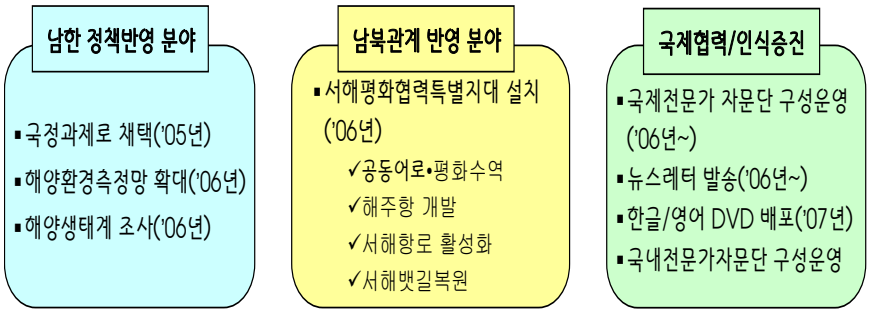
○ 2005년부터 수행한 이 연구사업의 성과는 남한 정책반영 분야, 남북관계 반영분야, 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 남한 정책반영 분야로 해양평화공원 구상의 국정과제 채택(2005·6), 해양환경측정망 확대(2006),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시행(2006)이 있음

○ 남북관계에 반영한 분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2007)가 대표적임. 특히 2006년 연구보고서에서 해양평화공원 세부사업으로 해주항 개발, 서해항로 활성화,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 한강하구 공동이용(서해뱃길 복원)이 정상회담 선언문에 포함되었음

○ 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분야로 5개 국제기구로 구성된 국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2006~2007), 국제사회 홍보용 DVD 제작·배포(2006), 정기적 뉴스레터 배포(2006~) 등이 있음

해양평화공원 연구성과 종합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연차별 주요 사업 내용

연 도	주요 내용	비 고
’05년	**<접경지역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기반 확보>** **[연구분야]** 접경지역 실태조사 수행 및 관리현황 분석 **[실무분야]**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 마련	국제세미나 개최
’06년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방향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연구분야]** ○ 해양평화공원 추진 관련 전 국민 대상 설문조사 ○ 자연환경, 사회경제 현황 및 추진여건 종합 ○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략 개발 **[실무분야]** ○ 인적교류를 통한 협력기반확보, 국제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홍보자료 개발, 뉴스레터 발간 영상홍보자료 개발 ○ 해양평화공원 지정 자문회의 운영규칙(TOR)확정	국제기구
’07년	**<해양평화공원 연차별 추진체계 제시 및 국제협력 강화>** **[연구분야]** ○ 기본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보완 ○ 연차별 사업 추진체계 제시 **[실무분야]** ○ 해양평화공원 추진 국제네트워크 강화 ○ 해양평화공원 남북회담 의제로 상정	남한, 국제기구
’08년	**<서해 해양평화공원 전략적 관리프로그램 개발>**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및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문가 자문단 운영 ○ 남북한 워킹그룹 구성 토대 마련 ○ 서해연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적 관리 프로그램 개발 ○ 지구환경금융(GEF) SGP 사업 제안서 준비	남한, 북한, 국제기구
’09년	**<서해해양평화공원 전략적 관리프로그램 이행 방안 개발>** ○ 해양평화공원 협력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 해양평화공원 SGP 사업 채택 추진	남한, 북한, 국제기구

○ 2008~2009년까지 수행할 주요 사업은 실무추진분야 사업으로 구성됨. 따라서 2009년까지 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및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국제 자문단 운영, ⅱ) 해양평화공원 관리방안 개발을 위한 남북한 워킹그

룹(working group) 구성 토대 마련, iii) 국제기구 및 지역해 기구와 협력관계 구축 등이 사업의 중심이 될 것임

제2장 서해연안 접경지역 및 남북협력 현황

1.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현황

○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한강하구를 비롯하여 황해남도 해안을 따라 약 1,445㎢의 갯벌이 형성되어 있어 한반도 전체 갯벌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음
- 남한은 한강하구와 강화도를 중심으로 하구형 갯벌이, 북한은 대동만, 해주만, 강령만으로 이어지는 내만형 갯벌이 형성되어 있음
- 북한은 1980년대 이후 이른바 '4대 자연개조사업'을 통해 간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추가적인 간척사업보다 경지정리 사업에 집중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한 갯벌 면적

구 분		면적(㎢)	우리나라 갯벌* 대비	비고
서해연안 접경지역	북측	958	17.3%	북한 갯벌의 약 30%
	남측	487	8.7%	남한 갯벌의 약 20%
소 계		1,445	26.0%	

주 : 한반도의 갯벌면적은 북한의 3,000㎢과 남한의 2,550㎢를 합한 5,550㎢로 추정됨.
자료 : 해양수산부(2003), 남정호 외(2005).

○ 접경연안의 수질은 유기물 기준이나 영양염류 기준으로 II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연평도, 백령도 등은 한강하구에서 멀어지면서 수질이 개선되는 공간적 분포를 보이는 반면 북한 연안에서 유입하는 오염물질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음
- COD는 1.3~2.5㎎/ℓ으로 과도하게 높은 이상 정점을 제외하면 평균 농도 1.9㎎/ℓ으로 II등급 수질을 보임. DO는 연평균 9.4㎎/ℓ에 농도가 감

소하는 여름철에도 7.6㎎/ℓ으로 Ⅰ등급 수질을 유지

- 영양염의 하나인 총질소는 0.20㎎/ℓ(백령도 북서측)~0.69㎎/ℓ(한강하구 장봉도 남측), 염하수록 남측에서는 1.10㎎/ℓ까지 치솟는 등 한강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큼
- 인성분은 용존무기인만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는데 공간적 분포는 총질소와 동일하게 나타나며 염하수로에서 0.044㎎/ℓ, 백령도 북서측에서 제일 낮은 0.008㎎/ℓ 관찰

○ 백령도에서 연평도에 이르는 해역의 저서생태계는 환경상태를 진단하는 ISEP 지수에 따를 경우 A0등급의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임. 해조류도 높은 생물다양성과 현존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업적 이용도가 높은 어류는 한강하구를 산란장과 보육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많은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한강하구의 경우 멸종위기종 Ⅰ급에 해당하는 저어새, 흰꼬리수리, 매, 검독수리 4종을 비롯하여 Ⅱ급에 해당하는 재두루미, 개리, 큰기러기 등 16종의 조류가 발견되었음

○ 포유동물로도 한강하구에서 수달(멸종위기Ⅰ급)이, 백령도 일원에서 물범(멸종위기Ⅱ급)이 발견되었음

○ 연평도를 중심으로 한 꽃게 어획량은 2004년에 과거 생산량의 1/5수준으로 급락한 이후 조금씩 회복하는 양상이나 아직까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과거 생산량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총 69개의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이 중 남한은 25개, 북한은 44개로 이 지역의 생태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서해접경 연안에 위치한 지역은 과거 북한에 가까운 입지 특성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더디고 이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아직까지 김포시, 옹진군, 강화군은 감소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에 맞추어 대규모 산업단지와 택지지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파주시의 경우 2000년 대비 2005년 인구가 23%나 증가하는 등 연평균 6.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서해연안 접경지역 보호구역 지정 현황

남 한		북 한	
명 칭	지정건수	명 칭	지정건수
야생동·식물보호구역	2	식물보호구	1
습지보호지역	2	습지보호구	3
천연기념물	12	천연기념물	37
특정도서	9	바다수산자원보호구	3
소 계	25	소 계	44
서해연안 접경지역 보호구역 총 69개소			

자료 : 남정호 외(2005) 재정리.

○ 황해도의 주요 연안도시의 하나인 해주시는 배후에 공업지구가 입지해 있고 주로 해주항을 통해 연료와 원료를 조달받고 육상의 철로를 통해 물자를 수송하는데 북한의 에너지와 경제여건에 의해 활성화하지 못한 상태이나 향후 항만과 철로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서해연안권의 핵심 경제권을 부상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음

○ 개성공업지구는 1단계로 100만평 규모의 개발로 시범단지 15개 업체, 1차 본단지에 현재 24개 업체가 입주·가동 중이며 2차 단지에 대한 분양을 시행하였음

2. 서해접경 연안 관련 법·제도 및 남북협력 현황

○ 환경보전과 관련한 북한 법률은 환경권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헌법을 시작으로「환경보호법」,「바다오염방지법」,「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문화유물보호법」,「환경영향평가법」,「간석지법」,「국토환경보호단속법」,「대동강오염방지법」 등이 있음

- 북한의 환경관련 법률은 환경 매체별로 분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 오염우심지역(ex. 대동강 등),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개발필요성이 높은 지역(ex. 간석

지), 특수지역(ex. 개성공단 등)을 중심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음

○ 북한의 법률체계는 과거 '교시'나 '말씀'과 같은 연성지침 형태에서 김정일 체제가 들어서면서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는 법률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한 이후 2006년 말 기준 16개 사업규정, 29개 관리준칙을 제정하였음. 이는 개성공업지구라는 남북협력사업이 북한의 법제도 체계에 일종의 자극제 역할도 하는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은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수질환경기준을 설정하여 4개 등급별로 화학적산소요구량(COD)를 비롯하여 총 18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의 수질기준에 비해 다소 완화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북한의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정책과 사업수요를 분석한 결과, 생태계와 생물종다양성 보전에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에 대한 우선순위도 높게 나타났음. 그러나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건설과 운영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우선순위에 비해 재원 분배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남북한 간 교역규모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 말 13억 5천불 수준까지 이르는 등 과거 일회적 접촉이나 행사성 남북교류에서 벗어나 제도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관광부문에서도 괄목할 성장세가 이어져 2007년 11월 누적기준으로 172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음

○ 남북은 정상회담 이전부터 공동어로수역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어로·평화수역을 근간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합의되었으나, 아직 군사당국자회담에서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이는 해상경계선에 대한 남북간 인식차이에서 비롯한 측면이 큼

제3장 해양평화공원 및 남북관계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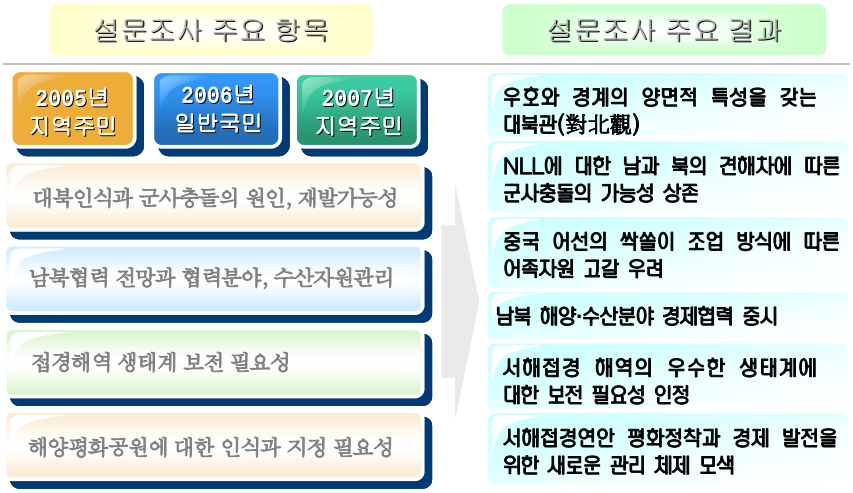
1. 인식조사의 개요

○ 서해상 남북 협력에 대한 지역주민과 일반국민의 이해와 지지의 인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가 시작된 2005년부터 매년 지역주민, 전문가, 일반 국민 등 대상을 달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시기별로 등장하는 현안에 따라 설문내용이 항목별로 달라지기는 하나 기본적인 설문항목을 유지함으로써 시기별로, 설문대상별로 동일한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 2005년 1차년도 연구과제에서 시작한 설문은 2007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설문은 크게 ⅰ) 대북인식과 군사충돌의 원인, 재발가능성 여부, ⅱ) 남북협력의 전망과 협력분야, 수산자원관리, ⅲ) 접경해역 생태계 보전 필요성, ⅳ)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인식과 지정필요성의 4가지 분야로 구성하였음

설문조사(2005~2007년) 주요 내용



설문조사 개요

구분	2005년도 1차 연구		2006년도 2차 연구	2007년도 3차 연구
대상과 지역	지역주민 (백령·대청·연평도)	전문가	서울 및 6대 광역시	지역주민(옹진군)
조사시기	2005. 7. 12~14	2005. 7. 26~8.5	2006. 9 (예비설문: 7월)	2007. 8. 28
조사방법	직접 면접	이메일과 팩스	일대일 직접 면접조사	설문지 배포 및 취합
표본 수	150부 중 144부 분석(96%)	80부 중 67부 분석(84%)	700명(20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남녀)	99명
내용	·지역의 현안 및 해결방안 ·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해양환경·어획량 변화추이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남북협력관리 여건 ·서해연안 접경지역 정책 방향	·북한 관련 일반 인식 ·남북관계와 긴장강도에 대한 인식 ·서해연안 평화공원 지정에 대한 일반 견해 ·평화공원 지정사업의 기대효과 및 기타 사항	·지역주민의 남북관계 인식 ·서해연안 접경지역 인식 ·서해연안 접경지역 해양평화공원 도입
표본오차	-	-	±3.7%	-

주 : 2006년도 조사작업은 동서리서치(www.dsrgroup.co.kr)가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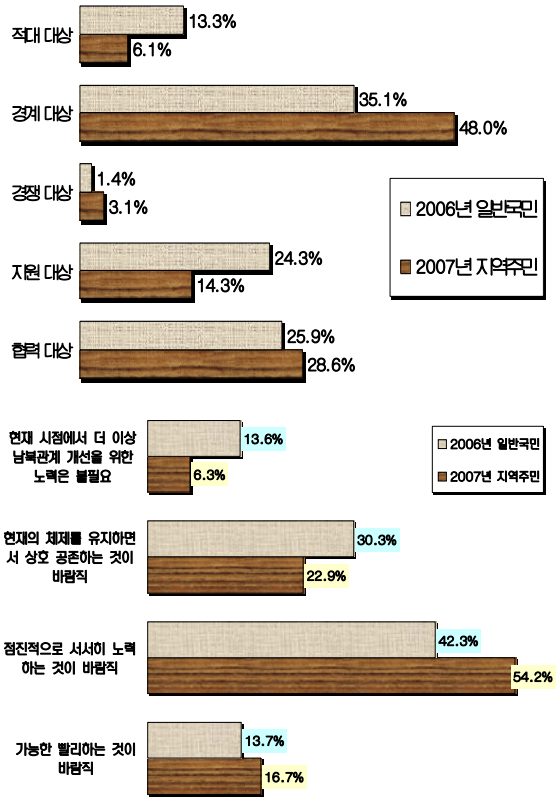
2. 2007년 지역주민 인식조사와 과거 인식조사 결과 비교·종합

□ 우호와 경계의 양면적 특성을 보이는 대북관

○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주민 설문에서 적대 6.1%, 경계 48.0%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2006년도 일반국민 설문에서 역시 적대 13.3%, 경계 35.1%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지역주민과 일반국민의 대북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음

○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에 있어서 지역주민(2007년)과 일반국민(2006년) 모두 남북통일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두 설문대상 사이에서 주목할 만한 의견 차이는 없음

북한에 대한 일반 인식과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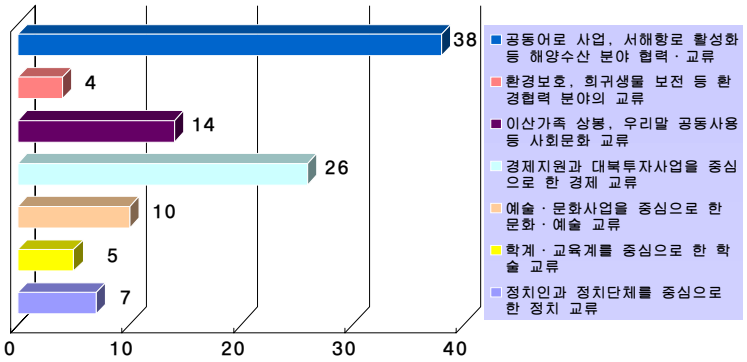
□ 남북교류 분야에 대한 지역주민과 일반국민 사이의 시각차

: 지역주민-해양·수산분야 남북 경제 협력 우선, 일반국민-사회·문화교류 우선

○ 남북한 교류협력의 여러 분야 중 일반국민은 이산가족 상봉, 우리말 공동사용과 같은 사회문화 교류와 문화교류를 중요시하고 뒤를 이어 경제교류인 반면, 지역주민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해양수산 분야의 협력을 중요하게 인식

- 일반국민은 실질적으로 남북이 접촉하고 지역적으로 구체성을 띤 사업보다 큰 틀에서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남북 상호 간 신뢰 구축 분야를 중시

남북 간 교류협력 중요 분야 인식(지역주민,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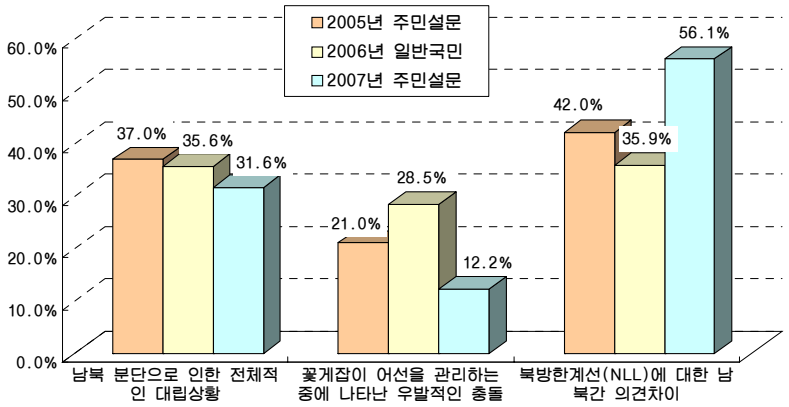


□ NLL에 대한 남북 견해차와 이에 따른 군사충돌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 상존

○ 과거 1999년과 2000년 서해상에서 벌어진 남북 군사충돌의 원인에 대한 지역주민(2005년, 2007년)과, 일반국민(2006년) 인식 사이에는 큰 차이는 없으며, NLL에 대한 남북 간 의견차이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이를 남북 대치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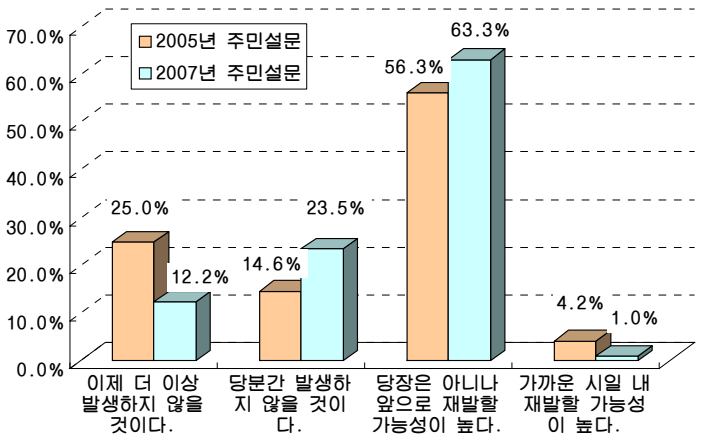
- 특이하게 일반국민은 꽃게잡이 조업 중 우발적인 충돌이 군사충돌의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역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남북 군사충돌 원인에 대한 인식 비교



○ 군사충돌의 가능성에 대해 지역주민 설문 결과 가까운 시일 내는 아니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56.3%, 63.3%),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와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가 20% 내외의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음

남북 군사충돌 재발가능성에 대한 인식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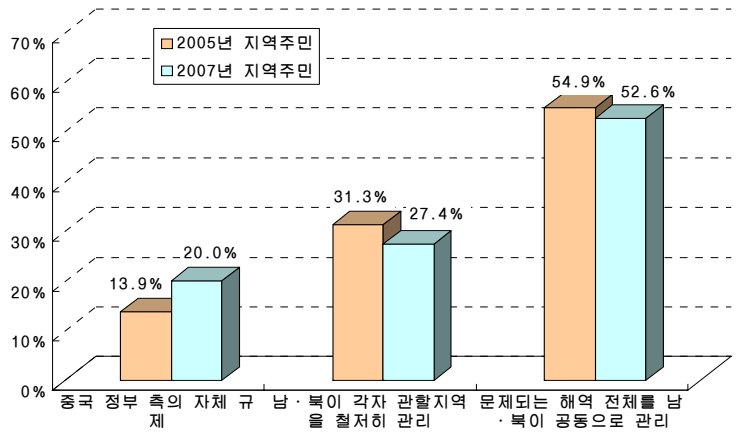


□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방식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 우려

○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지역주민은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에 가장 높은 응답률(64.8%)을 보였으며, 뒤를 이어 낮은 삶의 질(18.5%)과 해양환경 오염(14.8%) 순으로 응답하였음. 기타의견으로 북한 해주 앞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바닷모래 채취가 이 지역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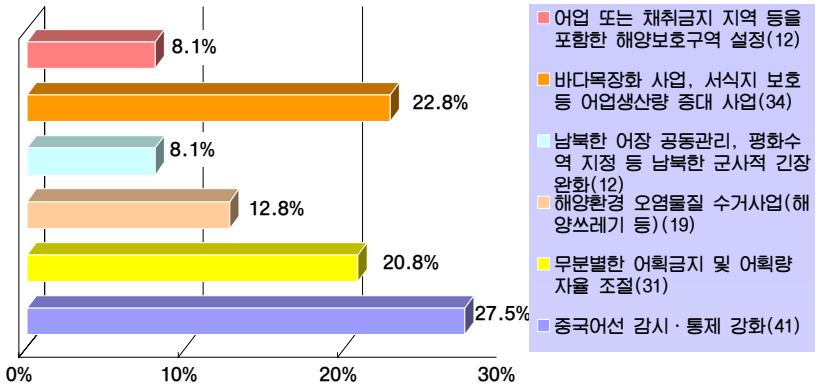
○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조업활동 규제에 대해 지역주민의 절반 이상은 문제가 되는 해역 전체를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관할지역 각자 관리와 중국 정부 측의 자체 규제가 뒤를 이었음

남북 경계수역 어로활동 규제 주체에 대한 인식



○ 최근 급격히 감소한 꽃게의 어획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주민은 중국 어선의 조업행위와 같은 외부압력요인 관리를 비롯하여 해역 서식지 관리(오염물질 수거, 해양보호구역 설정 등), 어획량 자율관리 등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음

꽃게자원 회복을 위한 주요 대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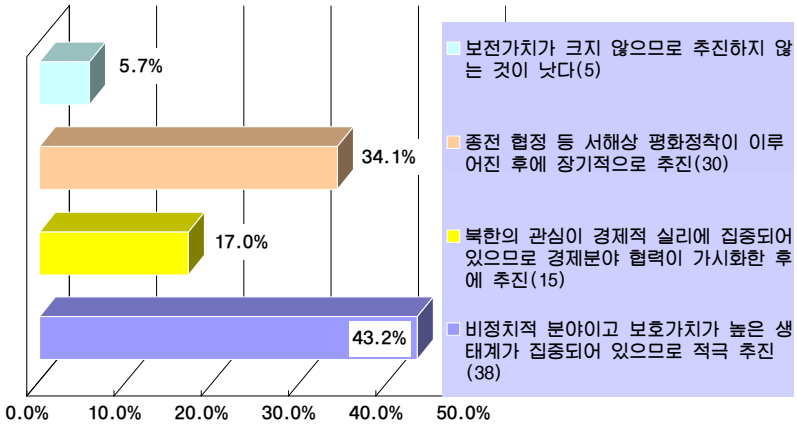


□ 서해접경해역의 우수한 생태계에 대한 보전 필요성 인정

○ 앞으로 남북한 협력사업의 하나로 생태계 보전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생태계 보전 협력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5.7%에 머문 반면, 대부분 보전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생태계 보전사업의 시행 시기에 대해 즉시 착수 43%, 평화정착·경제개발 이후 착수 51% 등 대의에는 인정하나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입장차가 노출되는 등 향후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청됨

접경해역 우수 생태계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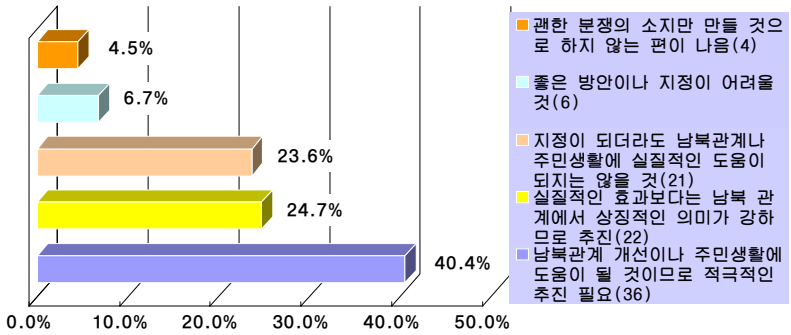


□ 서해 접경연안의 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리 체제 모색

○ 지역주민은 '해양평화공원'과 같이 남북한이 이 지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관리 틀을 도입할 필요성에 상당 부분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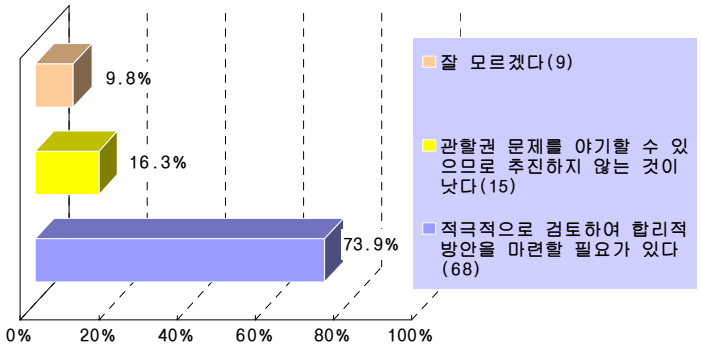
- 2005년 지역주민 설문에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에 58%가 응답하였으며, 2007년 주민설문에서는 적극적·실질적 추진과 상징적 의미를 고려한 추진 필요성 동감의견이 65% 수준인 반면, 지정이 어렵다고 보는 의견은 10% 수준임

해양평화공원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양측이 모두 관할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력리도에 남북한 수산물 매매를 위한 일종의 해상 중간 집판장(파시)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지역주민은 70% 이상이 지지 의견 표명

남북경계수역의 해상 집판장 설정에 대한 의견



제4장 국내외 관련 사례 및 시사점

1. 국내사례

1) DMZ 일원 접경보호지역 지정 :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

(1)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 개요

○ DMZ 일원은 비무장지대(907㎢)와 민통선 이북지역(1,370㎢), 접경지역(6,216㎢)을 포함한 지역으로 반세기 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임. 두루미, 흰꼬리수리 등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지정한 221종의 멸종위기종 중 30%가 서식하고 있음

○ 비무장지대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환경부는 2005년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대책'을 마련하였고, 건설교통부는 2006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과 북한개발을 위한 남북 간 협력체제 정립' 전략을 포함시켰음

○ 중앙정부의 계획에 발맞추어 경기도는 2006년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사업에 착수하였고, 세계적인 생태보고인 DMZ 일원을 남북화해와 평화, 자연생태계가 공존하는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생태관광 지구로 개발하여 남북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 설립은 한반도 평화정착, 생태계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다줄 것임. 비무장지대 생태축과 금강산과 설악산을 포함한 백두대간 생태축 연결을 통해 한반도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설악산 국립공원과 금강산 관광특구, 비무장지대 연계를 통한 관광 상품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임. 또한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연결과정에서 남북 간 협력은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임

(2) 시사점

○ 남북관계의 특성상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 지정에 대한 남북한 공동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먼저 남북한의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현황 자료를 총체적으로 포괄한 통합적 인벤토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의 설립 목적은 한반도 생태계보전 및 평화정착, 지역 활성화임. 이는 서해 해양평화공원의 지정 목적과 동일하므로 향후 두 프로그램 간 공동협력사업 또는 트위닝 프로그램(Twinning Programme)을 개발하여 시행한다면 두 프로그램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임

2. 국외사례

1) 홍해 해양평화공원

(1) 홍해 해양평화공원 개요

○ 홍해 해양평화공원은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아카바 만(the Gulf of Aqaba)에 지정되었음. 아카바 만은 길이 180㎞, 평균 폭 16㎞, 평균 수심 900m 정도의 좁고 긴 협만으로 남서쪽 만 입구에서 홍해와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음. 특히 이 지역은 산호 생장 조건에 적합하여 수많은 종류의 산호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중동지역 산호 서식의 북방한계선임

○ 산호생태계는 아카바만의 생활오수, 항구, 양식장 등에서 발생한 영양염의 유입 증가로 종다양성과 서식지 범위가 감소하고 있으며 산호 유생의 착생률 저하뿐만 아니라 산호사망률도 증가하였음

○ 아카반 만의 배후지인 요르단의 아카바와 이스라엘의 아일랏은 양국의 주요 항만도시로서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물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산

호초를 관광 상품으로 특화하여 국제적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음

○ 홍해 해양평화공원(RSMPP : Red Sea Marine Peace Park) 지정을 위한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요르단 평화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음. 평화협정문은 서문, 30개 조항, 4개 부속서, 전문해설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화공원 지정의 토대가 되는 아카바 만의 환경 및 산호생태계 보호와 아카바-아일랏 공동개발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은 총 6개 조항과 부속서 제4조에 포함되어 있음

○ 실질적인 홍해 해양평화공원 설립에 대한 내용은 아카바-아일랏 특별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특별협약은 환경보호(Protection), 지역발전(Prosperity), 평화보장(Peace)을 위한 양국 간 공동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부문에 산호생태계 보전을 위한 RSMPP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 평화협정과 특별협약을 근간으로 설립한 홍해 해양평화공원 프로그램은 미국대외원조기구(USAID)와 국제환경기금(GEF) 등 국제기구의 자금지원으로 1999년 시작하였음. 프로그램 시행의 주요 성과로는 자료집 발간, 공동조사 방법론 개발, 공동지침 마련, 합동회의 및 워크숍 개최, 공동 현장조사 실행, 웹사이트 개설 등이 있음

○ 또한 홍해 해양평화공원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요르단 간 공동협력을 증진하여 항만 물동량과 국제관광객의 수를 증가시켜 고용기회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중동지역의 안전보장과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2) 시사점

○ 아카바 만은 중동의 분쟁과 갈등의 중심에서 해양평화공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이스라엘-요르단 양국 간 경제 및 환경 부문에서의 협력을 증진시켰으며,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과 평화정착에도 기여함. 우리나라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해양평화공원 지정 역시 해양환경 분야 협력이라는 비정치적 접근법을 통해 남북한 간 긴장을 완화, 지역경제발전, 연안·해양환경 보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홍해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하여 양 도시를 산호초 전문 국제 관광도시 및 국제물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함. 서해연안 접경지역 또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인천, 해주, 개성 등을 배후도시로 두고 있어, 해양평화공원 지정 이후 생태관광 지구 조성, 경제특구 건설, 해운·항만단지 개발 등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장(場)으로 탈바꿈할 것임

2) 지중해 보니파시오(Bonifacio) 국제해양공원

(1) 지중해 보니파시오 국제해양공원 개요

○ 코르시카 섬(프랑스령)의 남쪽 해안에서부터 보니파시오 해협을 거쳐 샤르데냐 섬(이탈리아 자치주) 동쪽 해안에 이르는 지역은 지중해에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곳임

- 참다랑어, 방어, 황새치와 같은 원양어종이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동·식물군의 생물종다양성이 잘 보존되어 있고 가파른 바위절벽, 길게 뻗은 해변과 모래 언덕 등으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 보니파시오 해협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 규정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써 매년 3,800척의 선박이 통과하고 있어 선박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임. 또한 휴가용 주택건설, 관광·레저 시설 개발, 연안도시 개발 등으로 보니파시오 인근의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주낙을 사용한 무분별한 어업활동으로 매년 수백 마리의 바다거북이들이 혼획되고 있음

○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986년 보니파시오 해협 상의 해상경계 획정에 합의하였고, 1992년 이 지역을 국제해양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함.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또한 1992년 국제해양공원 설립계획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함

○ 보니파시오 국제해양공원은 프랑스령 코르시카 섬 남쪽 부근, 이탈리아 샤르데냐 섬 북쪽 부근, 보니파시오 해협 어귀를 포괄한 80,000㎢ 지역에 설립될 예정임. 두 국가는 국제해양공원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연안개발, 관

광산업 개발 , 선박항해 등으로 인해 파괴된 보니파시오 해협의 해양환경 복원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국제해양공원 지정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선박기인 오염원을 제거하거나 사전에 오염원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임. 이를 위해 두 국가는 세마포르(프랑스)와 막달레나 해안경비대 내에 해상교통 모니터링 기반시설을 마련하였음. 또한 양국 정부는 1993년 유해물질을 실은 선박의 보니파시오 해협 통과를 금지하는 국내법을 각각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음

○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연안해협국은 외국 선박을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외국선박의 통과통항권을 부정하거나 방해・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국가의 해양환경 관련 국내법을 외국선박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따라 지중해 연안국가 및 보니파시오 해협을 이용하는 제3국들로부터 연안・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국가 관할권을 넘어 공해(High Seas) 및 해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통합관리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됨

○ '지중해 특별보호구역 및 생물종다양성에 관한 의정서(Protocol Concerning Speicially Protected Areas and Biological Diversity)'는 보니파시오 국제해양공원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제공함. 이 의정서는 '지중해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바르셀로나 협약'의 6개 부속 의정서 중 하나로서 1996년 바르셀로나에서 체결되었으며 해당지역의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지중해 연안과 해양에 적용됨

○ '지중해 특별보호구역 및 생물종다양성에 관한 의정서'는 지중해 생물종다양성 보존 및 과학적・심미적・교육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주요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중해 특별보호구역 목록(a List of Specially Protected Areas of Mediterranean Interests : SPAMI List)'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SPAMI List에 등록되면 모든 협약 당사국들은 해당 특별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합한 보존 및 보호 활동을 수행할 의무를 부여받게 됨.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보니파시오 국제해양공원 지역을 SPAMI List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중해는 복잡한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연안 국가들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중해의 85%가 여전히 공해 상태로 남아있음.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의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프랑스는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도 국제해양공원이 설립될 지역을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2) 시사점

○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보니파시오 해협의 해상교통을 모니터링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대 내에 모니터링 시설을 마련하였고, 해군 및 유럽우주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였음.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안보가 매우 불안한 곳으로, 지역의 안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존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서해 해양평화공원 지정 과정에서 남북한의 해안경비대, 군부대, 지역안보 담당기관 등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고 이들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보니파시오 국제해협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해양공원 지정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중해 특별보호지역 목록(SPAMI List)에 이 지역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 남한의 국내법만으로 중국의 불법 어업활동과 해양파괴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제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이 있는 지역협약(Regional Convention)을 개발하는 방안도 유효한 전략임

3) 인도네시아-필리핀 산호 삼각지 해양평화공원

(1) 산호 삼각지 해양평화공원 개요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솔로몬 섬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산호 삼각지(Coral Triangle)는 해양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술루-술라웨시(Sulu-Sulawesi) 해역과 태평양을 오가는 참치들의

이동로임

- 과학계에 알려진 75%의 보초 산호 600여종 및 3,000여종 이상의 산호초 어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산호 삼각지 주변의 연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또한 약 225만 명의 사람들이 산호 삼각지의 풍부한 수산자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산호 삼각지의 생태계는 무분별한 남획과 지속 불가능한 어업법, 오염 및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음. 2006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수산 및 해양환경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자간 회의를 개최함. 이 회의에서 WWF(세계야생동물기금협회)가 술라웨시 해역에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

○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술라웨시해 상의 해상경계 획정 문제 및 주요 소득원인 참치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갈등해왔음. WWF가 제시한 해양평화공원 지정 안의 기본원칙은 양국 간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논의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갈등 해역에 평화공원을 지정하는 것이며, 인도네시아-필리핀 간의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보존 및 수산자원의 효과적 관리와 보존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시사점

○ 인도네시아-필리핀 산호 삼각지 해양평화공원 지정 안은 아직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므로 관련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이끌어 낼 효과적인 대중인식제고 프로그램과 갈등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또한 WWF와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받되 양국 정부의 주도하에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산호 삼각지는 서해접경 연안과 마찬가지로 생태계 보고임과 동시에 수산자원관리 갈등(서해접경연안-꽃게, 술라웨시해-참치), 해상경계 획정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 및 공동연구를 통해 관련 경험과 정보를 공유한다면 두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임

4) 예멘-에리트레아 공동어업합작회사

(1) 예멘-에리트레아 개관

○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동쪽으로는 오만, 서쪽으로는 홍해, 남쪽으로는 아덴 만을 접하고 있음. 2006년 기준 인구는 21.6백만 명이고, 1인당 GDP는 $906이며 주요 산업은 석유산업과 농업임

○ 주변의 홍해, 아라비안 해, 인도양에 펼쳐져 있는 풍부한 수산자원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노후, 기반시설 미비, 통계자료 부족 등으로 예멘의 수산업은 영세한 실정임. 수산업은 예멘 국가 GDP의 2.4%를 차지하고 수출량은 2000년 기준 4조원을 넘지 못하고 있음

○ 에리트레아는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홍해의 남동쪽에 접하고 있음. 2006년 기준 인구는 4.4백만 명이고, 1인당 GDP는 $270로 예멘에 비해 경제력이 크게 뒤떨어짐. 산업별 GDP 구성비(2002)를 살펴보면 서비스업 63.3%, 제조업 25.0%, 농업 11.7%를 차지함

○ 수산업이 에리트레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홍해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주로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되며, 2002년 수출량은 14,000톤임

○ 예멘-에리트레아는 홍해 연안에 있는 암석 및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문제와 해상경계 획정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해 옴. 양국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재판에 사건을 회부하게 됨

○ 에리트레아는 100여 년 동안의 '실효적 지배'를 바탕으로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을 주장했고, 예멘은 역사적·전통적으로 입증된 자료를 통해 주권을 주장함. 양국의 주장을 검토한 후 1999년 중재재판은 '실효적 지배' 사실에 입각하여 영유권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림

○ 중재재판의 결과에 따라 Hanish-Zuqar 군도와 Zubayr Group 등은 예멘에

귀속되었고, 남서쪽의 Mohabbakah 군도와 Haycocks를 포함한 작은 섬들은 에리트레아의 영토로 귀속됨. 또한 판결은 영유권 분쟁이 야기되었던 섬들의 주변 해역에서 양국이 전통적인 어업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음

○ 예멘-에리트레아 해상경계 분쟁은 홍해에서 양국이 주장하는 중간선(Median Line)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분쟁임. 예멘은 단일 국제경계선(중간선)을 주장하였는데, 관련 해안을 자국의 모든 해안도서와 서쪽에 대향하는 해안으로 취급하였음. 반면 에리트레아는 자국의 도서만을 기점으로 사용하여 역사적 중간선을 주장하였음

○ 중재재판소는 중간선은 단일목적 경계선이어야 하며 이는 대향 본토 해안의 중간선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경계획정 요소로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였음. 특히 해안선 길이의 비율, 해안선의 일반적 경향 및 경계획정으로 인한 수역의 범위를 상호 비교하여 이를 경계획정시 고려하였음

(2) 공동어업합작회사 개요

○ 예멘과 에리트레아는 양자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1997년 합의하였고, 2005년 공동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동어업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기술위원회(The Joint Eritrean-Yemeni Technical Committee)를 설립함. 그리고 2006년 11월 양 국은 공동어업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최종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함

○ 두 국가는 공동어업합작회사에서 규정한 어로구역, 어로기간, 어로방법을 준수하여 어업활동을 펼치게 되며, 수산물의 가공・포장・판매, 이익분배도 합작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

(3) 시사점

○ 예멘-에리트레아 간 공동어업합작회사는 '수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양국의 공통된 목표에 기초하여 설립되었음. 특히 예멘에 비해 경제력이 크게 뒤떨어지고, 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에리트레아는 합작회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예멘의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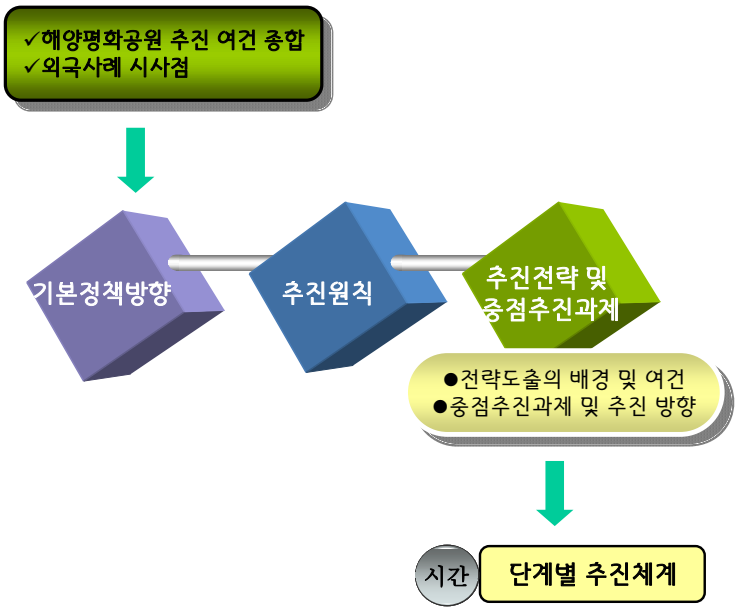
업기술과 판매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됨

○ 공동어업합작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예멘과 에리트레아를 둘러싼 환경은 남북한을 둘러싼 환경과 매우 유사함. 예멘과 에리트레아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은 서해 해상경계(NLL) 획정문제로 갈등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수산업 기술 및 기반시설을 포함한 경제적 격차는 매우 큼. 따라서 예멘-에리트레아 간 공동어업합작 회사 설립은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 설치의 이행으로 본격화 될 남북한 공동어로 구역 지정 및 관리 방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제5장 해양평화공원 추진 방안

○ 이 연구에서 제시할 해양평화공원 추진 방안은 기본정책방향, 추진원칙, 추진전략, 권역별 사업내용, 연차별 추진체계로 구성됨

서해연안 접경지역 해양평화공원 추진 방안의 구조



○ 2007년에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추진여건과 제4장의 외국사례 시사점을 활용하여 기본정책방향, 추진전략, 연차별 추진체계 등을 도출하였음.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를 단계별 추진체계(시간 관점)에 따라 재구성하였음

1. 해양평화공원 추진 여건 종합

○ 제1차년도 연구에서는 강점-약점-기회-제약 분석틀(SWOT Analysis)을 이용하여 추진여건을 분석하였고, 제2차년도, 제3차년도 연구에서는 2006년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였음

○ 2006년 말 이후 변화된 여건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2.13 합의」와 이후 이행조치의 실현으로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감소
- 「10. 4 정상회담 선언문」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은 해양수산분야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 경제개발 중심의 남북협력은 당분간 가속화될 전망 - 평화, 번영에 비해 보호분야 이행 미흡 예상
- 해상경계선 현안은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의 가장 큰 장애요인
- 남한사회의 정책인프라 마련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인식의 긍정적 변화
- 국제사회의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대한 협력 및 지원가능성 크게 제고

○ 2005~2006년 연구에서 도출한 해양평화공원 추진여건과 2007년 변화한 상황을 토대로 SWOT기법을 활용하여 여건을 종합하였음
- 강점요소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합의한 남북한 정상회담 선언문 및 총리회담 이행합의서가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는 남북한 공동 정책인프라가 되었다는 것임
- 약점요소는 해양평화공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부족, 해양수산분야 남북한 인적교류 경험의 부족, 경제협력 중심의 교류협력, 개발과 보전 사이의 갈등, 북한의 해양수산기술 역량 취약 등이 포함됨
- 기회요소는 북한 핵문제 해결가능성, 국제사회의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 해상경계설정을 둘러싼 남북한 갈등은 여전히 제약요소로 남아 있음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SWOT 분석(2007년)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 남북관계의 정례화, 안정화 - 인적교류, 교역량증가 - 총리회담 및 국방장관회담 정례화 ▷ 남북한 해양협력 및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공동정책인프라 구축(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 남한의 남북협력 추진 정책인프라 마련(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 남북한 수산·해운분야 협력기반확보 - 해양평화공원 추진사업 국정과제 채택 ▷ 남한의 발달한 해양수산관리체계와 관리역량 ▷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평화체제 구축 및 경제협력)	▷ 해양수산분야 교류협력 경험부족 - 해운, 수산에 비해 환경, 항만은 매우 취약 ▷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필요한 자료정보 부족 ▷ 경제 분야, 육상중심의 남북협력 ▷ 환경보전과 조정체계 부재(개발과 보전의 갈등) ▷ 북한의 해양수산기술 역량 취약 및 이로 인한 남북한 격차
기회(Opportunities)	**제약(Threats)**
▷ 2.13 합의에 따른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및 핵불능화 해결의 높은 가능성 - 북한의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 의지 ▷ 남북정상회담 및 서해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지(UN, EU) ▷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의지 제고 - 연안해양 관련 국제기구 및 동북아시아 지역해 기구 지원	▷ 해상경계 설정을 둘러싼 북한과 남한의 갈등 - 기회요소 또는 강점요소로 전환될 가능성

2.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정책방향과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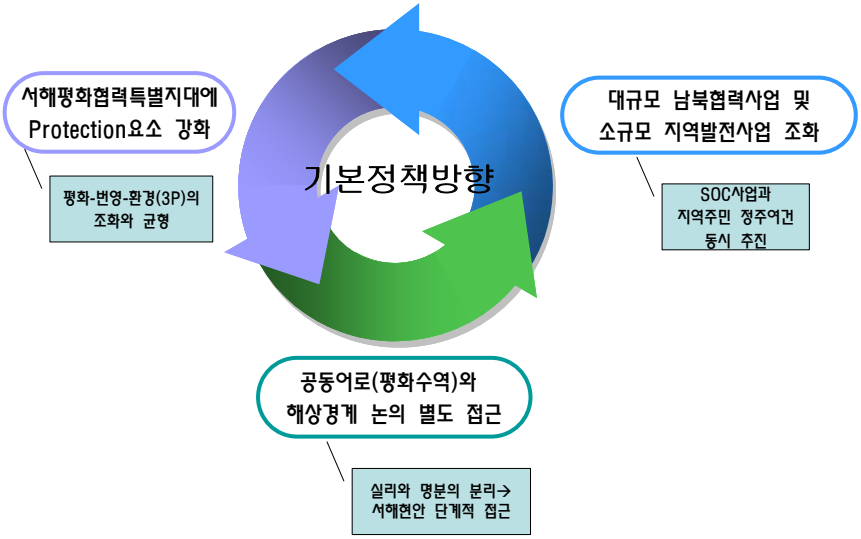
1) 기본정책방향

○ 해양평화공원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통해 남북한 공동 정책인프라를 구축한 '절반의 추진' 상태로 이해할 수 있음. 제도적

틀의 일부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물리적(실체적) 토대가 가시화된 상황이 아님

○ 따라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여건과 '추진'의 개념을 기초로 향후 해양평화공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정책방향은 약점요소를 보완하여 기회 또는 장점요소로 전환하거나, 제약요소는 약화시키거나 기회요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도출하였음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정책방향



(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생태계 및 자원 보호(protection)」요소 강화

○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합의하고, 총리회담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추진일정과 추진체제를 합의하였음

- 이에 따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세 가지 목표 중 정치군사 긴장완화, 통일경제 번영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되었음
- 그러나 해양평화공원이 추구하는 세 가지 목표 중 생태계 및 자원보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음

○ 해양평화공원의 기원과 서해연안에서 남북한 관계, 해양평화공원의 추진여건을 고려할 때 생태계 및 자원 보호(protection)를 향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성요소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보호(protection)를 중심 의제로 설정한 것이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의제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해양평화공원이 추구하는 세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의미가 있음

(2) 공동어로·평화수역과 해상경계설정 현안을 분리하는 실사구시적 단계별 접근

○ 공동어로·평화수역은 남북정상회담 및 서해평화특별지대에 담긴 평화조성과 경제번영을 상징적으로 함축한 핵심 합의사항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두 사안을 연계하려 처리하려는 남북 회담 당국자의 입장 때문임

○ 따라서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남북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리와 명분을 분리하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함

-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판단한 실리를 강조하고, 예멘-에리트레아 사례 등 해외사례를 연구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동어로·평화수역과 해상경계설정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함
- 공동어로·평화수역 현안을 먼저 해결하고 해상경계설정은 이후에 처리하는 단계별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대규모 남북협력사업 및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의 조화

○ 해양평화공원이 제기한 경제적 번영(prosperity)은 남북한 공동의 경제발전을 위한 큰 틀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함

○ 남북회담에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규모, 육상중심의 협력사업과 별도로 지역발전을 위한 소규모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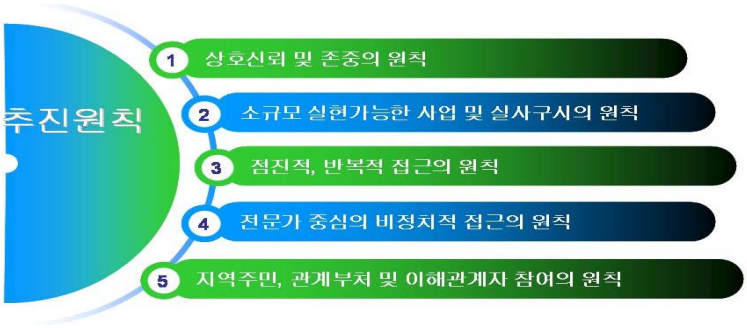
-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나 생활수준을 개선하려는 사업은 남북협력사업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제공함

2) 추진원칙

○ 해양평화공원의 3대 목표를 기본정책방향에 기초하여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진원칙을 확립해야 함. 추진원칙은 남한 및 북한, 또는 국제사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남한에 적용하는 원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최근 변화된 남북관계와 남북협력의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해양평화공원 추진의 기본원칙은 남북한 사이의 해양환경보전 및 자원관리에 관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적용할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 상호신뢰 및 존중의 원칙
- 소규모의 실현 가능한 사업 중심, 실사구시의 원칙
- 점진적, 반복적 접근의 원칙
- 전문가 중심의 비정치적 접근의 원칙
- 지역주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참여의 원칙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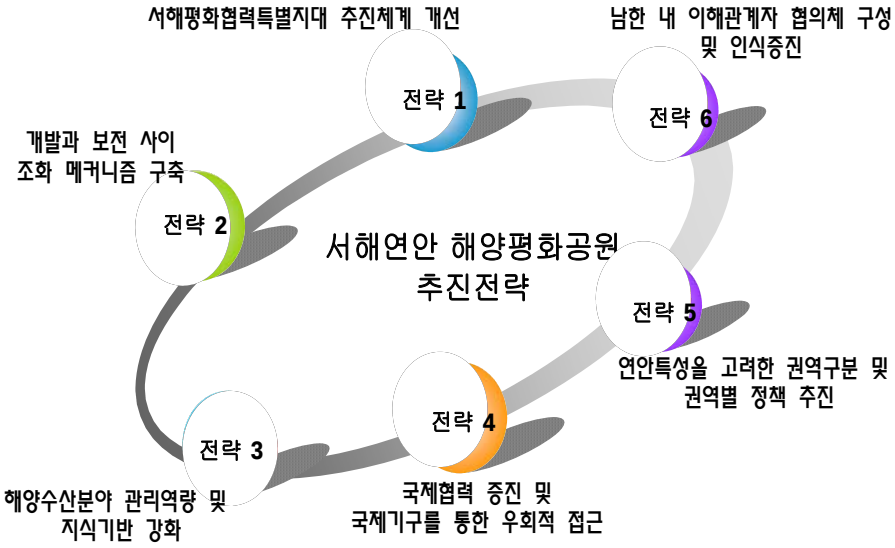
3.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략

○ 해양평화공원 추진전략은 긴장완화, 경제적 번영, 생태계 및 환경보호라는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수단임

○ 추진전략은 앞서 기술한 기본정책방향 및 추진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현재 해양평화공원 추진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약점요소를 강점요소로, 제약요소를 기회요소로 전환하거나 약화시킬 수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포함하여야 함

○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평화공원 추진전략'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체계 개선」, 「개발 및 보전 사이 조화 메커니즘 구축」, 「해양수산분야 관리역량 및 지식기반 강화」,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접근」, 「연안특성을 고려한 권역구분 및 권역별 정책 추진」, 「남한 내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인식증진」의 6개 항목으로 제시하였음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략



1) 전략 1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체계 개선

○ 해양평화공원의 일 단계 성과물이자 향후 추진의 제도적 인프라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성과 극대화의 측면, 지속가능발전의 측면, 이행가능성의 측면에서 추진체계를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성과극대화 측면에서는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남북한 해양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컨텐츠를 확보해야 함

○ 남한 입장에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남한사회 내부의 정치적 여건 변화에 난항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음

□ '해양보전협력분과위원회'(가칭) 설치

○ 남북경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대부분 육상의 경제협력 교류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해양수산분야에 특화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특히 해양환경, 연안관리 분야는 현재까지 진행한 남북한 교류협력과정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의 산하 분과위원회에 '해양보전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일정 조정 - 일부사업 2009년 이후로 조정

○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 대부분은 2008년에 시행하거나 사전준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음

○ 그러나 해주항 개발, 해주경제특구 설치,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 한강하구 골재채취가 실현되려면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도정비, 재원확보 등 선결해야할 사항이 여러 가지임

○ 따라서 일부 사업은 세부조사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전준비를 추진하

되, 실질적인 사업착수는 2009년 또는 2010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및 정상회담 이행을 위한 체제 정비(남한)

○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장기 계획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함

○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각 분야별 실천계획(가칭 '해양수산분야 남북관계발전 실천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전략 2 : 개발과 보전 사이 조화 메커니즘 구축

○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대규모 해안사구를 비롯하여 저어새, 물범, 노랑부리백로 등의 산란·서식지로서 지형적, 생물지리적,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

○ 그러나 향후 남한과 북한 사이에 경제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이미 보전 필요성이 정책에 반영되어 있고, 개발 여건이 용이하지 않은 비무장지대보다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으로 개발수요가 집중될 것임

○ 해주~개성~김포~인천광역시를 연결하는 경제벨트가 향후 남한과 북한의 사회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은 분명하지만, 연안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이 우려됨. 따라서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는 정책조정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서해연안 지역 용도구역제(Zoning) 도입(남한→서해접경연안으로 확대)

○ 형태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IUCN,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공간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도구역제를 활용하고 있음

○ 서해연안지역에 용도구역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핵심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서식지, 생태계 등을 보호하고, 개발이 필요한 구역은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데 있음

○ 용도구역제는 남한과 북한의 관할 연안을 단일한 관리단위로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연안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 평가 실시

○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교류협력은 경제 분야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해양환경보전 현안과 공간관리 및 자원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은 정식의제로 채택된 바 없음

○ 개발사업의 추진과 이로 말미암아 발생할 해역수질오염, 수산자원 산란·서식지 감소, 수산물 생산량 감소,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변화 등을 우려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큼

○ 따라서 해양·연안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연안개발사업에 대해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경제성, 사회성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

○ 개발 초기단계부터 경제적 타당성, 주변 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한다면 보전과 개발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3) 전략 3 : 해양수산분야 관리역량 및 지식기반 강화

○ 남한과 북한의 해양수산분야 인적교류 경험은 많지 않고, 기술격차가 크기 때문에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을 추진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임. 관리역량의 차이는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사항을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이행하는데 약점요소가 될 수 있음

○ 자연환경, 자원, 공간에 대한 관리방안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상호이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마련해야 함

□ 남북 해양수산공동개발센터의 설립 및 운영

○ 서해연안지역의 해양수산분야 현안은 항만 개발, 해운항로 확보, 어업 및 증양식, 골재채취, 생물다양성 보전 등으로 매우 다양함

○ 북한은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정책적 관심이 높은데,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공동개발센터는 항만, 수산, 연안관리,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개발 지원, 훈련, 공동조사, 장비의 공동사용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남북한 모두에게 실리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임

□ 공동조사 추진 체계 마련

○ 공동조사는 남북한 인적교류와 신뢰가 회복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류협력 분야임. 공동조사 운영조직 구성, 조사체계 합의(합의를 통한 공동조사 방법론 개발, 정보 및 자료 관리프로토콜 마련, 공동조사 실시), 교육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임

○ 북한의 참여가 소극적일 경우 북한의 협조를 구해 남측의 군사지역부터라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남한-북한 해양수산전문가 포럼 운영

○ 해양평화공원을 비롯한 포괄적인 해양수산 분야 협력체계의 구축은 인적교류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함

○ 해양수산전문가 포럼은 남한과 북한 내 남북협력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합의도출과정에서 나타날 경직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해양수산 전문가 포럼은 초기에는 비정기 형태로 진행되겠지만 앞서 제기한 관리역량 및 지식기반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의 틀로 기능할 것임

4) 전략 4 :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접근

○ 해양수산분야 남북한 직접교류는 경제중심의 남북교류협력의 특성,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정치·군사적 특수성으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음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과정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은 매우 중요함.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지원사업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때문임

□ 국제기구 및 사례지역과 네트워크 구축

○ 해양평화공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의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제자문단회의를 현재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함

○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자문단회의는 국제기구의 인식을 높이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 국제협력 네트워크는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해양평화공원 또는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에 도움이 될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할 수 있음
  - 술라웨시 해양평화공원(필리핀-인도네시아), 홍해해양평화공원(이스라엘-요르단), 공동어로 합작회사 설립(예멘-에리트레아), 보나파치오 해양평화공원 구상(프랑스-이탈리아) 등

□ 지역해 프로그램과 협력사업 개발

○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지역해 국제기구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협력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주요 지역프로그램별 협력사업은 다음과 같음
  - 동북아 생물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 : 육상비무장지대연계
  - YSLME : 물범보호 및 역량증진
  - PEMSEA : 연안통합관리
  - NOWPAP : 유류오염긴급방제계획 및 해양쓰레기 관리

○ 남한과 북한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북아 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나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C)와 같은 국제협의체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있음

5) 전략 5 : 연안특성을 고려한 권역구분 및 권역별 정책방향 추진

○ 일반적으로 공간을 대상으로 한 관리방향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는 해당 공간의 자연, 인문, 사회, 경제, 역사, 문화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한 지역에서 성공한 모델이라 할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 적용할 때 반드시 성공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철저하게 지역특성(site-specific)과 지역의 현안(issue- dependent)을 고려해야 함

○ 이러한 접근원리를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적용할 때 그 지역은 권역별 특징에 따라 3개 권역-백령・대청권역, 연평권역, 강화・한강하구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 및 현안을 고려하여 권역별 정책방향을 추진하도록 함

○ 백령・대청권역에서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핵심 정책방향은 물범의 보호와 관리로 설정하여야 함. 연평권역의 경우 남북 간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보호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지 않지만 어업자원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보전・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어업자원의 남획과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해양환경관리, 어업자원 공동 관리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음. 강화・한강 하구 권역은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넘나들며 갯벌을 산란, 번식에 필요한 서식과 취식장소로 이용하는 저어새, 노랑부리백로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한강하구(강화도 북단)의 개발을 생태계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룰 수 있는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설정함

6) 전략 6 : 남한 내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인식증진

○ 서해연안접경지역의 자원과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남북협력 의제 개발 과정에서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낙후한 지역경제의 회복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국가정책이 상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부처 간, 이해관계자 사이에는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입장차이 외에도 북한에 대한 태도-포용 對 압박-를 둘러싼 이견도 존재함

○ 남한 내부의 견해 차이를 줄이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전략을 수립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해양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 정책협의회’ 또는 연석회의 구성

○ 남북정상회담에서 해양수산분야 협력사업이 다양하게 제기되었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라는 정상선언의 핵심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정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함

○ 정책협의회가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 협의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판단된다면 연석회의 형태의 협의체 구성도 검토할 수 있음

□ 남한 내 지역주민 협력관계 형성 및 인식 제고

○ 서해연안 접경지역을 해양평화공원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함.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좁은 범위에서는 남한 내로 대상을 제한할 수 있으나, 향후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해관계자가 이 구상을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부처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우선 대상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교류와 협력과정에서 해양평화공원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유하도록 유도함

4. 단계별 추진체계

○ 해양평화공원은 남북관계의 경색, 북미관계의 악화 등 외부 여건에 매우 민감하고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구상임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은 일대 진전이나, 일시적으로 관계가 개선되어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남북한 사이에 도출한 합의문의 이행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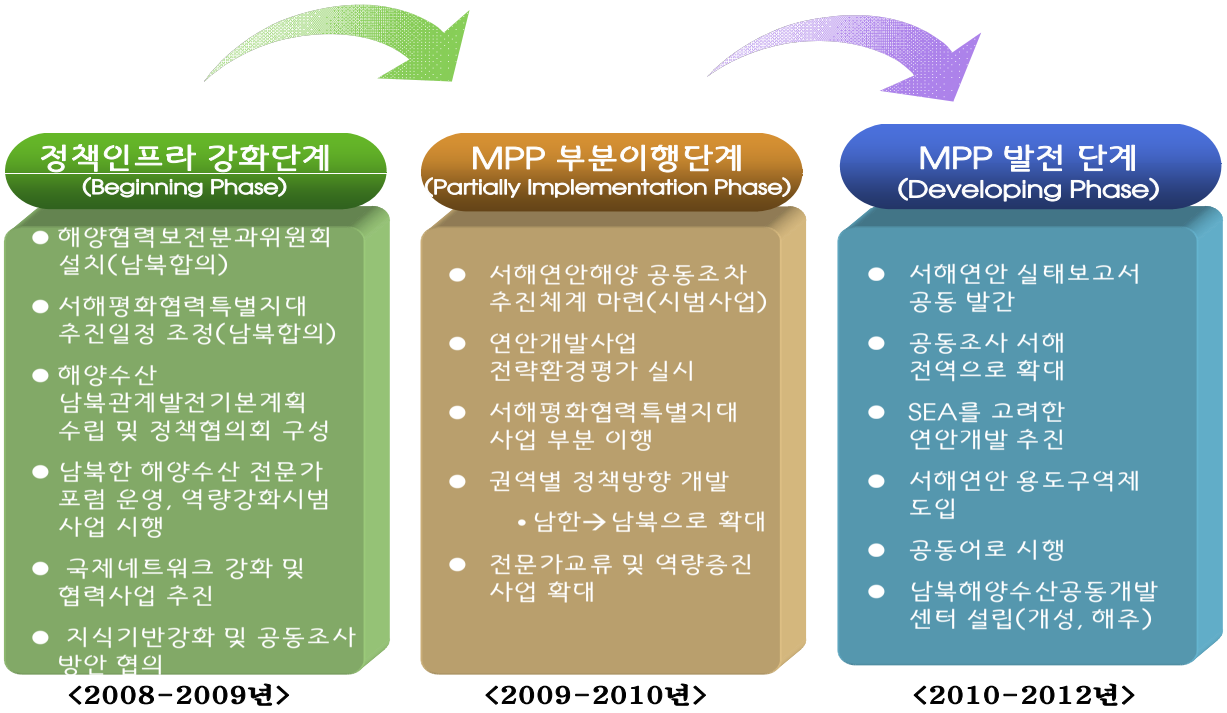
○ 따라서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 해양평화공원 개념에 기초하여 서해평화협

력특별지대를 발전시켜야 함. 해양평화공원 개념의 3대목표인 평화정착, 생태계 및 환경보호,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체계를 앞에서 제시한 추진전략과 중점추진과제를 기초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제1단계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행을 위한 인프라 강화 단계
- 제2단계 : 해양평화공원 추진 부분 이행 단계
- 제3단계 : 해양평화공원 발전 단계

○ 제1단계 사업은 외연을 확장하는 단계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서 제안한 일부 사업은 이행될 것이며, 제3단계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단계에 들어서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

해양평화공원 단계별 추진체계(주요 사업 요약)



/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해양평화공원’ 구상은 평화정착(Peace), 생물종다양성 및 환경보호(Protection), 지역경제 활성화 및 통일경제 기반조성(Prosperity)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틀임

○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회담과 11월 15일 총리회담은 남북관계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 남북정상회담 및 북한 핵 불능화 이행 등으로 남북관계는 특정한 사건이나 이슈로 인해 급격하게 냉각되거나 가열되는 취약구조를 벗어나 안정단계에 들어섬

○ 육상중심, 경제개발 중심의 남북한 교류협력 구조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로 최소한 육상과 해양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은 완화될 것임

○ 서해특별지대는 정치・군사적 평화 및 경제적 평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생태・환경적 평화를 실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서해특별지대와 해양평화공원 구상을 실현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NLL을 둘러싼 남북한 견해차임. 11월 국방장관급회담에서 공동어로・평화수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를 반영함

○ 공동어로・평화수역은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의 공간적 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임. 따라서 실사구시(實事求是)적 관점에서 명분과 실리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함

2. 정책제언

○ 정책제언은 서해특별지대의 외연을 확대하고 해양평화공원이 추구하는 3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선결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함

○ 제5장에서 제시한 해양평화공원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언을 5가지로 제시함

1) 공동어로·평화수역과 남북한 해양상계설정 현안 분리 접근

○ 두 현안을 분리 접근하여 얻게 될 실리와 불이익 비교·형량
-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는 공동어로·평화수역과 남북한 해상경계설정을 분리하여 접근할 수 있는 근거임
- 합의서에는 해상경계설정에 대해 '서해의 불가침선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쌍방이 계속 협의해야 하며,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한 구역을 해상불가침으로 설정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으로 얻게 될 실리와 해상경계선 현안을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얻게 될 불이익을 남북이 합의하여 비교·형량함

○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 2008년 포럼 개최
- 2008년에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범해역을 먼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시범해역 지정, 공동조사 시범시행, 공동조사 확대, 최적 생산지역 후보 도출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하도록 함
- 시범해역 지정과 지정 기준 도출, 공동조사 방법 마련을 위해 2008년 상반기에 국제기구 참관 하에 남북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도록 함
- 시범해역으로 2006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연평도 북서쪽 남한과 북한이 각각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이 교차 또는 갈라지는 지역에서 등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지정할 수 있음

2) 공동어로·평화수역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동관리·경비단(Co-Rangers) 운영 및 합작회사 설립 준비

○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남북한 중심의 공동관리·경비단(Co-Rangers) 창설
- 공동어로 방식에 따라 경비·관리업무 방식은 남한의 선박과 어민만 출입하는 방식, 남북한 선박이 섞여 어로하는 방식, 남한의 선박에 북한 어민이 승선하는 방식 등이 달라짐
- 남북해양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관할만 관리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음. 또한 관할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또 다른 해상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평화수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음
- 따라서 남북한이 같은 수의 인력을 파견하고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합의한 관리·경비 규약에 따라 평화수역을 관리하는 형태가 될 것임
- 접경지역 관리경험이 풍부하고, 경비·관리 기술이 가장 많이 축적된 IUCN이나 유네스코의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공동관리·경비단의 역할은 불법어로 단속, 어로구역에서 갈등 사전방지, 해양자원 및 생태계조사, 자연환경보전 등임

○ 공동어로 정착을 위해 통제효과가 높은 합작회사 설립
- 남북한 사이에 공동어로 경험이 전무한 상태를 고려할 때 시범단계에서 남북한의 선박이 동일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예멘과 에리트레아의 해상경계획정 및 공동어업합작회사 설립 사례는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 합작회사는 다양한 어로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공동어로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전판이 될 수 있음. 또한 합작회사를 통해 이익을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분배할 수 있음

3) 해주항을 아시아의 미항(港), 지구촌 평화의 항만으로 개발

○ 남북해양협력 효과와 공동체 브랜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항만 설계 추진
- 서해특별지대 사업으로 추진될 해주항 개발은 경제적, 정치적 이익 외에 한반도의 가치와 의미를 제고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 해주만의 생태계적 가치를 고려할 때 해주항을 환경친화적 수변공간(waterfront)으로 조성하고 다목적 기능을 담당하는 경쟁력 있는 미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이 공동으로 해주항 개발을 추진할 시 '아시아의 미항, 평화의 항만'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할 경우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재원조달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임

○ 2012년 해양엑스포와 연계한 효과 극대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평화의 바다
- 여수 엑스포를 통해 '안정하고 건강한 바다', '인간과 공존하는 연안'이라는 메시지 외에 '평화의 바다'라는 메시지를 추가하여 홍보한다면 한반도 브랜드 파워가 한층 강화될 것임
- 여수 엑스포 개최시기에 맞춰 해주항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2012년은 전세계에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외에 '평화의 바다'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4) 해주경제특구 개발 콘텐츠 차별화 및 환상형(環狀形) 연안관광 추진

○ 해주경제특구를 미래산업 협력기지로 개발
-'해주경제특구' 설치 합의에서 제기되었던 현안은 '개성공업지구와의 차별성', '경제특구에 입지할 산업종류 및 규모'였음
- 해주만의 자연환경, 해주지역의 육로 접근성, 북한의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적합하지 않음
- 개성공업지구와의 차별성을 유지하고, 해주만의 가치와 특성을 고려할 때 해주경제특구에 수산물 가공, 유통, 해양관광, 휴양산업 등을 개발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임

○ 서해5도~개성~해주~옹진반도를 연결하는 환상형(環狀形) 연안관광 추진
- 서해 연안지역은 역사적으로 남북한이 해양문화를 공유했던 곳이며, 한반도에서 자연형 하구를 유지하는 유일한 곳임
- 따라서 강화도~한강·임진강·예성강 하구에 이르는 삼각크루즈(Triangle Cruise) 항로, 인천~백령~연평 항로, 개성~해주~옹진반도~백령도

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는 평화정착 및 경제번영 실현에 기여할 것임
- 또한 이를 서해뱃길 복원 및 소규모 선박관광과 연계할 경우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5) 민간선박 해주직항로 통과에 따른 유류오염방제긴급계획(oil spill contingency plan) 공동 수립

○ 2005년에 발효한 남북해운협력합의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이행단계에 접어듦. 또한 북한산 모래 반입량 및 남북한 간 선박운항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해주항 민간선박 직항로 이용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이 이행될 경우 선박운항 횟수는 더욱 늘어날 것임

○ 그러나 이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분포하고 있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및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지임. 유류오염사고는 보호가치가 높은 서해 접경연안 생태계와 주요 서식지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남북한 해상 교역량 증가에 대비하여 남북한 공동의 '유류오염사고 대비 긴급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연안·해양 환경과 자원에 대한 국가 간 협력관리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지역해 관리프로그램(Regional Seas Programme),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of Conservation for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과 평화공원재단(Peace Park Foundation)의 평화공원, 유네스코(UNESCO)의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 등의 틀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남정호·강대석, 2003).[1] IUCN이 주관하여 개최한 제5차 세계보호구역회의(World Park Congress)에서는 자연환경의 보호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경계를 초월한 협력관리'를 채택하였다.[2] 경계를 초월한 협력관리는 21세기 자연환경보호와 자원관리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서해 접경연안은 남한과 북한이 해역을 공유하고 있고, 동일한 해양학적 과정(oceanographic process)이 나타나는 지역이지만 남한과 북한 사이의 협력관리는 아직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꽃게 자원과 관할 영역을 둘러싸고 두 번의 군사적 충돌(1999년, 2002년)도 발생했다.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던 남북회담이 난항에 빠질 때 등장했던 현안은 해상경계 설정에 관한 남북한 사이의 견해차였다.[3] 2007년 10월 4~5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정상

---

1) 바다는 국가 간 경계, 행정구역, 어업구역 등 인위적인 기준에 의해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유체의 특성이 있음. 국제사회가 국제협약, 지역해 관리프로그램, 국가 간 협약과 같은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해양자원, 공간 및 환경을 관리하려는 것은 이러한 유체의 특성을 관리에 반영한 것임.

2) 200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한 이 회의의 주제는 '경계를 넘어서 모두에게 이익을(Benefits beyond boundaries)'이었음.

3) 이 지역의 군사적 충돌은 역사적 연원이 매우 깊은데, 남북한이 38선의 경비를 직접 맡게 되는 1949년부터 38선을 중심으로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이러한 군사적 충돌은 개성, 옹진, 의정부를 중심으로 나타났음. 특히 옹진은 남북한의 충돌이 가장 빈번했던 곳이며,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가장 먼저 전투가 시작된 곳임. 남한은 옹진을 방어하기 위해 1949년 6월 5일 옹진지구 사령부를 설치했음(임영태, 「북한50년사 1」, 들녘출판사, 서울, 1999, p. 217). 최근 들어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은 해상경계를 다시 설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향후 NLL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임.

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를 합의하여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실현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여전히 존재한다. 해양환경보전과 경제발전 사이의 조화와 균형, 서해지역 남북한 협력을 위한 군사보장조치 실현, 남북협력 방향에 대한 남한 내 이견 조정, 남북협력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 다양하다. 특히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 또는 공동어로 시행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재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달리 육상공간에서 경제 분야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 남북한 협력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업지구 개발, 경의선, 동해선 기차 시험운행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반 경제 분야 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등 사회・문화 분야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른 접경지역의 군사적・정치적 긴장은 그동안 추진했던 남북한 교류협력의 성과때문에 서해연안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종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생물종다양성이 풍부하여 독특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 생태계의 보전에 대해 남북한 및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생태적 가치, 남북협력으로 인해 얻게 될 잠재적인 기대이익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세기 넘게 지속된 정치, 군사 긴장으로 남한과 북한의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했던 점이 서해 접경연안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해양환경 측정망도 이 지역을 포괄하지 않은 것은 서해 접경연안 지역의 관리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지역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자료의 부족, 육상 개발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자원고갈 위협,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정치적 갈등, 개발과 보전 사이의 갈등, 남북공동의 비전 부재가 이 지역 자원과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관리하는데 한계요인이 되었다. 이 연구는 남북한 해양협력을 통해 잠재적 이용가치가 크고, 보전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이 높은 이 지역을 ‘해양평화공원(Marine Peace Park)’ 개념에 기초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추진하였다.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이 지역은 남한과 북한이 지난 40년 동안 진행한 연안개발의 영향을 받지 않아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생

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다. 수질환경도 양호하고 서식지의 훼손상태도 미미하여 상업적으로 유용한 수산생물의 서식과 산란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전체 연안지역 중 해양환경보전, 자원의 합리적 이용의 측면에서 가장 관리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의 하나임을 의미한다.

향후 남북관계가 발전할 경우 교류와 협력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며, 육상의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압력은 개발여건이 양호한 서해연안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남정호・강대석, 2003; 남정호 외, 2005). 이에 따라 해주경제특구~개성공업지구~김포시~인천광역시(송도)를 잇는 연안경제벨트가 활성화될 경우 간척과 매립, 항로 유지를 위한 준설과 같은 물리적 영향(서식지 훼손)뿐만 아니라 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한 화학적・생물학적 영향(수질환경 오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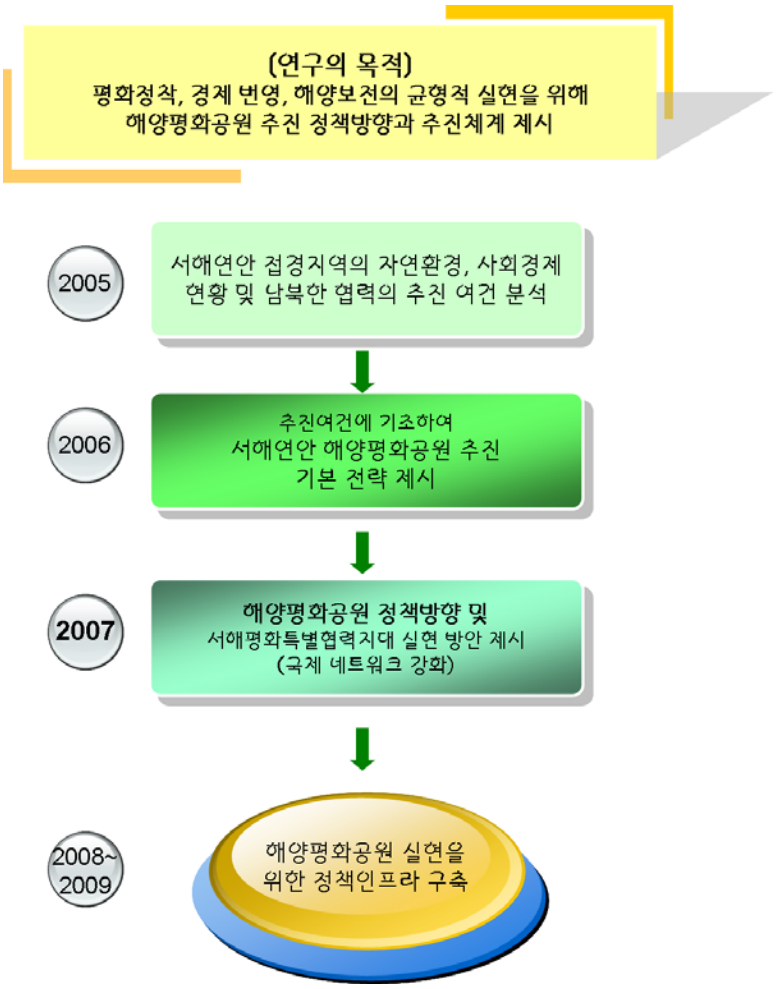
한편 이 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정치・군사적 특성, 지역주민 거주 도서가 연안으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 지역주민 경제활동 및 생활영위 기반이 농업과 수산업에 한정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특성 때문에 지역발전이 다른 연안지역에 비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의 활동 강화, 저인망 등을 이용한 중국 어선의 남획어업, 해양쓰레기 침적으로 인한 생태・환경 악화 등으로 수산업 생산량이 크게 줄어 지역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환경과 경제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이 지역의 정치・군사, 자연환경, 사회・경제 특성을 고려할 때, 남한만의 노력으로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지역의 환경・생태계 보전과 지역발전은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북한 사이의 경계를 초월한 협력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서해 해양평화공원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가 있지만 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반세기가 넘게 지속된 정치・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고, 육상 중심, 경제개발 중심의 남북협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즉, 남한과 북한이 연접한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환경보호, 평화정착, 경제발전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는 접경국가 간의 공동협력관리 모델인 '해양평화공원(Marine Peace Park)' 구상을 이 지역에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5년에 시작하여 2009년까지 추진할 연구에서 제3차년도인 2007년의 연구에서는 2005~2006년의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10. 4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도 포함하였다. 이 연구의 기본목적과 연차별 연구목표를 <그림 1-1>에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목적 및 연차별 연구목표**



2.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수행 방법

1) 선행연구 고찰 및 이 연구의 특징

(1)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자원 및 환경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협력관리를 직접 다루고 있는 연구는 2004년까지는 강대석・남정호(2002), 남정호・강대석(2003, 2004), 김영봉 외(2004)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5년에 남정호(2005a, b), 육근형(2005), 장원근・최지연(2005), 최희정(2005), Park(2005), Lee and Kim(2005), Nam et al.(2005) 등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제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향후 남북한 연안・해양자원의 협력관리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국내연구 현황은 크게 ⅰ) 남한과 북한의 환경과 자원의 협력관리에 관한 연구, ⅱ)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환경・생태계 보호 및 활용방안 연구, ⅲ) 해양수산분야 협력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표 1-1> 참조).

국제적으로 접경지역 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대한 협력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는 접경보호구역(transfrontier or transboundary protected area)을 주제로 이루어졌다.[4] 접경지역 협력관리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육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안과 해양에 관한 접경지역 협력관리에 대한 연구는 Crosby *et al.*(2002)이 홍해해양평화공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남한과 북한의 협력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경제협력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며, 접경지역의 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육상의 비무장지대가 대상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접경지역의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인접

---

4) 접경지역의 환경과 생태계 보호관한 협력관리를 주제로 한 연구는 IUCN의 세계보호구역위원회(World Committee on Protected Areas)가 1997년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Cisneros and Carrere(1997), Hamilton(1997), Shine(1997)을 비롯한 20여 개의 연구, IUCN(2000)의 “Protected Areas - Benefits Beyond Boundaries”, World Bank(2000)의 “Transboundary Reserves-World Bank Implementation of the Ecosystem Approach”, Hamilton *et al.*(1996), Zbicz(1999), Singh(2002), Van Dyke *et al.*(2003) 등이 있음(남정호・강대석, *Op. cit.* 재인용). 생태계 보호관련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로 MacKinnon(2002) 등의 연구가 있으며, 경계를 초월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Fall(2003)의 연구가 있음.

국가 간 협력관리에 관한 연구도 대부분 육상에 한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정치적·군사적으로 대치상태에 있고, 경제체제가 상이한 국가 간의 협력관리에 관한 연구는 동유럽의 철의 장막(Iron Curtain) 주변 육상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표 1-1> **환경 및 자원관리 남북협력관리 선행연구 현황**

분 야		선 행 연 구
접경연안 해양환경 및 생태계 분야 선행연구		강대석·남정호(2002), 남정호·강대석(2003, 2004), 김영봉 외(2004)
남북협력 선행연구	환경 및 자원 관리	정회성 외(1996), 북한경제포럼(2001), 변병설(2001), 변병설·윤갑식(2001), 손기웅(2001), 김경술(2001), 김정인(2001), 임삼진(2001), 강광규 외(2002), 손기웅(2002), 정회성 외(2003)
	비무장지대 보전	김영봉(1999), 제성호(1996, 1997), 전성훈(1999), 김정수(2001), 김영봉 외(2002), 손기웅(2000), 통일부(2002), 전성우 외(2003). 김영봉 외(2004)
	해양수산분야	한국해양연구소(1993), 신영태(1998), 최정윤(2000), 해양수산부(2000), 남성욱(2001), 안국전·홍성걸(2001), 이광남(2001), 홍성걸·임경희(2002)
2005년 연구현황		남정호(2005a, b), 육근형(2005), 남정호 외(2005), 장원근·최지연(2005), 최희정(2005), Park(2005), Lee and Kim (2005), Nam et al.(2005)

<표 1-2> **선행연구와 차별성**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한 협력관리 방안 연구 - 연구자 : 남정호・강대석 (2003) - 연구목적 :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해양생태계 보전 필요성 검토 및 남북한 협력관리 방안 제시	- 문헌연구 및 전문가 자문 - PSR을 이용한 관리 여건 종합분석 - 전문가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한 검토	- 서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관리여건 분석 - 접경지역 협력관리의 기본개념 정립 - 외국 접경지역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협력관리 방안제시
	2	- 과제명 :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서해 남북접경지역 이용방안 - 연구자 : 김영봉 외(2004) - 연구목적 : 접경지역 국토의 공동이용 및 자연환경 보전방안 마련	- 문헌연구	- 서해접경지역 교류협력 여건 및 과제 -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 방향 및 전략
본 연구		- 접경 연안 보호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현장과 역동적인 상호작용 및 국제기구와 실질적인 협력과정이 중요함 - 따라서 문헌연구 중심의 연구로는 현장성과 국제성이 요구되는 접경연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없음 - 연구목적 :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기본정책방향 제시와 실질적인 토대 구축	- 국제기구 자문 및 세미나 개최 - 전 국민 대상 설문 -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해 연구분야와 실무분야 병행 추진**	**[연구분야]** - 실태조사 및 관리현황 심층 분석 - 매년 남북협력 정책방향 제시(단계별 정책방향) **[실무분야]** - 접경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 정책추진을 위한 정부부처 지원 - 해양보호구역 지정・운영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체계구축

남정호・강대석이 2003년도에 수행한 연구는 기초연구의 성격으로 이 지역의 생태・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특성에 기초하여 협력관리의 필요성과 협력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영봉 외(2004)가 수행한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보전, 이용,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국토관리 차원에

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남정호・강대석(2003)의 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연구의 결과가 실행 가능한(workable) 형태로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관련 국제기구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해양환경보전 분야, 연안관리분야 남북협력사업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관련 부처를 지원하여 구축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또한, 최종단계에서 해양평화공원의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용도별 구획조정 방안(zoning plan)까지 제시하고, 이를 국제기구 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안서[5]의 개발을 추진한다는 점도 선행연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표 1-2> 참조).

(2) 연구의 특징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물리적 접근이 제약된 서해 5도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남한과 북한의 교류 및 협력 수준이 높은 단계에 있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한계와 특징이 있다.

첫째,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군사적 특수성때문에 접근이 어려워 연안과 해양에 대한 기초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해양환경자료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이 매년 4회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양환경측정망에 강화군 일부 3개 정점만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인 해양환경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북한지역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북한의 사회경제 현황, 연안해양 정책자료, 하위법령 및 규정에 관한 자료를 얻는 것은 어렵다. 해양환경조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의 공개가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6] 해양평화공원 추진과 관련한 자원과 공간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현황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의 환경상태 자료는 2003년도에 UNEP, UNDP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가 유일한 실정이다(DPRK・UNEP・UNDP, 2003).[7]

---

5)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에서는 사업규모에 따라 Small Grants Programme, Medium-Sized Projects(MSPs), Full Sized Projets(FSPs)로 구분함.

6)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 게재된 서해지역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자료의 경우 특정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ㅎ>>만」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COD 농도는 일반적인 농도형태가 아닌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표기방법을 사용하고 있음(고영명・최호정, 조선서해 <<ㅎ>>만에서 여름철 자체감쇠 특성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41권 제9호, 1995, pp. 91~93).

7) DPRK・UNEP・UNDP, *State of Environment*, 2003.

셋째, 이 연구는 현재 남한과 북한 사이의 현안인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사항을 다루지 않는다. 이 연구의 목적이 남한-북한 사이의 경계에 관한 법적 효력을 분석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해상경계설정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연구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8)]

넷째, 이 연구는 그 동안 남한에서 통일을 주제로 한 연구 또는 남한과 북한의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정책제안(policy suggestion)'을 최종 결과물(outcome)로 여기지 않는다.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물적 토대(practical 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9)]

다섯째, 앞서 제시한 현장연구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2008년부터는 실무분야 정책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한 내 관계부처, 산업체, 지역주민,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사회적 합의도출 및 국제기구와 협력관계 구축이 해양평화공원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2) 연구 수행방법

(1) 연구의 지리적 범위

이 연구의 지리적 범위는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해역과 이 해역과 관련한 법률·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연안도서, 접경연안해역의 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연안 비무장지대를 포함한다(<그림 1-2> 참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남한은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전역,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일부를 포함한다. 지리적 범위에 포함된 북한의 행정구역은 황해남도 룡현군, 옹진군, 대탄군, 강령군, 벽성군, 해주시, 청단군, 연안군, 배천군, 개풍군, 개성시,[10)] 판문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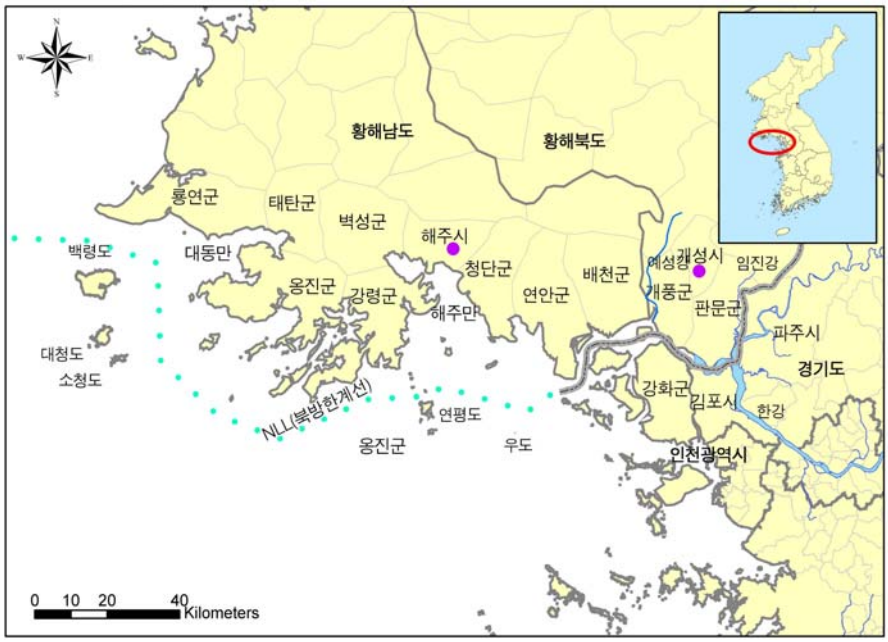
---

8)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해양환경과 자원을 관리하는 협력관리체제 구축과정에서 경계선은 때로 부차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남정호·강대석, 2003).

9) 이러한 방식의 연구를 '현장연구(in situ operational research)'로 명명할 수 있는데, 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의 연안자원연구소(Coastal Resources Center)가 남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방식을 적용한 바 있음.

10) 개풍군과 판문군은 2004년 12월까지 개성직할시에 속해 있었으나 2005년 1월부터 개성직할시가 개성시로 행정구역이 축소되면서 독립하였음.

<그림 1-2> **연구의 지리적 범위**



(2) 연구 수행방법

① 국내외 다양한 분야 관련 자료 수집·분석

관련 자료와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남한에 공개된 북한 학술지 자료, 외국 기관에서 발간한 북한 관련 자료, 북한이 발간하여 남한에서 판매가 허용된 자료 등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분석하였다. 접경연안 지역의 남한과 북한 관련 자료의 균형을 위해 남북협력 및 통일 관련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의 통계자료, 정책연구자료, 각종 토론회 자료, 남북당사국회의 결과 자료, 국제기구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② 전 국민 대상 인식조사 및 지역주민 설문(2회)

이 연구에서는 일반 정책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기초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도 중요하지만,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5년과 2007년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2시간 소요되는 심층면담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지역주민 심층면담은 문헌

자료를 통해 확보할 수 없는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2006년에는 일반 국민으로 설문조사를 확대하였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위해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일대일 면접방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③ 국내 전문가 자문단 운영

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협력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전문연구자와 민간단체 관계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였다. 전문가 자문단 회의는 매년 2회 운영하였다. 국내 자문위원들은 2006년, 2007년 국제자문단회의에도 참석하여 통합회의를 개최하였다. 한편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의 전문가가 북한의 내부자료 확보 및 전문가 접촉을 지원하였으며, 삼성경제연구소,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경희대학교, 부경대학교의 관련 전문가가 주제발표 등을 통해 자문을 수행하였다.

④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제세미나 개최 및 국제전문가 자문단(IAG,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운영

해양평화공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기구가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9월에 개최한 국제 세미나에 참가한 국제기구에 제안했던 국제전문가 자문단[11]을 구성하였고, 제1차 및 제2차 자문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향후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과 관련하여 해양평화공원의 추진, 지정,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technical support)과 정치적 지원(political support)을 국제자문단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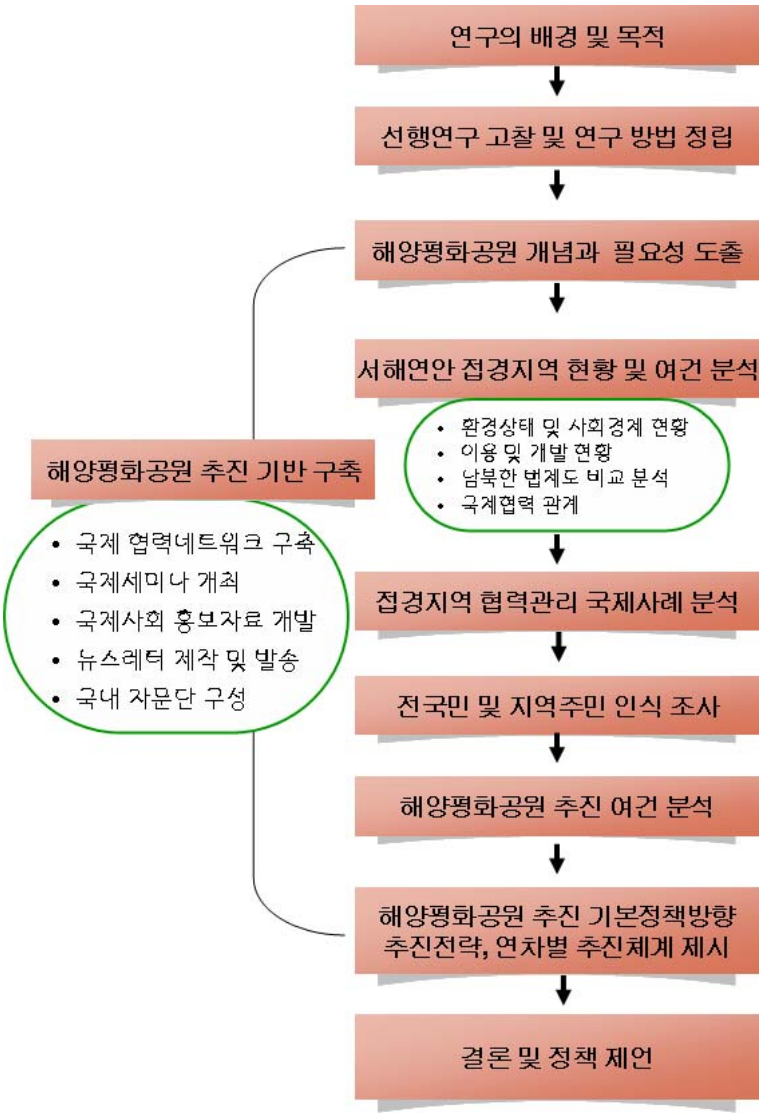
⑤ 홍해 해양평화공원 및 술라웨시 등 외국사례 집중 분석

남정호・강대석(2003)의 연구에서도 홍해 해양평화공원 사례가 소개되었지만, 다른 국제기구 프로그램과 함께 제시되어 홍해 해양평화공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홍해 해양평화공원 사례는 국제해양공원에 관한 유일의 성공사례이므로, 향후 한반도에 해양평화공원의 틀을 도입할 때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필리핀-인도네시아 사이의 해양평화공원 추진 사례와 프랑스-이탈리아 해양평화공원 추진 사례를 분석하여 한반도

11) IUCN, UNESCO, YSLME, NOWPAP, WWF Indonesia.

현실에 적합한 전략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었다. 남북한 공동어로・평화수역 설치와 관련하여 예멘-에리트레아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림 1-3> **연구 추진체계 및 방법**



3. 해양평화공원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1)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의 개념 및 틀

(1)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의 개념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국가간 협력관리의 기본 틀인 '해양평화공원'의 개념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것은 남정호・강대석(2003)의 연구이다. 해양평화공원은 '두 개 이상의 국가, 지역 사이의 경계를 초월하여 생물종다양성, 천연자원, 문화자원의 보호를 위해 법제도를 비롯한 관리수단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접경보호구역(transboundary protected areas)'[12]을 연안・해양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즉, 생태적・문화적 보호가치가 높은 접경 연안・해양에서 국가 또는 지역 간 갈등이 존재할 경우 접경보호구역의 틀을 평화 정착까지 확대한 것이다.[13] 해양평화공원제도 운영의 기본 목적은 '생태적 가치, 천연 및 문화자원의 보호(protection)'와 '평화와 협력의 증진(peace)'에 있다.

국제사회의 해양평화공원의 틀을 다른 나라와 여건이 상이한 한반도에 변형없이 도입・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남한과 북한의 정치・군사적 특수 관계, 접경 연안지역의 사회경제적 낙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즉,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은 평화 정착과 생태적 가치의 보전에 충실하면서도 '낙후한 지역경제의 발전, 안보불안 해소를 통한 남북경제의 공동번영(Prosperity)'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발전 전략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생태적, 사회경제적 현황, 남한과 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반도 해양평화공원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12) An area of land and/or sea that straddles one or more boundaries between states, sub-national units such as provinces and regions, autonomous areas and/or areas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sovereignty or jurisdiction, whose constituent parts are especially dedicated to the protection and maintenanc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of natural and associated cultural resources, and managed cooperatively through legal or other effective means(IUCN, 2001).

13) Parks for peace are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that are formally dedicated to the protection and maintenanc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of natural and associated cultural resources, and to the promotion of peace and cooperation(*Ibid.)*.

□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의 개념**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여 「접경연안[14]의 생물종다양성, 수산자원, 문화자원을 보호하고(Protection),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Peace), 통일경제 번영(Prosperity)의 토대를 구축할 목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다기능 복합 공간」

(2)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의 틀 - 평화수역을 거점으로 해양수산분야 협력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혼합방식'

해양평화공원의 지정 형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원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개념에 기초할 때 특정한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아프리카의 평화공원이나 유럽의 철의 장막(iron curtain) 시절 협력관리 보호구역, 최초의 접경보호구역인 캐나다-미국 사례 등에서 지리적 공간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리적 공간을 획정하는 것은 한 국가 안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 공간획정은 정치·군사적 현안까지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양평화공원은 정치, 군사적 문제의 해결 토대가 되기도 하고(동유럽), 정치, 군사적 문제해결과 독립적으로 진행하거나(필리핀 술라웨시 사례), 정치·군사문제 해결 후(미국-캐나다 사례, 홍해 해양평화공원)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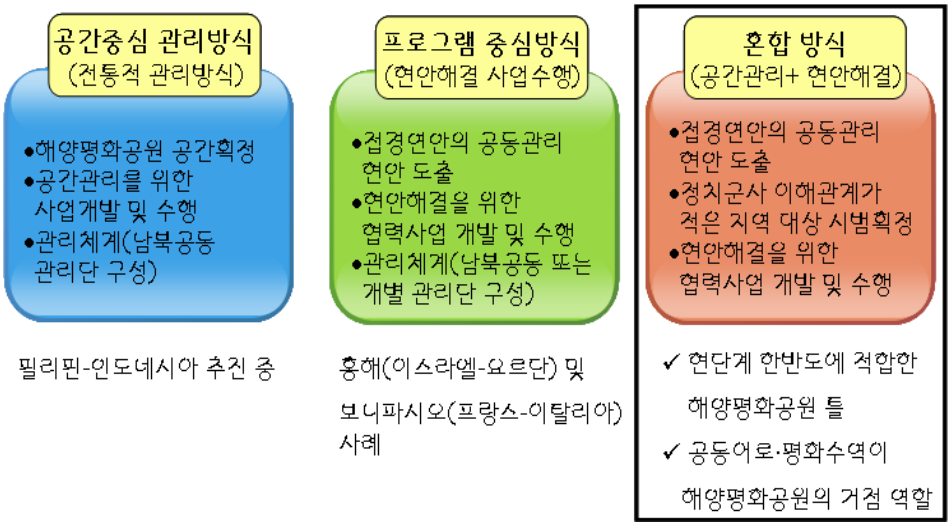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의 정치, 군사적 갈등이 다른 지역보다 첨예하여 서해연안 지역에서 협력관리는 정치·군사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해양평화공원에 합의하더라도 공간 획정에 집착할 경우 해상경계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되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동어로 구역 지정 합의, 해운협력, 모래 준설 등을 비롯하여 협력관리에 필요한 정치적 여건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평화공원은 i) 공간을 획정하고 해당 공간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틀, ii) 공간을 획정하지 않고 접경지역에서 공동의 현안 또는 관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틀, iii) 정치, 군사적 이해관계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간을 획정하거나 또는 남한과 북한이 독자적으로 공간을 획정하고 현안해결에

14) 현재는 서해연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동해연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해양평화공원의 영문 명칭은 'The Marine Peace Park'이 아니라 'A Marine Peace Park'으로 명기하는 것이 타당함.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틀 등 3가지 형식이 있다. '10.4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로 현단계에서 가장 현실성이 높은 해양평화공원의 틀은 '혼합방식'이 될 것이다. 해양평화공원의 다양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해양평화공원은 "남북한 협력과 평화정착의 결과가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process)이나 지렛대(leverage)"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림 1-4>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의 틀**



2) 해양평화공원 지정요건 및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필요성

(1) 해양평화공원 관련 국제기구 프로그램

접경연안에 대한 협력관리의 틀은 IUCN 및 평화공원재단(Peace Park Foundation) 뿐만 아니라 UNESCO의 생태계 보전 전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15] 해양평화공원 개념은 IUCN의 접경보호구역 개념을 분쟁, 갈등지역에 적용한 것으로, UNESCO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프로그램(Transfrontier Bioshpere Reserve)[16]도 국가간 갈등이 있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

15) IUCN과 UNESCO의 접경지역 협력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2005. 9. 29~30일간 진행한 국제 워크숍 자료집이나 첨부한 CD를 참조할 것.

16) http://www.unesco.org/mab/nutshell.htm(2005. 9. 21).

IUCN의 접경보호구역은 IUCN의 6가지 보호구역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지정한 보호구역 중 2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지정한 보호구역을 의미한다.[17] IUCN이 규정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은 '바다, 조간대, 해저와 그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 역사적·문화적 유산이 법제도와 기타 관리수단에 의해 보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Kelleher and Recchia, 1998). IUCN의 해양보호구역은 별도의 특별한 지정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국의 법률에 기초하여 지정한 보호구역을 모두 포괄하는 일반적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천연기념물, 습지보호구역 등 법정 보호구역 모두 IUCN에서 규정한 해양보호구역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한 접경보호구역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Zbicz(1999)의 연구에 국가 간 협력관리의 대상이 되는 접경보호구역은 1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반해, UNESCO의 생물권보전지역은 일반적인 해양보호구역의 개념보다 지정기준이 엄격하다.[18] 또한,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기 때문에 지정하는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선정한 후보지역에 대해 UNESCO 자문위원회의 검토와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국제공동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for the MAB)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생태계가 2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분포할 경우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심숙경(2003)에 따르면, 앞으로 25개 이상의 지역에서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해양평화공원 지정 요건

UNESCO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프로그램은 엄격한 지정기준과 절차를 갖추고 있으나, 접경지역의 협력관리가 반드시 UNESCO의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IUCN의 접경보호구역 수가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수보다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평화공원은 접경지역의 보호가치만을 기준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의 육상 평화공원이나 동유럽의 '철의 장막(Iron Curtain)' 시절 지

17) 남정호·강대석(2003)은 이에 대해 transboundary reserve,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adjoining protected areas, transfrontier conservation areas와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음.

18) i) 주요 생물지리학적 지역을 대표할 것, ii) 보전이 필요한 경관, 생태계, 동식물종이 있을 것, iii) 지정대상이 속해 있는 전체 지역에 대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모범사례로 기능할 수 있을 것, iv)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크기일 것, v) 핵심보전구역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와 장기간의 보호, 완충구역과 전이구역의 명확한 구분 등 적절한 용도구역제를 가지고 있을 것 (http://www.unesco.org/mab/nutshell.htm; 남정호·강대석, 2003 참조).

정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중 일부만 UNESCO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19] 즉, 해양평화공원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준에 의거하여 지정되는 경직된 형태의 보호구역전략이라기보다는 UNESCO의 생물권보전지역에서부터 일반적인 보호구역을 포괄하는 유연한 보호구역 관리전략이다.

따라서 해양평화공원은 홍해 해양평화공원이나 다른 나라의 접경지역 보호구역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지정요건이 특별히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해양평화공원의 틀을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와 자연환경이 경계선을 따라 존재하고 있고, 시급히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 관련 국가 사이의 관계가 우호적 선린관계보다는 갈등해결의 현안을 안고 있는 관계에 있을 것

▷ 대상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을 것

(3)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필요성

한반도 서해연안의 상황을 앞서 기술한 해양평화공원의 지정요건과 연계할 때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하고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 하구에서 백령도에 이르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물범, 사구, 갯벌 등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종과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고, 꽃게, 까나리 등 수산자원이 서식하고 있다(제2장 참조). 따라서 이 지역의 생물종, 생태계, 수산자원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

둘째, 해주경제특구~개성공단~김포시~인천광역시로 연결되는 경제벨트는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것이다. 경제협력사업이 대부분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한강 하구와 서해 생태계와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남북협력의 틀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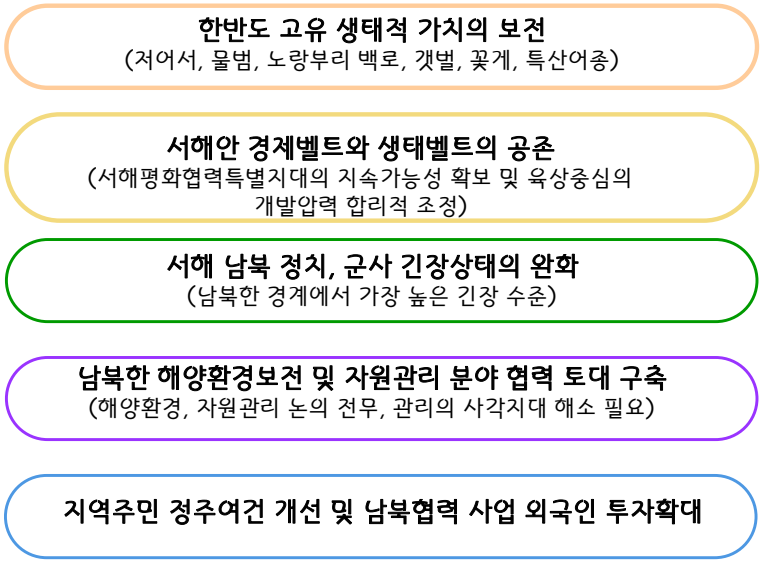
셋째, 남한과 북한의 정치·군사적 긴장상태는 육상의 경우 금강산 개발, 경의

19) 철의 장막 접경 보호구역 사례는 남정호·강대석의 *Op. cit.*를 참조할 것.

선 복원, 개성공단 조성 등으로 완화되고 있다. 육상중심의 협력을 보완하고 남북한 관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공동어로, 해운협력 등을 포함하여 해양공간에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할 전략적 틀로서 해양평화공원은 의미가 있다.

넷째, 현재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해양환경보전 및 자원관리와 관련한 협력이 전무한 바, 해양환경·자원관리 분야 남북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매개체가 필요하다.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남한과 북한이 공동조사 등을 비롯하여 해양환경보전·자원관리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 해양경계선을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의 물리적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남한만의 노력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어획 방지, 수산자원 육성, 해양환경개선사업 시행, 육상경제벨트와 조화 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해양평화공원으로 지정하여 공동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림 1-5> **해양평화공원 추진 필요성**



다섯째, 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을 비롯한 접경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잠재력은 이 지역의 안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접경연안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은 매우 열악

하고, 생활기반은 남한과 북한의 정치군사적 관계에 영향을 받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바, 이 지역의 평화정착이 지역발전,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투자확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3)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해양평화공원

(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주요 내용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한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과 갈등이 있었으나 남북관계는 안정을 지향하며 발전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7년 동안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집약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10월 4일 발표한 '남북한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이하 '10.4 평화번영 선언문')과 이어진 총리회담에서 10.4 평화번영 선언문의 이행을 위한 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실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평화와 번영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회담 성격에 맞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주목할 사항은 해양수산 분야 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과,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이하 '서해특별지대') 설치'를 합의했다는 점이다. 서해특별지대를 구성하는 사업은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 '민간선박 해주직항 통과', '해주경제특구 조성', '해주항 개발', '한강하구 공동이용(골재채취)'이다(<그림 1-6> 참조). 11월 16일 남북한 총리회담에서는 서해특별지대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세부일정을 합의하였다. 남북관계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서해특별지대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20] 추진위원회 산하에 '해주경제특구, 해주항개발, 공동어로, 한강하구' 네 분야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 것은 실효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20)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선언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제2조 10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제1조 5항).

<그림 1-6>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한 합의 사항**



<표 1-3>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체계 및 일정**

사업	추진 체계	일정
공동어로・평화수역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2007년 12월 협의 2008년 어로 착수
해주경제특구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2007년 실무접촉 및 현지조사 2008년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
해주항 개발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한강하구 골재채취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	현지공동조사 후 2008년 착수
민간선박 직항통과	남북조선 및 해운협력 분과위원회*	2007년 12월 회의 개최

이번 총리회담에서 서해특별지대의 5개 사업에 대해 추진일정을 합의한 것은 서해특별지대 구상에 거는 남북한의 기대를 반영한다. 5개 사업 중 공동조사가 필요한 사업은 2007년 12월 중 공동조사나 실무접촉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대부

분이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을 합의하였는데, 공동어로는 2008년 상반기 시행, 해주경제특구는 2007년 현지조사 후 2008년 사업계획 확정, 골재채취사업은 2008년 착수, 민간선박 해주직항 통과는 2007년 12월 중 협의[21]하기로 하였다(<표 1-3> 참조).

(2)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의의와 한계

① 위상 및 의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남북정상회담 및 총리회담과 연계하여 서해특별지대의 위상과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해특별지대는 국정과제로 채택된 해양평화공원 구상 중 평화정착(peace)과 경제적 번영(prosperity)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인프라가 되었다.

둘째, 남북한 해상경계를 둘러싼 갈등을 포괄적이며 우회적 방식(avoidance strategy)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사구시적 대책이다. 경제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해상경계를 현안으로 부각시키지 않고 현명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제사회에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정치군사적 긴장고조 지역으로 인식된 한반도의 과거 이미지를 개선하고 외국의 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서해특별지대는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남북한 공동의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촉매제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정상회담 선언문에서 공동어로와 평화수역을 두 개항에 걸쳐서 강조한 것은 서해가 갈등의 진원지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상회담 선언문이 상징적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곧 이어 총리회담[22] 및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서해특별지대는 남북한 공동발전의 주춧돌이 되었다.

여섯째,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한 경제적 실리[23]를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지역

---

21) 민간선박 해주직항로 이용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해결하기로 합의하였음.

22) 총리회담에서는 정상선언 이행합의서 외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모두 세 개의 합의서를 채택하였음.

23)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과 향후 북

으로 서해 연안지역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성공적 운영, 해주경제특구 설치, 해주항 개발 및 민간선박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 등은 이 지역이 남북관계를 평화와 번영으로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한다.

② 한계

서해 해양평화공원 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자 정치·군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기제로서 '서해특별지대'는 의미가 크다. 반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서해 연안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남북한 사회의 인식부족 등으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 내용을 담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종다양성의 거점(biodiversity hotspot)으로서 서해 연안지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 지역은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노랑부리 백로를 포함하여 천연기념물과 보호생물종이 서식·산란하고 있으나 서해특별지대에는 이 부분에 내용이 별도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둘째, 해주항 개발, 해주경제특구, 한강하구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적, 생태적 피해정도와 이로 인해 남북한 해양수산분야 부가가치의 손실규모를 고려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업이 2008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단기간의 조사만으로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셋째, 위와 관련하여 남북한 해양협력의 효과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콘텐츠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국제사회의 최근 동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욱 강조하고 있고, 세계경제포럼을 비롯하여 주요 프로그램에서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결과적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산하에 환경과 생태계를 이용한 남북한 공동발전을 담당할 분과위원회가 없어 향후 개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24]

다섯째, 공동어로 활동으로 얻게 될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보전을 위한 부수적인 조치를 취하겠지만, 당분간 경제분야 협력의 틀에서 벗어나기 쉽지

한사회 발전을 대외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함께 반영한 것임. 조선협력단지의 설치,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백두산 관광,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도출한 것은 이를 의미함.

24) 해양환경분야는 앞으로 공동위원회 산하의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겠지만, 육상환경보호 분야 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를 얻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않을 것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3) 해양평화공원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관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서해에서 남한과 북한이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 상호 경제적 발전의 토대를 닦을 수 있는 정책 인프라다. 또한 한반도 전 연안 및 해양에서 남북한 해양협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거점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이정표로서 기능한다. 해양평화공원과 서해특별지대의 관계는 이러한 특징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서해특별지대는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내용과 추진체계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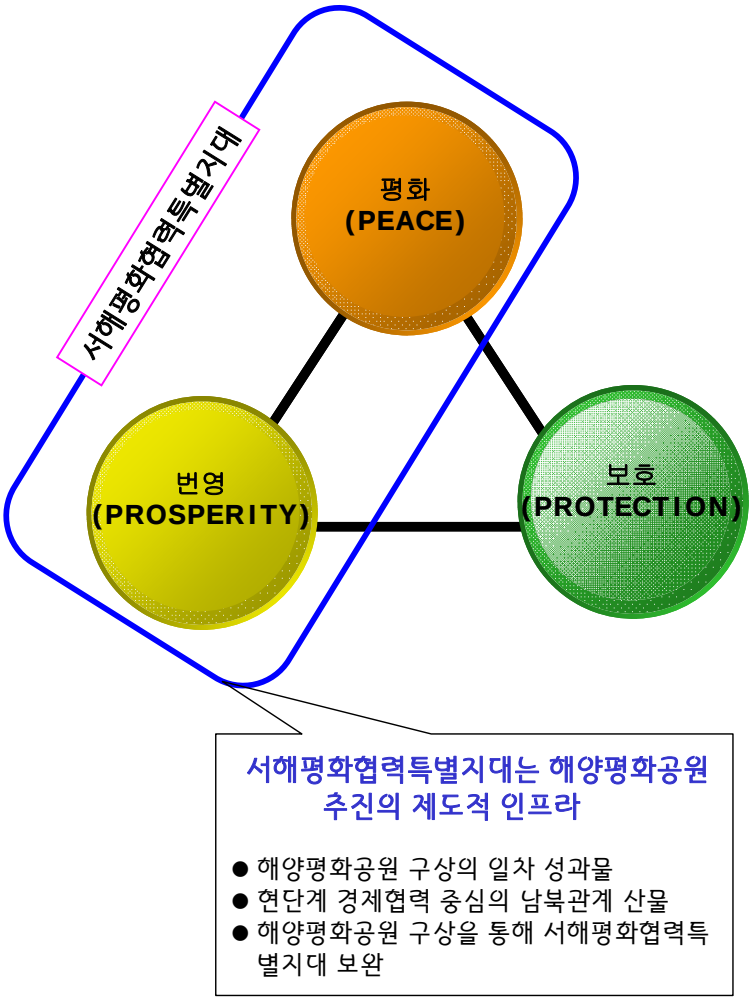
둘째, 서해특별지대는 국정과제로 채택한 해양평화공원 구상이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해양협력분야 성과물이다. 따라서 서해특별지대는 해양평화공원의 기본개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지리적 범위와 관련하여 해양평화공원은 서해특별지대보다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해특별지대의 대상 사업이 모두 확정된 것이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확대될 여지가 있다면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해양평화공원이 조금 넓다고 볼 수 있다. 백령도 서쪽 해역의 물범서식지나 공동어로수역을 제외한 해역은 서해특별지대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서해특별지대는 해양평화공원의 기본 구성요소인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두 가지 요소만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평화공원은 서해특별지대를 제도적 기반으로 추진하되, 서해특별지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서해특별지대 구상이 실현되면 평화 의제는 해결이 되겠지만, 번영에 관한 사항은 현재 합의사항만 비추어 본다면 매우 부족하다. 해양평화공원은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발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대부분 경제협력이 사회간접기반시설 건설이나 골재채취와 같이 자본력을 확보한 주체가 이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서해도서민의 경제활동에서 관광서비스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1-7> 해양평화공원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관계



4. 2005~2006년 연구성과 종합 및 향후 추진계획

1) 기존 연구성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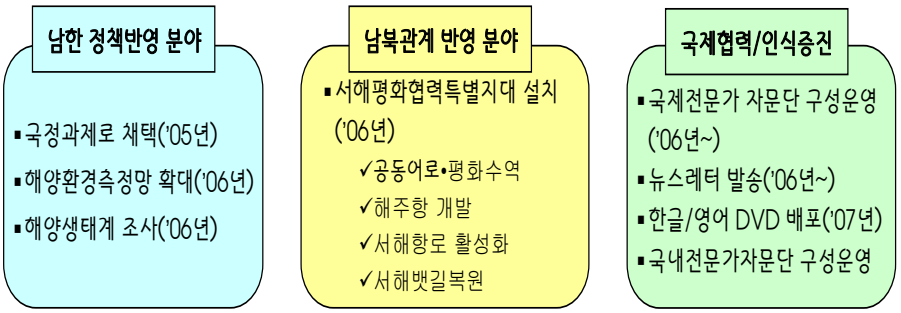
2005년부터 수행한 이 연구사업의 성과는 남한 정책 반영분야, 남북관계 반영분야, 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남한 정책반영 분야로 해양평화공원 구상의 국정과제 채택(2005. 6), 해양환경측정망 확대(2006년), 해양생태계조사 시행(2006년)을 꼽을 수 있다.

둘째, 남북관계 반영분야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2007년)가 대표적이다. 특히 2006년 연구보고서에서 해양평화공원 및 세부사업인 해주항 개발, 서해항로 활성화,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 한강하구 공동이용(서해뱃길 복원[25]) 등을 정상회담에 반영하도록 제안하였고, 이들이 반영된 것은 매우 의미있다.

셋째, 5개 국제기구로 구성된 국제전문가 자문단(IAG) 구성과 운영(2006~2007년), 국제사회 홍보용 DVD[26] 제작·배포(2006년), 정기적 뉴스레터 배포(2006년~), 국내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이 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분야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8> **해양평화공원 연구성과 종합**



2) 연차별 및 분야별 연구성과(2005~2006년)

(1) 제1차년도 연구성과(2005년)

제1차년도 연구(2005년)에서는 서해연안에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였다. 이 지역의 자연환경(수질, 생태계, 경관 등), 사회경제 현황, 남한과 북한의 관련 법제도, 국제협력 관계 등은 해양평화공원과 관련한 실태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태자료는 남북관계나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원인과 대응방향을 도출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2005년 연구에서 기

25) 남북정상회담 선언문 해설서에는 공동이용의 내용으로 서해뱃길복원이 포함되어 있음.
26) 18분 분량의 동영상물로 국어, 영어판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 영어판 제목은 'Toward the Marine Peace Park of the Korean Peninsular'임.

초 자료의 확보는 핵심 연구주제였다.

이와 함께,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관련부처, 전문가의 인식수준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조사결과는 해양평화공원 추진방향을 도출하는 데 남한 내의 이견이 무엇이며,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제1차년도에 수행했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해연안 접경지역 연안상태 분석

▷ 서해연안 이용개발 현황 분석

▷ 홍해 해양평화공원 지정·운영사례 심층 분석

▷ 접경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여건 분석

서해연안 접경지역 현황, 남북한 법제도 비교, 국제기구의 사례분석을 기초로 해양평화공원 지정 여건을 SWOT 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틀을 이용하여 약점요인(weakness)을 극복하여 장점(strength)이나 기회(opportunity)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6년 추진할 정책과제와 2007년 이후에 추진할 과제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표 1-4> **약점·위협요소 및 기본원칙에 근거한 2006년 정책제안(안)**

<table>
<tr><th>약점요소</th><th>원칙</th><th>2006년 추진 정책과제(안)</th></tr>
<tr><td>기초 자료 및 정보의 부족</td><td rowspan="5">○상호신뢰 및 존중
○점진적·지속적 접근
○전문가 중심 접근
○국제기구 지원</td><td rowspan="4">[2006년 추진 정책과제]

○ 해양환경측정망 확대
○ 장관급회담 및 수산실무협의회 의제 채택
○ 남북협력팀 확대
○ 국제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지역주민, 지자체 인식증진 사업</td></tr>
<tr><td>해양환경분야 인적교류 경험 부족</td></tr>
<tr><td>경제벨트와 생태벨트 조정체계 미흡</td></tr>
<tr><td>우발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td></tr>
<tr><td>해양평화공원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낮은 인식</td><td>[2006년 준비 정책과제]

○ 해양환경공동연구센터 추진 기반 조성
○ 한반도 연안·해양한경보전 전문가 포럼 구성 준비
○ 기술장비 지원 및 교육훈련 준비</td></tr>
</table>

2005년도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파악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여건 분석에서 약점요인은 '서해연안에 대한 기초 자료 및 정보의 부족, 남북한 해양환경분야 인적교류 경험 부족, 경제벨트와 생태벨트를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나 유인책 취약, 우발적 군사충돌의 가능성, 해양평화공원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 해양평화공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① 해양생태계 조사 및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서해연안 접경지역 확대
②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2006년 장관급 회담 및 수산실무협의회 의제로 준비
③ 다른 분야 남북협력사업과 유기적 연계확보를 위해 남북협력팀 기능 확대
④ 국제 전문가 자문단(International Advisory Group) 구성 및 운영
⑤ 한반도 연안·해양환경보전 전문가 포럼 구성 준비
⑥ 해양환경 공동연구센터 설치·운영 추진기반 조성
⑦ 기술·장비 지원 및 교육훈련 추진 기반 구축

(2) 제2차년도 연구성과(2006년)

2006년의 연구는 제1차년도에 수행했던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사회·경제 현황, 향후 이용개발 압력결과와 외국의 사례, 남북한 법제도 현황, 전국민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실무추진분야로는 국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해양평화공원 구축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2차년도에 수행했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해연안 접경지역 연안현황 보완
▷ 역사, 문화재 현황 실태 조사
▷ 서해연안 이용개발 현황 보완
▷ 전국민 대상 해양평화공원 추진 관린 인식 조사
▷ 권역별 주요 현황 및 이슈 도출
▷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 도출

역사, 문화재에 대한 실태를 기존 문헌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남한과 북한은 문화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문화역사 복원을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접경 연안지역이 권역별로 지리, 지형적 특성, 자연환경,

사회・경제 현황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접경연안은 벽령-대청권역, 연평권역, 한강하구・강화권역 3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권역별로 관리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권역별 여건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무추진분야에서는 국제사회에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생태적 가치보전의 필요성을 담은 홍보자료(DVD) 제작, 국제 전문가 자문단 및 관련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 뉴스레터 제작,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홍보 등을 추진하였다.

2006년 연구에서 제시한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기본정책방향, 전략 및 2007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은 i) 「생태계 및 자원보호(protection)」를 중심 의제로 설정, ii) 지역특성을 고려한 권역구분 및 권역별 정책 추진, iii) 남북한이 공동 추진주체로 하되 남한에서 정책 인프라 우선 구축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와 추진전략, 2007년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제언(안)을 도출하였다(<표 1-5> 참조). 이 중 해주항 개발, 서해항로활성화,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은 10.4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표 1-5>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방향, 추진전략 및 정책제안(안)**

기본방향	추진전략	정책제안(안)
○ 「생태계 및 자원보호(protection)」를 중심 의제로 설정 ○ 지역특성을 고려한 권역구분 및 권역별 정책 추진 ○ 남북한이 공동 추진주체로 하되 남한에서 정책 인프라 우선 구축	○ 해양정책분야 남북협력 제도적 기반확보 ○ 개발 및 보전수요 사이 조화 메커니즘 구축 ○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지식기반 강화 ○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접근 ○ 남한 내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인식증진	**[경제협력 분야]** ○ 서해뱃길 복원 및 생태・환경・역사문화 소재 연안 크루즈 도입 ○ 남북해운협력 합의서 상의 서해항로 활성화 및 해주항만 개발 지원 **[환경보전분야]** ○ 남한 모래 수급 안정화 및 한강 하구 환경보전을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 및 대체개발 지역 발굴 ○ 남북공동 유류사고 대비 긴급계획(contingency plan) 및 실행계획 수립 **[긴장완화/평화수역 지정]** ○ 해양평화공원 시범해역 및 공동어려 시범해역으로 연평도 서북단 해역을 공동 관리 해역으로 지정

(3) 실무 추진분야 성과 종합

이 연구와 다른 연구와 차별성은 이 연구사업이 '연구분야'와 '실무추진분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5～2006년 실무추진분야 성과는 ▷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 국제세미나 및 국제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서해연안 접경지역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홍보 DVD 제작, ▷ 국가해양환경 측정망 서해연안으로 확대 등이 있다.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및 국내 자문단 구성·운영

서해연안 접경지역 해양평화공원 추진 구상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제62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발표되었다. 관계부처 장관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 해양평화공원을 남북협력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 이 정책과제는 해양수산부가 주무 부처가 되어 장기과제의 성격으로 추진하도록 제안하였지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분야는 조속히 추진하도록 위상이 변화하였다. 현재는 해양수산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후속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연구기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②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제 전문가 자문단 운영, 영문 뉴스레터 배포

해양평화공원 추진은 국내 이해관계자와 국제기구의 지지와 지원없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단계에는 이 구상의 함의와 필요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2007년에 관련 국제기구와 외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제세미나에는 NOWPAP, YSLME, PEMSEA, IUCN, UNESCO, 홍해 해양평화공원 관계자, 필리핀-인도네시아 해양평화공원 추진 관계자, 일본의 접경보호구역 전문가를 초빙하였다.

한편, 2005년 국제세미나에서 제안했던 국제 전문가 자문단(IAG, International Advisory Group)이 2006년에 운영규칙(TOR, Terms of References)을 마련하면서 구성되었다. 현재까지 2회의 국제 전문가 자문단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제2차 회의에서 국제 전문가 자문단 그룹은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중요한 기술자문을 하였다. 이 기술자문 성과는 2007년 연구보고서에 반영하여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자문을

확보하고, 관련 회의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주지시키기 위해 뉴스레터를 2007년부터 분기별로 발송하고 있고, 수시로 주요 관련 뉴스를 전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는 해양평화공원 추진과 관련하여 각 국제기구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형태의 협력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③ 해양평화공원 추진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남한과 북한의 관계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보전 분야에 대한 남북한 직접 접촉과 협력관계 형성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북한 관계자의 만남은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공식회의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해양평화공원의 추진과정에서 국제기구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에 관한 국제기구의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이 지역의 생태적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생태계와 지역주민의 삶을 주제로 한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4) 향후 사업 내용

2009년까지 수행할 주요 사업은 실무추진분야 사업으로 구성된다. 2007년에는 2005～2006년까지 연구분야 성과와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결과,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후 2009년까지는 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및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국제전문가 자문단 운영, ⅱ) 해양평화공원 관리방안 개발을 위한 남북한 워킹그룹 구성 토대 마련, ⅲ) 국제기구 및 지역해 기구와 협력관계 구축 등 실무추진분야 사업이 중심이 될 것이다(<표 1-6> 참조).

<표 1-6> **해양평화공원 추진 연차별 주요 사업 내용(2005~2009년)**

연 도	주요 내용	비 고
’05년	**<접경지역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기반 확보>** **[연구분야]** 접경지역 실태조사 수행 및 관리현황 분석 **[실무분야]**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 마련	국제세미나 개최
’06년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방향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연구분야]** ○ 해양평화공원 추진 관련 전 국민 대상 설문조사 ○ 자연환경, 사회경제 현황 및 추진여건 종합 ○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략 개발 **[실무분야]** ○ 인적교류를 통한 협력기반확보, 국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홍보자료 개발, 뉴스레터 발간 영상홍보자료 개발 ○ 해양평화공원 지정 자문회의 운영규칙(TOR) 확정	국제기구
’07년	**<해양평화공원 연차별 추진체계 제시 및 국제협력 강화>** **[연구분야]** ○ 기본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보완 ○ 연차별 사업 추진체계 제시 **[실무분야]** ○ 해양평화공원 추진 국제네트워크 강화 ○ 해양평화공원 남북회담 의제로 상정	남한, 국제기구
’08년	**<서해 해양평화공원 전략적 관리프로그램 개발>**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및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문가 자문단 운영 ○ 남북한 워킹그룹 구성 토대 마련 ○ 서해연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적 관리 프로그램 개발 ○ 지구환경금융(GEF) SGP 사업 제안서 준비	남한, 북한, 국제기구
’09년	**<서해해양평화공원 전략적 관리프로그램 이행 방안 개발>** ○ 해양평화공원 협력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 해양평화공원 SGP 사업 채택 추진	남한, 북한, 국제기구

제2장 서해연안 접경지역 및 남북협력 현황

1.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현황

이 연구에서 말하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해역과 연안도서, 연안 육지부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그림 2-1> 참조). 앞서 20005년과 2006년도의 선행연구와 같이 지리적으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 서쪽으로는 백령도와 북측의 룡연반도에서부터 동쪽의 한강과 임진강 합류지역에 걸친 연안과 해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런 공간적 범위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안과 해역도 주제와 성격에 따라 연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림 2-1> **연구의 지리적 범위**



1) 자연환경 및 생태계 현황

(1) 개관

서해연안 접경해역은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대조차 환경으로 수심 30m 미만의 연안해역으로 인천항 기준으로 조석은 반일주조가 우세하며 평균조차가 6.5m에 이른다(이석우, 1972). 건설교통부의 한강 연간 담수유출량은 189억㎥[27]으로 이중 한강으로부터 강화수로를 거쳐 유입하는 담수량은 하루 평균 18×106㎥, 연간 65억 7천㎥이며(인하대해양과학기술연구소, 1993) 한강 담수의 $\frac{2}{3}$는 강화 북단을 지나 서해로 유입하고, 나머지 $\frac{1}{3}$은 염하수로를 거쳐 경기만 일원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입하는 담수로 인해 이 해역의 염분은 20～30psu로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접경해역의 해양수질과 해양생태계 조사를 실시한 해양수산부(2006) 연구에 따르면 강화도 남단의 염하수로 입구부(정점8)에서는 2006년 평균 22.15psu의 농도를 보인 반면, 점차 육지에서 멀어지면서 백령도 북서쪽(정점 1)에서는 31.54psu까지 증가한다. 이처럼 이 해역은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 등을 통해 담수가 유입하는 기수역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일반적인 서해안의 해안선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지질학적 성인의 차이에 따라 독특한 경관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내륙에 가까운 강화도 일원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해안의 전형적인 연안경관인 저산성 구릉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변성퇴적암류로 이루어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일대는 파랑의 영향과 지질학적 성인 차이로 인해 두무진과 같은 시스텍이나 자갈해변, 대청도 사구 등 독특한 경관을 형성한다.

서해연안의 해안선은 일부 간척사업을 통해 해안선이 단조로워진 부분도 존재하나 아직까지 인천 연안의 섬과 황해남도 해안선은 복잡한 해안선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지역은 대동만, 해주만, 강령만으로 이어지는 내만형 해안선으로 갯벌 형성과 발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남한지역은 한강하구와 강화도를 중심으로 갯벌이 형성되어 있다. 서해접경 연안지역에 있는 갯벌의 면적은 총 1,445㎢로 한반도 갯벌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며(남정호 외, 2005) 이 중 북측의 갯벌이 약 17.3%(958㎢), 남측의 갯벌이 8.7%(487㎢)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이른바 '4대자연개조사업(1981. 10)'을 통해 간척사업을

27) 본 연구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로 건설교통부의 유량자료를 재정리한 것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준공된 간척지의 내부 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간척사업은 중단한 상태라고 한다(남정호 외, 2006). 현재는 도별로 추진하는 토지정리사업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간척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표 2-1>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한 갯벌 면적**

구 분		면적(㎢)	우리나라 갯벌* 대비	비고
서해연안 접경지역	북측	958	17.3%	북한 갯벌의 약 30%
	남측	487	8.7%	남한 갯벌의 약 20%
소 계		1,445	26.0%	

주 : 한반도의 갯벌면적은 북한의 3,000㎢과 남한의 2,550㎢를 합한 5,550㎢로 추정됨.
자료 : 해양수산부(2003), 남정호 외(2005).

(2) 해역수질 환경

그 동안 서해연안 접경해역은 국가해양환경측정망에서 제외되어 해역의 수질환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006년부터 서해접경연안이 해양생태계 기본조사의 대상해역으로 선정되면서 이 해역의 일부 수질환경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해양수산부(2006)에서는 서해북부해역에서 경기만 일대 22개 정점을 조사하였는데, 이 중 서해연안 접경해역에 해당하며 황해남도에 가까운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와 인천 옹진군 장봉도 해역에 걸쳐 조사된 총 5개 정점의 조사결과를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COD 농도는 일부 정점에서 8.2㎎/ℓ 와 10.8㎎/ℓ 가 나오는 등 자료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결과가 있었으나 이들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COD는 1.3㎎/ℓ 에서 2.5㎎/ℓ 의 수준을 보인다. 모든 정점값의 평균값은 2.7㎎/ℓ 이나 과도하게 높게 나온 일부 정점의 측정값을 제외하면 Ⅱ등급 수질(COD 2.0㎎/ℓ 이하)에 해당하는 평균 1.9㎎/ℓ 로 낮아진다.

용존산소(DO)는 연평균 9.4㎎/ℓ 으로 Ⅰ등급의 우수한 수질을 보이며 해수온도가 상승하여 DO 농도가 감소하는 여름철에도 7.6㎎/ℓ 으로 이 역시 해역수질기준 Ⅰ등급(7.5㎎/ℓ 이상)으로 우수한 수질을 보이고 있다.

<표 2-2> **서해연안 접경해역 COD 수질현황**

정점	COD				
	봄	여름	가을	겨울	평균
1(백령도 북서)	0.8	8.2	1.9	1.3	3.1 (1.3)
2(대청도 남측)	1.7	1.6	1.7	1.0	1.5
3(대청-연평중간해역)	3.6	1.8	2.9	1.5	2.5
4(연평도 남측)	2.6	10.8	1.9	2.0	4.3 (2.2)
5(장봉도 남측)	2.5	1.1	2.7	1.8	2.0
평균					2.7 (1.9)

주 : 1번 정점과 4번 정점의 여름철 COD자료는 예외적으로 큰 값이 나온 관계로 평균값에서 괄호안은 이들 값을 제외한 것임(표층 자료 기준).
자료 : 해양수산부(2006) 자료 발췌 정리하였음(㎛M을 mg/l로 환산).

<표 2-3> **서해연안 접경해역 총질소 수질현황**

정점	총질소(mg/l)				
	봄	여름	가을	겨울	평균
1(백령도 북서)	0.09	0.38	0.22	0.11	0.20
2(대청도 남측)	0.11	0.39	0.21	0.14	0.21
3(대청-연평중간해역)	0.23	0.57	0.39	0.32	0.37
4(연평도 남측)	0.33	0.86	0.45	0.46	0.52
5(장봉도 남측)	0.35	1.09	0.54	0.77	0.69
평균					0.40

주 : 총 질소를 독립적으로 분석하지 않아 입자성질소, 질산염, 아질산염, 암모니아의 측정치를 합하였으나 측정자료가 없는 용존성무기질소는 제외되어 있음(표층 기준).
자료 : 해양수산부(2006) 자료 발췌 정리하였음(㎛M을 mg/l로 환산).

<표 2-4> **서해연안 접경해역 용존무기인 수질현황**

정점	용존무기인(mg/l)				
	봄	여름	가을	겨울	평균
1(백령도 북서)	0.006	0.005	0.014	0.008	0.008
2(대청도 남측)	0.009	0.013	0.022	0.011	0.014
3(대청-연평중간해역)	0.010	0.019	0.035	0.013	0.019
4(연평도 남측)	0.012	0.022	0.039	0.016	0.022
5(장봉도 남측)	0.016	0.034	0.039	0.028	0.029
평균					0.018

주 : 해양수산부(2006)에서 인 성분은 용존무기인만 측정하였음(표층 기준).
자료 : 해양수산부(2006) 자료 발췌 정리하였음(㎛M을 mg/l로 환산).

해양수산부(2006)의 조사는 수질항목에 대한 측정이 있기는 하나 해양생태계 위주의 조사이기 때문에 영양염류와 같은 일부 수질항목의 경우 기존의 국가해양환경측정망에서 활용하는 조사방법, 조사항목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질소에 대해서는 총 질소에 대한 측정없이 구성원소별로 측정하였고 용존성무기질소(DIN)는 측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인성분의 경우 총 인에 대한 측정 없이 용존무기인만 측정하여 기존 자료와의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질소성분을 살펴보면, 수질기준이 있는 총 질소와 비교하기 위하여 질산염(평균 0.15㎎/ℓ), 아질산염, 암모니아, 입자성유기질소(PON)을 합한 결과 평균값은 0.40㎎/ℓ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측정치는 해역수질환경기준 Ⅰ등급 기준값인 0.30㎎/ℓ 을 상회하기는 하나 Ⅱ등급의 비교적 우수한 수질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점별로 해역수질에 특징이 있는데 한강하구에서 거리가 먼 백령도 북서측의 1번 정점에서 가장 낮은 측정값인 0.20㎎/ℓ 이 나타나고, 차차 내륙에 가까울수록 높아져 장봉도 남측의 5번 정점에서 가장 높은 0.69㎎/ℓ 로 증가한다. 여기에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한강의 담수가 배출되는 염하수로 남측에 위치한 정점8의 경우 총 질소의 농도가 1.10㎎/ℓ 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량의 담수를 배출하는 한강을 따라 영양염류가 유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연구에서 인성분은 용존무기인만을 측정하였다. 전체적으로 고른 값을 보이고 있으나, 정점별로는 앞서 질소성분과 동일한 공간분포 특성을 보인다. 즉, 한

강에서 먼 백령도 북서측에서 가장 낮은 0.008㎎/ℓ 이 나타나고 점차 증가하여 연평도 남측에서 0.022㎎/ℓ , 장봉도 남측에서 0.029㎎/ℓ 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한강하구에 접근할수록 농도는 더욱 증가하여 염하수로 남측의 입구부에서는 0.044㎎/ℓ 까지 증가한다.

이들 수질자료는 남정호 외(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북한 황해남도 연안의 영양염류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질산염 0.020㎎/ℓ , 인산염 0.0233㎎/ℓ , 규산염 0.350㎎/ℓ 을 제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2006)에서는 질산염 0.151㎎/ℓ , 용존무기인 0.016㎎/ℓ , 규산염 0.266㎎/ℓ 으로 질산염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측정값을 보인다.

기존의 국가해양환경측정망에 포함되어 있는 한강하구 염하수로 남측이 COD는 Ⅲ등급, 총 질소는 등급외, 총 인은 Ⅲ등급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서해연안은 한강하구에서 유입하는 담수의 영향으로 영양염류의 농도가 높고 수질이 좋지 않으나, 여기서 멀리 떨어져 연평도, 대청도, 백령도로 나가면서는 차차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청도와 백령도의 경우 한강에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나 인근의 북한 연안에서는 10㎞ 안팎으로 매우 가깝다는 점이다. 즉, 북한 연안에서 영양염류의 유입이 있을 경우 그 영향이 이들 도서 주변 해역에서 나타나기 쉽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해역에서 영양염류 농도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북한 연안에서는 인식할 만한 수준의 영양염류의 유입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3) 생태계 현황

서해 접경연안을 포함하여 경기만 일원에 걸쳐 생태계 조사를 수행한 해양수산부(2006) 연구결과 백령도에서 연평도에 이르는 해역을 포함하는 외해역은 저서생태계의 건강도를 가늠하는 ISEP지수[28]에서 A0 등급의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해조류의 지역별 조사결과를 보면 종수의 경우 백령도에서 43종, 연평도에서 8종, 강화도에서 4종, 영종도에서 5종, 대부도에서 6종, 덕적도에서 22종이 조사되어 백령도에서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녹조류 8종, 갈조류 6종,

28) 생물군집에 반영된 스트레스의 정도를 하나의 지수로 표현하여 환경의 상태를 진단하는 지수로 ISEP는 Inverse function of Shannon-Wiener Evenness Proportion의 약자임. 우수해역인 A+/A0에서 시작하여 열악한 환경의 E+/E0에 이르는 총 10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에 적용하기 위하여 주변해역에서 채집한 표본을 통하여 구간을 나누었음.

홍조류 35종 및 해산종자식물 2종으로 서해중부 연안을 조사한 김영환 외(1995)에서 발표한 녹조류 20종, 갈조류 32종, 홍조류 80종과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수치이다. 다만 백령도 등에서는 해조류가 국지적이지만 상당히 높은 종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조류의 연평균 생물량 특성 역시 지역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백령도에서는 119.4g · dry/㎡의 생물량을 보이고 있으나, 연평도 8.1g · dry/㎡, 덕적도 80.6g · dry/㎡, 강화, 영종, 대부도 일원에서는 1g · dry/㎡ 이하의 매우 적은 현존량 분포를 보인다. 백령도를 제외한 서해접경 연안 대부분 지역이 서해안의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종다양성과 현존량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2006)는 상업적 이용도가 높은 종과 출현량 비율이 높은 종을 함께 조사하였다. 연평도 주변해역에서는 흰베도라치와 까나리가 많이 나타나며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에서는 연안 회유성 종인 멸치와 민어류가 많이 출현하였다. 특히 해양수산부(2006)에서는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한 이 해역에 다량의 난자치어가 출현하는 것에 주목하여 이 해역이 어류의 산란장은 물론 보육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서해연안 접경해역에서 관찰되는 조류는 대체로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철새류가 많으며 특히 국제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등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황새, 두루미와 같은 섭금류[29]는 알래스카나 시베리아에 서식하다 유라시아 대륙의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서해연안 접경지역인 한강과 임진강 하구, 강화도 주변 갯벌을 중간기착지로 이용한다.

일본야조회(1996)에 따르면 흰두루미(Grus japonesis)는 청천강 하구에서 시작하여 황해남도 은률군을 거쳐 룡연군에 이르며 더 남쪽인 대동만에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룡연군에서 관찰된 제일 큰 무리는 146개체로 알려져 있다.[30]

한강하구 생태계 조사결과 멸종위기종 1급 동물인 저어새, 흰꼬리수리, 매, 검독

29) 황새목, 두루미목, 도요목이 해당되며 부리가 가늘고 길며 곧고, 다리와 발가락은 길고 물갈퀴는 발달되어 있지 않음.

30) 2006년 11월 26일 일본 조총련계 대학인 조선대학교의 창립 50주년을 맞아 '아시아의 철새보호 국제심포쥼'이 개최된 바 있음. 여기에는 일본입국이 거부된 북한 인사를 제외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영국, 미국, 네덜란드의 전문가들 약 70명이 참가하였다고 함. 심포지움에서는 두루미와 저어새의 보호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으나 북한 전문가가 참석하지 못하여 북한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음(조선신보, 2006. 12. 4).

수리 등 4종과 멸종위기종 2급 동물인 재두루미, 개리, 큰기러기, 물수리, 솔개, 말똥가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흰목물떼새, 흑두루미, 흰죽지수리, 큰말똥가리, 털발말똥가리, 새홀리기, 참매, 알락꼬리마도요 등 16종의 조류가 발견되었다(환경부, 2005,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 2004 & 2005 자료 재정리).

<표 2-5> **서해연안 접경지역 출현 조류 현황**

구분		조류 분포 현황
남한	한강하구	· 멸종위기종 Ⅰ급 동물 : 저어새, 흰꼬리수리, 매, 검독수리 4종 · 멸종위기종 Ⅱ급 동물 : 재두루미, 개리, 큰기러기, 물수리, 솔개, 말똥가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흰목물떼새, 흑두루미, 흰죽지수리, 큰말똥가리, 털발말똥가리, 새홀리기, 참매, 알락꼬리마도요 16종 · 천연기념물 : 재두루미(제250호), 개리(제325호)
	백령도	· 맹금류 및 도요류 · 천연기념물 : 황새(제199호), 장산곶매(제243호)
	강화도	· 노랑부리백로, 흰물떼새, 왕눈물떼새, 개꿩, 좀도요, 민물도요, 붉은어깨도요, 흑꼬리도요, 큰뒷부리도요, 마도요 등 희귀조류
북한		· 저어새 약 200개체 · 흰두루미 146개체 · 왜가리, 흰두루미, 재두루미, 백로의 서식지 일부를 천연기념물로 보호

자료 : 환경부(2005) 및 남정호 외(2005) 재정리

서해연안 접경해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포유동물로는 해역에 물범과 고래류가 있고 한강하구 인근 지역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수달이 발견된다.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1호, 2005년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범은 백령도 근해에서 약 350～400개체가 발견되고 있으나 정확한 개체수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점박이물범은 1940년대 8,000마리에 육박하던 것이 1980년대 2,300마리, 그리고 최근에는 약 1,000마리의 개체수 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상훈, 2007).[31]

31) 우리나라 점박이물범 연구는 아직까지 물범의 명칭과 학명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으며 더욱이 이동경로, 개체수에 있어서도 정확한 연구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하여 민간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2006년 한국과 중국의 물범전문가, 환경활동가, 정부관계자를 초청하여 '점박이물범 보호와 관리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음. 여기서 나온 자료는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 아직까지 자료의 본래 출처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

<그림 2-2> **중국 내 물범 출현 및 서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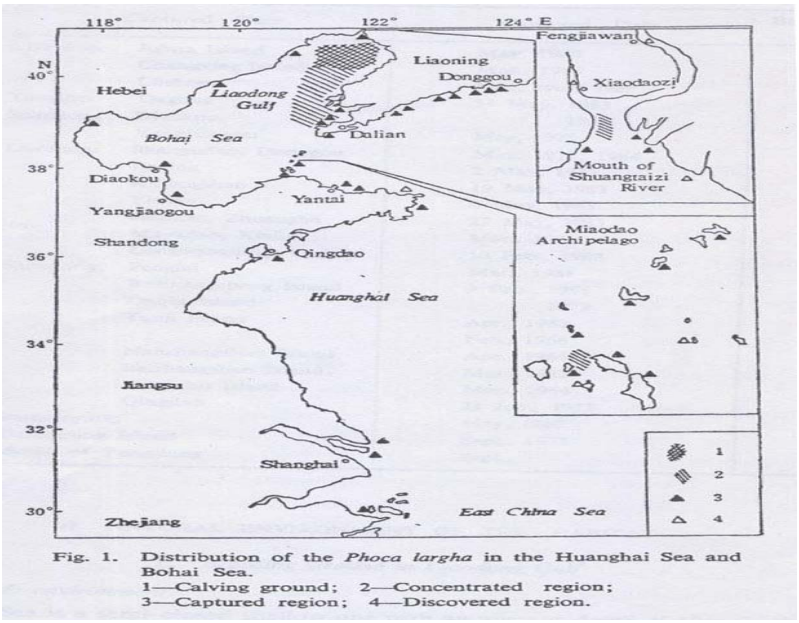


Fig. 1. Distribution of the *Phoca largha* in the Huanghai Sea and Bohai Sea.
1—Calving ground; 2—Concentrated region;
3—Captured region; 4—Discovered region.

자료 : 윤상훈(2007) 재인용

<그림 2-3> **백령도 주변 물범 출현지역**



자료 : 윤상훈(2007)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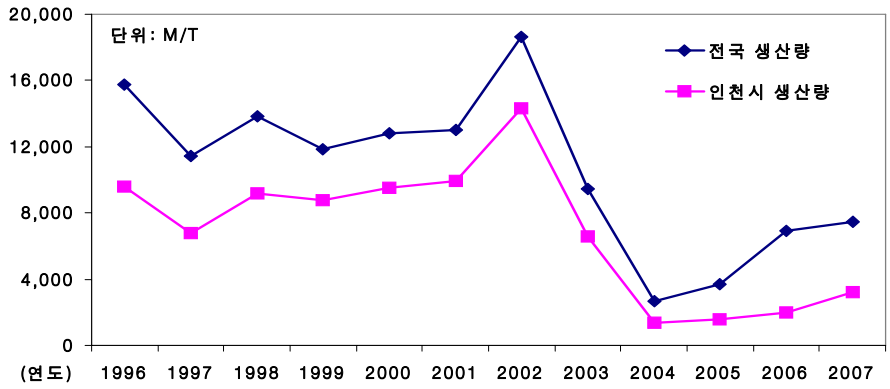
백령도에서 관찰되는 물범은 보통 북극해와 알래스카 등 추운 곳에 서식하는 종인 Phoca largha로 추정되는데 발해만과 한반도에 의해 주 서식지로부터 지리적으로 고립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요동반도의 서측해안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으며 대련을 지나 요동반도 동측에서 포획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백령도에서 출현하고 있으며 섬 북동쪽의 물범바위뿐 아니라 서측의 두무진, 남측의 연봉바위까지 전 해안에 걸쳐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고래류가 일부 관찰되고 있는데, 지역어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로 돌고래와 상괭이가 목격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백령도 일원에서 까나리 조업이 활발할 당시 연간 100마리 이상의 상괭이가 혼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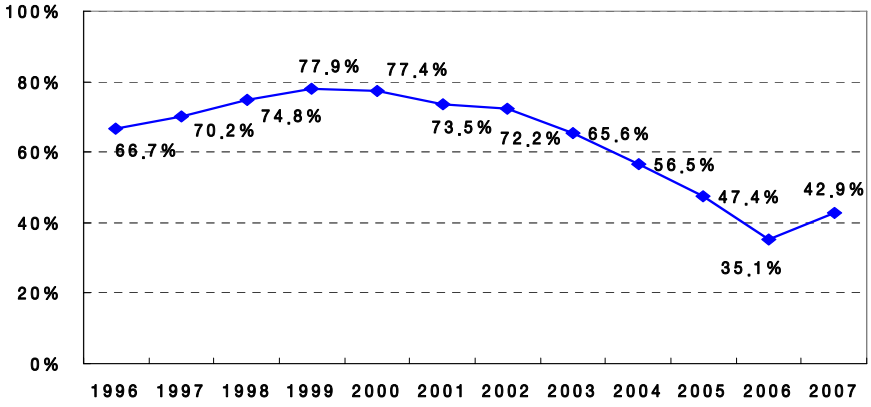
물범이 서해연안 접경해역의 생태적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연평도 인근의 꽃게는 이 해역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해냉수대와 같은 물리적 환경여건과 사질(沙質)층은 꽃게가 서식·이동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서해접경 연안은 연안을 따라 습지가 발달해 있고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 담수유입에 의한 기수역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꽃게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어장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어민들에게 가장 높은 소득을 안겨주던 꽃게는 서해5도와 주변해역에서 생산되는 양이 과거 전국 생산량의 약 75% 이상을 차지했을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전국 생산량 대비 50% 이하로 떨어졌으며, 2005년에는 전체의 36%에 불과할 정도로 이 지역의 꽃게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했다. 다행히 전국 생산량은 2004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나,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해5도가 포함되어 있는 인천시 꽃게 생산량의 회복속도는 전국 생산량의 회복속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국 생산량 대비 인천지역의 꽃게 생산량의 비중도 1999년과 2000년 77%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가장 낮은 35.1%를 보이고 있다. 2007년 들어 생산량이 회복되고 전국 생산량 대비 인천광역시의 생산량 비중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이 지역의 꽃게 생산량의 변화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이 지역에서 꽃게 어획을 과도하게 한 결과 자원이 고갈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가능성은 꽃게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서해저층냉수대의 분포가 변화함에 따라 꽃게의 이동경로와 서식범위도 변화하였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해 수산자원학적 접근이 미진한 상태이고 꽃게의 생태에 대한 연구가 어획량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 2-4> 남한 꽃게 생산 추이(1996~2006년)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그림 2-5> 전국 대비 서해5도 꽃게 생산량 비율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식생은 이 지역의 지리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백령-대청도에 이르는 도서권과 한강하구와 강화도 주변의 하구역권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백령도와 대청도 일원은 식물구계상(植物區系, floral region) 한반도 중부아구에 속하며, 군계 수준에서는 냉온대 중부에 해당하나 해류의 영향으로 인해 남방계와 북방계의 식물이 공존한다(이우철・임양재, 1978). 비교적 온화한 기후에서 서식하는 동백나무가 대청도 서남쪽 사탄동에 서식하고 있는 것은 남에서 북상한 따뜻한 해류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청도의 동백나무는

동백나무 자생지의 북방한계선으로 천연기념물 제66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 다른 식물인 대청부채(*Iris dichotoma P.*)[32]는 대청도에서만 볼 수 있는 붓꽃과 붓꽃속 식물로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식물 2급, 산림청 보존우선 105순위에 포함되어 있다.

내륙에 접해있는 한강과 임진강 하구는 지역 대부분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2004년에 실시한 '하구역 생태계 정밀조사 2004'를 통해 식물조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장단반도에 15목 21과 42속 41종 9변종, 초평도에 6목 7과 9속 6종 4변종의 다양한 관속식물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해 인간의 간섭이 배제되면서 갈대와 갯버들 습지가 잘 보존되어 있다. 북측의 식생자료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북한의 박우준 외(2001)의 「위기 및 희귀식물 연구」에 따르면 총 37과 46속 54종 3변종이 조사되었다. 이 중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은 소나무 곰솔 1종, 노가지나무과 섬향나무, 갯노가지나무 2종으로 룡연군과 옹진군 바닷가의 제한된 지역에 드물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보호구역은 남한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서지역에서 희귀하게 발견되는 대상생물을 중심으로 하는 천연기념물이거나 종단위의 멸종위기동식물이 있는 반면, 북한은 복잡한 해안선을 따라 습지가 발달해 있어 습지보호구와 천연기념물이 주를 이룬다. 특히 북한은 황해남도 남측 연안을 따라 다양한 천연기념물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남한의 25개보다 많은 44개의 보호구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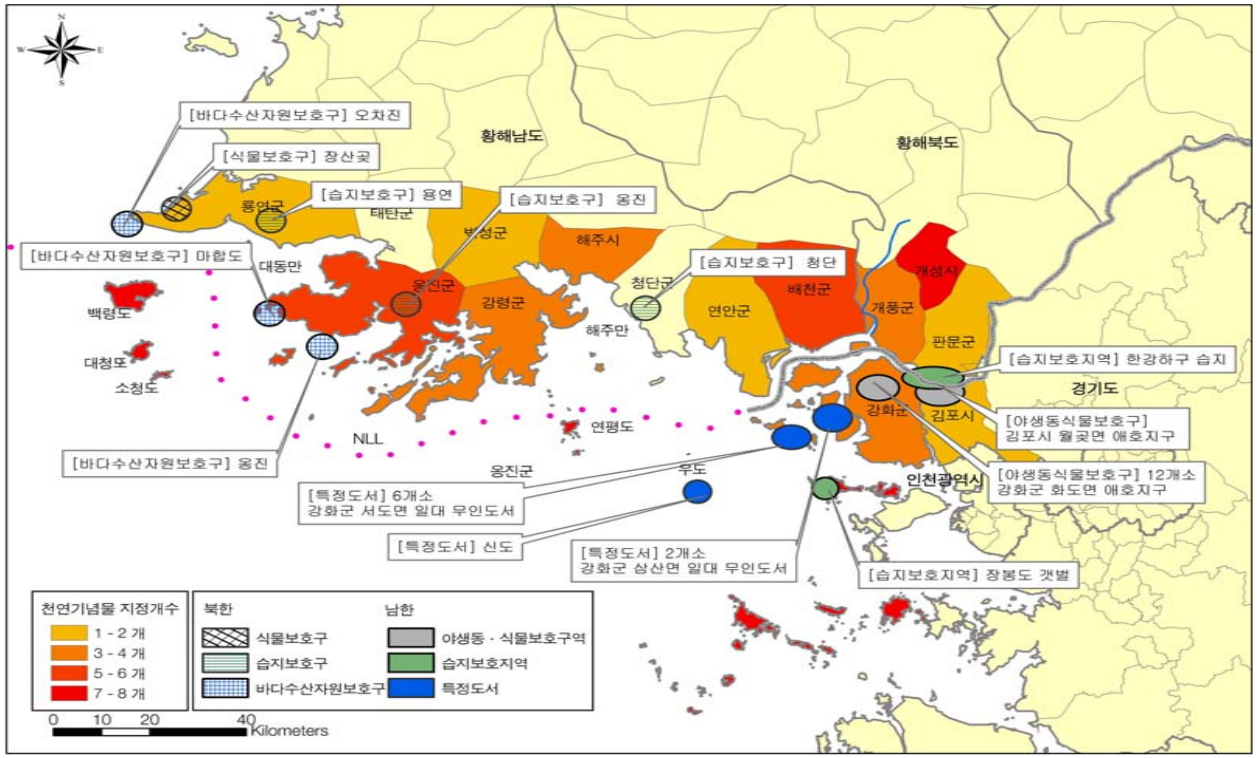
<표 2-6> **서해연안 접경지역 보호구역 지정 현황**

남 한		북 한	
명 칭	지정건수	명 칭	지정 건수
야생동·식물보호구역	2	식물보호구	1
습지보호지역	2	습지보호구	3
천연기념물	12	천연기념물	37
특정도서	9	바다수산자원보호구	3
소 계	25	소 계	44
서해연안 접경지역 보호구역 총 69개소			

자료 : 남정호 외(2005) 재정리.

32) 멸종위기 야생 식물 II급.

<그림 2-6> **서해연안 접경지역 보호구역 지정 현황**



자료 : 남정호 외(2005).

2) 사회경제 및 이용개발 현황

(1) 인구 및 토지이용 현황

연구지역은 남한 서해5도와 북한 옹진반도(대동만-해주만) 주변의 해역과 육역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광역지자체는 남한의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북한의 황해남도와 황해북도가 된다. 관련 해당 시·군은 남한의 김포시, 강화군, 옹진군이고, 북한의 개성시, 개풍군, 판문군, 해주시, 룡연군, 태탄군, 옹진군, 강령군, 벽성군, 천단군, 연안군, 배천군으로 총 15개이다. 이외에 한강하구에 위치하면서 북으로는 북한과 접하고 있는 파주시가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7> **서해연안 접경지역 관련 행정구역**

구 분		행정구역
남 한	인천광역시	강화군(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옹진군(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경기도	김포시(월곶면, 대곶면, 하성면)
북 한	황해남도	해주시, 룡연군, 태탄군, 옹진군(3), 강령군(1), 벽성군, 청단군(1), 연안군(1), 배천군 ※ 노동자구 6개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군, 판문군

주 : ( ) 안의 숫자는 노동자구 수임. 북한의 노동자구는 노동력을 집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농장, 공장, 탄광, 어촌 등 노동자 밀집지역에 설치한 리급 행정구역임.

해당시군의 인구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인구총조사의 2000년과 2005년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변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평균 인구변화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연구지역에 해당하는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의 해당읍면 인구는 2000년 90,225명에서 2005년 87,282명으로 연평균 0.66%의 감소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연구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한강하구에 위치한 파주시의 경우 최근 대규모 산업단지와 택지지구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2000년 268,659명의 인구가 2005년에는 329,523명으로 23%나 증가하였고, 연평균으로는 6.31%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2-8> **서해연안 접경지역 인구변화율**

구분	접 경 지 역						인접 비교지역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읍면별 인구변화율	강화읍	-1.62%	연평면	-2.27%	대곶면	1.88%	문산읍	-0.48%
	선원면	10.21%	백령면	-2.35%	월곶면	-1.13%	파주읍	-3.33%
	불은면	-0.17%	대청면	-2.77%	하성면	-0.29%	법원읍	-2.66%
	길상면	0.47%					월롱면	43.80%
	화도면	-1.99%					탄현면	31.76%
	양도면	-1.85%					교하면	-11.52%
	내가면	-2.04%					조리면	-14.38%
	하점면	-3.24%					광탄면	-1.63%
	앙사면	-3.44%					파평면	-2.00%
	송해면	-3.94%					적성면	-3.70%
	교동면	-3.49%					군내면	4.22%
	삼산면	-2.40%					금촌1동	10.03%
	서도면	-4.39%					금촌2동	14.67%
전체인구 변화율	-0.87%		-2.42%		0.38%		6.31%	
	-0.66%							

주 : 1. 2000년과 2005년 인구총조사 자료 분석치
2. 옹진군, 김포시는 접경지역 해당 읍면만 포함.
자료 : 국가통계포털 총조사인구 결과(2000년, 2005년)

이를 읍면 단위로 보면 지역별 변화양상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강화군의 경우 일부 면(선원면, 길상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읍·면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고, 옹진군의 경우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3개 면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평균 2.42%의 감소율을 나타낸다. 김포시의 경우 월곶과 하성면에서 감소가 있었으나 대곶면에서 인구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연평균 0.38%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영향권에 있는 지역인 파주시의 경우 최근 산업체와 택지지구가 입주하면서 연평균 6.31%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증가율에서 알 수 있듯 강화, 옹진, 김포의 접경지역 대부분은 그 동안 북한에 가까운 입지특성에 따라 지역발전이 외면 받아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파주시의 지역개발과 인구증가에서 알 수 있듯 최근 들어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증가의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군별 인구 데이터가 없지만, 1993년 자료에 의하면 황해남도와 황해북도(당시 개성직할시)의 인구는 2,345,386명으로 알려져 있다.[33]

(2) 수산업 현황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 북한은 주로 양식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 통일부(2006)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수산업 생산동향에 대한 보도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원유 가격의 상승에 따라 어선에 공급할 수 있는 유류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원양어업이나 연근해 어업보다는 연안에서 기르는 어업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민주조선(2007. 2. 24)에 실린 기사 중 '어황상태에 맞게 기동적으로'라는 기사에서는 부포 앞바다에 형성된 백하떼를 잡기 위하여 어로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주요 방법이 어구를 설치하여 연안에 올라오는 백하를 잡았으며 일부 잠수작업반의 도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등 어선의 활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접경지역에서 남한의 수산업은 어로한계선, NLL 등 군사적인 이유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접경지역인 인천광역시의 2006년 어업생산량은 2만 9천톤으로 전국 대비 1.2%(원양어업 제외)이며, 생산액은 122억원으로 전국 대비 2.8%이다. 인천광역시의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에 비하여 작은 수준이나 생산액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다른 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옹진군은 연간 약 6,000톤(2005년 기준) 가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여기서 절반을 넘는 53%가 연평, 백령, 대청면에서 생산된다. 특히 백령면은 옹진군 전체 생산량 5,955톤의 34%인 2,046톤을 생산하고 있다.

꽃게의 경우 앞서 생태계 부분 현황에서 제시된 표와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인천광역시의 생산량이 2002년 가장 높은 어획고인 1만 4천톤을 생산한 이후 2004년 1,390톤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5년과 2006년 전국 생산량과 인천시 생산량이 모두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 대비 인천시의 생산량은 과거 1999년과 2000년 78%를 차지하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의 경우 35%만을 차지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꽃게 자원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공업 현황

북한 산업시설의 70%는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지 못한 1960년대 건설한 낡은 시

33) 경남대 극동연구소(http://www.dprk.com) 참조.

설로 주로 공해유발 산업인 제철, 제련, 금속,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유기관, 2000).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해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이를 가동할 여력이 부족하여 오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남북협력을 통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거나 북한의 독자적인 경제개발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들 공업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방지는 주요한 환경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이상준 외, 2004). 여기서는 서해접경 연안에 위치하여 개발시 환경과 경제에 파급력이 높은 해주공업지구와 개성공업지구,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북한에 제안한 개풍공동개발지구 계획을 살펴보도록 한다.

해주공업지구는 해주항의 배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시멘트를 생산하는데 주로 해주항을 통해 연료와 원료를 조달받고 육상으로는 장연과 옹진 간 철로를 통하여 물자를 수송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멘트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적이고 자본집약적 장비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해주공업지구가 활성화되면 해주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서해연안권의 핵심 경제권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으며 또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영향의 우려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시 봉동리 일원을 남북합작 공단으로 조성하는 개성공업지구 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한과의 합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남북 당국자 협의를 거쳐 2003년 6월 30일 1단계 100만평 규모의 개발에 착공하였으며 북한으로부터 50년간 토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기업에 분양중이다. 개성공단사업은 2006년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사업중단 논란이 일기도 하였으나 남북당국과 입주기업들의 지속적인 운영 의지로 중단없이 발전하고 있다. 아직까지 환경기초시설은 완공되지 못한 상태로 알려져 있으나 200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용수시설,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내부기반시설이 건설되고 있다(통일부, 2007).

인천광역시는 북한과의 지리적 인접성, 개성공단 활성화 등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개성시 남측 개풍군 일대에 '개풍공동개발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개풍군 일대 약 2,000만평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강화에서 한강하구를 지나 개풍군을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고 배후에 산업도로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물류를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개풍공동개발구 제안은 아직까지 남북이 구체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기는 하나 개성공업지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추가적인 개발수요를 불러일으킬 경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예상규모가 개성공업

지구의 20배에 달하고 입지가 과거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한강하구에 위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발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정을 보면 도로나 부지를 제외한 용수, 폐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초시설은 공장이 입지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 사전예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개풍공동개발구 사업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2-7> **개성공업지구 전경**



시범단지 및 본단지 1차 전경

자료 : 통일부(2007)

2. 서해접경 연안 관련 법·제도 및 남북협력 현황

이 장에서는 서해연안 접경해역의 관리와 관련되는 법·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북한의 해양환경보전 관련 법률과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주요 개발지역인 개성공업지구의 관련 법률 및 규정·준칙을 소개하도록 한다. 또한 북한 연안해양환경관리에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질기준, 보호구역제도를 검토하고, 연안과 해양환경을 관리하는 북한의 국가기관과 연안·해양 환경관리 정책수요를 살펴보도록 한다.

1) 북한 해양환경보전 관련 법·제도 현황

(1) 환경보전 관련 주요 북한법률 개관

남한은 헌법 제35조를 통해 국민의 환경권[34]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34)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북한은 199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환경에 관한 사항을 제57조[35]를 통해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헌법에서는 우리의 헌법에서와 같이 국민의 환경권을 권리로 보장하지는 않고 다만 국가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환경보전과 관리를 위해 1986년 「환경보호법」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환경보호법」은 환경문제가 자본주의 사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와 실제 환경문제가 북한의 사회경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현실적인 배경조건으로 인해 구체적인 실행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 흠결은 1995년 11월 8일 총 5장 55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시행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해결이 되었다.

북한 영토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법률에는 「국토계획법」과 「토지법」이 있다. 또한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 법률로는 「환경보호법」이 있으며,[36] 연안・해양환경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개별법은 「바다오염방지법」,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 「문화유물보호법」, 「수산법」, 「항만법」이 있다. 이와 함께 개발이나 건설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고려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이 2005년 제정되었다.

관련 법률을 이행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세부규정으로는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 무역항 관리를 목적으로 한 「자유무역항 규정」,[37]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 「명승지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칙」등이 있다. 한편, 국토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위반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2002년 3월에 「국토환경보호 단속법」(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2호)을 제정하였다. 「국토환경보호 단속법」은 최근에 북한의 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되고 있고, 사회경제활동 주체들이 이러한 오염행위의 원인자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38]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5) 북한 헌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를 중심으로 환경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제3장(문화)의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36) 환경보호법과 바다오염방지법의 내용은 부록을 참조.

37) 1994년 정무원 결정을 통해 제정된 「자유무역항 규정」은 무역항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만구역 내에서 환경훼손 행위 금지(제24조)와 오염행위에 대한 제재조항(제25조)을 담고 있음. 그러나 제2조에서 이 규정의 적용대상을 라진항, 선봉항, 청진항 3개항으로 제한하고 있어, 연구 대상지역의 항만인 해주항에는 적용되지 않음.

38) 이 법률은 강력한 집행의지를 담고 있어서 법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기재 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11조).

<표 2-9> **북한의 해양환경 및 자원보호 관련 법률 현황**

구분	법령	제・개정연도	해양환경보호 관련 사항
기본법 분야	환경 보호법	1986. 4. 9(제) 1999. 3. 4(개) 2000. 7. 24(개)	○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명시(제1장),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제11조), 오염물질배출 기준 등 환경보호기준 준수(제19조) ○ 정화시설 운영 및 오폐수 방류 금지(제24조) ○ 해역운항 선박의 기름, 오폐수, 쓰레기 투기 금지 및 자원개발시 환경보호 의무 준수(제26조) ○ 항, 포구, 갑문, 부두에서 오수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정화 등 항만환경관리(제28조)
	국토 계획법	2002. 3. 27	○ 국토계획작성시 지켜야 할 원칙의 하나로 환경 파괴 금지(제11조 제6호)
	토지법	1977. 4. 29(제) 1999. 6. 16(개)	○ 해양을 수역토지로 구분하고(제7조), 연안・영해의 정비 및 수산자원 보호대책 마련 규정(제17조 제8호) ○ 수산자원보호 증식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제62조)
해양오염 방지 법률 분야	바다오염 방지법	1997. 10. 22(제) 1999. 1. 14(개)	○ 수역보호를 위한 수질보호구역 지정(제3조), 연안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제5조) ○ 항만 및 갑문수역 오염방지(제8조), 농업기인 농약유입방지(제9조), 해양자원 개발시 유류유출 방지(제10조), 선박오염방지 시설 설치(제11조), 선박운영과정 폐기물 투기금지(제12조)
	항만법	1986. 9. 4(제) 1999. 3. 11(개)	○ 항만수역 내에 오염물질 투기 및 기름오염방지(제34조)
생태계, 문화유산, 수산자원 보호관련 법률분야	문화유물 보호법	1994. 3. 24(제) 1999. 1. 21(개)	○ 역사유적 보호구역 지정(제24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	1995. 12. 31(제) 1999. 1. 14(개)	○ 명승지에 바닷가를 포함하고, 천연기념물에 동식물, 자연바위 등을 포함(제2조) ○ 보호구역의 지정(제18조) 및 자연환경의 원형보전(제23조)
	수산법	1995. 1. 18(제)	○ 수산자원보호 의무(제5조) 및 보호월간을 4월 7월로 지정(제31조), 수산자원 보호구 지정 등 관리지침 명시(제32조)
	간석지법	2005(제)	○ 간척의 법률적 기초 제공 ○ 환경적 견지에서 간척시행(제3장)
	환경영향 평가법	2005. 11. 9(제)	○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 신청,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결정의 집행에서 환경피해 방지 및 깨끗한 환경을 보장(제1조)

자료 :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2004에서 발췌 정리

(2) 해양환경 보전 관련 주요법률

북한에서 해양오염방지를 직접 다루고 있는 법률로는 1997년에 제정한 「바다오염방지법」과 1986년에 제정한 「항만법」[39]이 있다. 「바다오염방지법」은 총 25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에서 「바다오염방지법」의 목적을 '바다오염방지사업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바다의 수질과 자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5조에서는 '항만이나 유류저장고, 원자력발전소 등을 건설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작성'토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바다를 오염시켰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벌금을 물리고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어 그 책임과 처벌에 관한 부분도 명문화하고 있다.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과 대비되는 남한의 법률인 「해양오염방지법」을 1977년에 제정한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바다 관련 법률 제정은 시기만을 두고 보면 20년 이상 남한보다 뒤처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남한에서는 「해양오염방지법」의 법률체계와 내용을 개선하여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하는 등 분야별로 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분야별 분화의 양상은 아니나 대동강과 같은 우심지역, 보호가치가 높은 간석지, 개성공단과 같은 특수지역에 적용하는 법률을 통해 매체별로 일부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2005년 북한은 평양 중심부를 흐르는 대동강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27개조로 구성된 「대동강오염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오염방지구역과 그 분류등급을 설정한 것을 비롯해 건설, 탐사,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버림물(오·폐수)의 정화, 소독, 처리문제, 배의 운항 및 관리운영 방안 등을 규정했다. 특히 법 제2조에서는 "대동강의 수질과 생태 환경을 보존, 개선하는 것은 평양시와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기본 담보"라며 법 채택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40]

또한 연안·해양환경에서 중요한 매체 중 하나인 간석지를 관리하기 위한 「간석지법」을 2005년 제정하였다. 과거 북한은 식량난 해결을 위한 '4대 자연개조사업'의 일환으로 서해안 갯벌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간척사업을 추진해왔다. 과거 간척사업이 연성지침[41]에 따라 주로 이루어졌으나, 「간석지법」을 제정하면서 간

39) 1999년 북한은 항만법을 개정하기 전인 1994년에 정무원 결정을 통해 「자유무역항 규정」마련하여 무역항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였음. 이 규정상의 해양오염방지는 '항만구역 내에서 환경훼손 행위 금지(제24조)'와 '오염행위에 대한 제재조항(제25조)'이며, 이 규정의 제2조에서 정한 적용대상 항만은 모든 항만이 아니라 라진항, 선봉항, 청진항 3개항으로 제한되어 있음.

40) 북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나라(www.kcckp.net)'(2005 .4. 20)

척사업의 법률적 기초를 확보하였다. 현재 북한에서 간척을 추진 중인 21개 지구에서 경지확보율은 계획면적(136,711ha)의 8.7%(11,932ha)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이민부 외, 2005), 간척사업은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높은 정책우선순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간척지 개발은 농지를 확보하여 식량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남한에서 이미 겪었던 유용 수산생물의 산란지・서식지 훼손과 자원감소,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훼손, 방조제 내부수 방류로 인한 외해역 수질악화 등의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도 간척지 조성이 해양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여 환경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항을 「간석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42]과 2005년 「환경영향평가법」[43]을 제정한 것이다.

북한은 2005년 육상의 개발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이를 개발과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의 제정이 직접적으로 연안・해양의 환경관리와 관련되지 않을지라도 향후 북한의 국토 및 도시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연안과 해양에서 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환경문제를 고려하면서 간접적으로 환경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북한 연안・해양 환경관리 주요 제도

(1) 수질환경기준

수질환경기준은 하천, 호소, 해양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가장 보편화된 환경관리 수단으로 북한 역시 해양수질환경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이 해양수질환경기준에 활용하는 항목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을 포함하여 총 18개[44]로 우리의 26개 해역수질환경기준에 비해 항목수가 다소 적으며 수질등급 결정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해역수질환경기준 Ⅱ등급 해역은 COD 기준 2㎎/ℓ 이하로

41) 김정일의 지시로 “연안, 령해에 있는 자원들만 잘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여도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가 있음.

42) 간석지법 제3장은 간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환경보호의 견지에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민주조선 2005. 9. 7).

43) 부록 참조.

44) COD, 비소, 수은, 크롬, 아연, 구리, 납, 페놀, 유기염소, 세레늄, 무기질소, 카드뮴, 무기인, 부유물질, 기름, pH, 수온, 대장균.

‘해양관광 및 여가선용, 수산생물의 서식・양식에 적합한 수질’을 의미하는데, 북한에서는 수영과 수산자원이용이 가능한 범위의 해양환경수질은 COD 기준 4㎎/ℓ 이하로 우리의 수질기준 상 공업용수나 항만용수에 적합한 Ⅲ등급 수질에 해당하고 있어 남북 간에 차이가 있다(<표-2-10>참조)(강종희 외, 2006).

<표 2-10> **북한의 주요 해양수질환경기준**

항목 / 등급	DO(ml/L)	NO3-(mg/L)	NO2-(mg/L)	PO4(mg/L)
1급	8	0.01	0.0005	0.002
2급	6	0.1	0.001	0.02
3급	4	0.2	0.05	0.04
4급	2	0.4	0.01	0.08

자료 : 백영일(2001)

(2) 보호구역 제도

남한과 북한의 연안・해양 환경관리 정책을 비교할 때 이행수단이 유사하며, 정책당국의 관심정도가 높고, 조사연구 자료가 상대적으로 축적된 분야는 해양생태계보전 분야라 할 수 있다. 이 중 보호가치가 높은 서식지와 생물종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보호구역 지정 정책이다. 북한은 환경관리 분야에서 보호구역 지정정책을 생물종다양성 보전정책의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보호대상이 되는 생물종과 서식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편으로[45] 연안・해양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8개의 ‘바닷새 보호구’를 지정하였다. 이들 외에도 북한의 연안권 대다수는 남한과 달리 개발압력이 높지 않아 보호가치가 높은 생태계와 서식지가 상당수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46] 따라서 해양환경보전 분야에서 앞으로 남한과 북한 간에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또는 ‘보호생물종’ 관리는 접근이 가능하고 협력 효과가 높은 주제로 기대된다(강종희 외, 2006).

---

45) 북한은 국토환경보호 차원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자연보호구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보호구는 백두산, 묘향산, 오가산, 금강산, 구월산, 칠보산 등 6곳임. 이 중 백두산은 특별보호구로서 1979년에 국제생물권보호구역으로 확정되어 국제적 보호사업과 연구사업이 진행하고 있음. 또한 동물보호구 15곳, 식물보호구 17곳, 바다새 번식보호구 8곳, 수산자원보호구 4곳, 습지보호구 12곳 등 100여개의 보호구를 지정하였음(통일부, 2005).

46) 룡연군 몽금포 사구와 같이 길이가 10㎞이상이 되는 대형 사구생태계가 여러 개 존재하는 등 연안・해양생태계가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잘 보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남정호, 2005).

(3) 연성지침

북한은 기존의 '말씀'이나 '교시'와 같은 연성지침 체제에서 최근 들어 「환경보호법」, 「바다오염방지법」 등을 제정하는 등 성문법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체제는 변화하였지만 법률의 하위규정의 정비가 미비하고 사회구조가 아직까지 '교시'와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법률에 기초하여 연안·해양 환경관리정책을 실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과학학술지인 「기상과 수문」의 2005년과 2006년에 발간된 많은 논문들의 서론부에서 아직까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인용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과거와 변하지 않은 모습이다. 즉, 북한의 연안·해양 환경관리 정책을 '시행(implementation)'의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과거의 '연성지침' 시대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11> **연안·해양 환경관리 관련 연성지침**

구분	주요 연성지침
자연자원 조사	○ 나라의 자연부원을 조사장악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잘 하여야겠습니다 - 김일성 저작집 7권 p. 153 ○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일성 선집 14권 p. 487
과학기술 개발	○ 우리는 발전된 나라들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 들이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최신 과학기술의 높은 봉우리를 빨리 점령해야 합니다. ○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기상과 수문」, 2006년 제1호
생물종 보호	○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그 수가 적고 희귀한 동식물들을 보호증식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김일성 저작집 39권, p. 386
수산자원 개발	○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 민주조선 2007. 2. 24 ○ 해양조건과 고기떼의 회유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수산자원을 보호, 양식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기상과 수문」, 2005년 제2호[47]
연안관리	○ 연안, 령해를 잘 보호관리하여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상과 수문」, 2001년 제5호 ○ 우리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입니다. 넓고 넓은 바다를 정복하며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해양국에 사는 우리 인민들, 특히 바다가에 사는 사람들의 자랑스럽고도 보람찬 임무입니다. :「기상과 수문」, 2006년 제1호[48] ○ 무엇보다도 해안을 잘 꾸려야겠습니다. :「기상과 수문」, 2006년 제1호

자료 : 강종희 외(2006)와 「기상과 수문」(2001, 2005, 2006)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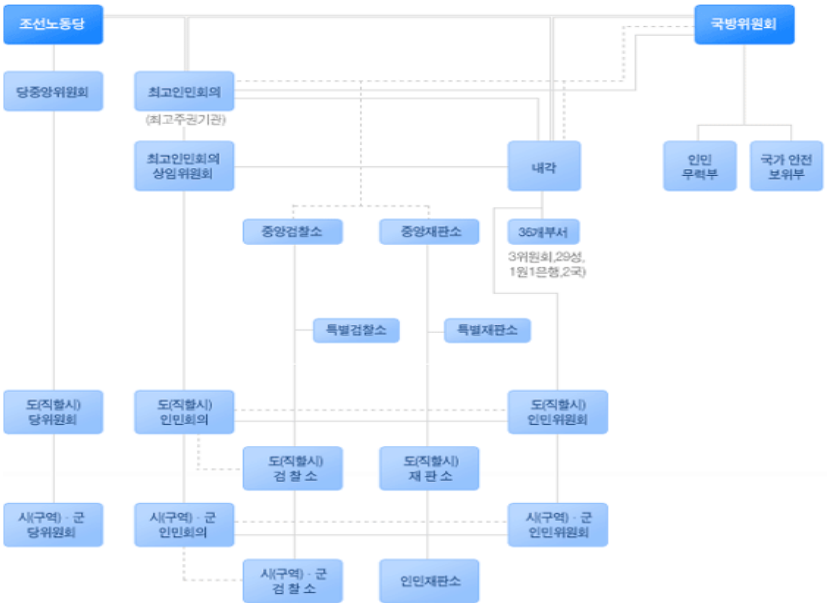
47) 안광현, 문분희, "서조선만연안에서 미세조류발생의 해양기상학적조건", 「기상과 수문」, 제2호, 2005, p. 26.
48) 김창혁, 류행부, "엘리뇨와 조선서해 해양요소변화관계", 「기상과 수문」, 제1호, 2006, pp. 24~24.

연성지침은 북한의 법률체계가 정비되기 전 연안·해양 환경관리 정책의 주요내용을 보여줄 뿐 아니라 현재 법률체계가 다루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관리 현황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연안·해양 환경관리 관련 연성지침은 크게 '연구조사', '과학기술개발', '생물종 보호', '수산자원 개발', '연안관리'로 남한의 주요 정책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다.

(4) 북한 연안·해양 환경관리 행정·연구기관 현황

서해접경연안 해양평화공원의 지정에 앞서 연안과 해양의 관리를 담당하는 북한의 행정 및 연구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행정조직은 조직의 구성원리나 구성형태에 있어 우리의 행정조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함께 조선노동당과 국방위원회 아래에 내각과 각종 국가기관이 배치되어 있다. 이중 우리의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내각은 총 36개 부서로 3개의 위원회, 29개의 성, 1개의 원, 1개의 은행, 2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49]

<그림 2-8> **북한의 정치체계기구표**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북한동향/북한정보자료, http://www.unikorea.go.kr/, 2007.11.29)

49) 통일교육원, 2004, 2005 통일교육지침서.

<그림 2-9> **북한의 행정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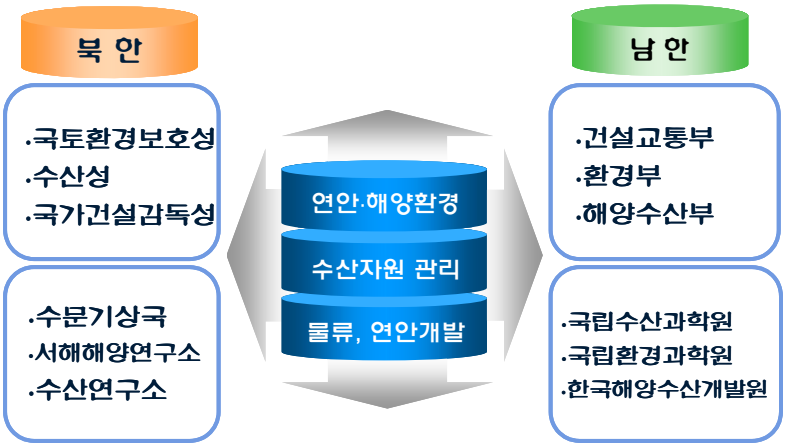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북한동향/북한정보자료, http://www.unikorea.go.kr/, 2007.11.29)

이 중 연안·해양 환경관리와 관련된 국가기관으로는 국가계획위원회, 국토환경보호성, 수산성, 국가건설감독성, 교육성과 과학원이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DPRK(2004)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연안·해양 환경관리 사업과 관련된 부서를 포함하면 연구기관으로는 수문기상국, 김일성종합대학, 국립연구소, 서해해

양연구소, 수산연구소, 환경개발연구소, 국토계획연구소가 국가기관으로는 남포시, 단천, 평안북도, 라선, 황해남도, 강원도의 지역인민위원회, 해사국, 관광국, 금속기계공업성, 화학공업성이 해당하며, 기업체에는 대동강맥주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부처의 구성을 고려하여 서해연안 접경해역 해양평화공원과 같이 크게는 국토이용계획의 한 요소이자 작게는 보호구역 설정을 다룰 수 있는 있는 조직을 꼽자면, 행정부처로는 국토환경보호성, 수산성, 국가건설감독이 우리기관과 상대할 북한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연구기관으로는 수문기상국, 서해해양연구소, 수산연구소 등이 우리의 상대 연구기관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0> **남북 연안해양 관련 정부기관**



(5) 북한 연안·해양 환경관리 정책수요

북한의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정책 및 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책 관련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나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개한 자료가 매우 적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북한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 프로그램인 PEMSEA(동아시아환경관리협력프로그램)의 워킹그룹 회의에서 2004년에 공개한 자료가 가용한 정보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DPRK, 2004). 이 회의에서 북한이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연안·해양 환경관리 사업은 모두 46개로

나타났으며, 해양생태계 및 생물종다양성 보전사업,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사업, 정책인프라 구축사업에 관심이 높고 투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사업을 소요예산별로 분류한 결과 북한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분야'가 전체 예산의 46.8%를 차지하고 있고, 육상기인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분야가 20.6%, 정책인프라 강화 및 국제협력 분야가 1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예산 배분을 통해 북한은 생태계 및 생물종다양성을 보호하는 정책에 남한보다 높은 우선순위(전체의 약 5%)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해양수산부 외, 2006). 따라서 남북은 상호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해양생태계 및 생물종다양성 보전과 정책인프라 구축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 육상기인오염물질의 관리에 대한 투자예산이 생태계 분야에 비해 적게 배분되어 있을지라도 「대동강오염방지법」의 제정에서와 같이 비교적 높은 정책적 관심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육상기인오염물질 관리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건설·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특징이 있는데, 현재 북한의 악화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내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입하는 재원을 적게 배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제도 현황

북한의 법률체계는 김정일 체제가 들어서면서 교시나 말씀과 같은 연성 지침(soft guideline) 운영체제에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남정호 외, 2006). 특히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면서 필요한 경제분야 법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한 이후 2006년 말까지 총 16개의 하위규정을 제정하였다(통일부, 2007). 북한의 자체적인 법률 규정 제정과 함께 남북은 개성공단지구에 적용할 규정과 준칙들을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제정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업규정과 준칙으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제정한 16개 사업규정과 29개의 관리준칙에 따라 개성공단이 운연된다.

아래 <표 2-12>와 같이 개성공단에 적용하기 위하여 2005년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회계검증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2006년 「자동차관리규정」, 「환경보호규정」을 제정하였다. 특히 「자동차관리규정」은 개성공단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증가한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하였으며, 「환경보호규정」 역시 개성공단 개

발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제 정비는 과거 박정원(2000)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이 법률을 정비하여 국가운영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한편, 개성공업지구라는 남북협력사업이 북한의 법제도 체계에 일종의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2-12> **개성공단 관련 법률 및 규정**

번호	법령 및 관련 규정	제 정 일	비고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상임위 정령(2002년11월20일)	부록
2	개성공업지구법 개정	상임위 정령 3715호(2003년4월14일)	조문제목
3	개성공업지구 개발 규정	상임위 결정 102호(2003년4월24일)	
4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 운영규정	〃 103호(2003년4월24일)	
5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 제2호(2003년9월18일)	
6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 제1호(2003년9월18일)	
7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 제11호(2003년12월11일)	
8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 제12호(2003년12월11일)	
9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 제13호(2003년12월11일)	
10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 제16호(2004년2월25일)	
11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 제17호(2004년2월25일)	
12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	-	
13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 제57호(2005년6월28일)	
14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 제58호(2005년6월28일)	
15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 제35호(2004년9월21일)	
16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	
17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	〃 제7호(2006년7월25일)	
18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 제82호(2006년11월21일)	부록

<표 2-13> **개성공단 관련 관리준칙**

구분	관리준칙	비고
건설・토목	건설안전, 건축, 개성공업지구 건축인허가기준, 하부구조시설관리, 토지계획 및 이용준칙, 지적준칙	6개
기업환경	부동산집행, 부동산등록, 기업책임자운영, 기업창설・등록 및 운영, 광고, 개성공업지구감정평가기준, 개성공업지구 기업회계기준, 수수료징수, 석유판매업, 외화관리, 주요물자관리	11개
위생・안전	전기안전, 식품위생 및 전염병예방, 소방, 가스안전,	4개
환경・노동	수질환경, 소음진동, 대기환경, 노동안전, 폐기물	5개
기타	자동차등록, 통계자료 등에 관한 준칙, 준칙정비절차관리준칙	3개
계	29개 준칙	

4) 서해연안 접경해역 남북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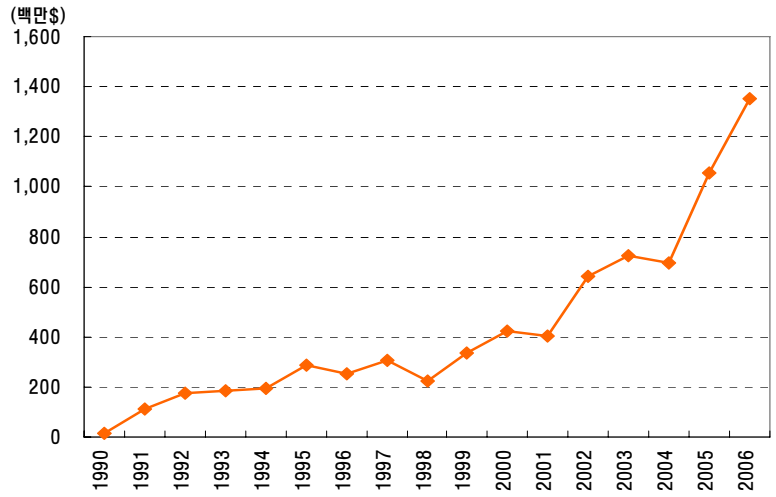
(1) 경제협력 분야

최근 들어 남북한 간 협력 중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경제분야 협력사업이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2000년대 들어 남북한 사이의 교역액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연간 4억불 이하 수준에서 머물던 남북교역액은 200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13억 5천불 수준까지 이르렀다. 서해에서 군사충돌이 있었던 2002년 이후에도 교역액의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고, 7월 미사일발사실험과 10월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에는 오히려 가장 많은 교역이 이루어졌다. 이는 시기나 특정한 사건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경색국면이 나타나더라도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의 수준도 일회적 접촉이나 전시성 행사에서 벗어나 제도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사업단위 남북경제협력 사례는 1995년 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업 승인 이후 2006년까지 개성공단을 제외한 민간분야 남북경제협력 사업 승인은 모두 45건에 달한다. 남포공단에 입주한 평화자동차는 2002년 6월 조립생산 라인을 가동한 후 2006년 12월까지 총 838대를 조립・생산하였고, 2006년에는 쌍용자동차의 체어맨을 모델로 하는 '준마' 18대를 조립 판매하였다. 삼성전자는 200년부터, KT는 2004

년부터 중국에서 북한 인력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공동개발하고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0개, KT는 6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광물자원 개발 분야에서는 태림산업이 남포 인근의 용강석산을 개발하여 화강암 등을 국내에 반입하고 있고, 광업진흥공사는 정촌흑연광산 개발사업을, 대동무역은 강서청산수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대아산은 개성공단을 지원하기 위해 견본품 송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는 금강산 지구 내 환전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통일부, 2006).

<그림 2-11> **연도별 남북교역액 추이**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2) 관광협력 분야

가장 대표적인 남북한 관광분야 협력사업은 금강산 관광사업이다. 1998년에 시작한 금강산 관광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2007년 11월 기준 누적 방문객 수가 172만명을 넘어섰다.[50] 지속적으로 관광코스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한편 과거 선박을 이용한 이동에서 2003년 1월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타결한 후 같은 해 9월부터 육로관광이 정례적으로 진행되었다. 현대아산 측은 2007년에는 내금강으로 관광구역을 확대하

50) www.hdasan.com ('07. 11. 15).

면서 방문객 수도 증가하였는데, 올해 방문객은 역대 방문객 중 최대인 35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 관광상품 개발은 금강산에서 머무르지 않고 개성과 백두산, 평양관광 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성관광은 그 동안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지만 현대아산이 사업주체로 확정되었고, 12월 5일부터 시범관광을 시작하였다. 백두산 관광은 금번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현지조사단이 답사를 마친 상태다.

(3) 해양수산분야 남북한 협력

2007년 6월까지 총 21회의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 중 해양수산분야 관련 의제가 논의된 것은 모두 5차례로 제4차, 제5차, 제8차, 제13차, 제15차 회담이었다. 2005년에 있었던 제15차 회담 이후 해양수산분야와 관련된 의제가 없었다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아직은 해양수산분야와 같이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의 협력은 당분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해양수산분야가 논의되었던 가장 최근 회담인 제15차 장관급 회담에서는 서해상 평화정착과 남북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어장을 조성할 것을 합의하였다(<표 2-14> 참조).

남북이 서해의 평화정착과 불법어로(중국어선) 단속 및 '남북어민들의 공동이익을 실현한다는 것'을 합의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하고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5차 장관급회담의 해양수산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최한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51]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였다(<표 2-15> 참조). 이 합의안에서는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하는데 따라 공동어로 수역을 확정하기로 하였으며, 불법어선의 어로행위 방지, 수산분야 기술교류 등을 합의하였다. 현재까지 이 합의안은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 실체적 결과물로 전환하지 못한 것은 해상경계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차이에서 비롯된다. 공동어로가 상호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준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정치·군사적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 해주항개발, 민간선박 직항로 통과,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골자

51) 2005년 7월 25일부터 27일 개성 개최.

로 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합의함에 따라 해상경계 현안에 대해 현명한 접근이 이루어지면 실현될 가능성도 크다. 11월 27～29일 개최한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어로 수역 위치와 지정기준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회담자체가 결렬되지 않고 합의문을 채택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논란이 된 현안을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과, 장관급회담을 2008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해결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표 2-16> 참조).

<표 2-14> **해양수산분야 협력 합의문 채택 남북장관급회담 현황**

구분	일정 및 장소	내 용
제4차	’00.12.12～16 평양	○ 어업부문에서 상호협력, 북측이 남측에 대해 동해 북측어장의 일부를 일정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고, 금강산에서 협의하기로 합의(제2호)
제5차	’01.9.15～18 서울	○ 남과 북은 평화적인 민간선박의 영해통과 허용문제 협의를 위해 해운실무 접촉 합의(제3호 ⑤) ○ 북측의 동해어장 일부의 공동이용문제 협의를 위해 실무 접촉 합의(제3호 ⑧)
제8차	’02.10.19～22 평양	○ 남과 북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협력에 관한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회의개최 합의(제4호) ○ 남한 어민의 북측동해어장 이용관련 회의 개최 합의(제6호)
제13차	’04.2.3～6 서울	○ 남과 북은 해운합의서 발효문제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제4호) ※ 2004년 5월 28일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채택. 남한정부는 2004년 12월 29일 국회비준
제15차	’05.6.21～24 서울	○ 서해해상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수산협력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7월 중에 공동어로 등 수산협력 문제 협의・해결 합의(제7호) ※ 2005년 7월 27일 제1차 남북수산협력 실무협의회 개최 ○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하고 실무 협의 추진합의(제9호)

<표 2-15> **제1차 남북수산협력 실무협의회 합의서('05.7.25~27)**

내 용	세 부 사 항
협의의 목적 및 원칙	○ 서해에서 평화정착과 남북어민들의 공동이익 실현 (평화정착 및 공동이익의 원칙)
공동어로(제1호)	○ 서해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공동어로 진행 <방법> - 공동어로 수역과 시기는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하여 확정 - 공동어로 기간, 어선 수, 어구이용, 입어료 등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
제3국의 불법어로 방지 상호협력(제2호)	○ 서해상 정해진 수역에서 쌍방의 어선이 아닌 불법 어선들의 어로활동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 등 상호협력
수산물, 생산 및 유통분야 협력(제3호)	○ 남과 북은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분야 협력 진행 ○ 구체적인 현안은 남북수산협력 실무접촉에서 협의
수산기술 교류(제4호)	○ 수산물 우량품종의 공동개발을 위한 기술교류 진행
제3국 어장진출(제5호)	○ 남한과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 어장진출 협력

<표 2-16> **남북한 국방장관 회담 서해연안 관련 회담결과('07.11.27~29)**

주요 내용	합의여부	합의사항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	○ 쌍방관할 불가침경계선 구역 준수(제2호 ①) ○ 해상불가침경계선과 군사적 신뢰조치는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 해결(제2호 ②)
공동어로・평화수역	×	○ 공동어로, 평화수역 설정 절실함을 인식 ○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협의, 해결(제3호 ①)
한강하구 공동이용	○	○ 한강하구와 임진강 하구에 골재채취 구역 설정(제3호 ②)
민간선박 해주항 직항로 통과	○	○ 항로대 설정과 통항절차 등 군사적 보장조치 추진(제5호 ②) ○ 구체적인 현안은 남북수산협력 실무접촉에서 협의
개성, 금강산 3통 문제 해결	○	○ 2007년 12월 남북군사회담에서 군사보장합의서 채택(제5호 ③)
남북국방장관회담	○	○ 2008년 서울에서 제3차 회담개최(제6호 ①)

제3장 해양평화공원 및 남북관계 인식조사

1. 인식조사의 개요

‘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은 서해평화수역이라는 합의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여전히 서해연안은 남북간 접경지역으로서 높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물리적 접근 역시 용이하지 않다. 특히 해역과 도서, 하구와 같은 연구지역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낮은 접근성 때문에 지역 현황에 대한 충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지역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해접경 연안을 해양평화공원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초 현황 자료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의 단계에서부터 남북관계 및 국제문제 전문가, 지역주민, 관련 부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들의 서해상 남북 협력에 대한 이해와 지지는 서해연안에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 자료 수집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가 시작된 2005년에는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구분하여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년에는 설문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일반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에는 연구지역에 해당하는 옹진군 지역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5년에 실시한 설문조사는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설문대상을 나누어 실시하였다. 지역주민에는 주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서해5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문가에는 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에 소속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5년도 지역주민 설문조사에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현황과 해양환경,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태, 어획량 추이, 남북한 군사충돌 원인과 재발가능성, 중국어선 불법 어로행위 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한편,

전문가 설문조사에는 전반적인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남북협력관리 여건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남북협력관리 여건과 실현가능성, 해양평화공원 지정 타당성과 지정 체계 등에 관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2006년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의 주관 하에 일대일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 오차는 ±3.7%이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북한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 수준, 남북관계와 긴장강도에 대한 인식, 서해연안 평화공원 지정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해양평화공원 지정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 3-1> **설문조사 개요**

구분	2005년도 1차 연구		2006년도 2차 연구	2007년도 3차 연구
대상과 지역	지역주민 (백령·대청·연평도)	전문가	서울 및 6대 광역시	지역주민(옹진군)
조사시기	2005. 7. 12~14	2005. 7. 26~8.5	2006. 9 (예비설문: 7월)	2007. 8. 28
조사방법	직접 면접	이메일과 팩스	일대일 직접 면접조사	설문지 배포 및 취합
표본 수	150부 중 144부 분석(96%)	80부 중 67부 분석(84%)	700명(20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남녀)	99명
내용	· 지역의 현안 및 해결방안 · 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해양환경·어획량 변화추이	·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남북협력관리 여건 · 서해연안 접경지역 정책방향	· 북한 관련 일반 인식 · 남북관계와 긴장강도에 대한 인식 · 서해연안 평화공원 지정에 대한 일반 견해 · 평화공원 지정사업의 기대효과 및 기타 사항	· 지역주민의 남북관계 인식 · 서해연안 접경지역 인식 · 서해연안 접경지역 해양평화공원 도입
표본오차	-	-	±3.7%	-

주 :조사작업은 전문설문기관인 동서리서치(www.dsrgroup.co.kr)가 실시하였음.

2007년에 실시한 설문조사는 2005년도 지역주민 설문조사와 이 연구의 주요 대상지역인 옹진군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배포 후 취합하는 방식

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유효한 설문지 99부를 분석하였다. 설문내용은 이전에 실시한 설문과 유사한 내용을 담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가늠하고자 하였으며, 북방한계선과 관련하여 남북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설문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주민의 반응도 함께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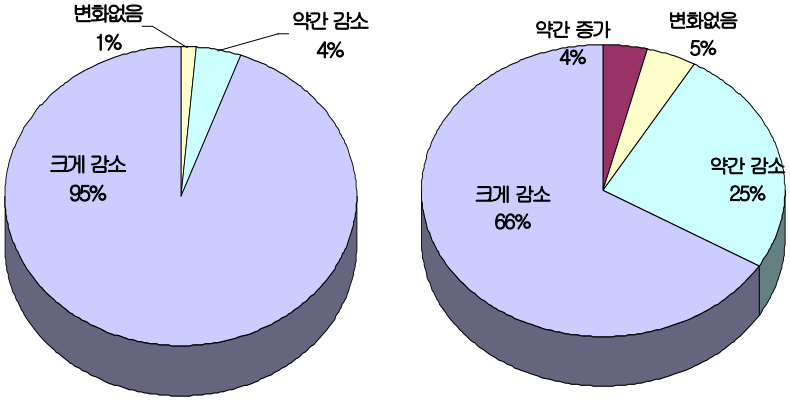
2.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2005년)

1) 지역주민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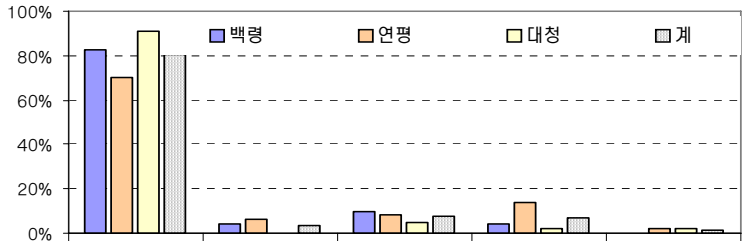
지역주민 설문조사는 서해5도에서 최근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 꽃게 채취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지역의 해양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파악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주요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 특산물인 꽃게의 경우 응답자의 99% 이상이 과거보다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답하는 등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의 심각한 수산자원 고갈현상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처럼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어획량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 80%에 가까운 응답자는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어로행위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감소한 어획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64%의 응답자가 중국어선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통제가 시급하다고 대답했다.

<그림 3-1> **꽃게 어획량의 변화(좌 : 꽃게, 우 : 기타 수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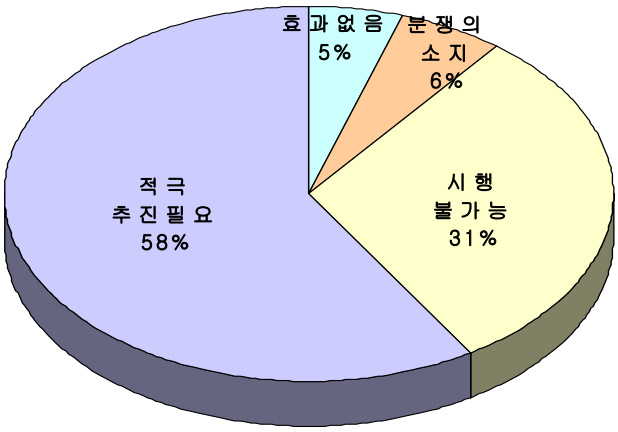


<그림 3-2> **어획량 감소 원인**



	중국어선 불법어로	남북한 남획	수온 등 변화	인위적 오염	기타
백령	82.4%	3.9%	9.8%	3.9%	0.0%
연평	70.0%	6.0%	8.0%	14.0%	2.0%
대청	90.7%	0.0%	4.7%	2.3%	2.3%
계	80.6%	3.5%	7.6%	6.9%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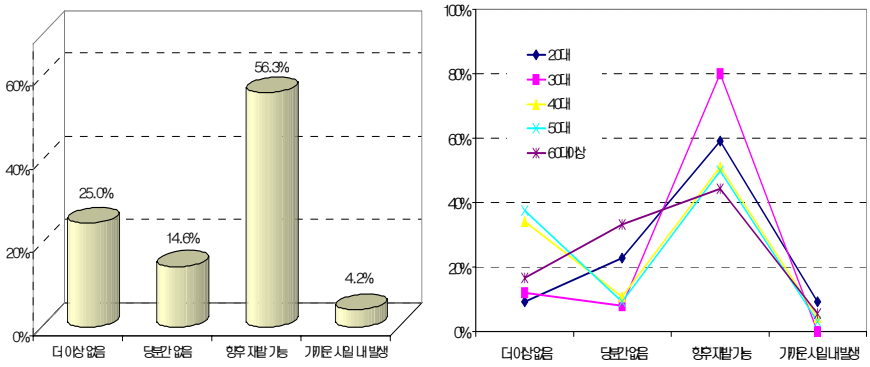
<그림 3-3> **접경해역 남북한 공동관리 가능성**



서해5도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된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행위의 관리주체로, 55%의 주민들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뒤를 이어 31%의 주민이 남북이 각자의 관할 해역에 대해서 만이라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남북한 공동어장 관리방식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58%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31%의 주민들은 취지는 좋으나 실제 이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60% 이상의 주민들이 앞으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남북한 공동어장 관리와 같은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결과물 제시를 통한 지역주민의 부정적 의견 해소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군사적 충돌 원인에 대해서 우발적인 충돌보다는 NLL에 대한 남북간 의견차(40.3%)와 남북분단 상황(35.4%) 등 정치·군사적 환경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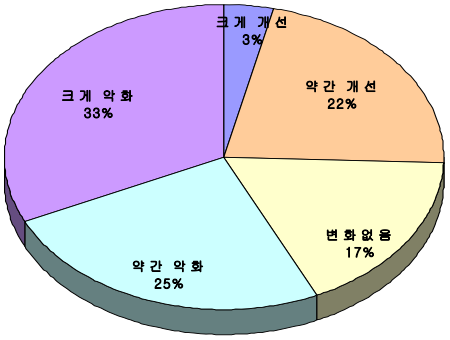
<그림 3-4> **서해상 남북 군사 충돌 재발 가능성(좌: 전체, 우: 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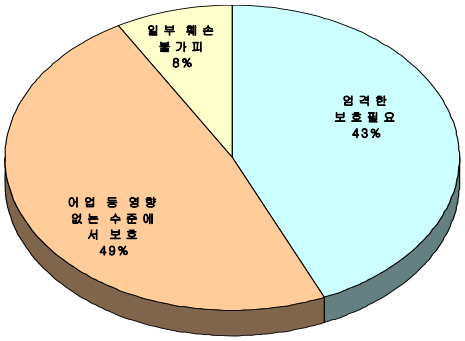
남북한 공동어장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일에 대해, 57%의 응답자가 북한의 태도변화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35%의 응답자가 남한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다고 대답했다. 반면 북미관계 변화(3%)와 국제기구 지원(5%)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절대다수에 가까운 92%의 주민들이 남북한 공동어장 관리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가 아닌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접경지역의 해양환경 상태의 변화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과거보다 악화되었다는 의견(58%)이 개선되었다는 의견(25%)보다 크게 앞섰다. 물범과 같은 멸종위기 생물종에 대한 보호필요성에 대해 43%의 응답자가 엄격한 관리대책이 필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49%의 응답자는 지역경제활동에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많은 수의 지역 주민들은 자연보전보다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 또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의 보호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엄격한 보호·관리에 대한 지지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지역지원 대책이 수립된다면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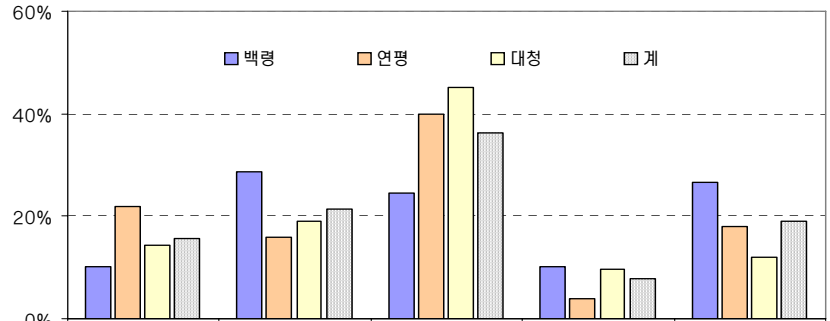
<그림 3-5> **접경지역 해양환경 상태 평가**



<그림 3-6> **물범 등 희귀생물자원의 보호 필요성**



<그림 3-7> **정부지원 필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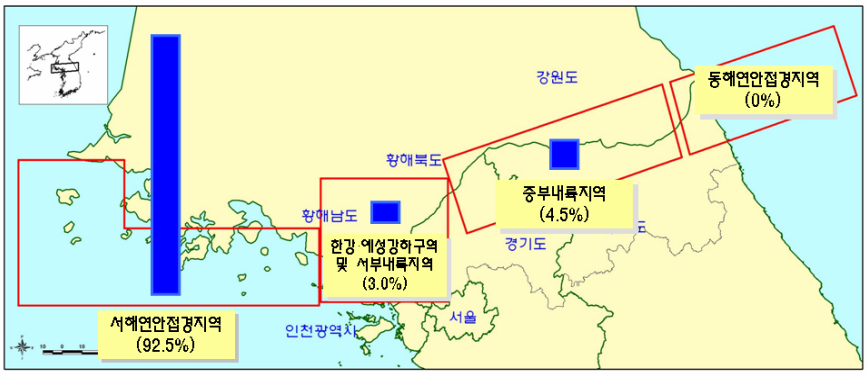
	경비인력,장비지원	배편 증설 등 접근성 개선	관광 등 지역개발 추진	주민생활환경개선	해양환경관리
백령	10.2%	28.6%	24.5%	10.2%	26.5%
연평	22.0%	16.0%	40.0%	4.0%	18.0%
대청	14.3%	19.0%	45.2%	9.5%	11.9%
계	15.6%	21.3%	36.2%	7.8%	19.1%

마지막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36%)가 관광 등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어 육지와의 접근성 개선, 해양환경관리 역량강화, 해군 및 해경의 인원·장비 확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별로 살펴보면, 관광객 수요가 많은 백령도 주민은 배편 증설과 해양환경 관리에 관심이 많았고, 대청도와 연평도 주민은 지역개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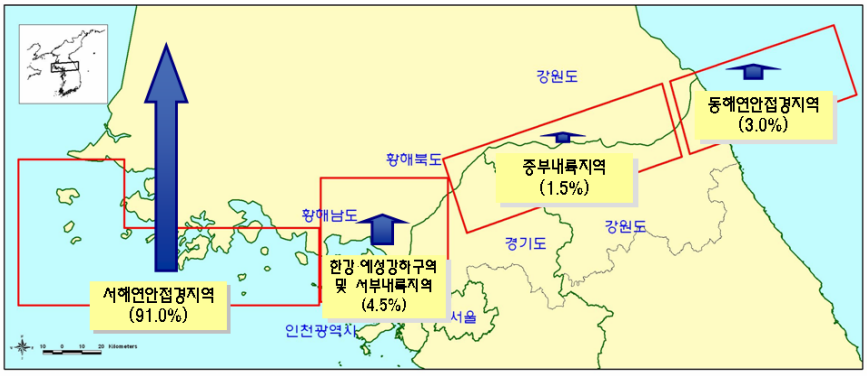
2) 전문가 설문조사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남북 공동협력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8> **남북한 긴장강도**



(a) 현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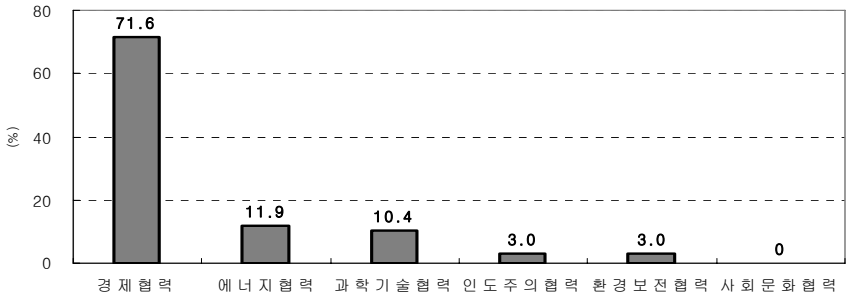


(b) 최근 10년간 긴장강도의 변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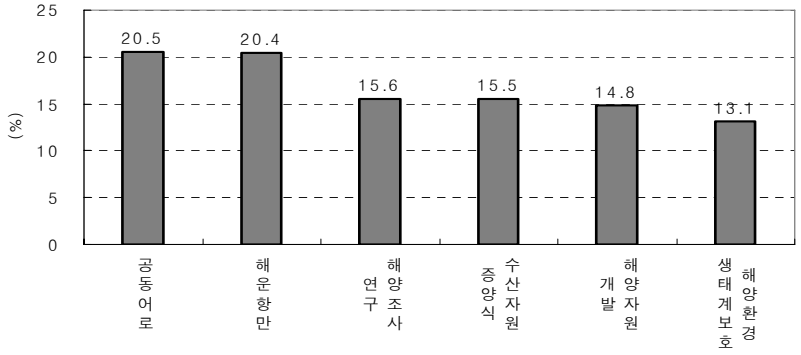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서해연안 접경지역이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긴장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긴장도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 사업은 해양보다 육상에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남북협력 분야에 대해 전문가 대부분은 경제협력이라 전망하면서, 해양에서도 경제협력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공동어로', '해운·항만' 분야의 협력이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림 3-9> **남북협력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



<그림 3-10> **해양분야 중 남북협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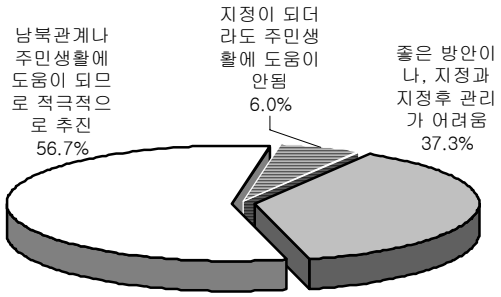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중 중국어선의 잦은 출몰과 남북 무력충돌 가능성을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백령·대청도 인근해역과 연평도 인근해역을 긴장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았다. 과거 두 번의 군사적 충돌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반 이상이 NLL에 대한 남북한 의견차로 대답

하였고, 앞으로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재발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남북 협력분야에 대해 58%의 응답자는 꽃게 등 어족자원 관리를 위한 수산협력분야를, 28%는 남북한 물자이동을 위한 항만협력 분야가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림 3-11>과 같이,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추진에 대해 57%의 전문가는 긍정적으로 인식했지만, 37%의 전문가는 좋은 방안이나 지정과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체계적인 지정・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위해 먼저 전제되어야 할 조건으로 북한의 태도변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꼽았고, 앞으로 남북 및 북미관계가 악화되더라도 해양평화공원 지정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해양평화공원의 지정 주체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고, 국내 추진체계 또한 중앙부처, 국가연구소, 지자체,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0% 이상이었으며, 주관부처로 해양수산부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8%를 차지하였다.

<그림 3-11> **해양평화공원 지정 타당성**



한편, 전문가 응답자의 86% 이상은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개성공단 가동으로 개성-김포-인천으로 연결되는 경제벨트의 형성과 해운기능 강화로 준설과 항만건설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면서, 어느 정도의 해양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개성공단 가동에 따른 해양환경오염 저감・방지대책으로 60% 이상의 응답자는 남한의 환경규정보다 취약한 북한환경 규정을 강화하여 이를 저감・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남한은 북한에 대한 협력・기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3-2> **개성공단 가동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정도**

구 분	빈도(명)	비율(%)
큰 영향을 주어 특히 강화도 북단, 한강하구역, 예성강 하구역의 **생태계(서식산란지) 훼손 및 수질환경 오염**이 발생할 것이다.	39	58.2
남한의 경우 환경기초시설 설비 완비, 환경 및 생태계 영향 저감을 위한 제도가 완비되어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나 개성공단의 영향으로 수질환경 오염**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9	28.4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영향이 있더라도 영향범위는 강화도 북단, 예성강 및 한강하구역에 한정될 것이다.	8	11.9
기존의 개발로 이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	1.5
합 계	67	100.0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관리(연구)사업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 현재 수준보다 4~5배 정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42%, 2~3배 정도 될 것이라는 의견이 31.3%를 차지함으로써, 앞으로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였으며, 88%의 응답자가 남북협력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남북협력사업 추진 시 국공립연구기관의 유휴・잉여 기자재를 북한에 전달하는 안에 대해 60%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 설문결과 종합

지역주민과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지역주민・전문가 응답자 대부분은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 어로행위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지역주민 응답자의 80%는 수산자원 고갈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행위에 있다고 지적하였고, 남북이 공동으로 중국어선에 관한 감시・통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전문가 응답자는 꽃게 등 어족자원관리 분야의 남북협력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의 50% 이상이 남북한 공동어장관리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응답자 대부분은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높은 긴장강도에 대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지역주민의 60%와 전문가 66%는 앞으로 군사적 충

돌이 재발 우려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전문가 설문에서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이 우리나라 접경지역 중 가장 긴장강도가 높고, 서해연안 접경지역 중에서도 백령·대청도 인근 해역과 연평도 어장 주변의 긴장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군사충돌의 원인에 대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응답자 대부분은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견해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남북협력(공동) 관리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3. 일반국민 인식조사(2006년)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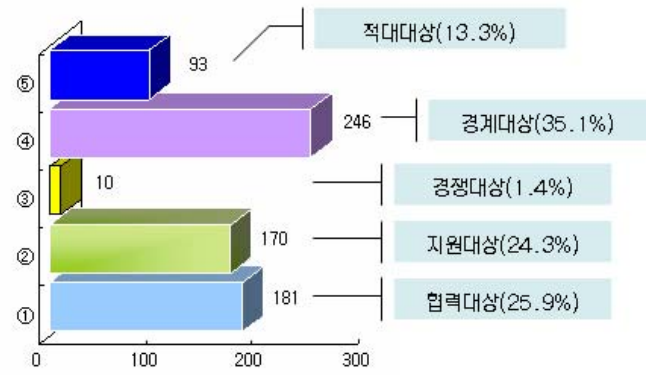
2006년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했던 2005년도 설문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전국 8대 광역시의 20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에 표본 오차는 ±3.7%이다.

전국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북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각각 50.2%와 49.8%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협력(25.9%)과 지원(24.3%)의 대상이라는 견해와 적대(13.3%)와 경계(35.1%)의 대상이라는 견해가 서로 나뉘어져 있다. 특징적으로 북한을 적대 및 경계 대상으로 바라보는 의견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크고 소득수준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협력 및 지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의견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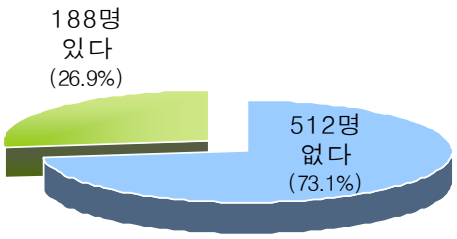
2) 주요 결과 분석

한편,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실험(2006년 7월 5일)과 같은 돌발변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는 26.9%로 예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받았다고 대답한 18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식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47.9%의 응답자가 협력 및 지원의 대상에서 경계의 대상으로 변했다고 대답했다. 또한 협력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적대적 대상으로 변했다는 의견도 19.1%에 달했다. 즉, 북한의 군사적 돌출행위가 일반국민의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변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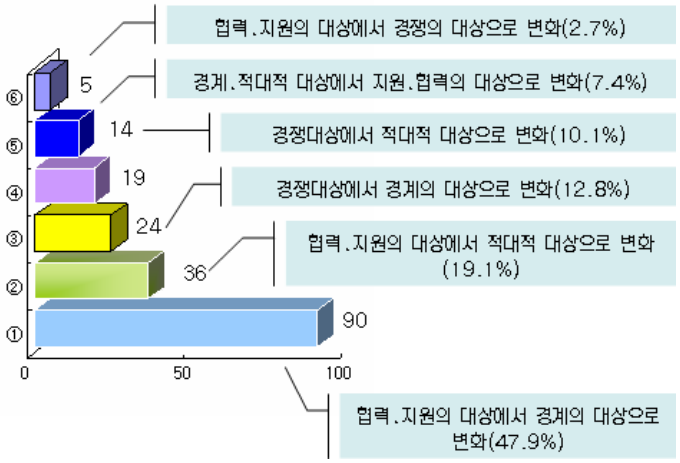
<그림 3-12>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그림 3-1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변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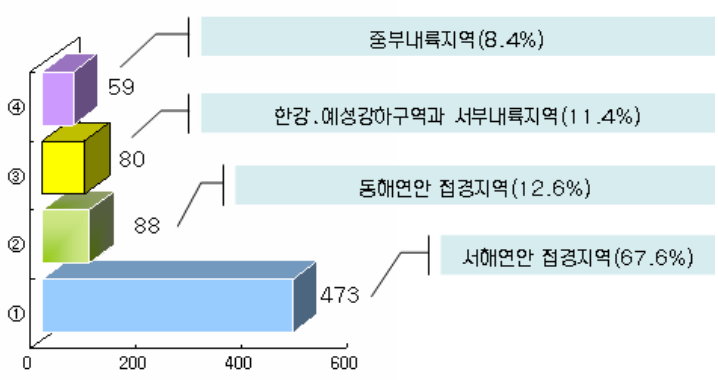


<그림 3-14> **대 북한 인식변화의 구체적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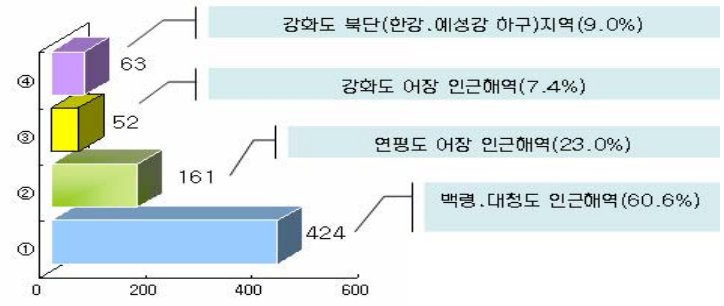


권역별로 남북간 긴장강도를 조사한 결과, 2005년 지역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와 만찬가지로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긴장강도가 가장 높다는 의견이 67.6%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서해연안 접경지역 중에서는 특히 백령·대청도 인근 지역과 연평도 어장 주변의 긴장도가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5> **현재 긴장강도가 가장 높은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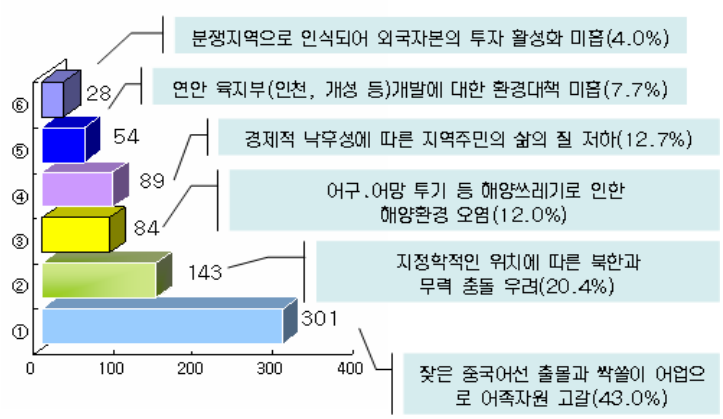
<그림 3-16> **서해연안에서 긴장강도가 가장 높은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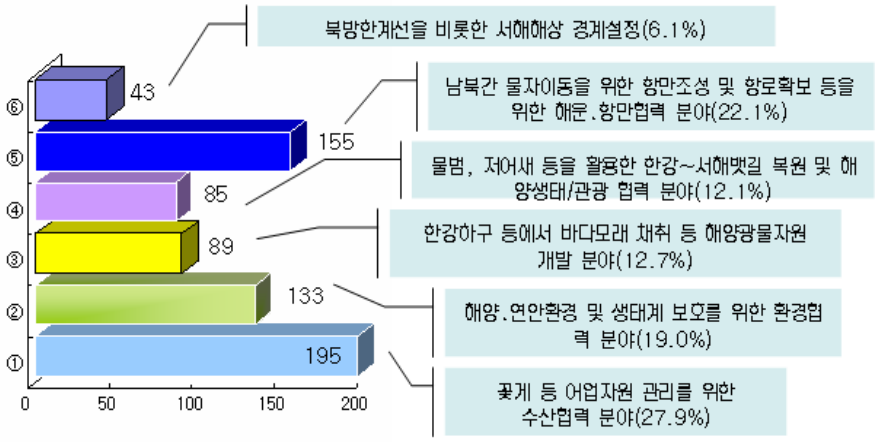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 <그림 3-17>과 같이 43.0%의 응답자가 '중국어선의 잦은 출몰과 싹쓸이 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이라고 응답하였고,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른 북한과의 무력충돌 우려(20.4%)'와 '경제적 낙후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12.7%)'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투자활성화 미흡'이나 '연안 육지부 개발에 대한 환경대책 미흡'을 문제점으로 인식한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외국자본의 투자문제와 환경관련 문제보다 중국

의 불법 어로행위와 남북간 돌발적 무력충돌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17>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문제점에 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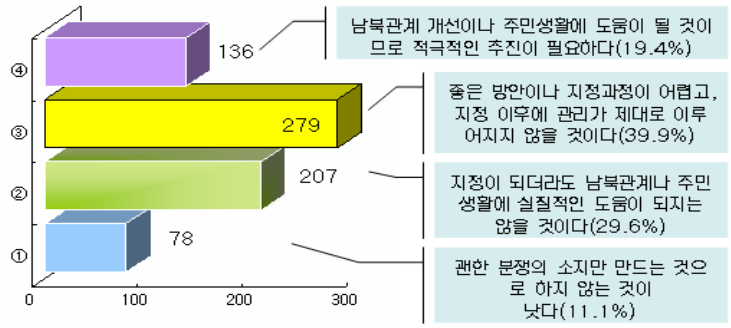


<그림 3-18> **해양에서 남북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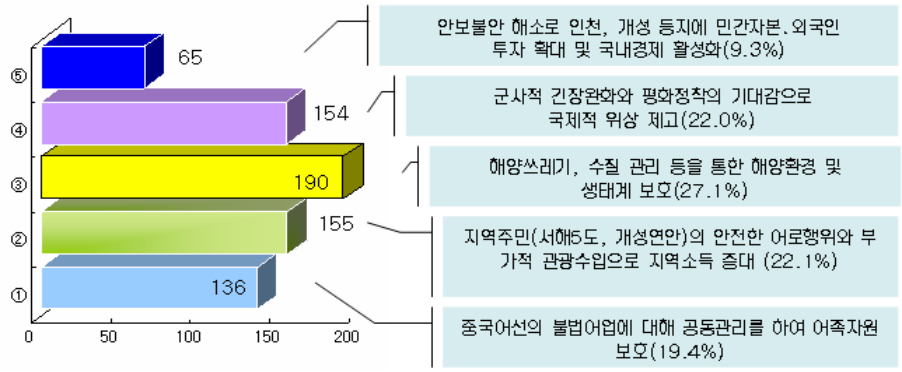


해양분야 남북협력에서는 <그림 3-18>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해양자원개발, 공동어로, 수산자원 협력과 같은 경제 분야와 해운. 물류 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에, 해양・연안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 분야와 해양 생태관광 협력분야는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9> **'해양평화공원' 지정 사업에 대한 견해**



<그림 3-20> **해양평화공원의 기대효과에 대한 견해**



해양평화공원 지정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정이 쉽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가 69.5%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그림 3-19> 참조). 지정주체로는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52] 만일 지정에 관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일시적인 남북관계의 정세변화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이나 기초 자료 수집활동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여,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은 일시적 정세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시켜 주었다.[53] 또한

52) 해양평화공원 지정주체에 대해,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지정하되, 국제기구는 자문기구로 참여시킨다'는 견해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뒤로, '남북이 관할 해역범위를 각각 지정해야 한다'와 '남한, 북한,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32.3%와 5.6%로 조사됨.

53) 다수인 60.1%의 응답자들은 '북한을 둘러싼 정세변화를 고려하되 국제기구와 협력, 자료수집 등 기초적인 작업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관계악화는 일시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29.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일시적인 정세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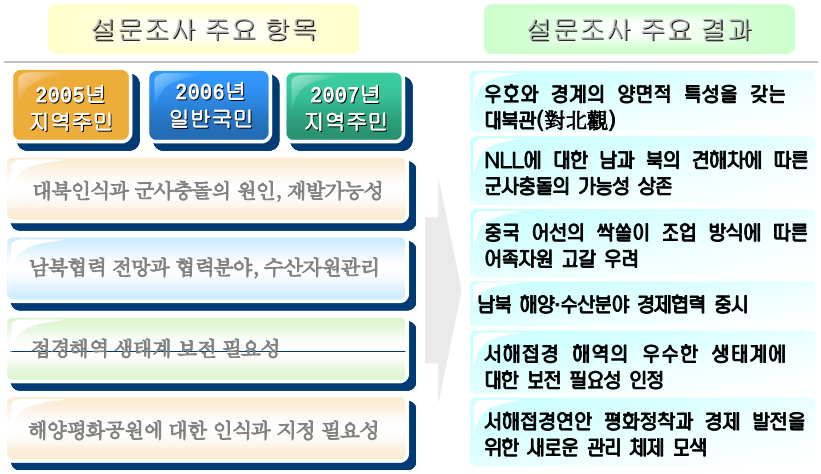
해양평화공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 일반국민은 해양환경 개선과 생태계 보호에서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였다. 뒤를 이어 접경연안의 주민의 어업활동 활성화와 지역의 관광수입 증가로 인한 지역 소득 증대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뒤를 이었다(<그림 3-20> 참조).

4. 2007년 지역주민 인식조사와 과거 조사 결과 종합

1) 개요

2007년도 연구과제의 설문조사는 서해5도가 위치한 옹진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당수의 설문 문항을 과거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있는 항목을 활용하여 그동안 지역주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일반국민과 지역주민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림 3-21> **설문조사(2005~2007년) 주요 내용**



해당 항목의 설문 결과를 2005년도와 2006년도 설문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항목의 설문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인식변화 여부 또는 지역주민과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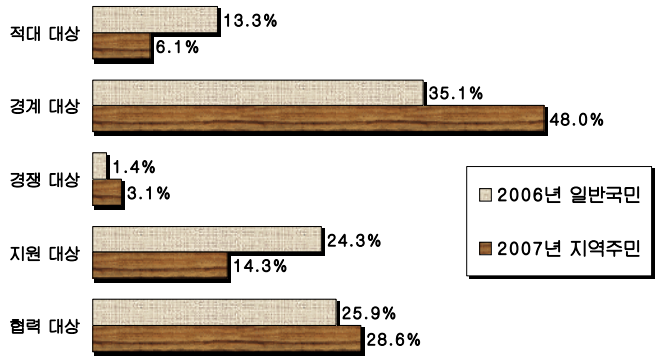
국민 간 인식의 차이 등을 살펴보았다. 자료의 분석은 해당설문의 과거자료와 2007년 설문자료를 함께 표시하여 비교하였으며 설문결과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묶어 서술하였다(<그림 3-21> 참조).

2) 주요 결과 분석

(1) 우호와 경계의 양면적 특성을 보이는 대북관(對北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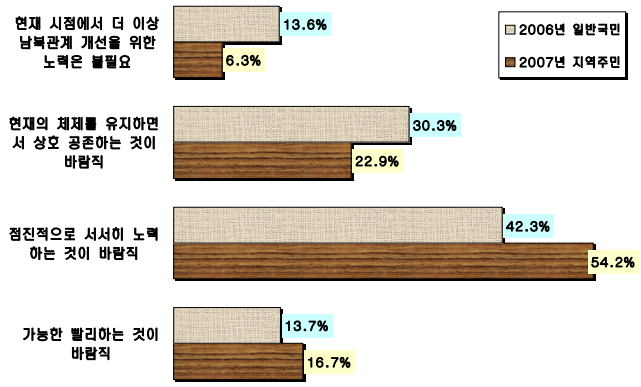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지역주민은 적대 대상 6.1%, 경계 대상 48.0%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협력과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는 절반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다. 2006년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적대와 경계대상의 합계 48.1%보다 다소 웃도는 수치를 보여줬으나 근본적으로 일반국민과 지역주민 사이에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림 3-22> **북한에 대한 일반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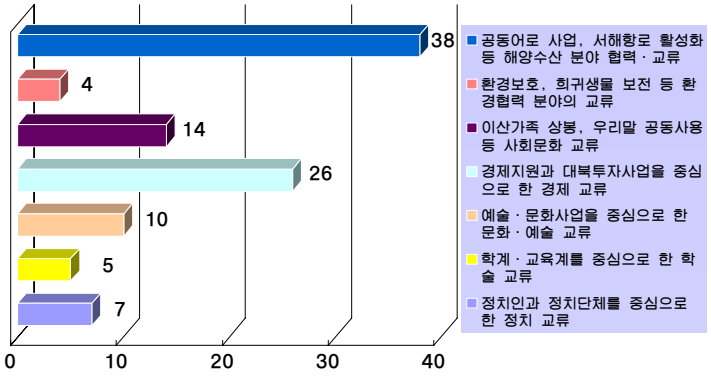
남북통일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일반국민 간에 의견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통일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여기고 있는 수준이나 일반국민과 그 차이는 크지 않다.

<그림 3-23>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비교**



(2) 남북 해양·수산분야 경제협력 중시

<그림 3-24> **남북 간 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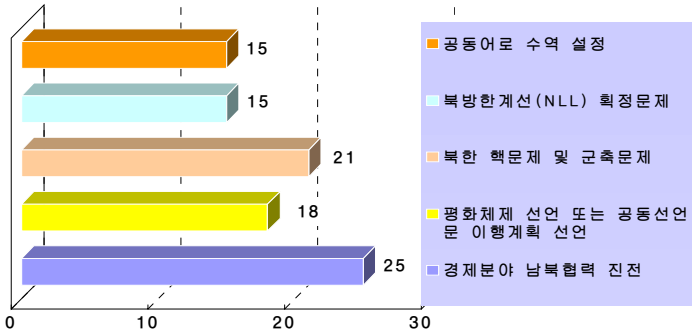


남북한 교류협력의 여러 방안 중 가장 실현성이 높은 방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응답은 주로 공동어로 사업, 서해항로 활성화와 같은 해양수산 분야의 협력과 교류에 치우쳐 있다. 이는 2006년 일반국민 대상 설문에서 해양수산 분야 협력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항목을 가지고 진행했을 당시, 이산가족 상봉, 우리말 공동사용과 같은 사회문화 교류와 뒤를 이어 문화교류를 중요시하고 경제교류를 그 다음으로 여겼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그림 3-24> 참조). 일반국민은 실질적으로 남

북이 접촉하고 지역적으로 구체성을 띤 사업보다 더욱 큰 틀에서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상호간 신뢰를 쌓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역 주민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해양수산 분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7년 지역주민 대상 설문은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전인 8월에 실시하였다. 이 시기에 지역주민은 남북한 정상이 논의하여야 할 주제에 대해 선택항목별로 골고루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경제협력분야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응답하였으며, 북한 핵문제와 같은 군사적 문제와 평화체제로의 이행뿐만 아니라 공동어로, 북방한계선 문제도 고른 지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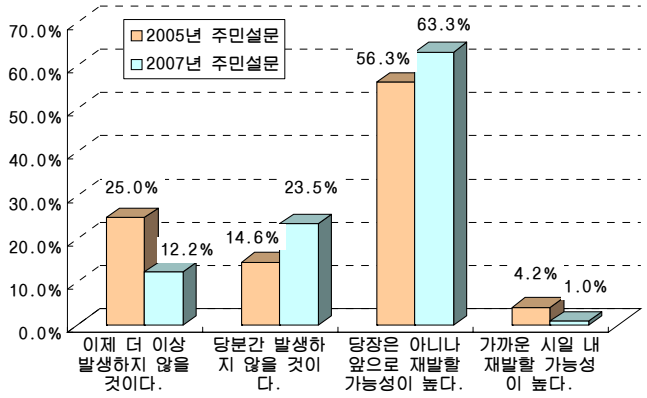
<그림 3-25>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3) NLL에 대한 남과 북의 견해차에 따른 군사충돌의 가능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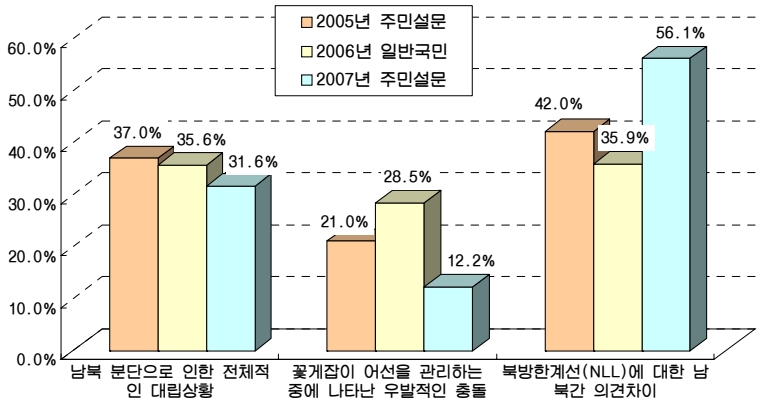
서해연안에서 1999년과 2002년 발생한 군사충돌과 관련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군사적 충돌의 재발 가능성에 대하여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과거보다 다소 감소한 반면 당장은 아니나 언제인가는 재발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이 2005년에 비해 2007년 조사에서 다소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인식변화가 크게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재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70%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6> **남북 군사충돌 재발가능성에 대한 인식변화**



2007년 지역주민 설문에서는 2005년 주민설문과 2006년 일반국민 설문에서 나타난 것보다 북방한계선에 대한 남북 간 견해차가 군사적 충돌의 이유라고 응답한 비중이 커졌다. 이는 2007년 들어 북한의 NLL 불인정 발언이 대중매체 등을 타고 과거보다 자주 등장한 때문으로 해석되며 그 외에 전반적인 남북 분단상황 때문이라는 응답은 연도별로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또한 꽃게잡이 어선관리로 발생한 우발적인 충돌이 원인이라는 응답은 이전보다 낮아졌다.

<그림 3-27> **남북 군사충돌 원인에 대한 인식비교**



(4)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 방식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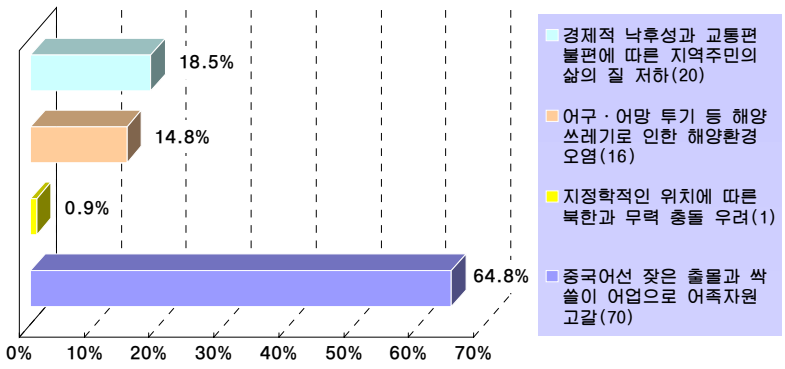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물은 설문에 대해서 지역주민은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뒤를 이어 낮은 삶의 질(18.5%)과 해양환경 오염(14.8%)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중국어선의 싹쓸이 어업의 영향에 대해 91% 이상이 매우 심각하다, 8%가 다소 심각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역주민은 중국어선의 조업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의 문제점을 물은 설문에서는 특징적으로 북한과의 무력 충돌 우려에 대해 107명의 응답자 중 단 1명만이 응답하였다. 이는 유사한 질문을 하였던 2006년 일반국민 설문에서 응답자의 20% 이상이 북한과의 무력충돌 우려에 응답하여,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43.0%)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로 생각한 것과는 매우 다른 인식이다. 또한, 2005년 전문가 설문에서 중국어선 싹쓸이 문제를 53.7%의 전문가가 그리고 북한과 무력충돌 우려에 대해 32.8%의 전문가가 응답한 결과와도 다른 양상이다.

이처럼 지역 주민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 우려를 낮게 평가한 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만성적으로 북한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노출되어 그 위험을 육지의 주민이나 전문가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설문 응답자의 60%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어족자원 고갈을 더욱 심각하게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여도 접경지역의 주민이 북한과의 무력충돌 우려를 이처럼 낮게 평가한 것은 의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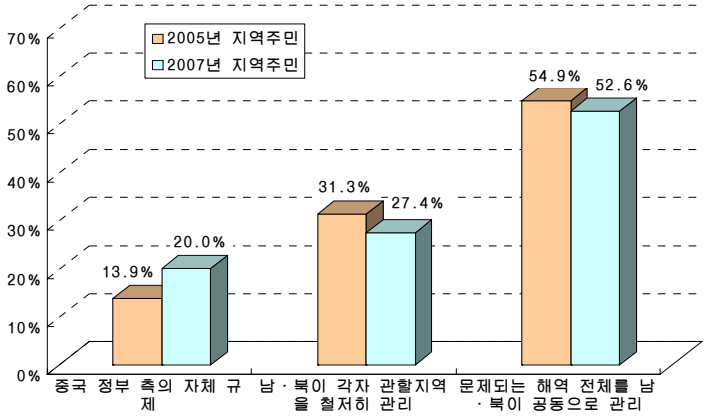
기타 의견으로는 해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래 채취가 이 지역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도 일부 주민이 기타 응답을 통해 제기하였다.

<그림 3-28>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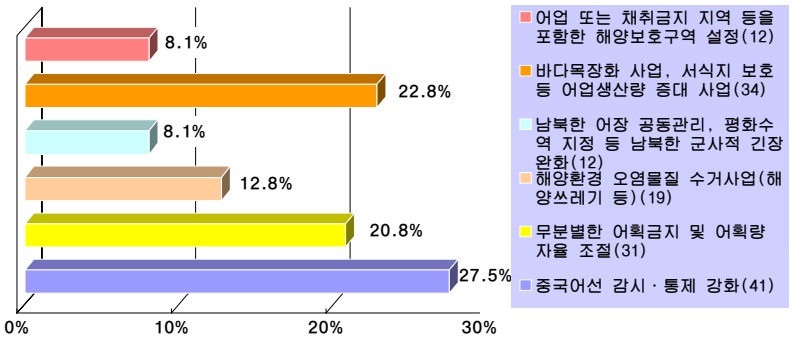


중국어선이 조업활동을 하고 있는 남북간 경계 수역에서 어로활동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2005년과 2007년의 지역주민의 인식에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절반 이상이 문제되는 해역 전체를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제안에 응답하였고, 관할지역 각자 관리와 중국 정부측의 자체 규제가 뒤를 이었다.

<그림 3-29> **남북 경계수역 어로활동 규제 주체에 대한 인식**



<그림 3-30> **꽃게자원 회복을 위한 주요 대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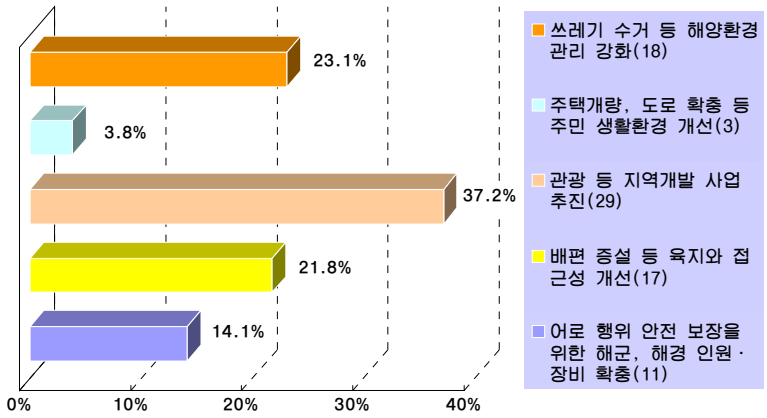


최근 급격히 감소한 꽃게의 어획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주민은 중국어선의 감시와 통제강화(28%)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뒤를 이어 서식지 관리라고 할 수 있는 바다목장화 사업 등 실시(23%), 해역 오염물질 수거사업(12%), 해

양보호구역 설정(8%) 등이 있었다. 또한, 어업강도를 조절하기 위한 어획량 자율조절과 같은 대안에도 20% 이상이 답하는 등 주민들은 어획량 회복에 대해 중국어선등 외부압력 관리를 비롯하여 대상해역 관리, 자율적 어업 등 다양한 대안과 함께 골고루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서해 접경연안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37.2%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관광 등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뒤를 이어 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 관리 강화(23.1%), 배편 증설 등을 통한 육지와의 접근성 강화(21.8%)로 나타났다.

<그림 3-31> **접경연안 정부지원 필요 분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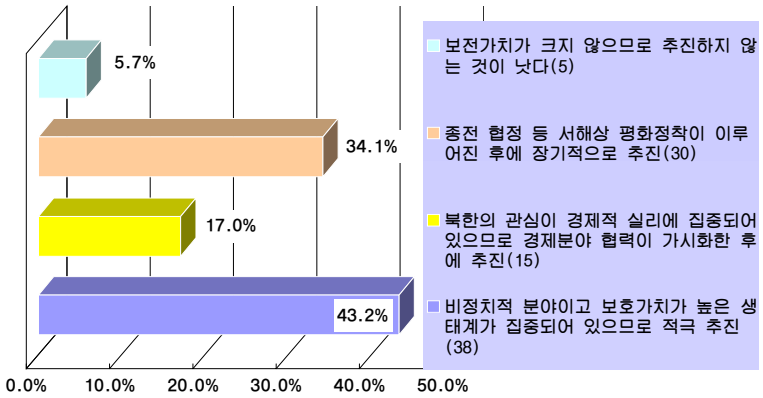


(5) 서해접경 해역의 우수한 생태계에 대한 보전 필요성 인정

서해접경 해역은 백령도의 물범을 비롯하여 한강 하구에서 다양한 희귀종이 발견되는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아직 이들 희귀생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남북이 논의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남북한 협력사업의 하나로 생태계 보전사업을 벌인다면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는지를 물었다. 우선 보전가치가 크지 않아 생태계 보전 협력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5.7%에 머물렀다. 나머지 응답자는 대부분 보전·협력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그 추진시기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생태계 보전 협력 사업이 비정치적 분야이고 이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43%이며, 평화정착이나

경제 분야 협력이 가시화된 이후에 생태계 보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50%를 넘고 있다. 즉, 응답자들이 생태계 보전이라는 대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나 보전사업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에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응답자들이 가진 우선순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생태계 보전 사업의 즉각적인 착수에 대한 지지보다 평화정착과 경제협력 이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이 해역에서 남북한 간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사업은 사업의 범위와 시기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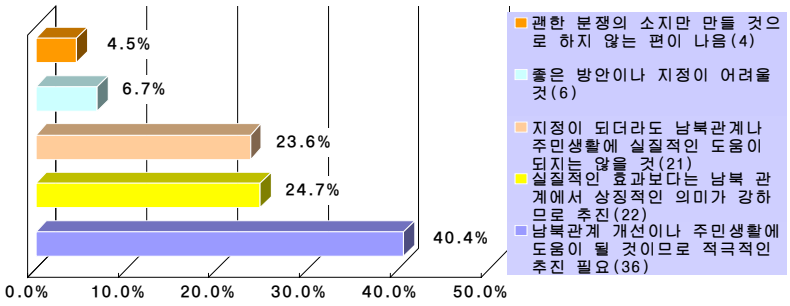
<그림 3-32> **접경해역 우수 생태계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



(6) 서해 접경연안의 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리 체제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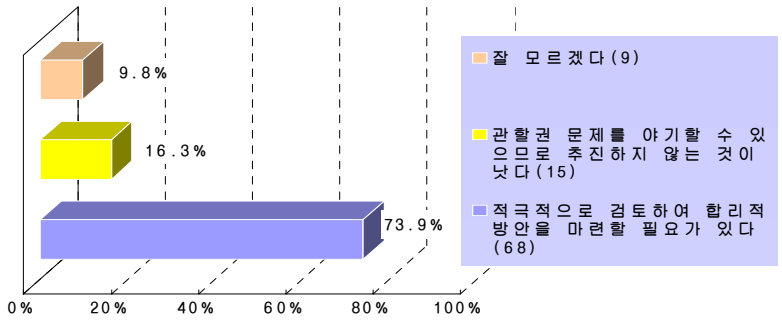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접경지역에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하는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미 2005년 연구를 통해 지역주민 설문을 한 결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에 58%가 응답하여 과반이 해양평화공원 사업을 지지하였다. 2007년 주민설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상징적 의미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65% 수준인 반면, 지정이 어렵다고 보는 의견은 10% 수준이었다. 지역주민의 대부분은 남북한이 이 지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관리 틀을 도입할 필요성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3> **해양평화공원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는 남북한 관할권 주장의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 수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연평도 북측에 있는 미력리도의 이용방안에 대한 견해이다. 즉, 양측이 모두 관할하지 않는 미력리도에 남북한 수산물 매매를 위한 일종의 해상 중간 집판장(파시)을 설정하는 방안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에서 70%가 넘는 응답자가 지지 의견을 표명하였다. 해상 중간 집판장, 이른바 파시를 설정하여 얻는 이점은 북측 선박이 잡은 수산물을 남측에서 구입하려 할 경우 굳이 북측 선박이 남측 해상경계 내로 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중간 집판장 설정은 현실적으로 남북 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해상경계선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남북 양측이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앞으로 남북 공동어로수역이 활성화하고 북측에서 잡은 수산물을 남측에서 구입하려는 경우 고려할 만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34> **남북경계수역의 해상 집판장 설정에 대한 의견**



제4장 국내외 관련 사례 및 시사점

접경지역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표현하는 다양한 명칭[54]은 최근까지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2003년 제5차 IUCN/WCPA[55] 세계보호구역회의를 통해 '접경보전(Transboundary Conservation)' 개념은 <표 4-1>과 같이 4개의 형태로 확대·정의되었다. '접경보전'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192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어온 개념이다. 또한 '접경보전' 형태 중 하나인 '평화공원(Park for Peace)'은 1932년 미국과 캐나다 접경지역 사이에 설립된 워터튼-글래이셔 국제평화공원[56]이 시초이다(Mittermeier et al., 2005).

<표 4-1> **접경지역 보전·관리 형태**

형태(Type)	정의(Definition)
접경보호구역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두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 사이의 경계에 걸쳐져 있는 육지 및 바다 지역이 국가의 주권 및 관할권을 초월하여 생물종다양성, 천연자원, 문화자원 보호 및 유지에 기여하고 법제도를 비롯한 효과적인 관리 수단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
접경보전 및 개발지역 (Transboundary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reas)	협력관리 틀에서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접경지역
평화공원 (Park for Peace)	생물종다양성, 천연자원, 문화자원 보호 및 유지에 기여하고, 특히 군사적 분쟁 및 갈등 이후 평화정착과 유지를 목적으로 지정된 접경보호구역
접경이동로 (Transboundary Migratory Corridors)	접경지역에 걸쳐져 있는 생물종 이동로

자료 : Mittermeier et al., (2005)

54) 접경지역 보전 및 관리에 대한 명칭은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Transboundary Conservation Area, Transfrontier Conservation Areas 등과 같이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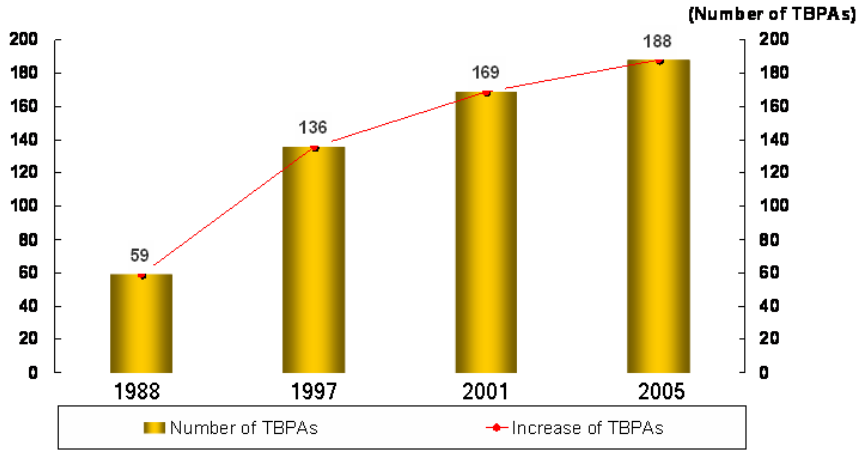
55) WCPA(World Commission on Protecte Area : 세계보호구역위원회) 각 국의 정책집행자에게 보호전략과 관리체제의 개발 등에 관한 지원을 통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을 돕고, 보호구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관임.

56) 영어로는 Waterton-Glacier International Peace Park임. 1985년 캐나다는 엘버타주 남부지역에 네 번째 국립공원인 쿠트니 호수산림 공원(미국 몬타나주와 인접해 있음)을 설립하였고, 1911년 워터튼 레이크 국립공원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음. 한편 미국은 1910년 글래이셔 국립공원(엘버타 주에 있음)을 설립하였음. 1932년 캐나다와 미국은 엘버타주와 몬타나주 간 로터리 클럽의 제안을 받아들여, 양국 간 지속적인 평화유지 및 자연자원의 협력적 관리를 목적으로 워터튼-글래이셔 국제평화공원을 최초로 설립함.

‘서해 해양평화공원’은 IUCN의 접경보호구역(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개념을 남북한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적용한 것이며, ‘평화공원(Park for Peace)’이라는 접경국가 간 협력적 관리 틀을 육상이 아닌 해양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남정호 외, 2005).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 전 세계 112개국에 걸쳐 188개의 접경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접경국가 간 공동관리 협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그림 4-1> 참조). 실례로, 이스라엘과 요르단 접경지역의 홍해 해양평화공원 프로그램이 199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프랑스 코르시카 섬과 이탈리아 샤르데냐 섬 사이의 보니파시오 해협,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사이의 술라웨시 해에서도 국제해양공원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운영 중이거나 개발 중인 접경지역 보전·관리 시스템의 사례연구를 통해 ‘서해 해양평화공원’의 성격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효과적인 추진전략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4-1> **전세계 접경보호구역 수 추이**



자료: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2005)

1. 국내 사례

1) DMZ 일원 접경보호지역 지정 : 설악산 - 금강산 국제평화공원

(1) DMZ 일원 생태계 현황과 보전 노력

DMZ[57] 일원은 비무장지대(907㎢)와 민통선 이북지역(1,370㎢), 접경지역(6,216㎢)을 포함한 지역으로 반세기 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자연생태계가 비교적 잘 보전된 지역이다. 환경부 자연환경조사(2006)에 따르면 비무장 지대에는 두루미, 흰꼬리수리 등 67종의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지정한 221종의 멸종위기종 중 30%가 비무장지대에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가 작성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의하면 비무장지대 내부 남측지역(449㎢)은 1, 2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이 87.3%로 보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비무장지대 외부 일원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75.2%(1등급 57.6%, 2등급 17.6%)로 개발과 보전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58](<표 4-2> 참조).

<표 4-2> **DMZ 내부 남측지역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단위: ㎢, %)

지역구분	총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DMZ (남측구간)	443 (100.0)	345 (77.9)	42 (9.4)	53 (12.0)	0.07 (0.0)	3 (0.7)

자료 : 환경부(2006)

비무장지대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정책이 계획·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비무장지대 내부에 대한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남북한 공동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대책'을 2005년 마련하였다. 대책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 대한 생태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생태계 조사 결과, 통일 후

57) DMZ의 전체면적은 248km×4km=992㎢이었으나, 현재는 약 907.3㎢로 축소되어 한반도 전체의 0.41%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이 각각 군사분계선 쪽으로 이동하여 DMZ가 좁아진 결과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58) 환경부 국정브리핑 2006년 7월 28일자 참고.

의 토지소유권 처리 방안, DMZ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환경부, 2005). 또한 우리 정부는 2006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목표[59] 중 '번영하는 통일국토' 의 추진전략에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과 북한개발을 위한 남북 간 협력체제 정립'을 포함하였다. 또한 세부추진 전략으로 접경지역 내 잠재력이 높은 주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지구를 지정하는 방안과 생태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통일 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건설교통부, 2006). 한편,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제2조와 제28조에 따라 유보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정부대책에 따르면 DMZ를 통일 후 2년간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다(허학영 2007)(<표 4-3> 참고).

<표 4-3>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계보전 추진 내용**

추진 내용	기 간	비 고
비무장지대 내부 생태계조사	2006～2010	· 남측구간(449㎢) 생태조사 · UNDP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북측구간을 포함한 공동조사 추진
남북공동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추진	장기과제	· 2004년 4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확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 중
비무장지대 외부 일원 (미통선, 접경지역) 생태계보전 대책마련	-	· 비무장지대 외부일원에서 이루어진 주요 개발사업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우수 습지 등은 현행법령으로 보호지역 지정
자연유보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	통일 후	· 통일 후 2년간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관리 · 이후 DMZ 전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자료 : 환경부 (2004, 2006)

59)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2006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수립됨. 5대 기본목표는 ① 균형국토, ② 녹색국토, ③ 개방국토, ④ 통일국토, ⑤ 복지국토이며, 6대 추진전략으로는 ①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②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③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④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⑤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⑥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이 있음.

<그림 4-2>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실행계획



자료 : 경기도(2007) 재정리

<표 4-4>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시 기	추진내용
2006. 8.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단기 정책연구(경기개발연구원)
2006. 9. 1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추진계획 수립
2006. 12. 14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및 관광상품개발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회의 개최
2007. 2. 14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단기정책과제 연구결과 보고
2007. 3. 6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연구용역 발주계획 수립
2007. 4. 13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관련 연구용역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2차)
2007. 5. 10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용역 실시 ※ 사업비 : 269백만원, 사업기간 : '07.5.9~'08.7.9. 연구기관: 경기개발연구원
2007. 6. 22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관련 자문회의 개최(3차)

자료 : 경기도(2007)

환경부의 이러한 계획에 발맞추어 경기도는 2006년 6월부터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였다.[60]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의 조성 목적은 분단

60) 사업 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10억원('07년 사업비 : 3억원)임. 평화생태공원 조성 대상지역은 비무장지대(DMZ 내부지역으로 휴전선 남북으로 각각 2㎞(149㎢), 민통지역

의 산물이자 세계적 생태보고인 DMZ 일원을 평화와 자연생태계가 공존하는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생태관광으로 개발하여 남북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은 중앙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DMZ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을 대전제로 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발전 기여 및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경기도, 2007).

(2) 지정여건 및 기대효과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의 핵심적 사업으로 꼽히는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 지정안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의 6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의 금강산-설악산-부산을 잇는 동해안 관광벨트 추진계획에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61]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지정을 위한 여건을 자연・환경적, 사회・경제적, 국제적 여건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허학영, 2007). 첫째,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지정여건을 분석하면 설악산 국립공원과 금강산 자연공원은 이미 IUCN의 국립공원(카테고리 II)[62]에 등록되어 있으며,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생물종다양성 및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지로서 생물학적 보존가치가 높다. 둘째, 사회・경제적 여건을 살펴보면, 설악산과 금강산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국립공원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국제평화공원 지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설악산 국립공원과 금강산 관광특구를 연계한 관광 상품은 남북한 경제협력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접경지역 보호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IUCN과 유네스코의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에 대한 관심은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 지정 및 추진에 강점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의 성공적 지정은 서해 접경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과 유사하게 한반도 평화정착, 생태계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비무장지대 생태축과 설악산과 금강산을 포함한 백두대간 생태 축 연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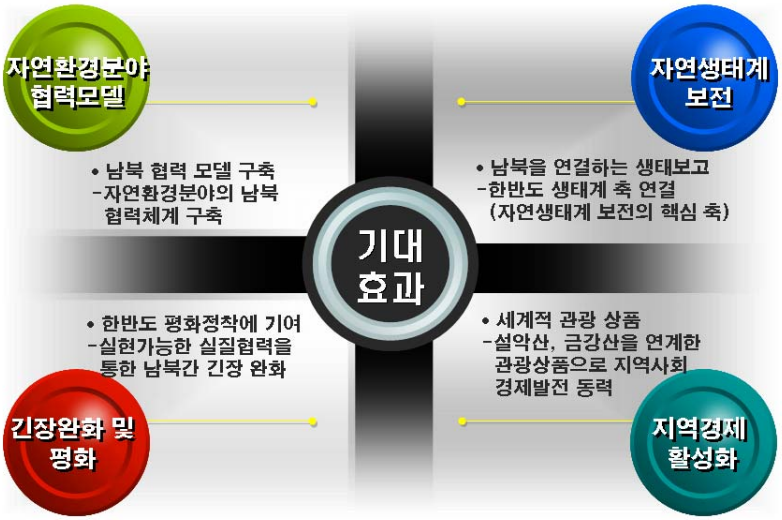
(민간인 통제선 북방지역으로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326㎢)), 접경지역(민강인 통제선으로부터 20㎞이내 지역(1,938㎢)을 포함함.

6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는 문화・관광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관광벨트 조성이 포함되어 있음. 광역관광벨트에는 목포-부산을 잇는 남해안 관광벨트, 경기만-목포를 잇는 서해안 관광벨트, 금강산-설악산-부산을 잇는 동해안 관광벨트,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평화벨트가 있음.

62) IUCN 카테고리 II 지역(국립공원) : 생태계 보존과 레크리에이션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통해 한반도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설악산 국립공원과 금강산 관광특구, 비무장지대 연계를 통한 관광 상품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연결과정에서 남북 간 협력은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다(<그림 4-3> 참조).[63]

<그림 4-3>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 기대 효과**



자료 : 허학영(2007) 재정리

(3) 시사점

최근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한 핵시설 연내 불능화를 명시한 6자 회담 공동합의문 채택[64] 등으로 남북관계는 앞으로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남북교류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에 가중되는 개발압력 또한 거세질 것이다. 특히 경제개발 위주의 남북협력 메커니즘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추진과정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과 보전 사이

63) *Ibid.*

64) 2007・10・4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공동합의문에서 북한 비핵화 2단계의 핵심인 핵시설 불능화를 미국의 주도하에 올 연말(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함. 또한 북한은 올 연말까지 2・13 합의에 따라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고, 핵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북한과 미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함.

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육상에서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한 국제평화공원 조성은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군사 철조망이 철거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일이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 지정에 대한 남북한의 공동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먼저 남한과 북한의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현황 자료를 총체적으로 포괄한 통합적 인벤토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자료의 축적은 통일 이후 한반도 자연생태계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략개발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다.[65]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 설립의 궁극적 목표는 남북한 환경협력을 통한 한반도 생태계보전 및 평화정착, 주요 생태축 연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이는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의 지정 목표와 동일하므로, 앞으로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과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간 공동협력사업 또는 트위닝프로그램(Twinning Program)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두 프로그램 간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외사례

1) 홍해 해양평화공원

(1) 아카바 만의 자연환경 특성

홍해 해양평화공원은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아카바 만에 지정되었다. 아카바 만(the Gulf of Aqaba)[66]은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가 인접해 있고 과거 아랍국가 간 갈등의 중심지로 2차[67], 3차[68] 중동전쟁

65)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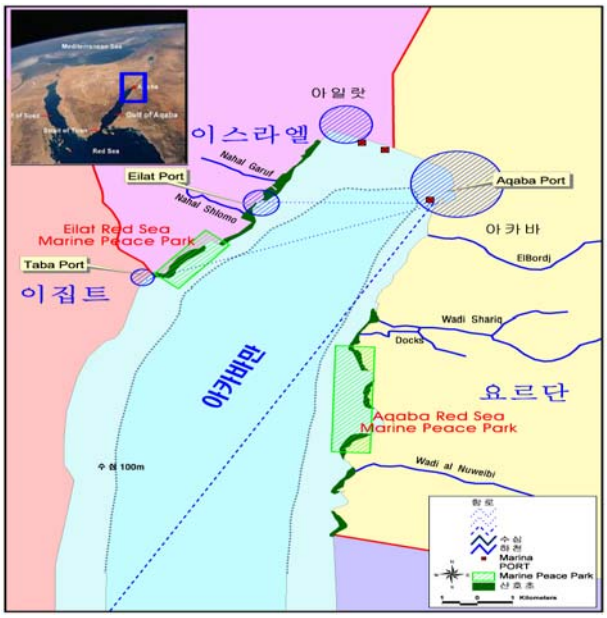
66) 아랍어로 Khalij al ‘Aquabuh 라 불리는 아카바 만(the Gulf of Aqaba)은 요르단에서 불리는 지명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아일랏 만(the Gulf of Eilat)이라고 부름.

67) 제2차 중동전쟁은 요르단, 이집트 등 아랍 국가들이 심각한 정치변동과 함께 이스라엘과 본격적인 갈등을 야기함. 이집트의 나세르는 아랍민족주의를 결성하기 위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고 아카바 만을 봉쇄함.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프랑스와 영국과 함께 시나이 반도를 침공하여 5일 만에 시나이 반도의 대부분을 획득함. 그러나 유엔의 개입과 압력으로 이스라엘은 1956년 휴전권고를 받아들이고, 1957년 시나이와 가자지구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함.

68) 제3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과 대결을 통해 아랍의 결속강화를 꾀하고자 했던 이집트의 나세르대통령이 1967년 티란 해협과 아카바 만을 봉쇄하고 이스라엘 선박통과를 금지시키면서 발발하였음. 이스라엘은

이 발발하였다. 아카바 만은 길이 180km, 평균 폭 16km(최대 폭 24km), 평균 수심 900m(최대 수심 1,850m) 정도의 좁고 긴 협만으로 남서쪽 만 입구에서 홍해와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이스라엘 환경부, 2002).

<그림 4-4> **아카바 만의 지리적 개관**



자료 : 이스라엘 외무부 홈페이지(http://www.mfa.gov.il)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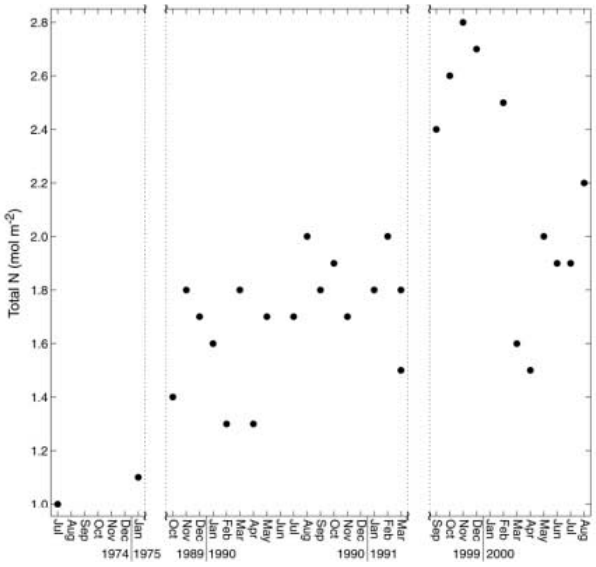
특히 이 지역은 산호 생장조건에 적합하여 수많은 종류의 산호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중동지역 산호서식의 북방한계선이다(Crosby et al., 2000). 주변 서식 한계선 보다 고위도인 아카바 만에 산호가 서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해수내 부유물질과 파랑의 영향이 적고 산소가 풍부하여 산호 서식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Downie et al., 1996). 아카바 만의 산호생태계는 다른 해역의 산호 서식지처럼 단일종이 우점하는 것이 아니라 총 48속 130여종[69]의 다양한 산호류가 어우러져 보초(堡礁) 형태로 발달해 있고, 이 보초를 서식지로 각종 미생물, 해면동물, 강장동물, 연체동물, 환형동물(갯지렁이류), 극피동물(성게류), 절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에 선제 기습공격을 감행함에 따라 이집트로부터 시나이 반도 전부와 가자지구를 획득하였고, 시리아로부터는 골란고원을, 요르단으로부터는 요르단강 서안과 예루살렘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홍덕규, 2003).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6일 전쟁이라 함.

69) 이 중 연산호 종류는 10종, 돌 산호는 120여종임.

동물(갑각류) 등의 많은 무척추 동물과 상어를 비롯하여 1,000여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회유성 어종인 참치와 가다랭이뿐만 아니라 매부리 거북이와 각종 텃새의 서식지 및 철새도래지로 유명하다. 그러나 현재 아카바 만의 산호 생태계는 생활오수, 항구 및 양식장 등에서 발생한 영양염의 유입증가로 종다양성 및 서식지 범위가 각각 50%씩 감소할 정도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며, 산호 유생의 착생률 저하뿐만 아니라 산호사망률도 증가하고 있다(Crosby et al., 2002). 아카바 만의 영양염 중 총질소는 1974년부터 30년 동안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그림 4-5> 참조).

<그림 4-5> **아카바 만 총질소 변화(1974~2000년)**



자료 : Atkinson et al.(2001)

(2) 아카바 만의 사회경제적 특성

아카바 만의 배후지인 요르단의 아카바와 이스라엘의 아일랏은 양국의 주요 항만도시로서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물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산호초를 관광상품으로 특화하여 국제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아일랏은 이스라엘에서 홍해, 인도양, 극동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지리적으로 아카바 만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요르단의 아카바와 인접해 있다. 아일랏의 주요산업은 관광과 물류산업으로, 수십 개의 호텔과 컨테이너 적재시설이 입지해 있다. 그러나 중동

평화 정착과 함께 이스라엘 선박의 수에즈운하 통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항만의 활용도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투자까지 감소하여 지역경제 또한 전반적으로 침체되게 되었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도시민의 이주 및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추진하였고, 1985년 아일랏 자유무역지대(Eilat Free Trade Zone)를 조성해 주거단지,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과 1994년 '이스라엘-요르단 평화협정' 이후 조성된 평화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깨끗한 수질과 수려한 산호군락을 활용하여 이 지역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하였다.

한편, 아카바 만은 요르단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국과 교역이 가능한 요르단 유일의 항구도시이다. 1950년까지만 하더라도 작은 마을이었던 아카바는 1952년 아카바 항이 조성된 이후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걸프전 당시 이라크는 아카바 항을 통해 석유 및 기타 교역물품을 수송하였는데[70], 걸프전의 패배와 유엔의 제재로 아카바 항을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요르단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요르단 평화협정 체결 이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유무역지대가 조성되었다(Kliot, 1997)[71].

(3) 지정배경 및 과정

홍해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요르단 평화협정(The Jordan-Israel Peace Treaty)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평화협정문[72]은 서문, 30개 조항, 4개 부속서, 전문해설 부록(4개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에서 아카바 만에 관한 부분은 총 6개 조항과 부속서 제4조에 나타나 있다. 관련 6개 조항은 아카바 만에 현존하는 무력 철수(제3조), 아카바 만 항행의 안전・자유 보장(제14조), 관광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제17조), 환경보호 및 개선(제18조), 에너지 공동이용(제19조), 그리고 아카바/아일랏 공동개발(제23조)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제4조[73]에는 아카바 만의 환경개선과 산호생태계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

70) 아카바는 이라크의 주요 교역 항으로 이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라크의 중심지가 페르시아 만보다 아카바 만에 인접해 있기 때문임(Gradus, 2001).

71) 2004년 기준 아일랏의 인구는 44,500명이며, 아카바 만의 인구는 110,000명 임.

72) 평화협정의 전문 및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은 http://www.kinghussein.gov.jo/peacetreaty.html 참조.

73) 부속서 4조는 크게 4가지(A~D)로 구분되어 있음.
4.A는 각 국가의 국민, 자연 및 환경 자산을 보호・보전하기 위한 양국간의 지속적인 공동협력을 강조하는 협력의 범위 및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4.B는 공동협력의 분야를 다음 4가지로 세분하고 있음: 첫

홍해 해양평화공원(RSMPP : Red Sea Marine Peace Park) 설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1996년 1월에 채택된 아카바-아일랏 특별협약(Agreement on Special Arrangements for Aqaba and Eliat)에 나타나 있다. 이 협약은 이스라엘-요르단 평화협정(1994. 10) 체결 당시 이행 합의사항으로 채택한 '아카바 만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방안 수립'[74]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양국간의 협약이며, 양국이 산호군락 보호구역을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실효적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협약은 크게 환경보호, 지역발전, 평화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보호 부문에 산호생태계 보전을 위한 RSMPP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홍해 해양평화공원의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였고[75], 산호 생태계 관리를 위해 양국 협력의 원칙 아래 조사연구계획 수립과 국제 연구기관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및 보완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지역발전 부문에는 '양국 특별경제구역(Bi-national Special Economic Zone)' 설치 및 운영과 산호군락 관광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화부문에는 환경보호와 지역발전부문에서 이루어진 공동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사이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째, 환경영향평가 도입 및 환경 기초자료 공유를 포함하여 환경 계획과 관리분야의 공동협력, 둘째, 환경관련 법규정 및 표준제정을 위한 공동 노력, 셋째, 환경조사 연구 및 표준 정립, 마지막으로 환경재앙에 대한 비상/경감 대응체제 공동구축.

4.C는 환경관리 주요사안을 명시하고 있음: (1) 자연자산 및 생물다양성 보존 (2) 대기관리 (3) 해양환경관리 (4) 폐기물관리 (5) 전염병 및 위생 관리 (6) 오염관리 (7) 사막화 관리 (8) 공공인식 및 환경교육 (9) 소음관리.

4.D는 공동노력이 절실한 2개의 관심 지역을 명시함. 첫째(4.D.I)는 아카바 만이고 둘째(4.D.II)는 요르단 협곡임.

아카바 만(4.D.I)에서는 다시 환경개선 및 보호와 연안통합관리 적용 및 대상구역을 명시함. 즉, 아카바 만의 환경개선 및 보호부문에는 자연자원, 산호초관리, 해양오염저감(유류오염, 폐기물 및 쓰레기 투기, 육상기인오염물질 대상)을 강조하고 있음. 연안통합관리 대상 부문에는 자연보호구역(보호구역 포함), 수자원 보호, 해양 고형/액체 폐기물, 관광자원관리, 항만 및 물류 체계, 공단 및 발전소, 대기 질 관리, 유해물질관리, 환경영향평가 등을 명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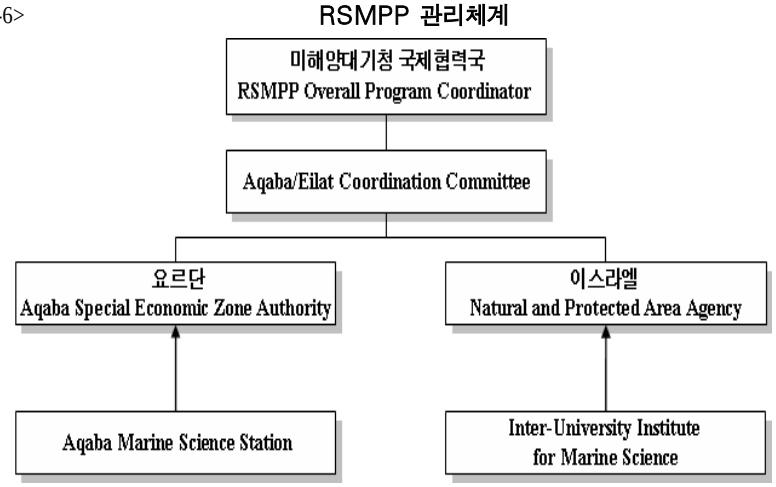
74) 이스라엘-요르단 평화협정서에는 '해양평화공원'이라는 명칭은 나타나 있지 않음. 단지 평화협정서 제18조에서 환경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세부사항을 부속서 4조에 명시하였음. 부속서 4조에는 아카바 만의 '해양환경 보호'와 '연안통합관리 원칙' 적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해양환경 보호 내용 중 아카바 만의 산호초 보호(Coral Reef Protection)가 명시되어 있음.

75) 요르단은 아카바 시 인근의 산호초 지역 중 연안을 따라 7km를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아일랏 시 남단부터 이집트 Taba 시 인근지역까지 4km의 '해양보호벨트'를 지정하였음. 요르단의 경우 '홍해 해양평화공원'의 지리적 위치가 대외적으로 공표된 것은 1997년 7월 29일임.

(4) 운영 및 성과

평화협정과 특별협약을 바탕으로 설립한 RSMPP는 USAID/MERC의 자금지원[76]으로 1999년에 시작되었다. 관리감독은 미해양대기청 국제협력국에 설치된 RSMPP Overall Program Coordinator가 담당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사업예산 관리 및 사업계획에 필요한 기술자문, 연차 보고서의 승인을 담당한다. 또한 두 나라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아카바/아일랏 조정위원회(Aqaba/Eilat Coordination Committee)를 구성하였고, 지역담당 조직으로 요르단의 Aqaba Special Economic Zone Authority (ASEZA)와 이스라엘의 Natural and Protected Area Agency(NPA)가 협력관리와 공동연구에 대한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남정호・강대석, 2003). ASEZA와 NPA는 RSMPP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관리조직으로 연구・모니터링 정보수집관리, 정책개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이행 등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카바만 산호생태계에 대한 연구는 요르단의 Aqaba Marine Science Station(Aqaba MSS)과 이스라엘의 Inter-University Institute for Marine Science(IUI-MS)에서 담당하고 있다(<그림 4-6> 참조).

<그림 4-6>



자료: Crosby *et al.*(2002)에서 재구성.

76) USAID/MERC의 기금 지원은 3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프로그램 첫 해에 약 1백만 달러, 나머지 두 해에 걸쳐 나머지 1백만 달러가 지원됨(Crosby *et al.*, 2002).

RSMPP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인한 주요 성과로는 <표 4-5>에서 같이 국제적 수준의 자료집 발간, 현장조사 수행을 위한 공동조사 방법론 개발, 효율적 자료 관리를 위한 공동지침 마련, 합동회의와 워크숍 개최, 공동현장조사, RSMPP 웹사이트 개설, 2000년 IUCN-World Conservation Congress에서 주요 의제로 선정된 것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홍해 해양평화공원 프로그램의 단기적 성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조직, 조사방법론, 교육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용행위 조정기반 구축,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산호 서식지 지도 구축 등 실질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9～2001년간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관리자와 과학자 간 의사소통 증진 및 협력관계 개선, 교육・홍보 프로그램 강화, 연구조사 및 관리에서의 의사결정과정 통합 등 세 가지 부분에서 큰 성과를 두었다(Crosby *et al*., 2002). 또한 홍해 해양프로그램은 요르단의 아카바 만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요르단은 아카바만 해양평화공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카바 특별경제구역법' 내 '아카바 해양공원 조례'[77]를 2001년 마련하였으며, 용도구역제(Park Zoning)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아카바-아일랏 특별협약에 바탕을 둔 홍해 해양평화공원 프로그램은 지역경제 발전 및 평화정착에도 기여해오고 있다.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국제공항(아카바 평화공항) 건설과 운영, 물류시설 확충, 무역자유도시(아카바, 아일랏) 지정・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공동협력관리 원칙에 따라 협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이는 항만 물동량[78]과 국제관광객의 수[79]를 증가시켜 고용기회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가져다주었다(Gradus, 2001). 더 나아가 RSMPP 프로그램의 상호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강력해진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중동지역의 안전보장과 평화정착에 이바지하고 있다.

---

77) 이 조례는 해양공원의 공간적 범위, 관리목표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아카바 해양공원위원회(Aqaba Marine Park Committee)의 구성, 의무,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이 조례에서는 연차별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공원관리자의 역할, 교육인식제고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공공/민간부문간 협력과 조정, 공원이용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음(ASEZA, 2001).

78) 아일랏 항의 경우 물동량이 1993년 1,374천톤이었으나, 1994년에는 전년 대비 17.7% 증가한 1,618천톤, 1998년에는 1,668천톤으로 증가하여, 1994년 이후 연평균 5.2%씩 증가하고 있음. 아카바 항의 경우 1993년 물동량이 10,572천톤이었으나, 1994년에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11,756천톤이었고, 1994～1998년간 연평균 4.9%씩 증가하였음.

79) 아일랏의 경우, 아일랏 항을 통해 유입된 관광객 수는 1998년 기준 19만 6천명으로 평화협정 체결 이전인 1993년 대비 42% 증가함. 아카바 지역도 마찬가지로 1998년 관광객 수는 1993년 대비 50% 증가한 8만 8천명이었음.

<표 4-5> **RSMPP 프로그램의 부문별 성과**

구분	내용
공동관리	· 관리계획 수립(Eilat Coral Reserve 관리계획, Aqaba Marine Park 관리계획) · 해양평화공원 관리규정 집행 - 아일랏: 산호지대에 대한 대중접근 강도를 현 수준보다 30% 감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시행 - 아카바: 아카바해양공원의 새로운 규정신설 · 산호지대 관리, 관광기반시설 정비, 용도구역제 - Eilat Coral Reserve의 11개 접근로 개설, 접근제한 표시용 부표 설치, 교통부의 감독관리 지원 - Aqaba Marine Park의 방문객센터 개설, 용도구역제 실시, 지역 다이버센터와 환경단체와 함께 부표 설치 · 산호 생태계 복원 - Eilat Coral Reserve내 산호지대 50㎡ 복원
교육·홍보	- 인식제고 · Eilat Coral Reserve: RSMPP 설명회 실시(대학, RSMPP 파트너, 환경부, 해양·육수연구소 참여), 관광업자와 비공식적 회의 개최, 환경부와 NGO간 협력전략 개발, 관광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 Aqaba Marine Park: NGO와 연대(Jordan Royal Ecological Diving Society) · RSMPP 웹사이트 개설 · 산호와 해변 청소 · 산호 모니터링 자원봉사
연구·모니터링	· 수질, 저서생태계 모니터링 · 산호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화학적 요인 연구 · 산호초 군집대사 연구 · 산호의 호흡률에 대한 수온 영향 · 산호유생의 착생에 대한 퇴적물 영향
자료·GIS	· 자료관리지침 개발 · 산호 및 저서생태계 GIS 구축

자료 : Crosby *et al.*(2002)

(5) 시사점

아카바 만은 중동의 분쟁과 갈등의 중심에서 해양평화공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이스라엘-요르단 양국 간 경제 및 환경 부문에서 협력을 증진시켰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과 평화정착을 가져왔다. 서해연안 접경지역 또한 중동의 아카바 만과 같이 해상경계 획정 문제 및 수산자원 관리문제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해양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남북한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RSMPP 프로그램은 아카바 만의 산호생태계를 보존·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아카바 만 인근 4개 국가는 산호생태계 보호에 관한 인식 수준이 서로 달라,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산호생태계를 보존·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RSMPP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산호생태계의 위협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서해 연안 접경지역은 남북한이 지난 40년 동안 진행한 연안개발의 영향을 받지 않아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생태가 매우 양호하다. 그러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남획, 해양쓰레기 문제 등으로 최근에는 꽃게를 비롯한 각종 수산자원의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위협받고 있는 해양생태계의 보고를 해양평화공원으로 지정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한다면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아일랏과 아카바 인근에 홍해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하여 양 도시를 산호 전문 국제관광도시 및 국제물류 중심지로 거듭나게 했다. 서해연안 접경지역 또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인천, 해주, 개성 등을 배후도시로 두고 있어, 해양평화공원 지정 이후 생태관광 지구 조성, 경제특구 건설, 해운·항만단지 개발 등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장(場)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2) 지중해 보니파시오(Bonifacio) 국제해양공원

(1) 보니파시오 해협(Bonifacio Strait) 인근 개관

코르시카 섬(프랑스 령)[80] 남서쪽 해안에서부터 보니파시오 해협을 거쳐 샤르데냐 섬(이탈리아 자치주)[81] 동쪽 해안에 이르는 지역은 지중해에서 사회·경제

80) 코르시카 섬(면적 : 8,681㎢)은 지중해 북부 샤르데냐 섬과 북쪽 보니파시오 해협 사이에 있는 프랑스 령 섬임. 주도(州都)는 아야쵸임. 북서부에는 친토산(2,710m) 등의 해발고도 2,000m를 넘는 산지가 이어지며, 1년의 반은 눈에 덮여 있으며 대부분의 산지와 구릉지대는 마키라고 하는 관목림으로 덮여 있음. 8~10세기에는 여러 번 이슬람 국가들에게 점령당하였으며, 코뮌시대를 지나 14세기부터는 제노바가 지배하였음. 1768년 제노바가 프랑스에 섬을 매각함. 농목업이 주요산업이며, 여름에는 강수량이 적어 곡물보다는 포도·감귤과 같은 과일을 생산하며, 염소·양의 방목과 양잠업이 이루어짐. 광물자원으로는 안티몬, 구리, 무연탄, 대리석 등이 산출되며, 염전에서 소금도 채취됨. 식품가공업을 제외한 공업은 아직 발달하지 못한 상태임.

81) 샤르데냐 섬(면적 : 2만 4,089㎢)은 이탈리아 반도 서쪽 해상에 있는 지중해 제2의 섬임. 이탈리아의 한 주(州)를 이루며, 주도(州都)는 칼리아리임. 대지상(臺地狀) 섬으로 최고점은 중앙부 동쪽의 마르모

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참다랑어, 방어, 황새치와 같은 원양어종이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동・식물군(Fauna & Flora)의 생물종다양성이 잘 보존되어 있다. 또한 가파른 바위절벽, 작은 섬과 만, 길게 뻗은 해변과 모래 언덕은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온다. 코르시카(Corsica) 섬과 샤르데냐(Sardinia) 섬의 주요산업은 농목업과 수산업이다. 아직까지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휴가용 주택건설, 관광・레저시설 개발, 연안도시 확충 등으로 해양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또한 주낙(longline)을 이용한 무분별한 어업활동으로 매년 수백 마리의 바다거북이들이 혼획(By-catch)되고 있다(IUCN, 2004).

<그림 4-7> **보니파시오 해협 위치**



자료: Microsoft(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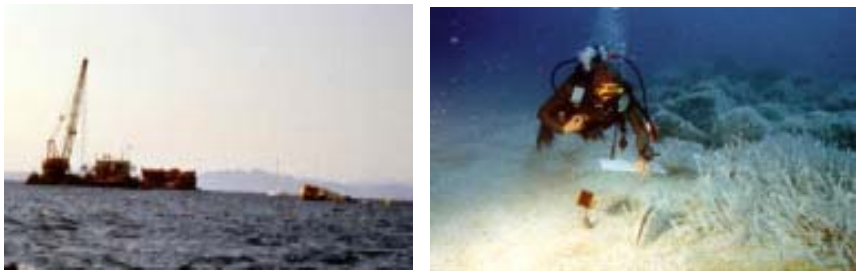
한편 보니파시오 해협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82]에서 규정한 국제항해에

라산(1,834m)이며, 남서부에는 캄피다노 저지가 펼쳐져 있음. 전형적인 지중해식 기후로 여름에 온도가 높고 건조하기 때문에 해안이나 강유역의 관개 경작지에서 과수가 재배되며, 대체로 염소나 양 등이 방목될 뿐 농업은 발달하지 못했음. 수산업이 중요하며 참치, 바닷가재, 정어리 등이 주로 생산됨. 갈리아리 부근의 소금 채취, 납, 주석, 망간 등의 광업 이외에는 이렇다 할 경제활동이 없는 지방이었으나, 1950년대 이탈리아 정부의 개발정책으로 갈리아리를 중심으로 공업화가 진행되어 석유화학공업, 식품가공업이 발전하게 됨.

82) 영어로는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임.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

이용되는 해협[83]으로서 매년 3,800척의 선박이 이곳을 통과한다. 이로 인해 이곳의 연안·해양환경은 선박기인 오염원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니파시오 해협 라베찌(Lavezzi) 섬의 주변 환경은 구호식량으로 쓰일 2,650톤의 곡물을 싣고 프랑스에서 알바니아로 향하던 펜스호(Fenes)의 침몰로 인해 1988년부터 보호 종으로 지정·보호되어 오던 포시도니아(Posidonia)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3.9 ha의 포시도니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2,500㎡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Cedre, 2006).

<그림 4-8> **보니파시오 해협 선박기인 오염 사례**



펜스호 인양작업 모습　　밀로 덮인 포시도니아 모습

자료 : Cedre(2006)[84]

(2) 지정배경 및 목적

보니파시오 국제해양공원은 프랑스령 코르시카 섬 남쪽 부근, 이탈리아 샤르데냐 섬 북쪽 부근, 보니파시오 해협 어귀를 포괄한 80,000㎢ 지역에 설립될 예정이다(<그림 4-9> 참조). 양국 간 접경지역(보니파시오 해협을 포함)을 국제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위한 두 국가의 노력은 1986년부터 시작되었다. 1986년 11월 28일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보니파시오 해협 상의 해상경계 획정에 합의하였고, 1992년 10월 양국의 환경부 장관은 이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였다. 프랑스 쪽에서는 세 개의 자연보호구역(보니파시오 어귀, 케르비칼레 섬, 트레 파둘레 섬)이 국제해양공원 지역에 포함된다. 프랑스 자연보호구역의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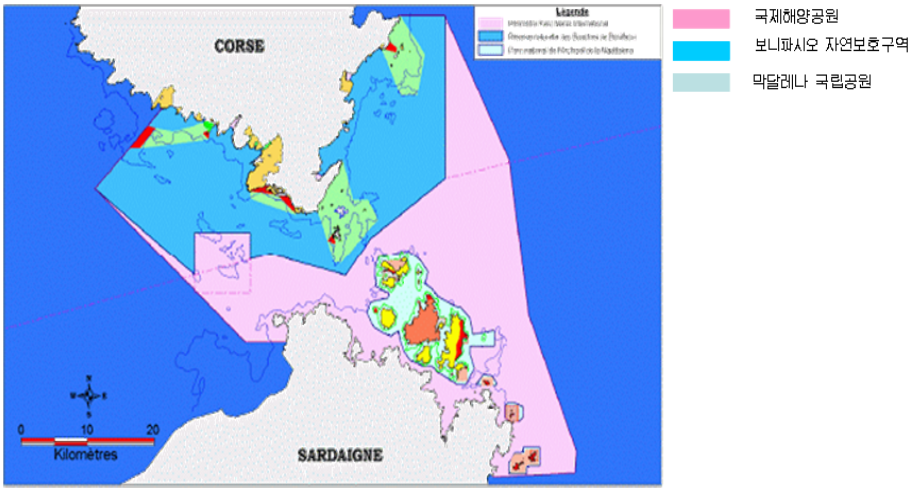
카 몬테고 베이에서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협약으로서 320개의 조문과 8개의 부속서, 4개의 결의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1996년 1월 29일 가입하였으며, 1996년 2월 28일부터 협약을 발효함.

83)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84) http://www.cedre.fr/uk/spill/fenes/fenes.htm 참조.

면적은 치아파(Chiappa) 꼭대기에서부터 몽크(Monks) 꼭대기까지 약 8만 에이커이며, 1천 6백 에이커에서는 채취 및 사냥과 어업이 금지되어 있다. 허용된 어업 및 상업 활동은 보니파시오 어업관할청(Local Fishing Authority)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탈리아 쪽에서는 막달레나 국립공원을 포함한다. 막달레나 국립공원은 1996년 설립되었고, 1998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총 표면적은 20,180ha (육지표면: 5,134ha, 바다표면: 115,046ha, 해안: 180km)이다.[85]

<그림 4-9> **보니파시오 국제해양공원 지정 위치**



자료 : IUCN(2004) 재정리

또한 1992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두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가 제안한 '국제해양공원 설립' 계획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유럽 INTERREG III[86]과 '동·식물군 종 보호에 관한 서식지 지령[87]'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 라이프 프로그램(Life Program)으로부터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IUCN, 2004).

---

85) IUCN, *The International Marine Peace Park of the Mouths of Bonifacio*, 2004.

86) INTERREG III : Interreg III(2000~2006)는 EU의 지역 간 협력증진을 위한 커뮤니티 이니셔티브로서, 유럽지역은행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음. 또한 Interreg III 이니셔티브는 접경국가 간, 다국가 간, 지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대륙의 균형발전을 장려함으로써 EU 국가 간 경제적, 사회적 결합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 특히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외딴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interreg3/index_en.htm 참조).

87) '동·식물군 종 보호에 관한 서식지 지령' — The Habitat 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the Species of Fauna and Flora.

두 국가는 앞으로 국제해양공원 메커니즘을 통해 연안개발, 관광산업 개발, 선박운항으로 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코르시카와 샤르데냐 접경지역의 환경보호 및 보존을 위해 두 국가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지역 고유종 보존, 해양생물 모니터링, 서식지 보존 및 복원, 다양한 과학기반 공동연구조사 활동이 있다(<표 4-6> 참조).[88]

<표 4-6> **국제해양공원을 통한 협력분야**

번호	내 용
①	지역 고유종 보존
②	연안·해양 종 모니터링
③	조류 번식지를 위협하는 외래종 모니터링
④	외래 해양어종 모니터링 및 연안환경 비교·분석
⑤	어종 모니터링 및 지속가능한 쿼터 이용에 관한 연구
⑥	해양조류 모니터링
⑦	부유장치의 종류 및 부유장치가 생태계·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⑧	관광 인프라 연구
⑨	수생동물 구조활동
⑩	모래언덕 경계설정
⑪	지도제작(지형, 생물군집)

자료 : IUCN(2004) 종합정리

(3) 지정을 위한 법·제도적 틀

코르시카 섬과 샤르데냐 섬의 접경연안과 보니파시오 해협 사이를 국제해양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법·제도적 틀을 강화해오고 있다. 프랑스 중앙정부는 코르시카 지방정부와 합의하여 보니파시오 자연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코르시카 환경사무소(Office of the Environment of Corsica)를 1999년 9월 설립하였으며, 이탈리아 정부는 막달레나 군도 및 인근의 작은 섬들을 관리하기 위해 1994년 샤르데냐 자치정부와 함께 국립공원을 설립하였다. 이와 같이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이 양국 모두에 설립되었으므로 앞으로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한다면 국제해양공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통합관리시스템을

88) IUCN/WCPA,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Task Force-La Maddalena Specialists Workshop Report”, 2004 참조.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개 이상의 접경연안국가(프랑스, 이탈리아)의 공동협력을 기반으로 설립될 보니파시오 국제해양공원의 지정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니파시오 해협의 해상교통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프랑스 페라투사토의 세마포르(Semaphore of Pertusato)와 막달레나 해양경비대 기지 내에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모니터링 시설을 통해 양국 해양경비대의 해양환경보호활동, 어업활동 및 선박교통 서비스 감시, 수색 및 구조 활동 등이 과거에 비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 양국의 해안경비대는 해상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필요 시 해군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군은 유럽항공국(European Space Agency)의 지원을 바탕으로 일반감시 및 환경·제도적 원거리 감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89]

한편 해상항해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부는 10년 전부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양 국가는 1993년 유해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의 보니파시오 해협 통과를 금지하는 법령을 각각 발효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1982) 제42조 '통과통항[90]에 관한 해협연안국(States bordering straits)의 법령'에 따르면 항해의 안전과 해상교통의 규제 및 해협에서의 유류, 유류폐기물 및 그 밖의 유독성물질로 인한 오염의 방지와 통제를 위해 해협연안국은 통과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법령의 적용에 있어 연안해협국은 외국 선박을 형식적이건 실질적이건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외국선박의 통과통항권을 부정하거나 방해 또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91] 따라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제정한 '유해물질을 실은 선박의 통과 금지'에 관한 국내법을 외국 선박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자국의 선박들에 한해서 해당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 법의 실행을 통해 중형급 오일 탱크를 실은 선박의 수는 1992년 950척에서 1993년 300척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유해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의 수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92]

---

89) IUCN, *Security Considerations in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Transboundary Conservation Areas*, 2006, PP. 21~28.

90) 통과통항(Transit Passage)이란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간의 해협을 오직 계속적으로 신속히 통과할 목적인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행사함을 말함(외무부, 1996).

91) 유엔해양법 협약 제38조(통과통항권: Right of transit passage) 참조.

92) *Ibid.*

<그림 4-10> **보니파시오 해협 해상교통 규제 지역**



자료: IUCN(2004) 재정리

(4) 국제해양공원 지정의 국제법적 관리체제

국제해양공원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인근 지중해 연안국가 및 보니파시오 해협을 이용하는 제3국들의 연안·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관할권을 넘어 공해 및 해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통합관리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지중해 특별보호구역 및 생물종다양성에 관한 의정서(Protocol Concerning Specially Protected Areas and Biological Diversity)'는 보니파시오 국제해양공원의 지정과 운영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제공한다. 이 의정서는 '지중해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바르셀로나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Mediterranean Sea against Pollution)'[93]의 6개 부속의정서 중에 하나로서 1996년 바르셀로나에서 체결되었으며 해당지역의 법적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지중해 연안과 해양에 적용된다.

'지중해 특별보호구역 및 생물종다양성에 관한 의정서'는 지중해 생물종다양성 보존, 서식지 및 멸종위기에 처한 종 보호, 과학적·심미적·교육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주요 지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지중해 특별보호구역 목록(이후부터

93) 바르셀로나협약(1976)은 지중해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선박과 항공기에 의한 해양투기, 선박기인 오염, 대륙붕과 해저개발로 인한 오염, 육지오염 등 포괄적인 오염원을 규제하고 있으며, 선박과 항공기의 덤핑으로 인한 지중해 오염방지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하여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현재 22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협약의 세부내용은 http://www.unepmap.org/index.php?module=content2&catid=001001004 참조.

SPAMI List로 칭함)[94]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지역을 SPAMI List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국은 해당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 환경적 특성, 법적 지위, 관리 및 실행계획 등을 포괄한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모든 협약 당사국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단 SPAMI List에 포함되면, 모든 회원국들은 적합한 보존 및 보호 활동을 수행할 의무를 부여받는다.[95]

또한 '지중해 특별보호구역 및 생물종다양성에 관한 의정서' 제28조[96]는 특별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해 제3국과 국제기구가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의정서의 원칙과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협약 당사국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니파시오 국제해양공원 구역이 SPAMI List에 포함되게 되면 인근 지중해 연안 국가들뿐만 아니라 보니파시오 국제해협을 이용하는 제3국 역시 해양환경 보존 및 보호를 위한 협력과 지원요청에 협력해야 하는 국제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SPAMI List에 보니파시오 국제해양공원 지역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중해의 복잡한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인근 연안 국가들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지중해 면적의 85%가 여전히 공해상태로 남아있다(IUCN, 2004). 유엔해양법협약(1982)에 따르면 공해[97]는 특정국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으며 모든 국가에 개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해의 자유(① 항행의 자유, ② 상공비행의 자유, ③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 부설의 자유, ④ 인공섬 및 기타 시설 건설의 자유, ⑤ 과학조사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공해의 특성상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해양오염 규제를 위한 자국법과 규칙을 영해 밖에 있는 외국선박에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94) a List of Specially Protected Areas of Mediterranean Interest : SPAMI List. 현재 17개 지역이 SPAMI List에 포함되어 있음(UNEP, 2007).

95) http://www.rac-spa.org/carasp.php?id_page=48 참조.

96) 제28조의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The Parties shall invite States that are not Parties to the Protoco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cooperate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2. The Parties undertake to adopt appropriate measure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o ensure that no one engages in any activity contrary to the principle or purpose of this Protocol.

97) 공해는 특정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영해・내수 또는 군도 수역에 속하지 않는 바다의 부분을 말함. 공해는 상부수역 및 바다 위를 뜻하며, 공해의 해저는 심해저(Deep Sea-bed)로서 심해저제도가 적용되고 있음(유엔해양법협약, 1982).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해양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국가 관할권을 확대하고 있다. 지중해 상에 EEZ 설정이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프랑스는 2004년 법령 2004-33을 발효하여 <그림 4-11>과 같이 해양의 일부분을 생태계 보호구역(Ecological Protection Zone)[98]으로 지정한 후 국내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탈리아 또한 국제해양평화공원이 지정될 해역에 프랑스와 유사한 생태계보호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어 생태계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양국의 지중해 연안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 보니파시오 국제해양공원 설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편 프랑스와 이탈리아 외에 코스타리카 공화국도 2003년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공해 상에서 자국의 환경관리 관할권을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지중해 연안국가의 해양환경보존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99]

<그림 4-11> **프랑스 해양생태계 보호지역**



자료: IUCN(2004) 재정리

98) 비록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프랑스는 법적으로 이 지역을 EEZ로 간주하고 있음. 프랑스가 이 지역을 EEZ로 선언하지 않는 이유는 EEZ에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임.

99) *Ibid.*

(5) 시사점

프랑스 코르시카 섬과 이탈리아 샤르데냐 섬 사이에 설립할 보니파시오 국제해양공원은 국제해협을 끼고 있어 그 지정과 운영과정에서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특수성을 띄고 있다. 국내적으로 양 국가는 코르시카 환경사무소(1999) 및 막달레나 국립공원(1994)을 설립하여 국제해양공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보니파시오 국제해협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유해물질을 실은 선박의 통과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각기 제정・시행함으로써 국내법적 관리체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양국은 해양경비대 내에 모니터링 시설을 마련하여 해상교통 모니터링, 어업활동 감시, 수색 및 구조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필요시 해군 및 유럽항공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에 협조를 요청하여 자국의 보호구역과 보니파시오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어 보니파시오 국제해양공원이 설립될 지역보다 안보적 측면에서 더욱 불안한 곳이다. 공원으로 지정할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자원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서해 해양평화공원의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남북한 해양경비대, 군부대, 지역 안보유지 기관(경찰서, 민간치안유지대, 소방서)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고 이들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법적으로 보니파시오 해협과 같은 국제해협에서는 일차적으로 외국선박의 통과통항권을 부정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해양환경 관련 국내법을 외국선박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에 공원 지정 주체인 두 국가뿐만 아니라 인근 지중해 연안국가 및 국제해협을 이용하는 제3국의 자발적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제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지중해 특별보호구역 및 생물종다양성에 관한 의정서'에 바탕을 둔 '지중해 특별보호구역 목록(SPAMI List)'에 보니파시오 국제해양공원 지역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남북한 및 중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다. 특히 꽃게를 비롯한 수산자원을 두고 관련국의 입장은 저마다 다르다. 또한 남한의 국내법으로 중국과 북한의 불법 어업활동과 해양환경훼손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중해 특별보호구역 및 생물종다양성에 관한 의정서'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역협

약(Regional Convention)을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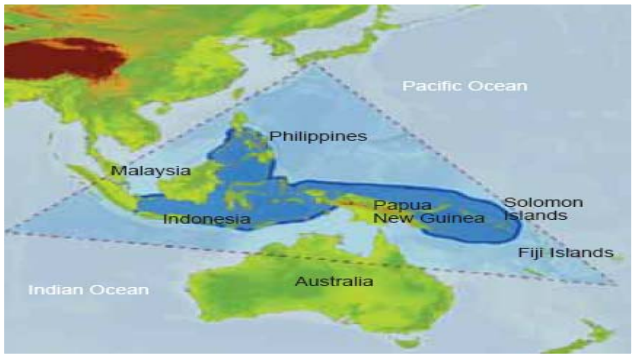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양국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해양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해양공원 공동설립위원회 및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파일럿 위원회(Pilot Committee)'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IUCN, 2004). 지난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은 서해상에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는 데 공동으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한은 서해해양평화공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으며,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남북간 대화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 설립할 '남북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공동설립추진위원회(가칭)'의 수립도 고려할 만한 정책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도네시아 - 필리핀 산호 삼각지(Coral Triangle) 해양평화공원

(1) 산호 삼각지 개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푸아 뉴기니, 동티모르, 솔로몬 섬에 걸쳐 분포하는 산호 삼각지(5.7백만㎢)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과학계에 알려진 75%의 보초 산호(Reef - Building Coral Species) 600여종 및 3,000종 이상의 어류가 이곳에 서식하고 있다. 또한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산호 삼각지대 주변의 연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약 2백 25만 명의 사람들이 산호 삼각지의 풍부한 수산자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연간 16억원과 11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산호 삼각지에서 얻고 있다(WWF, 2006).

<그림 4-12> **산호 삼각지(The Coral Trian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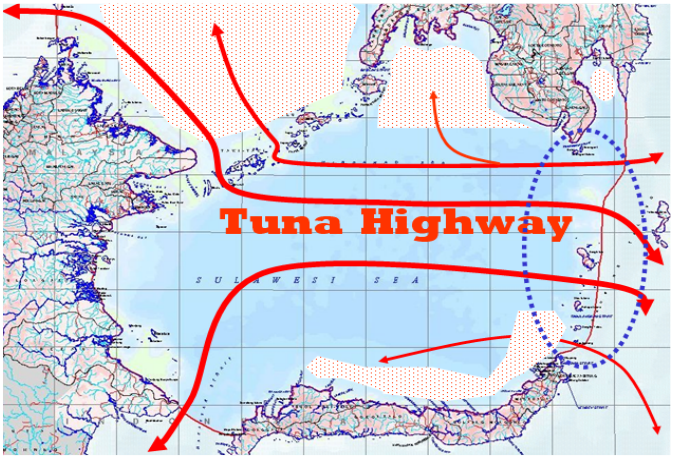


자료 : WWF(2006)

한편, 산호 삼각지는 술루-술라웨시(Sulu- Sulawesi) 해역과 태평양을 오가는 참치들의 주요 이동로이다. 또한 이 해역은 참치를 남획하는 상선과 지역 어선들의 이동이 많아 해양생태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참치, 참다랑어 등의 산란지와 이동로로 활용되고 있는 산호 삼각지를 보호하기 위해 2006년 WWF[100]가 제안한 해양평화공원 지정안을 받아들였다. 앞으로 이 지역에 해양평화공원이 조성되면, 지역주민의 가장 중요한 식량공급원인 동시에 소득원인 참치를 포함한 고래, 상어, 녹색 거북, 혹등고래, 장수거북 등과 같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생물종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WWF, 2006).

그러나 현재 산호 삼각지의 생태계는 무분별한 남획과 지속 불가능한 어업법, 오염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다.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64%의 산호가 파괴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트롤링, 산업 폭발물, 독극물 등을 이용한 파괴적 어업법으로 인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타이완 산호지대의 3분의 2, 인도네시아 산호지대의 50%가 훼손되었다. 이와 더불어 연안개발 및 육지이용 변화로 발생한 침식활동과 오염원으로 동남아시아 산호초가 파괴 위험에 처해 있다(Burke *et al.*, 2002).

<그림 4-13> **술루–술라웨시 참치 이동로**



자료: Ingles and Encomienda(2007)

100) WWF(World Wildlife Fund : 세계야생동물기금협회) - 1960년을 전후하여 아프리카에서 신생독립국들이 잇따라 탄생하면서 이 지역의 야생동물들이 대량으로 살상되자 아프리카의 야생동물 보호운동을 해 온 백인들이 중심이 되어, 1961년 11월 설립함. 본부는 스위스 구랑에 있음.

(2) 지정배경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정부는 1994년 이래로 양자 간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양자협력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는 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for Bilateral Cooperation : JCBC)를 설립하여, 무역, 상업, 환경, 수산업, 안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JCBC 실무그룹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안건 중에 하나가 술라웨시 해상의 경계획정 문제이다. 지난 8년 동안 경계획정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현재까지 협상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해상경계획정문제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음에 따라, 이 해역에서의 양국 간 해양환경 및 수산협력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필리핀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수산·해양환경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자간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에서 WWF는 술라웨시 해역에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해양평화공원 지정안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 시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WWF와 협력하여 술라웨시 해역 생태계 조사에 착수하였다(Ingles & Encomienda, 2007). 그러나 아직까지 지정안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 앞으로 진행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4> **인도네시아-필리핀 산호 삼각지 해양평화공원 지정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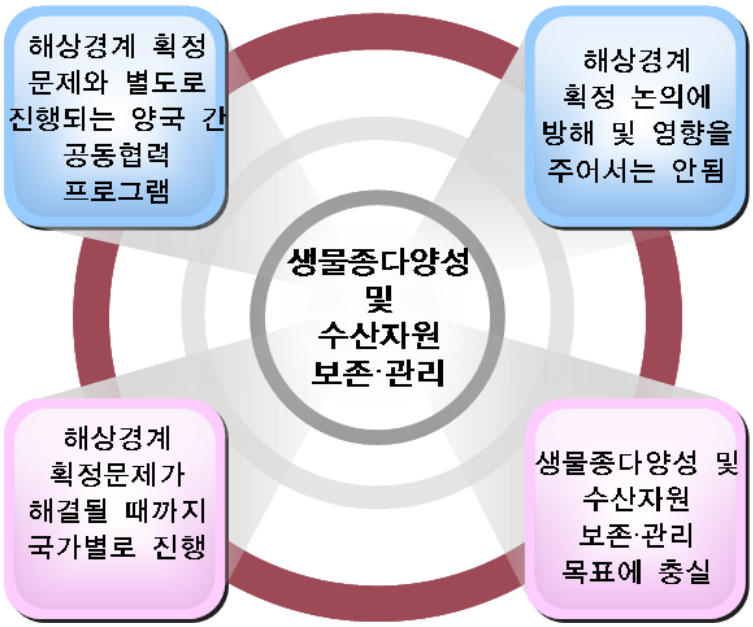


자료: WWF(2007) 재정리

(3) 지정원칙 및 목적

인도네시아-필리핀 산호 삼각지는 해상경계 획정문제가 얽혀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참치 등 다양한 수산자원의 이동로 및 서식지로 이용되는 곳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다. WWF가 제시한 해양평화공원 지정의 기본원칙은 양국 간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논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갈등 해역 상에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WWF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원 아래 인도네시아-필리핀 양국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산호 삼각지의 생물다양성 보존 및 수산자원의 효과적 관리와 보존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림 4-15> 참조).[101]

<그림 4-15> **인도네시아-필리핀 해양평화공원 추진원칙 및 목표**



자료: Ingles & Encomienda(2007)를 재정리

101) *Ibid.*

(4) 시사점

인도네시아-필리핀 산호 삼각지에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하는 사업은 아직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인도네시아 정부를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효과적인 대중인식제고 프로그램과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필리핀 산호 삼각지에 설립할 해양평화공원 사업은 비정부국제기구인 WWF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WWF의 다양한 연안·해양관리 프로그램과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략적·기술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 당사국 간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 주도하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유네스코의 비무장지대(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102]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관련부처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WWF의 협조 하에 양국은 해양평화공원이 지정될 해역의 자연생태계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여 관련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이 본격화되면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서해연안 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동아시아의 또 따른 접경연안에서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지정 지역이 서해접경 연안과 마찬가지로 생태계 보고인 동시에 수산자원관리 갈등(서해접경연안-꽃게, 술라웨시해-참치), 국가 간 해상경계 획정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 공동연구를 통해 관련 경험과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면 프로그램 효율성 제고와 효과 극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102) 2001년부터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반도 비무장지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전략과 일정이 마련됨. 유네스코의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 측에 공동 추진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은 군사적 대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2005년 8월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의 하나로 남북한 공동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함.

4) 예멘-에리트레아 공동어업합작회사(Joint Fishing Company)

(1) 자연환경 현황

예멘[103]은 아라비아 반도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동쪽으로는 오만, 서쪽으로는 홍해, 남쪽으로는 아덴만을 접하고 있다. 국토면적은 홍해 남쪽의 Perim 군도와 아덴 만(the Gulf of Aden) 입구의 Socotra를 포함해 527,970㎢이며 해안선의 길이는 1,906km이다. 예멘의 중부고원지대(해발고도 1,300 ~ 3,000)는 온대기후에 속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고 서늘하여 연간 400～1,000mm의 강수량을 보이며 평균기온은 0～25℃이다. 또한 이곳은 토양이 비옥하고 규칙적인 강우를 동반하는 인도양 몬순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농경이 발달하였다. 이와 반대로 홍해 연안의 평야는 40～45℃의 고온과 높은 습도로 인해 약 2%만이 경작에 이용되고 있다. 전체 국토면적 중 2.91%만이 경작 가능하고, 농경지는 0.25%, 나머지 96.84%는 황무지에 해당한다.[104]

에리트레아는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홍해의 남동쪽과 접하고 있다. 또한 동쪽으로는 수단의 남동쪽, 서쪽으로는 에티오피아 남쪽과 디보티(Djiboutic)의 남동쪽과 접하고 있다. 국토면적은 124,320㎢(Dahlak 군도 포함)이며 해안선의 길이는 2,234km이다. 에리트레아의 중앙고원은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반건조성(Semiarid) 기후의 홍해 연안과 서부 저지대보다 더 선선하고 습기가 많은 기후를 띠고 있다. 수도인 아스마라(Asmara)는 해발 3,0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평균 기온은 16℃이다. 반면 홍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마사와(Massawa)의 연평균 기온은 30℃이고, 최고 기온은 50℃에 이른다. 연평균 강수량은 아스마라가 508mm이고, 마사와는 205mm이다. 전체 국토면적 중 단지 5% 미만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중 지속적으로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은 0.03%에 불과하다.[105]

---

103) 1918년 서구 열강에 패배한 오스만투르크제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예멘아랍공화국(북예멘)과 영국령으로 나누어지게 됨. 북예멘은 왕정을 거쳐 아랍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공화정을 채택한 반면, 남부는 사회주의체제를 채택함. 이데올로기 차이로 남・북 예멘은 1979년 2월 국경전쟁을 치를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다가 1981년 북예멘 대통령 살레흐가 남예멘을 처음 방문하였고, 12월에 남북통합을 명시한 아덴협정을 맺음. 1989년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가진 후 통일 예멘 공화국을 수립하기로 하였고, 마침내 1990년 5월 통일 예멘 공화국을 수립함(주한예멘영사관, 2007).

104) http://lcweb2.loc.gov/frd/cs/profiles/Yemen.pdf 참조.

105) http://lcweb2.loc.gov/frd/cs/profiles/Eritrea.pdf 참조.

<그림 4-16> **예멘-에리트레아 지정학적 위치**



자료: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http://www.lib.utexas.edu/)[106]

(2) 예멘-에리트레아 사회·경제 현황

예멘의 인구는 2006년 기준 21.6백만 명이고, 1인당 GDP는 $906이며 주요산업은 석유산업과 농업이다. 석유는 예멘 총 수출액의 90%, 정부 재정수입의 70%를 차지한다. 석유에 대한 국가의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등락이 국가경제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멘의 일일 평균 석유 생산량은 2005년 기준 42.6만 배럴로서, 인근 산유 국가들의 생산량에 비해 적은 편이다. 농업 또한 GDP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예멘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자연조건 악화(산림벌채, 모래폭풍, 토양침식), 극심한 물 부족[107], 인력·영농기술 부족 등으로 자급할 정도의 생산량을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 전통산업으로는 섬유산업이 발달하여 바질과 사나에 대규모 방직 공장이 있고, 공업의 중심지로 발전해온 아덴 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1991년 자유무역지로 선정되었고, 항 주변으로 석

106) http://www.lib.utexas.edu/maps/africa/eritrea.gif 참조.

107) 예멘 1인당 물 공급량은 연간 150m^3로서 세계평균 7,500m^3의 2%에 수준에 그치고 있음(한국수출입은행, 2006).

유정제, 화학합성, 알루미늄 공예산업이 발달해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06).

한편 예멘의 수산업은 주변의 홍해, 아라비안해, 인도양에 펼쳐져 있는 풍부한 수산자원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노후, 기반시설 미비, 통계자료 부족 등으로 영세한 실정이다. 수산업은 국가 GDP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량은 2000년 기준 4조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어종으로는 오징어, 참치, 고등어 등이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 어선단은 소련, 중국, 일본에서 제공한 17척의 심해어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13개 어업단체가 영세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멘 정부는 수산업의 상업적 잠재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식량원 개발과 고용확대를 목적으로 수산업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1차 개발계획 기간(1996～2000) 중에는 2,680만 리얄, 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2001～2005) 중에는 3,820만 리얄을 수산업에 투자하였다[108].

<표 4-7> **예멘 어업생산량**

(단위: 1,000톤)

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생산량	114,750	142,198	179,584	228,116	256,300	263,000

자료: FAO(2007)

2006년 기준 에리트레아의 인구는 4백 4십만 명이고, 1인당 GDP는 $270로 예멘에 비해 경제력이 크게 뒤떨어진다. 1993년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 정책[109]을 펼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산업별 GDP 구성비(2002)를 살펴보면, 서비스업 63.3%, 제조업 25.0%, 농업 11.7%를 차지고 하고 있다. 농업이 에리트레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2003년 기준 에리트레아 인구의 80%는 농업에 종사한다. 그러나 현대적 장비와 기술의 부족, 토지 황폐화, 투자부족, 에티오피아와의 전쟁(1998～2000)[110]으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농업생산량은 크게 감소하여 국내 수요의 20%만을 자급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05).

108) 주한예멘영사관 홈페이지 참조(http://www.yemen.co.kr/).

109) 경제개발 1단계(1992～96, 전후 복구 및 국가재건, 기초생활여건 충족), 경제개발 2단계(1997～2000, 소비재 수입의존 최소화, 경제기반 확립), 경제개발 3단계(2001～06, 경제도약 여건 조성).

110) 에리트레아는 역사적으로 이탈리아와 에티오피아의 식민지였음. 1993년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하였으나, 1998년 에리트레아 독자 통화 도입, 국경획정문제를 둘러싸고 에티오피아와 무력충돌이 발생하였고 2년 후인 2000년 12월에 양국은 평화합의를 결정함.

수산업이 에리트레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농업에 비해 더 낮다. 홍해에서 생산한 에리트레아 수산물은 주로 유럽과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되며, 2002년 수출량은 약 14,000톤이다. 또한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투자자들에 의해 설립(1998)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매달 150톤의 냉동 물고기가 영국, 독일, 네덜란드로 수출되고 있다. 최근 에리트레아 정부가 공항건설과 항구 시설 복구 등을 통해 산업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에리트레아의 수산업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전망이다 (Library of Congress, United States, 2006).

<표 4-8> **에리트레아 어업생산량**

(단위: 1,000톤)

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생산량	12,712	8,880	7,852	6,689	7,404	4,027

자료: FAO(2007)

(3) 예멘-에리트레아 도서 영유권 및 해상경계 획정 분쟁

<그림 4-17> **예멘-에리트레아 영유권 분쟁 도서**



자료 : Alexandre Akopian's Rare Maps Site(http://karty.narod.ru)[111]

111) http://karty.narod.ru/claim/yem-er/yem-er.html 참조.

예멘과 에리트레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국가는 홍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해 있다. 그러나 홍해 연안에 산재해 있는 암석(Mohabbakah, Haycocks, South West Rocks) 및 도서들(Jabal-Hanish Group Islands, Jabal al-Tayr, Zubayri Group Islands)에 대한 영유권 문제와 해상경계획정 문제로 두 국가는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다. 심지어 1995년 Hanish 섬에서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양국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이를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재판에 회부하였다.

분쟁이 된 도서 및 소도는 소규모이며 인간이 거주하기에도 어려운 환경으로, 과거에 지역 어부들의 피난처나 정박지로 이용되어 왔을 뿐 인근 연안국들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영국과 이탈리아의 식민지 점령으로 점차 그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한 1869년 수에즈 운하(1869) 개통 이후 이 수역이 유럽에서 인도, 동인도, 극동으로 가는 중요 항로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분쟁지역 인근의 수산자원과 천연자원의 잠재적 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두 국가는 이들 도서에 대한 자국의 주권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게 되었다.[112)]

① 예멘-에리트레아 도서 영유권 분쟁

에리트레아는 분쟁이 있는 홍해 도서(이하 도서로 칭함)에 대한 영유권을 100년 이상의 '실효적 점유(Effective Occupation)'에 근거하여 주장했다. 또한 에리트레아는 1993년 도서에 관한 권한을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하면서 법리적으로 승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홍해 도서에 관한 주권 문제는 1923년 로잔조약의 체결로 완결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1920년대 말 이탈리아는 실효적 점유로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을 획득하였다. 1930～1940년 이탈리아는 에리트레아 식민정부를 통해 도서의 주권을 행사했다. 에티오피아는 2차대전 중 영국의 에리트레아 군사점령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로부터 도서에 대한 주권을 승계 받았다. 다시 말해, 식민지 시대에 이탈리아가 가진 홍해 도서에 대한 모든 주권은 에티오피아로 이양되었고, 에리트레아는 독립을 통해 에티오피아로부터 그 주권적 권한을 다시 이양 받았다는 것이다(최현주, 2000).

반면 예멘은 도서 영유권에 대한 주장의 근거를 '원시적, 역사적 또는 전통적인 권원'에서 찾았다. 예멘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대한 역사적 자료(옛 지도 및 문서)를 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예를 들어, 17～19세기 지도 제작자들은 예멘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했으며, 당시의 지도는 관련 홍해 도서에 대한 예멘의 주권적

112) 해양수산부,「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종합 Ⅴ」, 2006, pp. 99～102.

소유를 인정했다. 또한 예멘은 1973년 이스라엘 군대의 부재 시 섬 주변에 대한 해군력을 관할했고, 이후 도서에 대한 어업, 환경보호, 측지관측소 설치 및 운영, 등대의 건설과 관리를 맡아 왔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또한 1975년 남부 홍해에서 군사기동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1976년 분쟁 도서 근처에서 해양조사선이 탐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허가를 예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113]

결론적으로 에리트레아는 100여 년 동안의 '실효적 지배'를 바탕으로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을 주장했고, 예멘은 역사적・전통적으로 입증된 자료를 통해 주권을 주장하였다. 판결에 있어 국제사법재판소는 역사적 권원을 이유로 영유권을 주장할 경우 관련 사실들이 해당 당사국 및 법원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만 이를 받아들였다. 실효적 지배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도 법원은 개인 또는 사기업 등에 의한 활동을 국가행위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이를 근거로 한 영유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지 분쟁도서의 구체적 사용이나 국가권한의 명백한 표시 및 이행만을 실효적 지배사실로 인정하였다.

1999년 중재재판은 '실효적 지배' 사실에 입각하여 예멘-에리트레아 도서 영유권 분쟁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중재재판의 판결에 따라, 인간의 정주가 가능하고 인근 수역에서의 어업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Hanish-Zuqar 군도와 Zubayr Group 등은 예멘에 귀속되었고[114], 남서쪽에 있는 Mohabbakah 군도와 Haycocks를 포함한 작은 섬들은 에리트레아의 영토가 되었다(Stansfield, 2001). 또한 중재재판의 판결은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던 섬들의 주변 해역에서 양국이 전통적인 어업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115] 그러나 '전통적 어업체제(Traditional Fishing Regime)'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앞으로 그 해석에 있어 국가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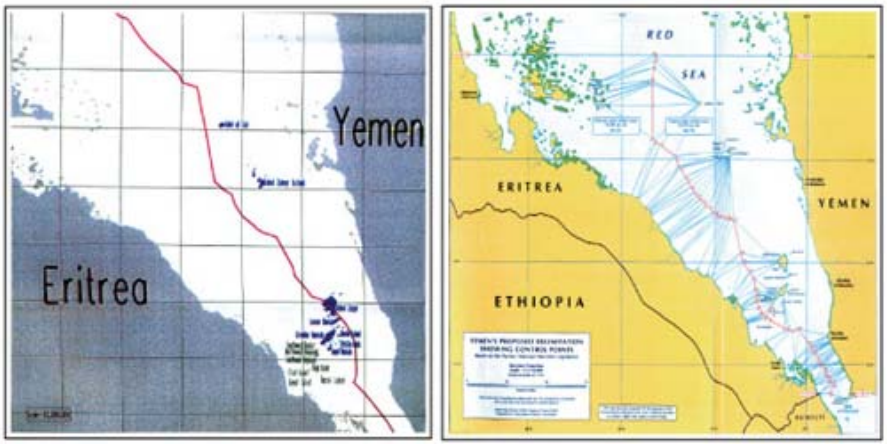
② 예멘-에리트레아 해상경계 분쟁

예멘과 에리트레아 해상경계 분쟁은 홍해에서 양국이 경계획정선이라고 주장하는 중간선(Median Line)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데서 비롯한 분쟁이다. 에리트레아는 자국의 중간선이 본토 연안과 등거리에 있으나, 역사적 중간선은 예멘의 중간수역에 있는 도서가 아닌 자국의 도서를 고려한 선이라고 주장하였다. 반편 예

113) *Ibid.*
114) 해양수산부, *Op.cit.*
115)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The sovereignty found to lie with Yemen entails the perpetuation of traditional fishing regime in the region, including free access and the enjoyment for the fishermen of both Eritrea and Yemen.

멘이 주장하는 중간선은 에리트레아 연안(Dahlak 제도의 특정 지점 포함)과 모든 예멘 도서와 등거리에 있었다(<그림 4-18> 참조).

<그림 4-18> **예멘-에리트레아가 주장하는 해상경계선**[116]



에리트레아가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예멘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에리트레아는 예멘이 주장하는 중간선에 위치한 Dahlak 제도가 350개의 크고 작은 소도 및 작은 군도로 구성되어 있고 대다수의 섬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 내측 수역은 에리트레아 내수로(Internal Waters)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예멘은 중간선의 동부 기준점을 Jabal-Tayr의 중간 수역 내에 설정하였고, Jabal al-Zubayr의 Mid-sea 군도의 서부연안을 저조선으로 설정하였다. 예멘은 이 섬들이 Dahlak 제도 밖에 위치한 무인도서에 비해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기점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현주,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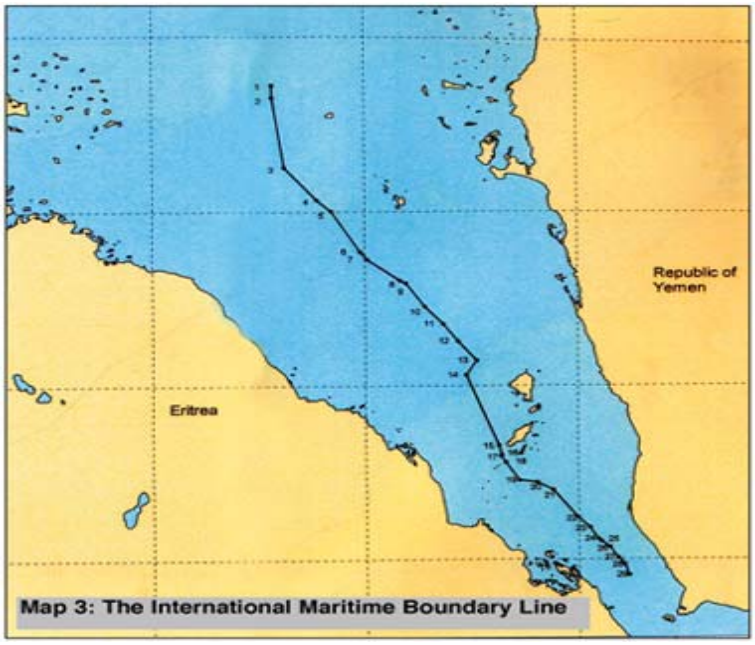
해상경계에 대한 두 국가의 상이한 관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멘은 단일한 해상경계선을 주장하였다. 예멘은 특히 경계획정을 목적으로 기점이 되는 해안을 자국의 모든 해안도서와 서쪽에 대향하는 해안으로 하였다. 또한 예멘은 에리트레아 해안에 대해 에리트레아 본토 해안에 적용된 기점을 사용하여 에리트레아의 중간수역에 위치한 도서를 무시하였다. 한편 에리트레아가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은 자국의 본토 해안을 대표하는 해안 간의 중간선을 의미한다. 또한 에리트레아는 자국의 도서만을 기점으로 사용하여 역사적 중간선을 주장하였기 때문

116) Yementimes, "Yemeni Eritrean Delimitation, Completetion of the Maritime Line", 2001. 4. 18일자 참조(http://www.yementimes.com/01/iss18/).

에 예멘과 상이한 중간선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해양수산부, 2006).

재판소는 양 당사국의 주장을 고려한 후 중간선은 단일목적 경계선이 되어야 하며 이는 대향 본토 해안의 중간선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경계획정의 요소로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였다. 특히 해안선의 길이 비율, 해안선의 일반적 경향 및 경계획정으로 인한 수역의 범위를 상호 비교하여 이를 경계획정 시 고려하였다.[117] 중재재판을 통해 확정된 해상경계선은 <그림 4-19>와 같다.

<그림 4-19>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정한 해상경계선**



자료: Yementimes, 2001. 4. 18.

(4) 공동어업합작회사 설립

예멘과 에리트레아는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양자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위원회'[118]를 설치하는 데 합의하였다. 공동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는 2005년 3월 에리트레아의 수도인 아스마라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두 국가는 '투자활성화, 석유・가스・미네랄 보존 및 개발, 문화,

117) *Ibid.*
118) The Joint Yemeni-Eritrean Committee for Bilateral Cooperation.

관광, 미디어, 안보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강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수산업 분야의 협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양국은 공동어업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기술위원회(the Joint Eritrean-Yemeni Technical Committee)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였다.[119]

기술위원회를 통한 타당성 조사 실시, 관련 정보 및 경험 공유를 통해 양국은 마침내 2006년 7월 수산업 분야에서의 공동협력 및 투자확대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합의문에는 수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 실천 프로그램, 공동어업합작회사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2006년 11월 두 국가는 공동어업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두 국가는 공동어업합작회사에서 규정한 어로구역, 어로기간, 어로방법을 준수하여 어업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생산된 수산물의 가공・포장・판매 및 이익의 분배도 합작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120]

(5) 시사점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 수단 등 주변국가와의 국경분쟁으로 인한 정치적 어려움과 지속된 가뭄과 산업시설 미비로 경제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121] 예멘 또한 석유 매장량 감소와 더불어 석유산업 및 농업에 주로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 때문에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대다수 국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토지 황폐화, 낙후된 기술 및 장비, 자연조건 악화 등으로 농업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국내 총 소비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양국 정부는 부족한 식량 분을 보충하고, 농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표 4-9> **예멘-에리트레아 경제지표 비교**

구분	인구('06)	GDP('06)	1인당 GDP('06)	경제성장률('06)
예멘	21.6백만 명	196억 달러	$906	2.6%
에리트레아	4.4백만 명	11.9억달러	$270	2.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6)

119) Yemen Times, "Yemen and Eritrea sign accords", 2005. 3. 14일자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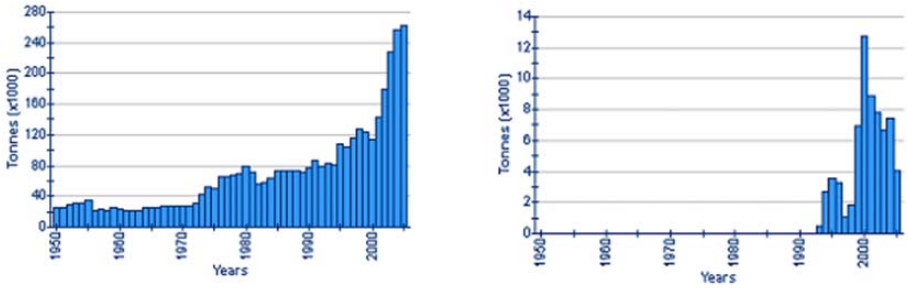
120) http://www.yobserver.com/business-and-economy/10011243.html 참조.

121) 에리트레아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로 전쟁 피해 및 만성적인 가뭄 등으로 경제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근 식량부족 사태로 총 인구의 20% 이상이 기아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한국수출입은행, 2005).

한편 예멘과 에리트레아는 홍해 도서의 영유권 문제와 해상경계 획정문제로 오랫동안 갈등해 오다가 199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중재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어업권과 관련하여 중재재판은 “양국은 전통적 어업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전통적 어업체제(Traditional Fishing Regime)”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그 해석에 있어 국가간 이견이 발생할 여지를 남겨 두었다. 이러한 이유로 분쟁 도서 인근의 풍부한 수산자원과 천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한 국가 간 공동협력관리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멘-에리트레아 간 공동어업합작회사는 ‘수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양국의 공통된 목표에 기초하여 설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양국은 과거에 비해 개선된 환경[122]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곧 생산량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예멘에 비해 경제력이 크게 뒤떨어지고 수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항구, 선박, 유통채널, 가공 및 포장 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에리트레아는 합작회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발달한 예멘의 어업기술과 판매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4-20> **예멘-에리트레아 어업생산량 비교**



예멘 어업생산량 에리트레아 어업생산량

자료: FAO(2007).

공동어업합작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예멘과 에리트레아를 둘러싼 환경은 현재 남북한이 처한 환경과 매우 유사하다. 남한과 북한은 서해상의 해상경계획정 문제로 여전히 갈등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력과 기술력은 남한에 비해 현저히 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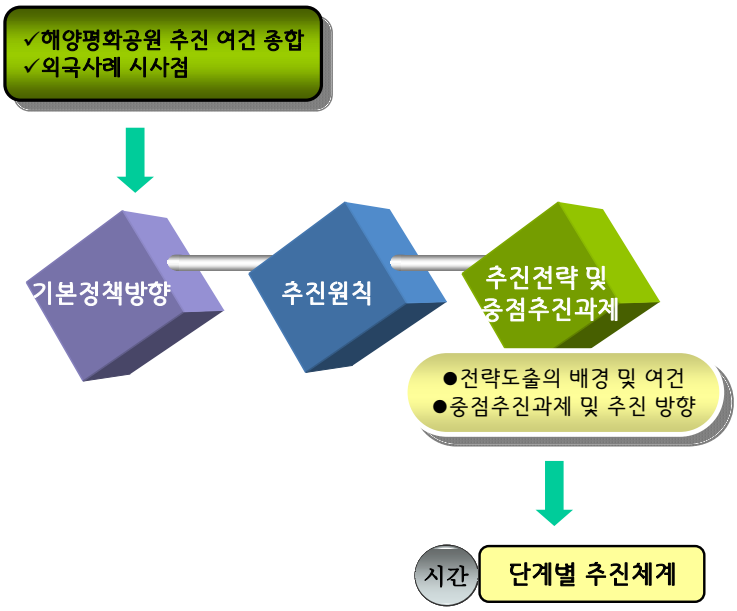
122)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통해 조업구역을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공동어업방식 및 어로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연안・해양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됨.

진다. 2004년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208달러로 남한(6천 810억 달러)의 33분의 1 수준이었고, 한 사람당 국민 소득은 914달러로 남한(1만 4,162달러)의 약 16분의 1 수준이다(한국은행, 2005). 따라서 '예멘-에리트레아 간 공동어업합작회사 설립' 사례는 앞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의 이행으로 본격화될 남북한 공동어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있어 남북한 간 이익분배 방식, 어업방식, 판매방식을 개발하는 데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5장 해양평화공원 추진 방안

이 연구에서 제시할 해양평화공원 추진 방안은 기본정책방향, 추진원칙, 추진전략, 권역별 사업내용, 연차별 추진체계로 구성된다. 앞서 제2장 서해연안 접경지역 및 남북관계 현황, 제3장 국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여건을 종합하였다. 또한 2007년에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추진여건과 제4장의 외국사례 시사점을 활용하여 기본정책방향, 추진전략, 연차별 추진체계 등을 도출하였다.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를 단계별 추진체계(시간 관점)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그림 5-1> **서해연안 접경지역 해양평화공원 추진 방안의 구조**



1. 해양평화공원 추진 여건 종합

1) 2005~2006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추진 여건

제1차 및 제2차년도 연구에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자연환경, 사회경제 여건, 법제도를 비롯하여 7가지 분야를 다루었다.

▷ 접경연안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현황
▷ 접경연안지역의 사회 및 경제적 특성
▷ 남북한 해양환경보전 및 공간관리 관련 법제도
▷ 남북한 해양수산분야 협력 및 북한의 국제협력
▷ 북한의 사회경제 및 정치 현황
▷ 국민 및 지역주민의 인식수준

<표 5-1> **2005~2006년 연구에서 제시한 해양평화공원 추진여건**

연구년도	해양평화공원 추진 여건
2005년	· 강점요소와 기회요소가 약점 및 위협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 ·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가장 큰 제약요인 · 해양평화공원과 경제 분야 협력중심의 남북교류 추진은 상충 가능 · 국제기구 중심의 해양평화공원 추진은 성과도출에 한계 · 관련 중앙부처를 제외한 사적 영역의 관련주체 사이에 공감대 미형성
2006년	· 남북관계 답보상태 및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 전망 · NLL 현안은 남북관계 발전에서 제약요소이자 기회요소 · 해양평화공원 시범구역을 공동어로와 연계할 경우 본격 논의 가능 · '공원'이 함의하는 상징적 내용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지도 · 개발과 환경보전 사이의 상충조정 전략 개발이 주요 현안 · 해양평화공원 및 관련 개별사업에 대해 국민적 합의 필요

주 : 구체적인 내용은 제1차 및 제2차년도 보고서를 참조

생태·환경 현황은 추진 여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서해연안 접경지역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남북한이 보호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생태적·환경적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활용하였다. 생태 및 환경현황은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분야인 반면, 다른 분야의 여건분석은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관리적, 제도적 차원에서 실효성을 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양평화공원의 추진은 남북관계의 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북한의 남한 및 국제사회에 대한 대외관계의 특징, 북한내부의 사회・경제・정치적 여건에 좌우되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북한의 현황과 여건에 중점을 두었다.

제1차년도 연구에서는 강점-약점-기회-제약 분석틀(SWOT Analysis)을 이용하여 추진여건을 분석하였고, 제2차년도 연구에서는 2006년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였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5-1>과 같다.

2) 해양평화공원 추진 여건 변화

앞서 <표 5-1>에서 정리했던 해양평화공원 추진 여건은 2007년도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1차년도 연구가 서해연안 지역을 해양평화공원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타당성 검토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2차 및 제3차년도 연구는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기 위한 실체적 여건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006년 말 이후 변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반영해야 할 추진여건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2.13 합의」 및 이후 이행조치의 실현으로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감소

2006년, 2007년 개최한 남북한 사이의 회담 중 제1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경의선・동해선 철도 시범운행을 위한 장성급회담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담은 특별한 성과없이 끝났다.[123] 그동안 동북아 정세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있었던 남북관계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더욱 경색되었다. 6자회담의 틀을 이용하여 핵 현안에 접근하려는 미국과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북한 사이의 대립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특히 핵실험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수위는 높아졌다.

그러나 2007년 초에 개최한 6자회담에서 당사국들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확인하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현안이 되었던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자산이 순조롭게 이전되면서 남북관계와 북한의 대외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123) 전 국민 설문조사에서 설문응답자들의 73.1%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에도 남북관계 인식에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외부의 돌발변수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미 2000년 중반부터 남북관계가 안정적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사찰단 초청에 관한 공식문서를 발송하고, 북한의 에너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중유지원이 확인되면 핵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는 공식논평을 발표하였다. 합의 이후 남한은 제일 먼저 중유를 지원하였으며, 중국, 러시아에 이어 미국은 2,500만 달러 규모의 중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북핵불능화와 이행평가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북미관계 개선에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124]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2006년 답보상태에 있었던 남북관계가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대해 문호를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를 받아들여 개혁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25] 특히 「2.13 합의」 채택 및 합의사항에서 명시한 후속조치가 이행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남북협력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2) 「10. 4 정상회담 선언문」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은 해양수산 분야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해연안 지역은 두 차례의 군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공동어장 조성 등 평화정착이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남한과 북한은 서로 인식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서해연안이 경제적 측면에서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당장 실리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남북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남북한 관계 개선에서 북방한계선(NLL) 등 남북한 해상경계 관련 현안은 2005년에는 남북한 평화정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활용되었으나, 향후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NLL을 둘러싼 정치적 현안은 관계의 악화를 심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06년 3월 2~3일 사이에 개최하였던 제3차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상 경계의 재획정이 평화정착 및 공동어로의 실현을 위한 '근원적 조치'임을 북측이 강조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126] 또한 이후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을 취소할

---

124) 북한 태권도 시범단 미국 첫 순회공원, 일본 지원 중유 미국 대신 지원 검토, 미국 핵 사찰단 북한방문, 크리스토퍼 힐 방북 등은 북미관계가 경제적 분야에서 민간차원까지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분야 관계 개선의 전망을 밝게 함.

125) 서재진(2007)에 따르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일본이 수교를 맺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126) 통일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판문각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했던 제3차 장성급회담의 원래 의제는 '서해상 우발충돌방지 조치 개선방안,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설정,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 등이었음.

때나 2007년 철도 시범운행을 장성급회담에서 논의하면서 북한이 '남북한 해상경계의 재획정'을 선결요건으로 명시한 것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과 맞물려 10월 3~4일 평양에서 개최한 남북한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기존 틀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다.[127] 경제분야 협력과 한반도 공동체를 향한 사회문화분야 협력 사업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남북한 긴장과 대립의 근원인 서해 해상경계 현안 및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포괄적·실용적 해법을 찾았다는 데 있다. 해상경계문제를 직접 의제화하지 않으면서 실리를 통해 갈등을 해체할 수 있는 장치로 해주경제특구, 해주항개발, 민간선박 해주직항 통과,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 한강하구 공동이용이라는 새로운 남북협력 패키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3) 경제개발 중심의 남북협력 당분간 가속화될 전망 - 평화, 번영에 비해 보호분야 이행 미흡 예상

2005년, 2006년 연구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이해가 합치하는 지역이다. 남북한 교류협력에서 경제 분야의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접경지역 개발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2005년에 이미 해주산 바다모래를 비롯하여 북한산 모래 607만톤(384만㎥)을 반입하였고, 2006년에는 1,437톤의 북한 모래를 반입하였다.[128] 또한 한강하구의 골재채취사업을 남북정상회담 및 총리회담을 통해 2008년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은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생태계와 산란·서식지가 개발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남한과 북한의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합의 외에도 남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하구 항만 개발, 인천광역시가 구상 중인 개풍군 개발사업 및 연육교 건설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접경지역의 멸종위기종 및 이들 생물종의 서식지 훼손위협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지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와 같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희귀생물종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면 남한과 북한 모두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뿐만

127) 과거에 남북회담의 성과가 무위로 끝나거나 결렬될 때의 원인은 북한의 해상경계 재획정 요구 및 NLL 불인정이었음. 지난 5월 개최되었던 장성급회담에서 NLL이 현안으로 등장했지만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시범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합의하였다는 것은 남북관계 변화를 반영한 것임.

128) 통일부 보도자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해양환경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발압력으로부터 연안생태계와 환경을 적절하게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내부의 개발주체와 공동으로 생태계 보전을 위한 방안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할 때 시급히 다루어야 할 현안이다.

(4) 해상경계선 현안은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의 가장 큰 장애요인

2006년 연구사업을 통해 제시한 공동어로·평화수역은 서해의 평화정착과 남북한 수산업의 공동발전, 생물자원 및 생태계 보호 등 해양평화공원을 구체화할 수 있는 물리적 거점이다. 공동어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남북한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거나 긴장 자체가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어로·평화수역은 남북관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과 북한의 정상회담 선언문에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을 두 번이나 거론한 것은 서해상 긴장완화가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총리회담에서 공동어로를 2008년 상반기에 착수(남북총리회담 이행합의서 제1조 ①)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지정기준을 합의하지 못하였다. 총리회담 합의서에서는 12월 중으로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에서 운영 및 협력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지만 군사적 보장과 신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민간선박 해주직항 통과와 같이 해상경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한 군사보장조치가 쉽게 합의된 것과 대비된다.

다만, 국방장관회담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사공동위원회와 장성급 실무회담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것과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 가능성이 합의문에 담긴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해상경계문제에 대해 남북한 사이의 이견이 나타날 경우 남북회담이 성과없이 끝났던 것에 비추어보면 상당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129] 그러나 NLL을 고수해야 한다는 남한 내 여론이 완강하게 존재하고

129) NLL은 남북관계의 향방을 진단하는 실마리어(key word)인바, 크레믈로지(Kremlinology)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과거 구 소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사용한 방법의 하나로, 발간 신문, 공식성명서 등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나 사람 이름 순서의 변화를 통해 정책우선순위나 정치권력의 변화를 추론하는 방법임. Wikipedia는 크레므리놀로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Kremlinology is the study of Soviet politics and policies based on efforts to understand the inner

있고, 남북한 군사당국 간 명분확보를 위한 대상이므로 전향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남한사회의 정책인프라 마련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지난 11월 26일 남한은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08～2012년)'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2006년에 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법률」에 따라 2006년 10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회의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10. 4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의 성과를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의 확정으로 남한사회는 외형적으로는 적어도 남북협력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정책인프라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까지 사회문화, 경제,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졌지만 이를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확정한 것은 남북관계가 정치적 여건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남북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한사회의 정책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과 총리회담 합의문은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정상회담이 개최하기 전에도 이 연구사업을 통해 실시한 전국 설문에서 '남북관계가 안정화, 정례화'하고 있고, 우발적 사건에 크게 영향 받지 않을 정도로 국민인식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담이 추상적, 일반적 내용이 아닌 현 단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실질적 합의를 담았다는 점에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정상회담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130] 조사대상의 84.2%가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응답한 것은 이를 반영한다. 특히 남북한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동어로・평화수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78.2%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수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 내 남북협력에 대한 속도와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단 기간에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개성공단 3통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성과가 가시화되고,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가 개선되면 남한 내 의견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workings of an extremely opaque central government, named after the Kremlin, the seat of the Soviet government. Kremlinologist refers to media, academic and commentary experts that specialized in the study of Kremlinology"(http://en.wikipedia.org/wiki/Kremlinology).

13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 정상회담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07.

(6) 국제사회의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대한 협력 및 지원가능성 크게 제고

정상회담 이전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2005년도에 개최한 국제 워크숍과 5개 국제기구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전문가 자문단회의, 정기 뉴스레터 등을 통해 확산됐다. 2006년 제작한 DVD는 서해연안 지역의 생태와 사회문화를 중심으로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적 매체로 기능했다. 2005년 9월에 개최한 국제 워크숍에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구상을 처음 소개하였고, 이를 통해 국제기구의 협력·지원의사를 확인했다. 2005년 워크숍에서 관련 참석자들은 국제자문단 구성의 필요성을 공유하였고, 연구진은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2006년과 2007년 자문단회의를 개최하였다.[131] 2007년에 개최한 제2차 국제전문가 자문단회의에서는 자문단에 참여하는 각 국제기구가 고유의 활동과 기능에 적합한 협력방안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7년 남북한 정상회담은 해양 및 연안관련 국제기구나 외국의 관련 부처, 전문가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지지를 받았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정상회담 지지성명에서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확고한 기반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유럽연합은 이사회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협력에 도움이 되는 모든 행위를 지지'하며,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에 대한 신뢰를 확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3)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여건 종합(SWOT)

해양평화공원 추진 여건은 2005~2006년 연구에서 도출한 해양평화공원 추진여건과 2007년 변화한 상황을 토대로 SWOT 기법을 활용하여 종합하였다(<그림 5-2> 참조).

첫째, 강점요소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합의한 남북한 정상회담 선언문 및 총리회담 이행합의서가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는 남북한 공동 정책인프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남한의 해양수산분야 과학과 기술, 장비, 전문인력,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도 강점요소에 포함된다. 서해에서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도 강점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

131) 국제자문단 회의를 구성함으로써 '해양평화공원은 남한과 북한이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한다는 것', '국제자문단은 해양평화공원의 추진과 관련하여 기술자문(technical advice)을 수행한다는 것', '국제자문단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것' 등을 합의하였음.

둘째, 약점요소는 해양평화공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부족, 해양수산분야 남북한 인적교류 경험의 부족, 여전히 경제협력 중심의 교류협력, 개발과 보전 사이의 갈등이 포함된다.

셋째, 기회요소는 북한 핵문제 해결가능성, 국제사회의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커지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국제사회는 연안해양분야 국제기구, 지역해기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국제기구나 UN, EU 등이 포함된다. 지역해 기구(YSLME, NOWPAP, PEMSEA)의 해양평화공원 및 남북해양협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는 매우 높다.

<그림 5-2>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SWOT 분석(2007년)**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 남북관계의 정례화, 안정화 - 인적교류, 교역량증가 - 총리회담 및 국방장관회담 정례화 ▷ 남북한 해양협력 및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공동정책인프라 구축(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 남한의 남북협력 추진 정책인프라 마련(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 남북한 수산·해운분야 협력기반확보 - 해양평화공원 추진사업 국정과제 채택 ▷ 남한의 발달한 해양수산관리체계와 관리역량 ▷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평화체제 구축 및 경제협력)	▷ 해양수산분야 교류협력 경험부족 - 해운, 수산에 비해 환경, 항만은 매우 취약 ▷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필요한 자료정보 부족 ▷ 경제 분야, 육상중심의 남북협력 ▷ 환경보전과 조정체계 부재(개발과 보전의 갈등) ▷ 북한의 해양수산기술 역량 취약 및 이로 인한 남북한 격차
기회(Opportunities)	**제약(Threats)**
▷ 2.13 합의에 따른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및 핵불능화 해결의 높은 가능성 - 북한의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 의지 ▷ 남북정상회담 및 서해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지(UN, EU) ▷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의지 제고 - 연안해양 관련 국제기구 및 동북아시아 지역해 기구 지원	▷ 해상경계 설정을 둘러싼 북한과 남한의 갈등 - 기회요소 또는 강점요소로 전환될 가능성

넷째, 해상경계설정을 둘러싼 남북한 갈등은 여전히 제약요소로 남아 있다. 11월 27-29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어로·평화수역이 지정 위치와 기준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도출에 실패한 것은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해상경계 설정의 견해차를 줄이기 위한 향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기회요소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2007년 초반까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제약요소로 포함되었으나 2.13 합의 이후 진행된 합의이행이 성과를 거두면서 기회요소로 전환된 것은 좋은 사례이다.

2.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정책방향과 원칙

1) 기본정책방향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정책방향은 2005년의 연구결과 및 2006년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여건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2006년에 규명해야 할 현안이 새롭게 나타나고, 세부 여건을 부분적으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여건은 2005년도 연구에서 제시했던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추진여건의 큰 틀을 변화시켰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협력 및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여건에도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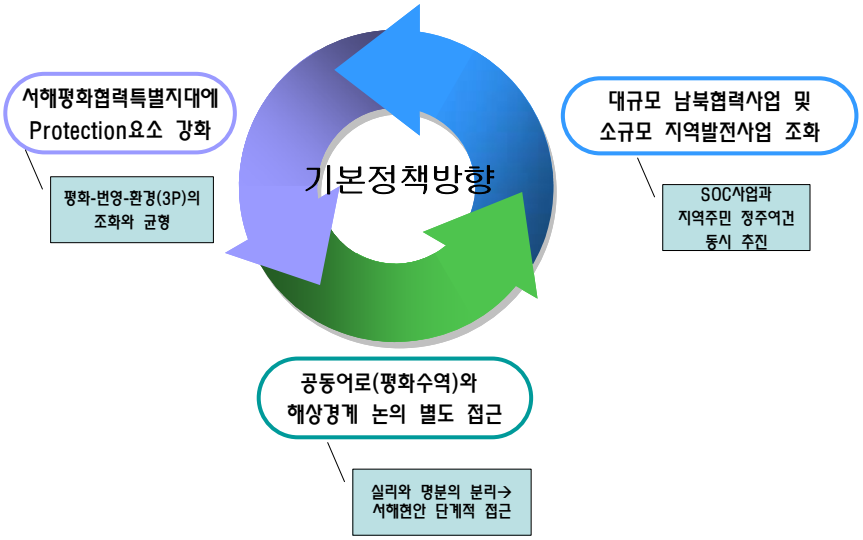
한편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해양평화공원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推進)'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추진'은 사전적으로는 '진척되도록 밀고 나감'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의 추진은 협의의 관점에서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해양평화공원을 성공적으로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적·물리적 틀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광의의 관점에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의 추진은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해양평화공원을 성공적으로 지정·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양평화공원 지정·운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진'에 대한 개념 및 제1장에서 기술한 '해양평화공원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는 협의의 관점에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해양평화공원에 대해 남북한 합의를 도출하고 공

동으로 운영하는 단계까지 도달하는 데에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다수 존재하고, 개별 현안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 '협의의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양평화공원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통해 남북한 공동 정책인프라를 구축한 '절반의 추진'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제도적 틀의 일부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물리적(실체적) 토대가 가시화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여건과 '추진'의 개념을 기초로 향후 해양평화공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정책방향은 '절반의 성공'을 채우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이는 <그림 5-3>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세 가지 기본정책방향은 약점요소를 보완하여 기회 또는 장점요소로 전환하거나, 제약요소는 약화시키거나 기회요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도출하였다.[132]

<그림 5-3>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기본정책방향**



132) 2007년 10월 4일 정상회담 이전의 기본정책방향은 'Protection을 중심의제로 설정, 남한에서 정책인프라 우선구축, 지역특성을 고려한 권역구분 및 권역별 정책추진'으로 설정되었음.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특별지대 설치를 합의하여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남북한 공동의 정책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기본정책방향을 수정하였음.

(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생태계 및 자원 보호(protection)」요소 강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합의하고, 총리회담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추진일정과 추진체제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세 가지 목표 중 정치군사 긴장완화, 통일경제 번영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되었다. 그러나 해양평화공원이 추구하는 세 가지 목표 중 생태계 및 자원보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도 소개된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해양평화공원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정치·군사적 긴장완화(peace), 통일경제 번영(prosperity), 생물종다양성, 수산자원, 문화자원의 보호(protection)에 있다. 해양평화공원의 지정과 성공적인 운영으로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익도 이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평화공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정치군사 분야 협력과 경제 분야 협력이 중심이 된 현재의 남북협력 합의 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한에서 지난 40년간 경제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악영향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생태계 및 자원보호 분야가 빠진 남북협력은 남북정상회담이 지향하고 있는 한반도 공동체의 효과를 반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서론에서 기술하였듯이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발전의 지표로 삼고 있고,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분야 남북한 협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서해에서 생태계 및 자원보호분야를 보완할 때 남북협력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2006년까지 연구에서 세 가지 목표와 방향에 대해 별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중심의제가 무엇인지를 규정하지 않았다. 남북협력의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서해지역 남북협력과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현재의 상황에서 보호를 중심의제로 설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133] 첫째, 경제협력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남북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우선하는 가치 및 최근의 동향을 고려할 때 한반

133) 이는 해양평화공원 추진과 관련된 우선순위를 설정할 경우 해양평화공원의 포괄적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또한 3개의 목표·방향 중 무엇을 중심 의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틀과 실체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었음.

도 공동체의 시너지 효과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 분야를 강조할 때 더욱 커질 수 있다. 둘째, 해양환경, 생태계,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남북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해주경제특구나 한강하구 공동이용은 해양수산분야 협력보다는 육상 산업협력, 자원개발 협력의 성격이 크다. 남북관계에서 육상과 해양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당분간 해양수산분야 협력 성과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국제사회와 가장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의 하나가 해양환경 및 자원관리 분야인 바, 국제사회의 지지를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양평화공원의 기원과 서해연안에서 남북한 관계, 해양평화공원의 추진여건을 고려할 때 생태계 및 자원 보호(protection)를 향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성요소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134] 다만 보호(protection)를 중심 의제로 설정한 것이 평화(peace), 발전(prosperity) 의제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해양평화공원이 추구하는 세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2) 공동어로・평화수역과 해상경계설정 현안을 분리하는 실사구시적 단계별 접근

공동어로・평화수역은 남북정상회담 및 서해평화특별지대에 담긴 평화조성과 경제번영을 상징적으로 함축한 핵심 합의사항이다. 총리회담에서 2008년 공동어로를 착수하겠다는 일정을 확인하였지만, 뒤 이은 남북한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어로・평화수역은 지정위치와 기준을 둘러싼 견해차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등면적, 등거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지정방안이 제시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두 사안을 연계하려 처리하려는 남북 회담 당국자의 입장때문이다. 남한의 입장에서도 북방한계선(NLL)을 고수하려는 여론과 남북협력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NLL을 양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거리, 등면적, 수산자원량 등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 최종 위치는 NLL 이남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 남북회담에서 NLL을 의제로 설정할 경우 예외없이 회담이 무산되었던 전

134) 전 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해양공간에서 남북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로 자원관리 등 수산협력 27.9%, 생태계 보전 등 환경협력 19.9%로 나타났음. 따라서 생태계 및 자원보호에 관한 응답자의 비율은 47.8%로 매우 높은 수준임.

례에 비추어보면,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어로・평화수역을 제외한 다른 안건에 대해 의견일치를 본 것은 남북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다. 특히 공동어로・평화수역 의제 중 공동어로 운영에 대해서는 수산실무회담에서, 군사적 보장조치에 대해서는 장성급 회담을 통해 해결하자고 합의한 것은 큰 성과다. 다만, 이번 국방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이 설정한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공동어로구역(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과 실제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공동어로・평화수역 합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업이다.

따라서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과 운영에 관해 남북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리와 명분을 분리하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리는 '수산자원 생산 증가, 중국어선의 불법어로・남획 방지'와 같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편익 외에 '지역주민의 안보불안 해소, 남북 해양협력 상징 극대화, 한반도 국제사회 인식 전환 및 투자확대'등 간접적 편익도 크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 및 공동번영에 미치는 효과는 간접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공동어로, 평화수역을 해상경계선과 연계하는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선군정치체제가 정착된 이후 북한 인민무력부의 역할이 더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판단한 실리를 강조하고, 예멘-에리트레아 사례 등 해외사례를 연구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동어로・평화수역과 해상경계설정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공동어로・평화수역 현안을 먼저 해결하고 해상경계설정은 이후에 처리하는 단계별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대규모 남북협력사업 및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의 조화

해양평화공원이 제기한 경제적 번영(prosperity)은 남북한 공동의 경제발전을 위한 큰 틀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한다. 남북한 정상회담이나 총리회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현안과 합의결과로 도출되는 사항의 대부분은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이거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육상을 근거지로 한 일부 기업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업 중 인도주의 교류나 사회문화 분야 교류를 제외한 사업이 철도 연결, 개성 및 금강산 지역의 3통문제 해결, 백두산 관광, 한강하구 골재채취, 해주항개발 및 해주경제특구 설치

등인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서해연안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합의사항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포함된 사업이 해주항 개발과 같은 대규모 SOC 사업, 해주경제특구와 같은 산업협력, 환금성이 높고 편익이 특정 집단에게 집중되는 한강하구 골재채취라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수준에 관계된 사업은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을 합의한 것이 전부이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를 대상으로 한 미래협력사업을 다 포괄할 수 없다는 것과 초기단계 합의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남북회담에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규모, 육상중심의 협력사업과 별도로 지역발전을 위한 소규모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양평화공원 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구상이 현실화하는 과정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갈등없이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나 생활수준을 개선하려는 사업은 남북협력사업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제공한다. 이런 사업은 남북회담과 연계할 때 시행 가능한 공동어로나 해주~옹진반도~백령도를 연계한 환상형 해양관광사업도 있겠지만, 남한이 독자적으로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다.

2) 추진원칙

해양평화공원의 3대 목표를 기본정책방향에 기초하여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진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해양평화공원의 추진원칙은 남한 및 북한, 또는 국제사회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남한에 적용하는 원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원칙은 북한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원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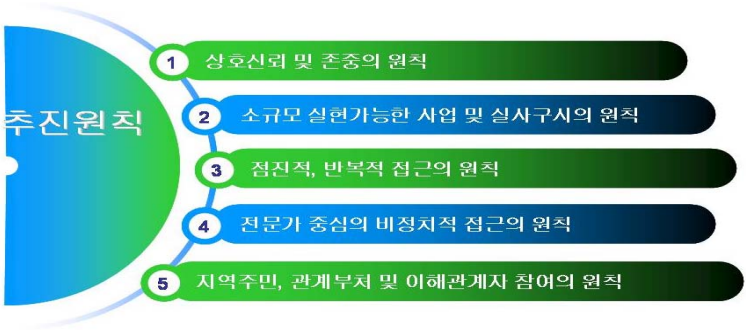
최근의 변화된 남북관계와 남북협력의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해양평화공원 추진의 기본원칙은 남북한 사이의 해양환경보전 및 자원관리에 관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적용할 일반 원칙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남정호 외, 2005). 해양수산분야 남북한 교류협력의 원칙은 남정호·강대석(2003)이 제시한 남북협력관리 원칙에 토대를 두고,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특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개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05년 및 이후의 변화된 정세를 반영하여 이 5가지 원칙으로 재구성하였다(<그림 5-4> 참조).

(1) 상호신뢰 및 존중의 원칙

이 원칙은 2005년 (주)현대아산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가 최근 들어 내금강, 개성, 백두산 관광사업을 재개하며 복원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원칙이다.[135] 신뢰와 존중은 갈등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 사이에도 강조되는 원칙이므로 지난 50년의 긴장과 대립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서는 더욱 강조해야 할 원칙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분야의 교류협력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해양평화공원을 주제로 북한과 교류협력의 물꼬를 틀 때, 체제경쟁으로 인한 상호불신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136] 특히 두 번의 군사충돌이 발생한 서해지역에서 남북협력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인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호신뢰와 존중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림 5-4>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원칙**



(2) 소규모의 실현 가능한 사업 중심, 실사구시의 원칙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 특수성 때문에 남북한 관련 접촉 및 합의문 채택 등은

135) (주)현대아산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신뢰보다는 철저하게 이익을 우선하는 관계로 이해하여,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계약관계가 체결되어 관계가 복원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136) 남정호(2005)에 따르면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북한 당국자 및 실무자의 특징을 고려할 때, 남한이 경제적 우위를 일방적으로 강조할 경우 북한의 교류 당사자를 자극'할 수도 있다고 함.

언론의 조명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의 경우 북한의 정책당국이나 국내 이해관계자에게 큰 흥미를 주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오랜 기간 및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계획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은 이러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결과물임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남북한 협력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외형의 규모가 큰 사업, 안정적으로 북한에 이익을 가져다 줄 사업을 선호할 것이다. 북한이 대내외 정책에서 실리사회주의를 운용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은 교류협력의 물꼬를 틀 때 소규모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북한사회를 발전시킬 수도 있는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협력단지 조성은 체제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자나 실무자도 해양평화공원을 협의·추진할 때 실리와 전시성 실적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안전한 사업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으로 위험성이 없고,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예, '기술전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 사업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점진적, 반복적 접근의 원칙

체제 경쟁과정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상호불신과 교류협력 경험의 취약성은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는 사항이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이 밝지만, 우발적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부정적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 프로그램 또는 구상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단계 또는 본격적 논의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외부조건이 변화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단계별로 축적해야 할 성과물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에 기초하여 점진적이고 반복적(incremental and iterative)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점진적, 반복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6년 전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1%는 '정세변화를 고려하되 국제기구와 협력 및 자료수집 등 기초작업은 추진 필요', 29.7%는 '관계악화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필요'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전문가 중심의 비정치적 접근의 원칙

남북한 교류협력에서 경제협력, 문화교류, 인도주의 차원의 인적 교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37] 그러나 남북한 교류협력의 성과와 국제여건의 변화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 평화정착을 의제로 채택하여 합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정상은 문제가 되었던 해상 경계설정을 직접 논의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접근하여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국방장관회담에서 나타났듯이 남북관계에서 외형적으로 드러난 명분을 우선할 경우 회담은 실리가 아닌 정치를 다루게 되어 궁극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동어로・평화수역은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질서가 형성될 때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공동어로・평화수역 등 정치적 명분이 강한 현안은 남북한 당국이 아닌 전문가 또는 민간인의 교류협력을 촉진・축적하고, 실리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평화정착이나 경계획정과 같은 정치적 속성이 강한 내용을 다루는 분야의 의견보다 실무적으로 접근하여 도출한 의견이 우선순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해양평화공원 추진사업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치・군사분야 회담에서는 실무전문가 그룹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조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회담이 되도록 한다.

(5) 지역주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참여의 원칙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및 해양평화공원 구상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및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기 위한 개별사업에 대해 관련 부처는 이해관계자가 없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이 없을 경우 협의절차에 쉽게 응할 것이다. 그러나 협의절차에 응하였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추진과정에서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의 참여는 해양평화공원 추진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해양평화공원은 서해연안 접경

137) 남한 주민들은 실현 가능한 남북관계 개선 분야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 우리말 공동사용, 예술문화교류, 경제지원 및 대북투자 등' 인도적 접근, 사회경제 분야 교류를 중요한 흐름으로 인식하고 있음. 설문조사에서 정치교류 및 학술교류를 실현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식한 응답자는 각각 7.1%, 6.9%에 불과했음.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남북해양환경보전과 관련한 민간단체,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이익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지방자치단체 등도 이해관계자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 및 해양평화공원의 3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한 사회 내부 갈등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 합의사항을 남한 내 내부 갈등으로 지연시키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해관계자를 책임 있는 추진주체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특성 때문에 회담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히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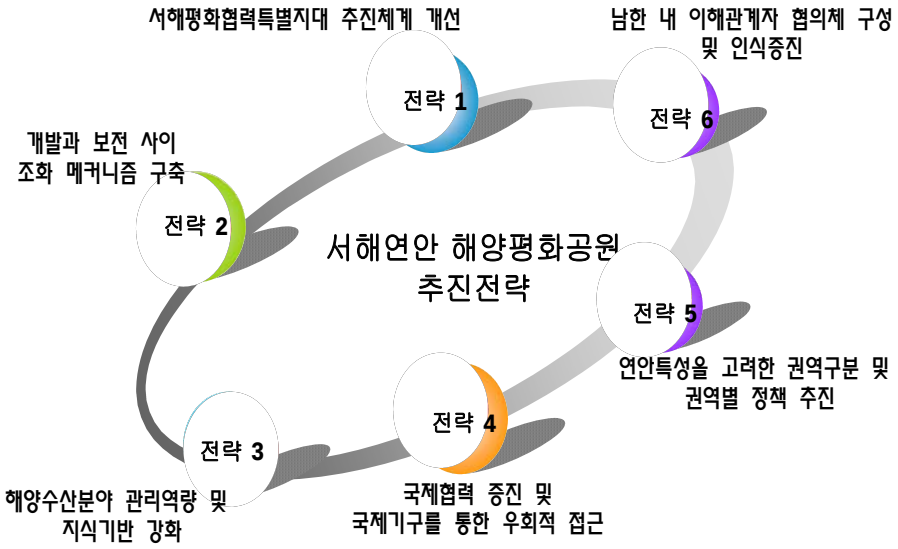
3.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략

해양평화공원 추진전략은 긴장완화, 경제적 번영, 생태계 및 환경보호라는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수단이다. 추진전략은 앞서 기술한 기본정책방향 및 추진원칙과 부합해야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추진전략은 현재 해양평화공원 추진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약점요소를 강점요소로, 제약요소를 기회요소로 전환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포함한다. 추진전략 도출의 일반적인 방법과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평화공원 추진전략'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체계 개선」, 「개발 및 보전 사이 조화 메커니즘 구축」, 「해양수산분야 관리역량 및 지식기반 강화」,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접근」, 「연안특성을 고려한 권역구분 및 권역별 정책 추진」, 「남한 내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인식증진」의 6개 항목을 제시하였다(<그림 5-5>).[138] 개별 추진전략 도출의 근거와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

138) 남정호 · 강대석(2003)은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한 협력관리 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협력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6개 전략으로 '협력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확보', '보호구역 관리체계화와 최적의 협력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지식기반 강화', '비무장지대 보호 · 관리체제와 통합', '개발과 보전의 통합', '이해당사자 참여와 다양한 형태의 교류 · 협력 추진', '국제기구와 협력체제 구축', '협력관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재원확보'를 제시하였음.

<그림 5-5>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진 전략



1) 전략 1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체계 개선

(1) 배경 및 여건

2005년 6월 국정과제 회의에서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남한의 「연안·해양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의 하나로 채택함으로써 이 구상이 남한에서는 법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2년 후 평양에서 개최한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합의함에 따라 한반도 차원의 정책인프라를 확보하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선언문 이행을 위한 총리회담 합의서에서 구체적인 추진체계와 일정이 제시되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및 산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각 사업별 추진일정을 합의하였다. 남한에서는 11월에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이행을 위한 사업방향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해양평화공원의 일 단계 성과물이자 향후 추진의 제도적 인프라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성과 극대화의 측면, 지속가능발전의 측면, 이행가능성의 측면에서 추진체계를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과극대화의 측면에서는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남북한 해양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컨텐츠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가능할 발전의 측면에서는 앞의 컨텐츠 확보와 연계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수산생물자원의 산란・서식기능을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행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2008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성과주의적 접근보다는 점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남한사회 내부의 정치적 여건 변화에 난항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항만기본계획 등 국가차원의 해양수산 관련계획의 수정[139]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남한사회의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남한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 중 법제도 정비에 가장 많은 응답(26.1%)이 있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중점 추진과제 및 추진방향

① '해양보전협력분과위원회'(가칭) 설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년)' 제22조는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경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대부분 육상의 경제협력 교류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운분야와 수산업분야의 의제를 장관급회담에서 4회에 걸쳐 다루었고, 해운합의서를 채택하고 수산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해양수산분야에 특화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해양환경, 연안관리 분야는 현재까지 진행한 남북한 교류협력과정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는 총리회담의 이해합의서에도 나타났는데 정상회담 선언문과 동일하게 해양환경 및 연안관리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의 산하 분과위원회에 '해양보전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의서 제5조에 따르면 '이 합의서

139) 해양평화공원은 접경 연안지역의 생태계 및 환경 보호, 서해상 평화정착, 연안지역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정비의 대상을 환경분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수산자원의 보전과 이용, 항만의 개발, 해운항로의 확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대상에 공간관리, 자원관리, 생태계 및 환경관리, 항만개발, 해운활성화 등을 포함해야 함.

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기 총리회담 또는 제1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소집시 회담의제로 상정하도록 한다.

▷ 추진방향 : 차기 총리회담 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시 의제로 상정

▷ 추진시기 : 2008년 상반기

②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일정 조정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의 대부분은 2008년에 시행하거나 사전준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12월말과 2008년초 다양한 형태의 남북회담이 집중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해주항개발, 해주경제특구설치,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 한강하구 골재채취가 실현되려면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도정비, 재원확보 등 선결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다. 각 사업별 이행가능성 평가결과는 <표 5-2>와 같다.

<표 5-2>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일정 이행가능성 평가**

사업내용	추진일정	선결내용	이행가능성
해주항 개발, 해주경제특구	'08년 사업계획 확정	항만개발방향도출 기본계획/실시계획 경제특구 입지산업확정 재원확보	△
공동어로	'08년 상반기 착수	지정기준, 관리방안 해상경계 이견해소 군사보장조치	△
한강공동이용	'08년 골재채취	채취지역선정 재해위험평가 환경영향평가 군사보장조치	△
민간선박직항	일정 미 확정	군사보장조치	ㅁ

주: ㅁ는 보통, △는 이행가능성이 낮음을 의미

민간 선박의 해주직항 통과와 같은 협력사업은 별도의 정밀조사없이 군사보장 조치만 이루어지면 가능하다. 해주직항로 이용 현안은 남한과 북한, 남한 내부에서 이견이 없고, 항로설정에 관해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많지 않아 2008년부터 실행이 가능할 것이다. 각 사업별 선결요건을 고려하여 추진일정을 조정하면 다음과 같다. 추진일정은 평양에서 2008년 상반기에 개최할 제2차 총리회담[140]에서 의제로 채택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3>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일정 조정(안)**

사업내용	세부 이행 사항	추진일정(년)
해주항 개발	항만개발 규모와 방향도출 기본계획 실시계획/재원확보	2008 2008～2009 2009～2010
해주경제특구	산업입지 및 타당성 분석 경제특구 기본계획 경제특구 실시계획	2008 2009～2010 2011
공동어로・평화수역	공동어로・평화수역지정기준 공동어로・평화수역 관리방안 공동어로 실시 군사보장조치 해상경계 이견해소	2008 2008～2009초 2009말 2009 2008～2012
한강공동이용	채취지역선정 재해위험평가 환경영향평가 골재채취 시범실시 군사보장조치	2008 2008～2009 2008～2009 2009 2009
민간선박직항	항로, 운항방법 확정 군사보장조치	2008 2008～2009

주: 전체 일정 및 합의서 변경은 제2차 총리회담(2008년 상반기)에서 처리

③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및 정상회담 이행을 위한 체제 정비(남한)

2005년 12월 19일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서 정한 주요 정책수단은 북한에 대한 지원(제10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제13조),

140)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합의서' 제7조.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제14조) 등이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2007년 11월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의 성과물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제1차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의 장기 계획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각 부문별 정책방향은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한 실천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이 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각 분야별 실천계획(가칭 '해양수산분야 남북관계발전 실천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및 정상회담 선언문 이행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 정상회담 선언문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현재의 추진 속도와 합의사항이 구체적이어서 2~3년 내에 가시화될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정상회담 선언문의 이행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특별대책(가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평화공원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이 기본계획의 해양수산분야 실천계획 및 범정부차원 특별대책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해양수산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해양수산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141]

<표 5-4>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한 추진체계 정비(안)**

구 분	정비사항	추진일정
해양수산분야 남북관계발전 실천계획(가칭) 수립	법률개정(법 제13조) 실천계획 수립	2008년 6월 2009년 12월
해양수산부 차관 남북관계발전심의위원회 포함	법 시행령 제8조 개정	2008년 상반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대책 수립	정부 합동 추진단 구성 추진대책 수립	2008년 2008년 상반기

141) 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됨. 이 법률의 시행령 제8조의 위원회의 위원에 해양수산부 차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향후 해양수산분야 남북한 교류협력 및 관계 발전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전략 2 : 개발과 보전 사이 조화 메커니즘 구축

(1) 배경 및 여건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대규모 해안사구를 비롯하여 저어새, 물범, 노랑부리백로 등의 산란·서식지로서 지형적, 생물지리적,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갯벌과 하구역이 양호한 자연 상태로 잘 보전되어 있어 다양하고 풍부한 수산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남한과 북한이 소관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한 보호구역이 69개소에 이른다는 것은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비무장지대를 자연 생태축으로 설정하였는데, 육상의 비무장지대는 이미 사회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향후 남한과 북한 사이에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이미 보전 필요성이 정책에 반영되어 있고, 개발 여건이 용이하지 않은 비무장지대보다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으로 개발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지역의 개발압력은 현재의 개발수요에 추가 수요가 더해져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 총 2,000만 평의 개성공단사업, 개성공단사업의 2배 규모인 '개풍공동개발구' 사업,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등은 연안접경지역으로 개발압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이 지역은 해주항과 인천항 등 항만시설이 입지하여 해로·육로를 통해 인적·물적 교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간접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다.

따라서 해주~개성~김포~인천광역시를 연결하는 경제벨트가 향후 남한과 북한의 사회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은 분명하지만, 연안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142] 특히 연안경제벨트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토지확보를 위한 간척과 매립, 항로유지를 위한 준설과 같은 물리적 영향뿐만 아니라 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한 화학적·생물학적 악영향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백령도~연평도~한강 하구~비무장지대를 연결하는 생태벨트와 해주~개성~김포~인천으로 이어지는 경제벨트 간의 상충을 조정하는 것이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143]

---

142) 해역수질오염,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변화, 해양 지형변화, 서식지 훼손, 수산생물자원 감소 등.

143) 현재 북한당국은 식량 및 에너지 확보, 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 확보와 같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설문조사에서 '큰 영향은 없겠지만 개성공단 가동으로 인해 수질환경이 오염될 것이'라는 의견이 49.1%로 나타났고, '큰 영향이 있을 것이며 하구역(한강, 예성강) 생태계 및 산란·서식지 훼손과 수질환경 오염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32.4%라는 사실은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는 정책조정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중점 추진과제 및 추진방향

① 서해연안지역 용도구역제(Zoning) 도입(남한→서해접경연안으로 확대)

일반적으로 용도구역제는 생물자원의 가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조화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간관리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용도구역제는 공간을 자연환경현황, 사회경제적 이용특성, 미래의 공간관리정책수요 등을 분석하여 기능(function)에 따라 구획하여 개별 용도에 적합한 이용행위와 행위제한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해양수산부, 2005). 형태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IUCN,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도구역제를 활용하고 있다.[144]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추진됨에 따라 이용과 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이 정했다. 따라서 서해연안지역에 용도구역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핵심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서식지, 생태계 등을 보호하고, 개발이 필요한 구역은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남한 내 갈등이 예상된다. 용도구역제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경제적 이용을 보장하면서 해양평화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45]

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1997년 최악의 경제 상황을 거친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실리사회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경제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현재까지 진행한 남북장관급회의의 현안은 경제 분야 교류협력에 치중되어 있는바, 앞으로 해양환경보전 분야의 교류협력 수준은 여전히 해운분야와 수산분야에 비해 높지 않을 것임.

144) IUCN과 Cardiff 대학이 작성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지침에서는 해양보호구역에 용도구역제를 도입하는 목적을 '생태적으로 중요한 서식지 및 생태계의 보호, 보호가 필요한 생태계와 사회경제활동의 분리, 지역주민의 활동을 보장하면서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적·문화적 가치 등 보호, 사회경제적 이용에 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생태계의 보호 등'으로 제시하고 있음.

145) 해양보호구역 용도구역제 도입 효과는 1)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역을 명확하고 다른 지역과 구분함으로써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2) 구역별 행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호구역 지정이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이나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인식을 불식시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용도구역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이용, 제도, 문화, 지역적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지할 사실은 현재 남한도 해역에 대해 용도구역제를 도입하기 위해 연안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도 해역기능구 설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용도구역제는 남한과 북한의 관할 연안을 단일한 관리단위로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적 상황, 북핵문제, 남북한 법제도 차이, 주민의 인식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 년 내에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용도구역제를 적용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현재 「연안관리법」 개정이 2008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남한의 관할지역에 한정하여 남한 법률에 따라 용도구역제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용도구역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남한의 법률로 「연안관리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146]」을 들 수 있다.

<표 5-5> **서해연안지역 용도구역제 추진방향**

구 분	참고사항	추진일정
남북한 해역용도구역 연구 현황 종합	남한 연안관리법 개정 중 북한 해역용도구역제 연구수행중 ※ 전문가중심으로 진행	2008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시범적용안 도출	항로구역, 어로구역, 해양보호구역, 항만구역, 해양관광구역, 자원개발구역 등	2009년
서해연안 현황 분석 및 용도구역제 도입	용도구역 남북한 합의도출 가용자료의 수집분석 용도구역제 적용	2010～2011년

키며, 3) 과학적 기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임(해양수산부, 2005).

146) 해양생태계법은 단일공간 내에서 행위제한, 금지사항, 허용행위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대상의 특징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다른 보호구역 형태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② 연안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실시

남북한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교류협력은 경제 분야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해양환경보전 현안과 공간관리 및 자원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은 정식의제로 채택된 사례가 없다. 공간적으로는 육상, 기능적으로는 경제분야 협력이 중심이 됨에 따라 향후 남북협력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 외에 개성공단의 확대, 개풍공동개발구 조성사업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규모 연안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민간단체나 전문가의 검토요구와 반발이 있겠지만, 관계 개선과 실익을 중시하는 현재의 남북관계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을 배려한 균형잡힌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개발사업의 추진과 이로 인해 발생할 해역수질오염, 수산자원 산란・서식지 감소, 수산생산량 감소, 주변 해역의 생태계변화 등을 우려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산업단지가 확장될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간척・매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골재채취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81.7%의 응답자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거나 채취사업을 하지 않는 것 또는 항로준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였다.

따라서 해양・연안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연안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경제성, 사회성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인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147]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풍공동개발구 및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연안・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환경훼손을 우려한 민간단체 및 전문가와 공동조사를 수행하거나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개발 초기단계부터 경제적 타당성, 주변 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한다면 보전과 개발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147) 전략환경평가는 현재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전략영향평가의 실시는 국가계획을 수립・이행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처음부터 NGO, 관계기관, 주민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환경문제로 정책집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음(윤성순 외, 2004).

<표 5-6> **전략환경평가 시행 방향**

구 분	내 용	추진일정
서해연안지역 개발압력 조사	남북공동 또는 남한단독 사업에 대해서는 남한단독 수행	2008년
전략환경평가 대상 사업 선정	남북한 합의 도출	2008년
전략환경평가 추진방법 개발	남북한 전문가 공동개발 남한 내 이해관계자 참여	2008～2009년
전략환경평가 시행	해주항개발, 골재채취, 해주특구・개성공단사업 등	2009～2010년

3) 전략 3 : 해양수산분야 관리역량 및 지식기반 강화

(1) 배경 및 여건

남한과 북한의 해양수산분야 인적교류 경험은 많지 않다. 이는 여건분석에서 제시하였듯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및 해양평화공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을 추진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해양수산분야 기술격차가 커서 해양수산분야 인적교류 및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항만건설, 항만운영, 어로기술, 양식기술, 해양환경 조사연구, 연안재해방지,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호, 해양자원개발 등 많은 분야에서 기술격차를 줄이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관리역량의 차이는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사항을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이행하는 데 약점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연환경, 자원, 공간에 대한 관리방안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상호이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마련되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작업에 해당한다. 선행연구에서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해양과 육상환경에 대한 조사자료와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148] 기존 남북관련 연구에서 이 지

148) 남정호・강대석(2003)은 남북 접경지역의 정보가 부족한 이유로 첫째, 군사지역이라는 이유로 자료조사의 물리적 접근의 제약과 정보보안의 이유로 정보 접근의 제약이 있으며, 둘째 남북한의 조사방식 및 정보관리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자료의 해석에 따른 신뢰성 확보 및 활용의 어려움이 있고, 세번째로, 환경관련 자료 및 정보수집은 남북교류・협력에서 우선순위가 낮고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기

역에 대한 자료 및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접근성' 및 '문제해결 지향성(problem solving oriented)'이 부족하여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149]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자료와 정보가 부족한 것은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때문에 자료조사 및 정보 확보를 위한 물리적 접근이 제약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정보가 대부분 과거자료로 정보의 시의성과 활용성이 낮고, 주로 내륙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조사가 수행되었던 것도 원인이다. 설문조사에서 서해연안 지역협력관리를 위해 남한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법제도 정비'(26.1%), 다음으로 '연안해양 환경 및 생태계 조사와 D/B 구축'(22.6%)을 인식하고 있는 점은 지식기반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북한의 지식기반 강화를 위한 여건은 세계화·정보화 추세와 남북한의 해역조사에 대한 관심수준에 비추어 열악한 실정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상용화, GIS 및 RS 등을 통한 정보 취득 기술 발달,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북한 자연환경 조사, 남북한의 해양환경 조사 및 정보화 수준 등과 관련한 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150]

(2) 중점 추진과제 및 추진방향

해양수산 관리역량 및 지식기반강화를 위한 추진방향은 북한의 수요와 남북한 해양수산협력 방향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공동조사의 경우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남북공동조사 목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조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합의하고, 조사자료와 정보의 통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남북 해양수산공동개발센터의 설립 및 운영

서해연안지역의 해양수산분야 현안은 항만개발, 해운항로 확보, 어업 및 증·양식, 골재채취, 생물다양성 보전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추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음.

149) 자료 접근의 어려움과 보안상의 이유로 절차가 복잡하고, 현장 접근이 어려워 해양환경 관련 자료의 확보 및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북한은 환경분야에서도 정보공개에 적극적이지 않고, 심지어 다자간 교류협력에서도 공동조사 등 자국의 정보를 노출해야 하는 사업일 경우 참여를 주저하고 있음. UNDP 사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북한이 농림분야의 환경보호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적극성을 발휘하지만 두만강 수질개선사업, 서해 해양생태계 보전사업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임을 알 수 있음. 또한 그동안 수차례 이루어진 환경 협력사업 과정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연구·조사 활동이 아닌 장비와 자원임(강광규 외, 2002).

150) 자세한 사항은 제2차년도 연구보고서(남정호 외, 2006)을 참고할 것.

진과 관련한 여건분석에서 이 지역에 대한 과학조사 자료의 부족, 북한의 낙후한 실험조사장비 등이 한계로 제기되었다. 또한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 및 수산기술 개발과 같은 실질적인 현안뿐만 아니라 공동조사, 전문가의 교육 및 훈련도 필요하다. 북한은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정책적 관심이 높은데,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 전문인력의 인적교류와 기술협력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해양수산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공간적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략물자통제로 인해 북한에 조사, 연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동개발센터는 항만, 수산, 연안관리,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개발 지원, 훈련, 공동조사, 장비의 공동사용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남북한 모두에 실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 해양수산공동개발센터의 설립으로 북한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과 장비확보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한 해양수산공동개발센터의 위상, 기능, 운영방향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5-7> **해양수산공동개발센터 운영 방향**

구 분	내 용	추진일정
남북한 인적교류 및 역량강화 시범프로그램 개발·운영	- 북한지역(평양, 개성), 제3국(국제기구 지원)에서 우선 추진 - 대학간 교수인력 및 학생인력 상호교류 추진	2008년
해양수산공동개발센터 설치 합의 및 운영방향 마련	제2차 총리회담에서 합의 이후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방향 마련	2008～2009년
해양수산공동개발센터 설치	개성 또는 해주, 강화	2009～2010년
체계적인 역량증진 프로그램 및 공동조사 시행	- 공동개발센터와 대학-연구소를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진행 - 공동조사는 조사항목, 방법 등을 협의한 후 이행	2010년 2010년～

② 공동조사 추진 체계 마련

공동조사는 북한이 YSLME에 참여를 주저하게 했던 원인의 하나였다. 북한은 해역자료를 보안자료로 분류하여 일반 학술지에서도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공동조사는 남북한 인적교류와 신뢰가 회복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류협력 분야이다. 물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행과 관련하여 2008년 말 또는 2009년부터 부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시범적으로 제한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서해연안지역에 대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조사가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조사 운영조직 구성,[151] 조사체계 합의(합의를 통한 공동조사 방법론 개발, 정보 및 자료 관리프로토콜 마련, 공동조사 실시), 교육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다.[152] 단계별 공동조사 방향은 <표 5-8>과 같다.

그러나 북한의 참여가 소극적일 경우 북한의 협조를 구해 남측의 군사지역부터라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153] 개발에 대한 경제성평가에 대한 부분과 연안환경보전 및 개발 이후 발생하는 환경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북한은 영상자료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수산성은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각 어장의 어선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어장의 해수온도, 기상 등을 자체적으로 생성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연안・해양자료 관리를 위한 연안해양자료의 기지화(D/B화)를 진행하고 있다. 연안해양자료의 기지화에는 1958년 2월에서 1987년 12월까지 동해 및 서해의 17개 정규연안관측소에서 관측한 모든 항목들에 대한 년, 월, 일, 시각별 자료들과 이 요소들의 통계값이 포함되어 있다.[154]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청천강 하구 일대의 문덕철새보호구와 그 주변의 생태환경을 위성자료(Landsat 5)를 이용하여 해석하기도 하였다.[155]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성영상자료 처리기술은

151) 북한은 90년대에 들어 국토환경보호성 아래 지방환경행정조직 및 관련 기관, 각 도에는 '환경감독과'를 두었으며, 그 산하에는 지방환경관측・감시소와 도시환경 및 기방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함. 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는 '동물협회', '식물협회', '원림협회', '산림협회', '수산자원협회' 등이 있음. 또한, 환경보호와 관련 연구기관은 환경보호연구소이며, 해양환경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은 동해해양연구소 및 서해해양연구소임(통일교육원, 2004, 2005 통일교육지침서).

152) 이후에 이용행위 조정기반 구축,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자료의 체계적 관리 등 실질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153) 제1차년도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워크숍에서 남북한 학술교류의 최고 단계가 공동조사이므로 북한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논의되었음.

154) 김기환, "우리나라 연안해양자료 묶음 형성과 자료의 기지화",「기상과 수문」, 제2호, 1992.

관리역량 및 지식기반 강화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협력사업이 될 수 있다.

<표 5-8> **서해연안 공동조사 추진 방향**

구 분	추진 사항	추진일정
1단계 : 사전 준비 단계	- 공동연구와 관련한 전문기관 및 인력에 대한 정보 수집 - 이를 통해 기존연구와 관련한 기초 자료를 확보	2008년
2단계 : 계획 수립 단계	- 공동조사 목표 설정 - 공동조사단 구성 : 남북한 정부당국, 조사기관, 각 분야별 전문가 - 공동조사 항목 및 방법 합의 도출 •육상환경 : 한강, 예성강, 임진강 등의 하천의 특성(유량, 염분) •해양환경 : 수리물리적특성(조위, 해수유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장단기 조류관측요), 수온, 염분, 해저지형 •퇴적특성 : 표층퇴적물 분석 •해양생태 : 난자치어조사, 저서생물, 부유생물 등의 조사 필요 •사회경제 : 토지피복, 산업, 인구 등	2008～2009년
3 단계 : 조사 결과 관리 단계	**- 공동조사 수행(시범→접경연안 전역으로 확대)** **- 조사결과 DB화** **- 서해연안 실태보고서 발간(국, 영문)** **- 지속적인 모니터링**	2009년 2010년 2010년 2009년～

주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성영상자료 처리기술을 관리역량 및 지식기반 강화분야 우선사업으로 추진.

③ 남한-북한 해양수산전문가 포럼 운영

해양평화공원을 비롯한 포괄적인 해양수산 분야 협력체계의 구축은 인적교류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차원보다는 남북한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포럼을 구성하고, 자료의 수집과 공동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남정호 외, 2005). 이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남북한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간행물, 연구논문, 학술지, 국제기구의 자료 등 정보·자료 및 기술교환과 전문가 간 학술 교류를 추진하도록 한다.

해양수산전문가 포럼은 남한과 북한 내 남북협력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행정기

155) 김정 외(1999).

관이 합의도출과정에서 나타날 경직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남북한 해양수산협력 사업의 결정과 결정·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객관적인 자료 제공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해양수산 전문가 포럼은 초기에는 비정기적 형태로 진행되겠지만 앞서 제기한 관리역량 및 지식기반 강화를 위한 토대구축의 틀로 기능할 것이다. 특히 이 전문가 포럼은 비정치적 교류를 촉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의 지원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전문가 포럼이 활성화되면 분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9> **남북한 해양수산전문가 포럼 운영방향**

구 분	내 용	추진일정
남북한 해양수산전문가 포럼 구성 합의	- 한민족 해양과학기술대회 - 경제협력공동위원회	2008년
전문가 포럼 역할 설정 및 사안별 프로그램 진행	- 해양수산분야 남북협력 지원 - 현안별 논의 국제기구 지원	2008～2009년
해양수산공동개발센터와 연계운영	- 분과위원회 구성	2009년

이 포럼은 2007년 11월 평양에서 개최할 해양과학기술대회가 무산되면서 올해 안에 구성될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앞으로 이 대회를 성사시키거나 국제기구를 통해 접근할 경우 2008년에는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전략 4 :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접근

(1) 배경 및 여건

해양수산분야 남북한 직접교류는 경제중심의 남북교류협력의 특성,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정치·군사적 특수성으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과정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지원사업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북한이 해양환경 및 해운분야 국제기구의 사업과 국제협약에 대해 관심이 높고, 국제기구도 북한을 참여시키려는 의지가 높은 점은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는 데 기회요인으로 기능한다. 두만강환경협력사업(Tumen-net),[156] 동북아 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157] NOWPAP, 2003년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의 「동북아 황사방지 특별회의」 등 동북아지역 다자간 환경협력과 UNESCO의 「동북아 생물권보전네트워크」 등 국제기구 주관으로 진행한 환경관련 사업에서 남북한 환경협력을 위한 간접 접촉을 모색하였다.

특히 지역해 관리를 담당하는 국제기구 프로그램과 생태계 및 환경보전분야 국제기구와 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PEMSEA 외에 2007년부터는 YSLME 사업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핵실험 후에도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점은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환경보전,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으로는 NOWPAP, PEMSEA,[158] YSLME 등이 있으며, 협력관리체제 구축과정에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기구로는 IUCN, UNESCO, UNDP, UNEP 등을 들 수 있다. IUCN, UNESCO는 접경지역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평화공원의 필요성을 북한에 전달하고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UNDP는 북한의 경제개발과 관련하여 측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이고, 현재 두만강 환경협력사업(Tumen-net)의 주관기관이므로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개발과 보전에 관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남정호・강대석, 2003). 전 국민 표본조사에서 '해양평화공원 지정 주체'에 대해 응답자의 62.1%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역을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응답한 것은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

156) 두만강 환경협력사업은 UNDP의 주관 하에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이 참여한 연구사업임. 프로젝트기간은 2000년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2년이며 대상지역은 두만강지역(중국 지린성, 북한의 함경북도, 량강도, 러시아 프리몰스키지역), 다우리안 초원지대(몽골 켄티, 도노드, 치티스카야 오블라스트), 만주 초원지대(도노드, 수크바타르, 내몽골 자치구)임.

157) NEASPEC: North 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158) PEMSEA : 동아시아해양환경협의회-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2) 중점 추진과제 및 추진방향

① 국제기구 및 사례지역과 네트워크 구축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남북한 간 정치·군사적 긴장이 높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므로 남한의 독자적 노력만으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양평화공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의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제자문단 회의를 현재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남북협력관리를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남북한 대화채널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06년 6월 27~29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1차 국제자문단 회의에 참가한 IUCN, NOWPAP, UNESCO, YSLME의 대표자들은 해양평화공원 지정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크게 공감하였으며 지속적 정책조언과 기술지원을 약속했다. 2007년 6월 21~22일 서울에서 개최한 국제자문단 회의와 국제세미나에서 자문단 구성원은 각 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전문가 자문단회의에 기초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생태계 가치와 보호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자문단회의는 국제기구의 인식을 높이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국제기구와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지원기구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협력 네트워크는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해양평화공원 또는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에 도움이 될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술라웨시 해양평화공원(필리핀-인도네시아), 홍해 해양평화공원(이스라엘-요르단), 공동어업 합작회사 설립(예멘-에리트레아), 보나파시오 해양평화공원 구상(프랑스-이탈리아) 등은 네트워크 구축 대상이다.

② 지역해 프로그램과 협력사업 개발

□ 동북아 생물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159]-육상비무장지대연계

EABRN의 주요 활동은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보전활동을 통한 국가간 협력증

159) 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진, 각국의 생물권보전지역 정보 및 관리경험 교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담당자에 대한 GIS 교육훈련 전개 등이다.[160] EABRN은 지난 시기 자연환경보전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에 기여하였다. 1~2년 간격으로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네트워크 회의에서 남북한 관계기관 대표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만나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161] 북한의 관련 책자 발간사업을 지원하여 북한의 주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에 도움을 주고 최신 관련 자료를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앞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경제협력이 진전되고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비무장지대보다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으로 개발압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EABRN와 같은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북한에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162]

□ YSLME 사업을 통한 남북협력 추진 - 물범보호 및 역량증진

2005년 3월에 유엔개발계획(UNDP)과 지구환경기금(GEF)의 지원을 받아 5년 동안 총 2,400만 달러를 황해광역생태계(YSLME :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남한과 중국은 상대방 해역의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황해에 관한 공동 관리 전략을 수립·시행할 목적으로 '황해광역생태계' 사업에 착수하였다. 북한은 2006년 11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3차 '중·조 해양과학기술 협력 제13차 회의'에서 YSLME 사업의 정식 참여결정을 중국 측에 통보하였다.[163] 북한은 중국 측 사업조정자가 적당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해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중국도 이에 동의하였다. 북한의 YSLME 사업 참여의사는 해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 해양과학기술을 도입하

160) EABRN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의 소지역 네트워크임. 동북아시아 생물권보전지역 공동비교연구 회의에서 남한은 생물권보전지역을 통한 원활한 남북협력을 추진하기위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고, UNESCO가 이를 받아들여 1995년 남한에서 개최한 제3차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비교연구 회의에서 EABRN가 공식 설립되었음. 사무국은 유네스코 북경사무소이며, 재정은 한국과 UNESCO가 50%씩 부담하여 $70,000으로 책정되어 있음.

161) 일본과 남한에서 개최한 경우 제외.

162) 이 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육상접경지역의 자연생태축(비무장지대)을 연안·해양지역까지 확대·연장함으로써 해양-연안-육상을 남북한 협력 하에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음.

163) 연합뉴스, "北, 황해 해양생태계사업 정식 참여결정", 2006. 11. 7. http://www.yonhapnews.co.kr/news/20061107/020400000020061107193555K2.html

는 것이 북한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164] 따라서 해양평화공원과 관련하여 백령도~북한 서해연안~중국발해만, 요동만을 왕래하며 서식하는 물범보호를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YSLME의 지원으로 관리역량 증진사업을 도모할 수 있다.

□ PEMSEA 사업-연안통합관리

PEMSEA[165]는 연안통합관리(ICM;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를 위한 회원국 직접지원과 함께 관리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립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여건마련과 역량강화에 집중한 결과,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해 프로그램이다. 현재 PEMSEA는 13개의 연안통합관리 시범해역(Demonstration Site)과 26개의 비교해역(ICM Parallel Site)을 지정·관리 운영하고 있다. 남한의 시화호는 비교해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북한의 남포지역 역시 시범해역으로 지정되어 관리지원을 받고 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다른 국제환경 프로그램이나 협의체와 달리 PEMSEA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1년 이후 남북한은 PEMSEA를 통해 우호적인 교류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PEMSEA 사무국도 적극적으로 남북한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연안·해양 환경 및 공간관리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므로, 해양평화공원을 중심의제로 별도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NOWPAP 사업 - 유류오염긴급방제계획 및 해양쓰레기

현재 NOWPAP[166]은 참여국 사이에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내재돼 있어

---

164) 북한은 중국 국가해양국 측에 물리해양학, 해양생물, 해양 위성 원격탐사, 디지털 시뮬레이션분야 인력 양성을 요청하였음.

165) PEMSEA는 1993년 중국 후우찌앤성(복건성) 샤먼(하문)에서 동아시아 해역의 오염방지 및 관리를 위한 지역 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Pollution in the East Asian Seas)으로 출범하였음. 11개 회원국으로 출발한 후 1994년 GEF의 재정 지원, UNDP의 사업관리, IMO(국제해사기구)의 프로그램 조직관리 형태로 사업이 시작되었음.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간 제1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제2기 사업을 완료하였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제3기 사업에 대한 예산(1억불)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임.

166) NOWPAP은 동북아 국가간 해양분야 환경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력기구이며, UNEP의 지역해프로그램의(Regional Seas Programme)[1]의 일환으로 1994년 설치되었음. NOWPAP 해역(북위 33°~52°, 동경 121°~143° 사이의 황해와 동해해역)에 대한 오염방지 및 보전사업을 위한 지역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이며, 북한은 2002년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음.

국가 간 지역활동 센터의 선택, 지역활동센터(Regional Activity Center-RAC)의 역할, 신규사업의 채택 등에서 갈등이 잠재하고 있다. 더구나 대상해역의 가운데에 위치한 북한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NOWPAP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167] 따라서 NOWPAP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해양활동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기여할 것이다.

NOWPAP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류오염방제긴급계획과 해양쓰레기 사업을 들 수 있다. NOWPAP은 관할해역을 대상으로 지역유류오염방제긴급계획을 마련하였는데, 향후 민간선박의 해주직항 통과가 이루어질 경우 선박운항 증가로 인한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협력사업으로는 NOWPAP '해양쓰레기 사업(Marine Litter Activity: MALITA)'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해양쓰레기의 이동성 때문에 북한도 중국을 포함한 남한, 일본, 러시아 등에서 해류를 타고 흘러들어온 해양쓰레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도 인접국가간 공동 협력을 통한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므로 북한의 NOWPAP '해양쓰레기 사업' 참여는 해양수산분야 협력 증진과 해양평화공원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기존 국제 협의체 활용

남한과 북한의 환경협력을 강화하는 다른 방안으로 동북아 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나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C)[168]와 같은 국제협의체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NEASPEC은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6개국, ESCAP(아태경제사회이사회), ADB, UNEP, UNDP,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동북아 환경협력 계획수립을 통한 협력사업의 수행과 환경보전 전반을 포괄하는 환경협력체이다. 북한은 제2차, 3차, 4차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이래 현재까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황사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구성한 한·중·일 다자 협의체가 공동조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한정부가 북한의 NEASPEC 참여를 요청하고 있어[169] 앞으로 북한의 참여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

167) 남정호·강대석은 2003년 연구에서 동북아시아지역 접경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NOWPAP의 지역활동센터를 북한 내에 별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그러나 국제기구를 유치하거나 국제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참여국의 정치·외교적 합의, 이해당사자간의 사업경비 배분, 사업추진 요소별 법적 근거마련 등 실질적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함(이명진, 2002).

168) NEAC: North 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169) 중앙일보, "중국에 황사외교 적극 펼쳐야", 2006. 4. 12일자.

NEAC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개최된 한·일 환경과학 심포지엄이 남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환경부처, 지자체 및 NGO간 정책포럼 성격으로 확대·발전한 회의다.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인적 네트워크 형성, 국가별 환경현안과 대응정책 소개를 통한 정책학습, 다양한 의제에 대한 접근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생물다양성 보존, 산성비, 해양오염, 유해화학물질, 청정기술 및 청정생산, 지구환경현안 등 역내 관심사항에 대한 참가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교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NEASPEC와 달리 NEAC은 지자체 및 NGO, 연구기관, 전문가 등 지역 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국가별 환경정책 및 환경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회의 참석에 대해 북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NEAC는 다양한 환경현안에 대해 북한과 자유롭게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5-10> **국제협력 추진방향**

구 분	내 용	추진일정
국제기구 및 사례지역과 협력체제 구축	- IUCN : 접경보호구역 - UNESCO : 해역용도제, 접경보호구역 - 술라웨시 해양평화공원 : 필리핀, 인도네시아, WWF - 홍해 해양평화공원 : 이스라엘, 요르단 - 공동어로, 합작회사 : 예멘, 에리트레아 - 보나파시오 해역 : 이탈리아, 프랑스(해양생태계 및 유류오염)	2008~2009년
지역해관리기구 협력사업 개발	- YSLME : 해양과학기술, 물범보호, 역량증진 - NOWPAP : 유류오염긴급방제계획, 해양쓰레기 - PEMSEA : 연안통합관리	2008년 2011년 2008년
기존 환경분야 동북아시아 협의체 활용	- NEASPAC, NEAC, ESCAP, APEC 등	2009년

5) 전략 5 : 연안특성을 고려한 권역구분 및 권역별 정책방향 추진

(1) 배경 및 여건

일반적으로 공간을 대상으로 한 관리방향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의 자연, 인문, 사회, 경제, 역사, 문화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관리 또는 정책시행의 우선순위와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즉, 한 지역에서 성공한 모델이라 할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서 적용할 때 반드시 성공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철저하게 지역특성(site-specific)과 지역의 현안(issue-dependent)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토대로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게 될 때, 현재 합의한 해주항개발, 해주경제특구, 공동어로・평화수역, 한강하구 골재채취, 민간선박 직항로 통과 등은 개별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현재 서해5도를 비롯하여 북한의 옹진반도, 해주만, 예성강・개성연안은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과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민감한 현안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2) 중점 추진과제 및 추진방향

이러한 접근원리를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적용할 때 그 지역은 권역별 특징에 따라 3개 구역으로 나타나는바, 지역특성 및 현안을 고려하여 권역별 정책방향을 도출할 때,[170] 백령・대청권역은 지역경제가 농업・관광업・수산업이 유사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물범, 사구를 비롯하여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종과 경관이 분포하는 것으로 특징화할 수 있다. 연평권역의 경제는 어업의존도가 다른 권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 주요 어종은 꽃게를 비롯한 갑각류이다. 이와 함께 연평권역은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되었던 꽃게자원을 둘러싸고 남한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지역이다. 육지와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높고, 노랑부리백로, 저어새와 같은 멸종위기종, 넓은 갯벌 서식지, 높은 개발압력은 강화・한강 하구 권역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남한과 북한의 교류・협력차원에서 고려할 때 각 권역별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먼저, 백령・대청권역에 유일하게 서식하는 물범은 춘계 및 하계에 서식하다 북한의 서해안을 경유하여 중국 발해만으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백령・대청권역에서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핵심 정책방향은 물범의 보호와 관리로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연평권역의 경우 남북 간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보호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지 않지만 어업자원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보전・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꽃게자원을 중심으로 어업자원의

170) 북한지역은 권역구분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여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음.

남획과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해양환경관리, 어업자원 공동 관리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화·한강 하구 권역은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넘나들며 갯벌을 산란, 번식에 필요한 서식과 취식장소로 이용하는 저어새, 노랑부리백로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한강 하구(강화도 북단)의 개발을 생태계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룰 수 있는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표 5-11>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소권역별 특성 및 정책방향**

소권역	자연환경 현황	사회경제적 이용	주요 쟁점	정책방향
백령·대청 권역	물범서식지, 두무진, 콩돌해안 등 수려한 자연경관 및 중요한 생태·문화자원 보유	농업과 어업을 생활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관광활동의 지속적 추진	물범 번식·서식지, 콩돌해안 등 중요한 지형경관 보전 어업·농업기능 유지 정주여건 악화	- 육상접근성 개선 - 관광개발의 지속적 추진
연평 권역	꽃게 최대 서식지	대부분 지역주민은 어업활동에 의존	꽃게서식지 보호 어업기능유지 어업소득 감소	- 군사적 긴장 완화 -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 근절 - 어장환경개선 - 수산자원 서식지 관리
강화·한강 하구권역	저어새 번식·서식지 특정도서 8개 천연기념물 5개 야생동식물보호구 4개 한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개성공단 조성 관광개발·이용 골재채취사업 등	저어새번식·서식지보호 공업단지 개발 각종 남북개발사업과 상충	- 개발과 보전의 조화

6) 전략 6 : 남한 내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인식증진

(1) 배경 및 여건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생태 및 환경자원의 보고로 불릴 정도로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의 서식지를 보전할 수 있는 연안·해양 보호구역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남정호 외, 2005).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저어새(*Platalea minor*), 노

랑부리백로(*Egretta europhotes*), 흰두루미(*Grus japonensis*) 등 희귀 조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또한 물범류와 다양한 종류의 무척추동물이 대량 서식하고 있어 이 지역의 생태·환경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남북한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DMZ 육상 생태계, 한강 하구생태계 및 연안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적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171] 다양한 개발계획 역시 추진 중이다. 서해연안 접경지역이 지닌 자연 및 광물자원을 개발하거나 육상 물류기지의 대안으로 항만을 활용하여 남북한 교류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계획이 다양하게 수립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서해연안접경지역의 자원과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남북협력 의제 개발 과정에서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낙후한 지역경제의 회복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국가정책이 상치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부처 사이에 접경지역의 관리와 남북협력 정책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 일관된 장기전략이 부재한 점도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부처 간, 이해관계자 사이에는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입장차이 외에도 북한에 대한 태도-포용 對 압박-를 둘러싼 이견도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정세와 맞물려 남한 내부에서는 현재의 대 북한 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남정호(2006)는 '19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 또는 포용정책의 틀에 대한 문제제기와 일방적 포용정책이 아닌 압박정책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사회의 동향, 남한 내부의 여건을 고려할 때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남한 내부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 내부의 견해 차이를 줄이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전략을 수립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중점 추진과제 및 추진방향

① '해양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 정책협의회' 또는 연석회의 구성

해양환경보전 분야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남정호(2006)의 연구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차이를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에서 '해양수산분야 남북관계 발전 실천계획'(안)을

171) 2006년 제2차 국회 DMZ 포럼에서 한강 하구, 강화도, 연안 생태계를 생태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깊게 논의함.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과 이견을 사전에 조정·조율할 절차와 기구로 '해양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 정책협의회(가칭)'의 구성을 제안하였다.[172] 남북정상회담에서 해양수산분야 협력사업이 다양하게 제기되었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라는 정상선언의 핵심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정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책협의회가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협의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판단된다면 연석회의 형태의 협의체 구성도 검토할 수 있다. 이 협의체는 남정호·강대석(2003)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 통일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국방부,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해5도 관계자,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연석회의 형태의 의사결정 구조는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높은 수준의 정책을 협의·결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연석회의 방식의 연성 구조로 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② 남한 내 지역주민 협력관계 형성 및 인식 제고

서해연안 접경지역을 해양평화공원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평화공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해관계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될수록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이다. 특정 방향으로 경도된 목적만을 강조하여 지역주민을 비롯한 소외된 계층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추진 체계도 개선될 것이다.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좁은 범위에서는 남한 내부로 대상을 제한할 수 있으나, 향후 해양평화공원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해관계자가 이 구상을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부처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우선 대상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교류와 협력과정에서 해양평화공원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유하도록

172) 정책협의회는 정부 차원의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책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무국이 필요함. 정책협의회는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통일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외교통상부 등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 전문가그룹, 민간단체로 구성함(남정호, 2006).

해야 한다.

<표 5-12>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인식증진 방향**

구 분	내 용	추진일정
남한내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민간단체로 구성 - 해양수산분야 남북관계발전 실천계획 및 해양평화공원 추진 갈등 사전조정	2008년~2009년
지역주민 협력관계 형성	- 권역별 정책방향 수립시 의견수렴	2008~2010년

4. 단계별 추진체계

해양평화공원은 남북한 관계의 경색, 북미관계의 악화 등 외부 여건에 매우 민감하고,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구상안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은 일대 진전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관계가 개선되어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남북한 사이에 도출된 합의문의 이행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 보고서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것과 같이 해양평화공원 및 서해특별지대라는 아젠다가 남북관계, 특히 정치·군사적 관계에 매우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총리회담이나 국방장관회담에서 나타났듯이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하여 기간이 더 걸리더라도 현재의 합의문이 해상경계와 같은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 해양평화공원 개념에 기초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발전시켜야 한다. 해양평화공원 개념의 3대목표인 평화정착, 생태계 및 환경보호,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체계를 앞에서 제시한 추진전략과 중점추진과제를 기초로 제시하였다. 단계별 추진체계의 틀에 중점추진과제를 배치할 때 이행가능성, 중요성, 성과축적 정도를 고려하였다.

□ 제1단계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행을 위한 인프라 강화 단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이행하는 것은 서해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 해양수산분야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의 외연을 확대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해양수산분야 정책인프라를 강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해양평화공원의 3대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생태계 및 자원보호분야를 초기단계에서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 제2단계 : 해양평화공원 추진 부분 이행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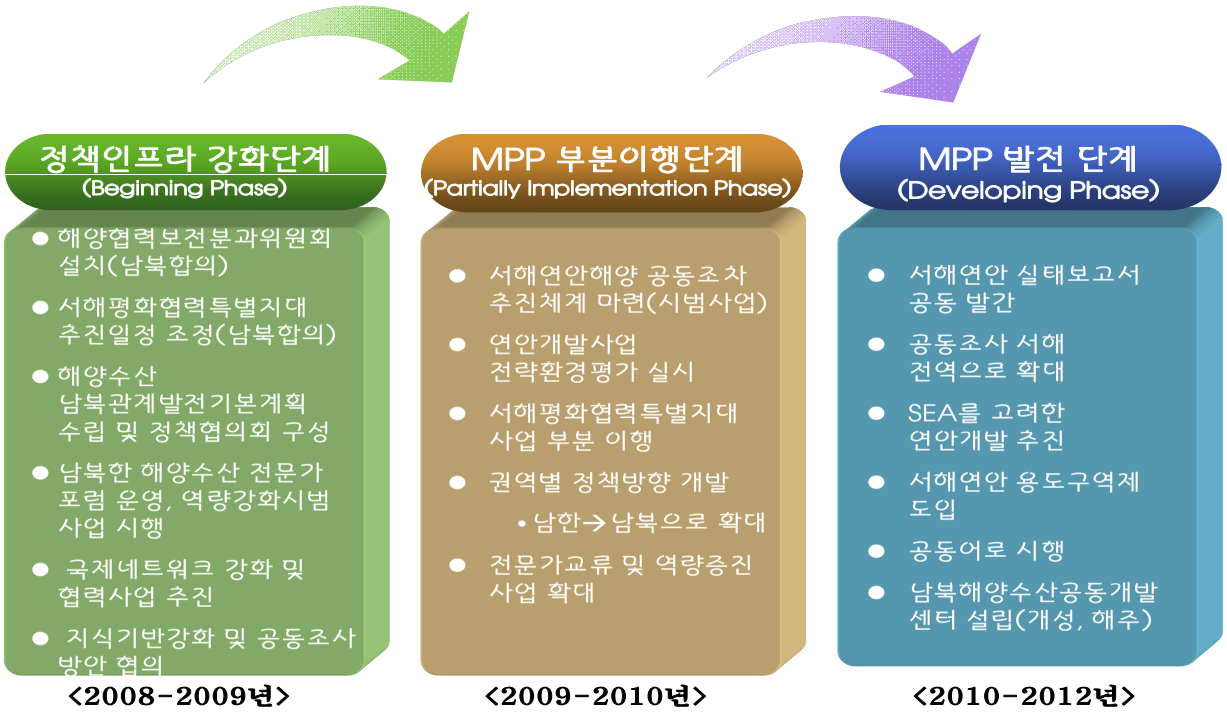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안에서 명시하지 않았지만 서해지역 남북협력을 촉진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안을 이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제1단계에서 합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가 제2단계의 주요 추진 사항이다. 부분이행단계는 남북한 해양 및 연안조사능력, 의사결정 및 관리능력, 접경연안에 대한 지식축적 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남북한 사이의 다층적인 당국자회담의 개최를 통한 성과축적, 국제자문단회의 안정화를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새로운 단계로 전환(자문기구에서 실무기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 제3단계 : 해양평화공원 발전 단계

남한과 북한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해상경계 설정을 비롯하여 군사보장조치가 해결되면 서해에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서 제안한 일부 사업은 이행될 것이며, 제1단계에서 확보한 외연확대 사업의 성과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3단계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단계에 들어서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남한내 갈등과 이견이 상당부분 조정되어 남북한 사이에는 새로운 합의문 또는 협정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대치하거나 또는 보완하는 형태로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3단계로 구성된 중점추진과제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5년(2008～2012년)으로 설정하였다. 2013년 이후의 상황은 남북관계의 변화 및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성과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단계별로 추진할 주요 사업을 <그림 5-6>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5-6> 해양평화공원 단계별 추진체계(주요 사업 요약)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가장 상징적이고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를 조망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해양평화공원' 구상은 평화정착(Peace), 생물종다양성 및 환경보호(Protection), 지역경제 활성화 및 통일경제 기반조성(Prosperity)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틀이다. 10월 4일 남북한 정상회담과 11월 16일 총리회담은 3대 남북관계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양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되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해양평화공원 구상은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해양평화공원 구상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반도 공동체를 향한 과정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과거 한반도에 큰 영향을 주었던 북한 핵 현안인 '핵 불능화와 신고조치'가 이행단계로 들어서면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선언문은 남한사회가 북한을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상대자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2008년부터 남북관계는 부분적 교류협력에서 전면적 교류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사회에서 남북협력의 방향과 속도,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남북관계를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특정한 사건이나 이슈로 인해 급격하게 냉각되거나 가열되는 취약한 구조를 벗어나 안정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과 보전 사이의 균형을 상실할 것을 우려한 민간단체, 전문가와 갈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절차와 객관적 자료, 투명성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은 남북관계의 내용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공간적으로는 육상중심, 내용상으로는 경제개발 중심의 남북한 교류협력 구조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합의로 최소한 육상과 해양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통해 두 개의 평화(정치·군사적 평화, 경제적 평화)가 아닌 온전한 세 개의 평화(생태·환경적 평화)를 실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173] 한강하구 골재채취, 해주경제특구에 대해서 2008년 착수하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생태계 및 자원보호'를 간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해양평화공원 구상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견해차'라고 할 수 있다. 11월 국방장관급회담에서 전례 없이 여러 가지 실체적 합의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어로·평화수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를 반영한다. 공동어로·평화수역은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의 공간적 거점으로서 위상이 있다. 서해연안 지역에서 정책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대상을 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해양평화공원의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배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어로·평화수역 현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실사구시를 중시하여 실리와 명분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실리사회주의, 남한의 실용주의, 남북한이 공동번영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실리를 먼저 얻고 명분에 관한 논의는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절에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실현하기 위해 2008년에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을 정책제안 형태로 제시하였다.

2. 정책제언

이 절의 정책제언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외연을 확대하고 해양평화공원이 추구하는 3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선결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제5장에서 제시한 해양평화공원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언을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제시하였다.

▷ 공동어로·평화수역과 남북한 해상경계설정 현안 분리 접근
▷ 공동어로·평화수역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동관리·경비단(Co-Rangers) 운영 및 합작회사 설립 준비
▷ 해주항을 아시아의 미항, 지구촌 평화의 항만으로 개발

173) 남정호, "군사·경제의 평화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의 평화도 보장되어야 한다", 「민족화해」, 통권 29호, 2007년 11~12월, pp. 22~25.

▷ 해주경제특구 개발 콘텐츠 차별화 및 환상형(環狀形) 연안관광 추진
▷ 민간선박 해주직항로 통과에 따른 유류오염방제긴급계획(oil-spill contingency plan) 공동 수립

1) 공동어로·평화수역과 남북한 해상경계설정 현안 분리 접근

공동어로·평화수역 설치는 남북관계 긴장의 근원지인 서해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사업의 핵심이다. 국방장관회담에서 지정기준과 위치를 둘러싸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는데 본질적으로는 해상경계선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동어로가 남북한 긴장완화와 수산물생산량 증대라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므로, 목표달성을 염두에 둔 접근을 해야 한다.

□ 두 현안을 분리 접근하여 얻게 될 실리와 불이익의 비교·형량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는 두 현안을 분리하여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합의서에는 해상경계설정에 대해 '서해의 불가침선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쌍방이 계속 협의해야 하며,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한 구역을 해상불가침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 지정으로 얻게 될 실리(수산생산량 증가, 중국어선 불법·남획방지, 안보불안 해소, 남북한 경비비용 절감 등)와 해상경계선 현안을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나타날 남북한 양측의 불이익(분리접근으로 인한 향후 해상경계설정에서 불리)을 남북이 합의하여 비교·형량하도록 한다.

□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은 점진적, 단계적 접근, 2008년 포럼 개최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 기준은 등면적, 등거리, 수산자원량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실리를 기준으로 보면 수산자원량을 지정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산자원 현존량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공동어로 구역을 2008년에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범해역을 먼저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범해역 지정, 공동조사 시범시행, 공동조사 확대(대상지역은 유보지역으로 지정), 최적 생산지역 후보 도출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하도록 한다. 시범해역 지정과 지정기준 도출, 공동조사 방법 마련을 위해 2008년 상반기에 남북한 전문가 포럼을 국제기구 참관 하에 개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범해역으로는 2006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연평도 북서쪽 남한과 북한이 각각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이 교차 또는 갈라지는 지역에서 등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지정할 수 있다.[174]

2) 공동어로·평화수역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동관리·경비단(Co-Rangers) 운영 및 합작회사 설립 준비

□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남북한 중심의 공동관리·경비단(Co-Rangers) 창설

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과 병행하여 검토할 사항은 공동어로지역의 관리, 경비체제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공동어로 방식에 따라 경비·관리업무 방식도 크게 달라지는데, 남한의 선박과 어민만 출입하는 방식, 두 측의 선박이 섞여 어로하는 방식, 남한의 선박에 북한 어민이 승선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남한은 해양경찰이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북한은 해군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공동관리·경비단 설정 시 고려해야 한다.

아프리카, 구 동유럽의 육상접경지역에서는 두 나라가 대부분 국경을 넘지 않고 각 관할영역을 경비하면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이다. 육상과 달리 해역은 따로 경계가 없고 남북해양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관할만 관리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관할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또 다른 해상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평화수역 지정취지가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남한과 북한이 같은 수의 인력을 파견하여, 똑같은 복장을 하고 합의에 의해 마련한 관리·경비규약에 따라 평화수역을 관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접경지역 관리경험이 풍부하고, 경비·관리 기술이 가장 많이 축적된 세계자연보호연맹(IUCN)[175]이나 유네스코의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동관리·경비단의 역할은 불법어로 단속, 어로구역에서 갈등 사전방지, 해양자원 및 생태계 조사, 자연환경보전 등이 될 것이다.

---

174) 연평도 서북쪽 해상지역은 남북한 주장 해상경계선이 교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어선의 어로활동이 가장 활발한 해역임. 또한, 남한과 북한 어민 모두 접근할 수 없어 기존 어업권을 훼손하지도 않으면서 추가이익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해역임.

175)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를 맡은 사람을 레인져(Ranger)라고 함. 평화를 만들고 적대관계를 해소한다는 의미, 번영의 의미를 담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대외에 효과적으로 선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경비단의 명칭으로 CoREA를 검토할 수 있음.

□ 공동어로 정착을 위해 통제효과가 높은 합작회사 설립

시범단계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선박이 동일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방식의 공동어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자칫 1999년, 2002년 발생한 군사적 충돌이 민간차원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돌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축적한 성과를 무위로 돌릴수도 있다. 어로구역에 예멘과 에리트레아[176]가 해상경계문제를 해결하고 어로문제 해결을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합작회사는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어로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공동어로를 지속시킬 수 있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 이익을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것도 합작회사의 장점이다.

3) 해주항을 아시아의 미항, 지구촌 평화의 항만으로 개발

□ 남북해양협력 효과와 한반도 공동체 브랜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항만 설계 추진

남북한 선박수송과 남북교역 지원 등을 위한 항만활성화는 북한의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실질적 이익을 북한에 가져다 줄 것이며,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177]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사업으로 추진할 해주항 개발은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이익 외에 한반도의 가치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해주만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해주항만을 환경친화적 수변공간(waterfront)으로 조성하고, 다목적 기능을 담당하는 경쟁력 있는 미항(美港)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풍부한 갯벌자원을 자랑하고 있고, 아름다운 해안선이 있는 해주만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미래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항만을 설계하도록 한다.[178]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일반 화물하역기능 항으로 전락하여 개발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반폐쇄성 내만해역인 해주만과 배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없이

176) 1996년 에티오피아에서 독립한 북아프라카 신생국가.

177) 북한의 군사적 요충지였던 장전항이 금강산 관광용 항만으로 개발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입출항지로 변모하였고, 항만기능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178) 미래지향적 해주항 개발구상은 2006년 연구사업에서 제안한 서해 전통뱃길복원 및 심곡수중보 하류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소규모 항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임.

개발이 진행될 경우 남한의 마산만, 광양만, 시화호와 같이 훼손이 우려된다.

미항개발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은 남한이 과거 IBRD로부터 차관을 받아 항만을 개발할 때 항만환경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남북이 공동으로 해주항 개발을 추진하면서 '아시아 미항, 평화의 항만'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할 경우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재원을 조달할 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2해양엑스포와 연계하여 효과 극대화-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평화의 바다

여수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지구촌에 들려줄 수 있는 메시지의 가치 때문에 차기 행사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바다, 인간과 공존하는 연안이라는 이미지 외에 한반도가 지구촌에 들려줄 또 다른 가치 있는 메시지인 '평화의 바다'는 한반도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여수엑스포 개최시기와 맞물려 해주항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2012년은 한반도에서 전세계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외에 평화의 바다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해주경제특구 개발 콘텐츠 차별화 및 환상형(環狀形) 연안관광 추진

□ 해주경제특구를 미래산업 협력기지로 개발

해주경제특구 설치가 합의되면서 제기되었던 현안은 '개성공업지구와 차별성', '경제특구에 입지할 산업 종류 및 규모'였다. 해주만의 자연환경, 해주지역의 육로접근성, 북한입장에서 정책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 산업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 개성공업지구와 차별성을 유지하고, 해주만의 가치와 독특한 특성을 고려할 때 해주경제특구에 입지할 산업은 수산물 가공, 유통, 해양관광, 휴양산업을 고려하여 개발하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해5도와 북한 황해도를 통합한 환상형 관광거점으로서뿐만 아니라 고급휴양지로 개발하여 다른 경제특구와 차별화를 꾀하도록 한다.

□ 서해5도~개성~해주~옹진반도를 연결하는 환상형(環狀形) 연안관광 추진

서해연안지역은 남한과 북한이 해양문화를 공유했던 곳이며, 한반도 서해안에

서 하구역 중 자연형 하구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따라서 강화도~한강·임진강·예성강 하구에 이르는 삼각크루즈(Triangle Cruise) 항로, 인천~백령~연평 항로, 개성~해주~옹진반도~백령도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는 평화정착의 상징성을 높이고, 경제번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제2차년도 연구에서 제안했던 서해뱃길 복원 및 소규모 선박관광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179]

5) 민간선박 해주직항로 통과에 따른 유류오염방제긴급계획(oil-spill contingency plan) 공동 수립

2005년에 발효한 남북해운협력합의서는 금번 정상회담 선언문을 통해 실질적 이행단계에 접어들었다. 최근 들어 북한산 모래의 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6년 남북한 사이 선박운항은 편도기준으로 모두 8,401회였다. 이는 전년대비 87%가 증가한 것으로 해주항 민간선박이 직항로를 이용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이 이행될 경우 선박운항 회수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분포하고 있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할 뿐만 아니라 경제소득원인 수산자원이 산란, 서식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단 한번의 유류오염사고만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서해 연안지역의 생태계와 서식지, 수산자원은 치명적 영향을 받는다. 1995년 발생한 씨프린스 호 사고와 금번 발생한 태안연안 선박사고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남북한 교역량 증가에 대비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류오염사고 대비 긴급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180]

---

179) 구체저인 사항은 제2차년도 연구보고서 참조.

180)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은 긴급계획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는데, 남북공동 긴급계획 수립시 UNEP, IMO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참 고 문 헌

강종희・남정호・최성애・김정봉・김수진・이헌동・황진회・심기섭,「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2006.

김영환・윤현주・유종수, “서해중부 연안 해조군집의 종조성과 생물량”,「식물학회지」, 38(4) ; 1993, pp. 389～398.

김창혁・류행부, “엘리뇨와 조선서해 해양요소변화관계”,「기상과 수문」, 제1호, 2006, pp. 24.

남정호, ‘군사・경제의 평화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의 평화도 보장되어야 한다’,「민족화해」, 통권 29호, 2007, pp. 22～25.

남정호・강대석,「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한 협력관리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남정호・장원근・신철오・최지연・육근형・최희정・이구성・이지선・이원갑,「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Marine Peace Park)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남정호・장원근・최지연・육근형・최희정・이원갑,「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Marine Peace Park)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박우준・윤철남・김준기, “황해남도 일대의 위기 및 희귀식물의 종구성과 분포에 관한 연구”,「과학원통보」, 제4권, 2001, pp. 43～45.

박정원,「북한 김정일체제의 법제정비 현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0.

백영일, “조선서해북부연안에서 모호모임론에 의한 수질환경평가”,「기상과 수문」, 제5권, 2001, pp. 18～19.

법률출판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2004.

안광현・문분희, “서조선만연안에서 미세조류발생의 해양기상학적조건”,「기상과 수문」, 제2호, 2005, pp. 26.

유기관, “북한의 환경실태와 남북한 환경분야 협력방안”, 평화의 숲 자료실 (http://www.peaceforest.or.kr), 2000.

윤상훈, “서해연안 물범서식 현황과 관리 문제점”,「한반도 해양평화공원과 동아시아 접경연안 협력관리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

울, 2007. 6. 21.
이상준・김원배・이문원,「북한의 공업지역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연구 - 구동독과 폴란드의 사례를 토대로」, 국토연구원, 2004.
이석우, “인천항 조석”, 조류 및 조량에 대하여,「한국해양학회지」, Vol. 7, 1972, pp. 86～97.
이우철・임양재, “한반도 관속식물의 분포에 관한 연구”,「한국식물학회지」, 제8권(부록), pp. 1～33, 1978.
인하대해양과학기술연구소,「연안해역오염도 조사 : 인천지역의 수질보전대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인천시, 1993, pp. 520.
일본야조의회,「동아세아지역의 두루미류의 중요서식지 보호계획보고서」, 1996.
외무부,「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간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영한대역)」, 1996.
통일교육원,「2005 통일교육지침서」, 2004.
통일부,「통일백서」, 2007.
_____,「2004 통일백서」, 2005.
_____,「2006 통일백서」, 2006.
최현주, “도서가 해양경계획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Strategy 21」, 6호(가을・겨울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0, pp 74～79.
한국수출입은행, “에트리아의 정치・경제 동향”,「국별리포트」, 2007.
_____, “예멘의 정치・경제 동향”,「국별리포트」, 2007.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계 기본조사: 37°～38°최북단」, 1996.
_____,「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종합 Ⅴ」, 2006, pp. 99～102.
해양수산부・환경부・농림부・건설교통부・해양경찰청,「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006～2010)」, 2006.
허학영, “남북한 자연 보호지역 시스템과 DMZ”, 국립공원 2040기념 국제심포지엄, 2007.
환경부, “비무장지대일원 생태계보전대책”, 민・관 공동협의회 관계자 워크숍, 2007.
환경부,「2004 하구역 생태계 정밀조사: 한강, 삼산천, 탐진강」, 2005.
환경부,「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 2004 & 2005.
환경부,「갯벌 생태계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 2003.
홍덕규, “베트남 평화협정 및 중동평화협정”,「전략연구 통권」, 제18권, 한국전략

문제연구소, 2003.

AbuAwali, A.A. “An Establishment of the Red-Sea Marine Peace Park between Jordan and Israel”,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Seoul, Korea, 2005.

Atkinson M. J., Birk Y., and Rosenthal H., “Evaluation of Pollution in the Gulf of Eilat”, Report for the MIEA, Israel, 2001.

Crosby, M.P., Abu-Hilal A., Al-Homoud A., Eraz. J, and Ortal R., 2000. “Interactions among Scientists, Managers and the Public in Defining Research Priorities and Management Strategies for Marine and Coastal Resources: Is the Red Sea Marine Peace Park a New Paradigm?”, *Water, Air and Soil Pollution 123*, 2000, pp. 581～594.

Crosby, M.P., B. Al-Bashir, M. Badran, S. Dweiri, R. Ortal, M. Ottolenghi, and A. Perevolotsky, “The Red Sea Marine Peace Park : Early Lessons Learned from a Unique Trans-boundary Cooperative Research, Monitoring and Management Program”, Proceedings of IUCN/WCPA-EA-4 Taipei Conference, March 18～23, 2002, Taipei, Taiwan, 2002, pp. 233～248.

Downie, D. L, Perena E. G, Hunter J., N. Irving W., Mead L., Rosen W. H., Schmidt K., Stanley A., Stone J., and Williamson M., “Protecting Coral Reefs in Aqaba: An Analysis of Biological, Economic and Political Values”, Environmental Policy Studies Working Paper #1,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1996.

DPRK, DPRK of Korea Country Report, 2004.

Eisenberg, L.Z. and N. Caplan, “The Israel - Jordan Peace Treaty: Patterns of Negotiation, Problems of Implementation”, *Israel Affairs*. Vol. 6(3), 2003.

Gradus, Y., “Is Eilat-Aqaba a Bi-national City? Can Economic Opportunities Overcome the Barriers of Politics and Psychology?”, *GeoJournal*. Vol. 54, 2001, pp. 85～99.

Gareth R.V. Stansfield, “The 1995-96 Yemen-Eritrea Conflict over the Islands of Hanish and Jabal Zuqar : A Geopolitical Analysis”, *Durham Middle East Paper* No. 66, 2001, pp. 57～62.

Hyun Kim, “MPP Initiative- a Global Unique Approach, How Do We Support?”,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rine Peace Park, a Vehicle for the Cooperative Management of Coastal Areas in East Asia, Seoul, Korea, 2007.

Israel Ministry of the Environment, *Protecting the Gulf of Eilat/Aqaba, Israel Environment Bulletin*, Vol.25, No 3, 2002.

Israel Ministry of the Foreign Affairs, 1997. Binational Red Sea Marine Peace Park, 1997.

Jose Ingles., Alberto Encomienda, "Transborder Marine Peace Park in the Coral Triangle: Process and Challenges",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rine Peace Park, a Vehicle for the Cooperative Management of Coastal Areas in East Asia, Seoul, Korea, 2007.

Kliot L., "The Grand Design for Peace: Planning Transborder Cooperation in the Red Sea", *Political Geography*, Vol. 16. No 7, 1997, pp. 581～603.

Library of Congress(U.S.), Country Profile : Yemen, 2006.

_____, Country Profile : Eritrea, 2006.

Russell A. Mittermeier et al., Transboundary Conservation: A New Vision for Protected Areas, CEMEX, 2005, pp. 27～82.

Yim, Y. J. and T. Kira, Distribution of forest Vegetation and Climate in the Korean Peninsula Ⅰ. Distribution of Some Iindices of Thermal Climate, Jap. *J. Ecol*, Vol. 25, 1975, pp. 77～88.

IUCN, The International Marine Park of the Mouths of Bonifacio, 2004, pp. 1～25.

_____, The Project of International Marine Park in the Mouths of Bonifacio in International Law, 2004, pp. 1～27.

_____, Security Considerations in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Transboundary Conservation Areas, 2006, pp. 21～28.

WWF, Annual Report, 2006.

개성공단 한국토지공사개성사업처 http://gaeseong.iklc.co.kr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북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나라' http://www.kcckp.net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총조사인구 http://www.kosis.kr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북한주간동향 http://www.unikorea.go.kr
해양수산부 수산종합포탈시스템 http://www.fips.g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index.jsp
주한예멘영사관 http://www.yemen.co.kr
IUCN http://www.iucn.org
WWF http://www.worldwildlife.org
FAO http://www.fao.org
Cedre http://www.cedre.fr/uk/spill/fenes/fenes.htm
아카바자유무역구역관리청 http://www.aqabazone.com
요르단-이스라엘평화협정문
http://www.kinghussein.gov.jo/peacetreaty.html
이스라엘 외무부 홈페이지
http://www.mfa.gov.il/MFA/Peace%20Process/Regional%20Projects/Gulf%20of%20Aqaba-%20Environment

부록 1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

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노 무 현	김 정 일

부록 2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2007년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매년 6월 15일을 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내년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양측 의회를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활성화해 나가며 쌍방 당국은 남북국회회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서해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호혜의 정신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하고 20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공동어로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수산분야에서의 협력문제를 12월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해주지역에 「경제협력특별구역」(「해주경제특구」)을 건설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활용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을 위한 실무접촉과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며 2008년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한강하구에서 2008년안으로 골재채취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안에 실무접촉과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관련한 항로대 설정, 통항절차 등의 문제를 12월중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⑨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⑩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⑪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① 남과 북은 경의선 도로와 철도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을 위한 철길보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와 공동이용에 필요한 설계, 설비, 자재, 인력 등을 적기에 보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조선협력단지 건설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2008년 상반기 안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선박건조능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에 대한 설비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일안에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따라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제1차 회의를 12월중에 부산에서 개최하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 개성공단 건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지질조사를 금년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안에

2단계 건설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로인력을 적기에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숙소건설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도로 건설 및 열차운행 문제를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금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며, 이를 위한 판문역 임시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신호·통신·전력체계 및 철도연결구간 마감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위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실무접촉을 개최하고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이 0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금년내에 통행절차를 개선하고, 2008년부터 인터넷,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금년내에 착공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①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단천지구광산 투자 등 지하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제3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상반기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을 금년중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의 수산물생산과 가공, 유통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지하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수산,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5)「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① 남과 북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총리회담 산하에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공동문화행사,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공동응원을 비롯한 사회문화협력사업들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백두산과 개성관광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2008년 상반기중에 개최하고, 기상정보교환과 관측장비지원 등 기상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금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인도주의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진행하며 2008년 새해를 맞으며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통보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피해복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총리회담을 6개월에 1회 진행하며, 제2차 회담을 2008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8조 수정 및 발효

①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②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 북 총 리 회 담	북 남 총 리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북 측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내 각 총 리
한 덕 수	**김 영 일**

부록 3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보다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하여 7~9명으로 구성한다.

② 양측의 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③ 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부문별 분과위원회와 실무접촉을 운영한다. 우선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실무접촉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위원회는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 또는 위임한데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주관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추진한다.

③ 공동위원회는 부문별 분과위원회 및 실무접촉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위원회 회의는 6개월에 1회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

서 진행할 수 있다.

③ 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합의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⑤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제4조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각기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또는 서명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와 부칙은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되었던 분야별 실무협의회와 실무접촉의 사업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접촉에서 담당하여 계속 진행한다.
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그 산하의 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서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 16일

남북총리회담	**북 남 총 리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북 측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내 각 총 리**
한 덕 수	**김 영 일**

부록 4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③ 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우선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쌍방 당국 사이의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 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한 사업들을 주관한다.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사업들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추진한다.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

방이 합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또는 서명 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 북 총 리 회 담	**북 남 총 리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북 측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내 각 총 리**
한 덕 수	**김 영 일**

부록 5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적대감 조성행동을 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04년 6월 4일 합의를 비롯하여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보완하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적인 중지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무력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전쟁시기의 유해발굴문제가 군사적 신뢰조성 및 전쟁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추진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민족의 공동번영과 군사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에 대하여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서해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별도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대 설정과 통항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개성·금강산지역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되도록 2007년 12월 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2007년 12월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협의·채택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였다.

①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은 2008년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②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되는데 따라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7. 본 합의서는 쌍방 국방부장관이 서명하여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이 합의서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② 이 합의서는 각기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 29일

대 한 민 국
국방부장관
김 장 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부록 6 :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5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서해상에서의 평화정착과 남북어민들의 공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산협력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평화정착과 공동이익의 원칙에서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공동어로를 진행하기로 한다.
   ① 공동어로 수역과 공동어로 시작 시기는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되는 데 따라 확정하기로 한다.
   ② 공동어로에서의 어로기간, 어선 수 및 어구이용, 입어료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2. 남과 북은 서해상의 정해지는 수역에서 쌍방의 어선이 아닌 불법어선들의 어로활동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수산물생산, 가공 및 유통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수산물 생산향상을 위해 우량품종의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한 수산분야 기술교류를 진행한다.

5. 남과 북은 제3국 어장진출에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6.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는 앞으로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한다.

2005년 7월 27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박 병 원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 영 건

부록 7 : 유엔 「한반도 평화, 안보, 통일」을 위한 결의안 채택

31 October 2007

General Assembly
GA/SM/385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 News and Media Division • New York

Applauding today's resolution on Korean reunification, assembly President calls for support of all states in ongoing dialogue

This is the text of a statemen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rgjan Kerim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on the occasion of the Assembly today adopting, without a vote, a resolution on the "peace, securi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 welcome the unanimous decision of the United Nations membership to give its full support to the inter-Korean peace process by adopting today without a vote the resolution on "peace, securi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resolution by the General Assembly is also a clear recognition of the efforts of the people and lead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pursue through dialogue and peaceful means reconciliation between their two countries. I commend the two countries for their active contribution to promoting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Through this resolution the General Assembly gives further encouragement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implement fully and in good faith the Declaration on the Advancement of North-South

Korean Relations, Peace and Prosperity, which was adopted on 4 October 2007.

In the words and spirit of the resolution, I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continue to support and assist, as appropriate, the process of inter-Korean dialogu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so that it may contribute to peace and security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as a whole.

United Nations A/RES/62/5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16 November 2007

Sixty-second session
Agenda item 167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without reference to a Main Committee (A/62/L.4)*]

62/5. Peace, securi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General Assembly,

Recalling its resolution 55/11 of 31 October 2000, in which it welcomed and supported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joint declaration adopted on 15 June 2000 by the two lead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affirming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garding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onvinced that inter-Korean dialogue and cooperation are essential for consolidating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contribute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beyond,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Recognizing that the summit meeting held in Pyongyang from 2 to 4 October 2007 between the two lead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Declaration on the Advancement of North-South Korean Relations, Peace and Prosperity represent a major milestone in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in advancing peace and common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wider region as well,

Recalling the statements welcoming the inter-Korean summit made on 1 October 2007 by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and recalling also the statement welcoming the adoption of the Declaration made on 4 October 2007 by the Secretary-General,

1. *Welcomes and supports* the inter-Korean summit held from 2 to 4 October 2007 and the Declaration on the Advancement of North-South Korean Relations, Peace and Prosperity adopted on 4 October 2007 by the two lead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2. *Encourage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implement the Declaration fully and in good faith, thereby consolida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laying a solid foundation for peaceful reunification;

3. *Invites* Member States to continue to support and assist, as appropriate, the process of inter-Korean dialogu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so that it may

contribute to peace and security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as a whole.

41st plenary meeting
31 October 2007

부록 8 : EU 남북정상회담 지지 성명서 발표

WORLD

EU voices support for second inter-Korean summit

www.chinaview.cn 2007-10-01 20:59:51

BRUSSELS, Oct. 1 (Xinhua) -- The European Union issued a statement on Monday voicing support for the second inter-Korean Summit slated to be held on Oct. 2-4 in Pyongyang.

”The EU supports any initiative conducive to the fostering of peace, stability and cooperation on the Peninsula,” the statement said, adding that the EU follows with keen interest all efforts to reduc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is scheduled to arrive in Pyongyang on Tuesday to meet his counterpa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Kim Jong Il, the second-ever summit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summit “will serve to reinforce the growing atmosphere of confidence and trust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ould also contribute to effort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ix-party talks, a process fully supported by the EU, to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ocument said.

The top leaders from the two countries are expected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mechanism, boosting economic cooperation and promoting reunification efforts on the peninsula.

The summit comes at a time of easing tensions between the two sides and grow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held in 2000, resulted in a wide range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Editor: Wang Yan

부록 9 : ASEAN+3국 (한 · 중 · 일) 한반도 평화체제지지 성명서

KOREA.net
Gateway to Korea

Chairman's Statement of the 11th ASEAN Plus Three Summit Singapore, 20 November 2007

1. The ASEAN Plus Three (APT) Summit chaired by H.E. Lee Hsien Loong,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was held on 20 November 2007 in Singapore. The Heads of State/Government of ASEAN Member Countries had a substantive meeting with the Heads of State/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2. We were happy to gather in Singapore to celebrate the 10th anniversary of APT cooperation. We reviewed the APT's significant achievements in the past decade, and discussed its future direction. We reiterated that APT cooperation would continue to support ASEAN integration with the objective to realize the ASEAN community, and play a key role in regional community building efforts for the long-term goal of realizing an East Asia community with ASEAN as the driving force.

3. We reiterated that the APT is an integral part of the evolving regional architecture, mutually reinforcing and complementary to the East Asia Summit (EAS), ASEAN Regional Forum,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nd other regional fora. We also shared the view that the EAS, which evolved from an

East Asia Study Group (EASG) long-term measure, will continue to play a key role in this region and promote community building in the region.

4. We adopted the Second 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 and APT Cooperation Work Plan (2007-2017). The Second Joint Statement would provide strategic and practical guidance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APT process.

5. The ASEAN Leaders welcomed the Plus Three countries' continued contribution to ASEAN integr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ASEAN Community, and their commitment to an open and inclusive approach to regional community building efforts. The ASEAN Leaders expressed their appreciation to the Plus Three countries for their assistance in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in ASEAN through, among others, support in implementing projects under the Vientiane Action Programme,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and sub-regional growth initiatives in ASEAN.

6. We exchanged views on regional and international issues of common concern and agreed to work together to tackle transboundary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terrorism,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pandemic diseases and natural disasters.

7. **The ASEAN Leaders expressed support for the efforts of China, Japan and ROK, as well as the Six-Party Talks, in pursuit of a peaceful and comprehensive resolution to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respect, we welcomed the DPRK's agreement to disable all existing nuclear facilities subject to abandonment under the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and the February 13 agreement, as well as the Inter-Korean Summit in October 2007. We look forward to the Six-Party Ministerial Meeting to be held in Beijing. We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the issue of humanitarian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8. We looked forward to further progress in the multilateralisation of the Chiang Mai Initiative and the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PT Regional Foreign Exchange Reserve Pool at an early date to enhance financial stability and promote regional financing facility. We were also gratified by recent developments in APT energy cooperation.

9. We noted that the APT Cooperation Work Plan(2007-2017) highlighted key measures to deepen cooperation over the next decade. The Work Plan set out four new areas of APT cooperation, amongst others - namely rural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disaster management, minerals and women issues. We endorsed the proposal to establish an APT Cooperation Fund expeditiously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k Plan.

10. We welcomed Singapore's proposal to hold the 3rd East Asia Week in 2008 to promote, among others, cooperation among our youths, arts and culture, awareness about East Asia cooperation and people-to-people bonds. We also welcomed Thailand's proposal to organize an APT Forum on Nuclear Energy Safety in 2008 in order to tap on the region's expertise on nuclear energy safety.

11. We noted the concrete projects raised by the Plus Three Leaders at the meeting to further APT cooperation.

12. China proposed to organize a seminar on life sciences; ICT training programme; workshop on international disaster relief by armed forces; APT armed forces forum on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seminar on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training institute; and seminar on media cooperation. We tasked our officials to consider and if feasible to follow up on the proposals. China also announced that it would further contribute $15 million to its Special Fund for Asia Regional Cooperation.

13. Japan updated the Leaders on the preliminary meeting of the APT Committee on Women and its proposal to host the “APT Human Security Symposium on Women and Poverty Eradication” again next year, following the first successful Symposium that was held in Japan in July 2007. Japan also highlighted its initiative to host an APT Digital Art Forum next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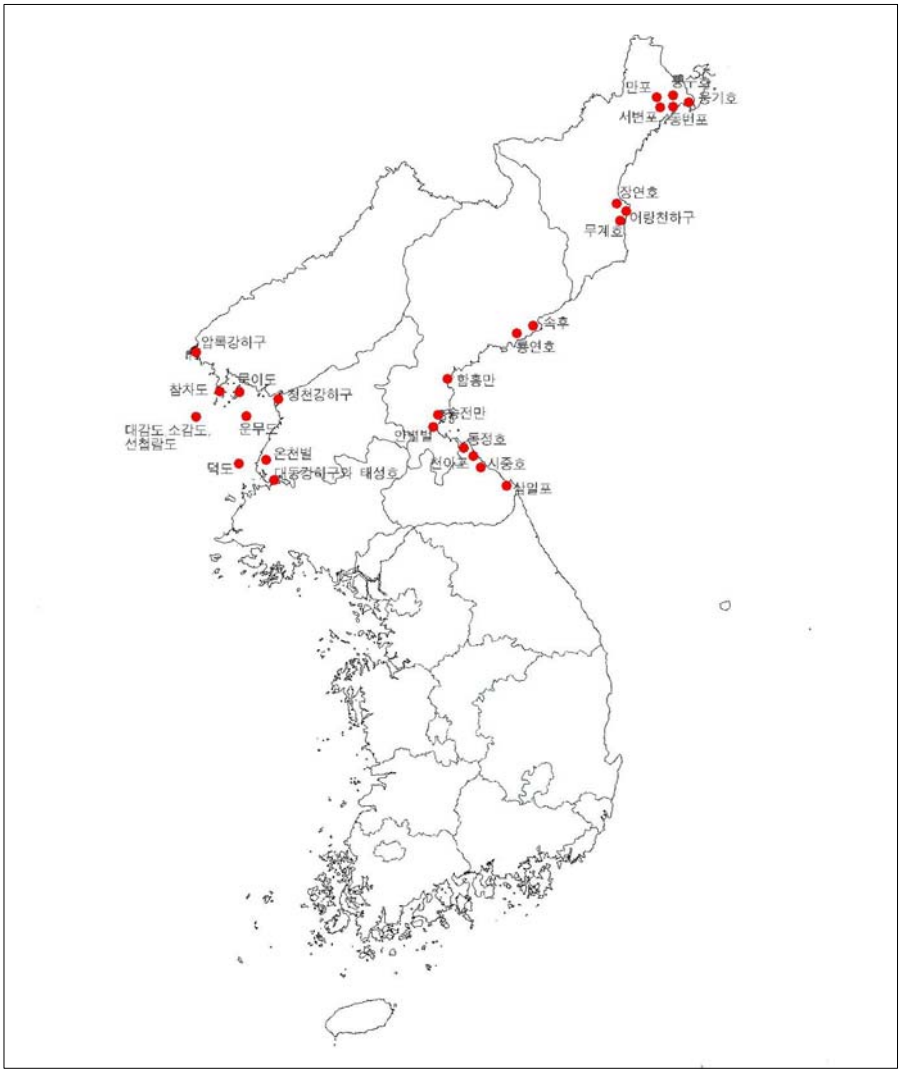
14. The ROK informed the Leaders of the progress made this year in the Phase 2 Study of the East Asia Free Trade Area (EAFTA) that focussed on a sector-by-sector analysis. The ROK also referred to its proposal for an APT Centre for the Gifted in Science, and stressed that it would be happy to share its experie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to help narrow the development gap in ASEAN.

15. We reviewed with satisfaction the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ASG’s measures. We noted that there was a proposal to establish a secretariat for the East Asia Business Council which was under consideration. We also noted the policy recommendations of the 5th Meeting of Network of East Asia Think Tank in August 2007 entitled “Memorandum No. 4 - Policy Recommendations on East Asia Cooperation: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sperity” in August 2007 in Singapore, and the outcomes of the 5th East Asia Forum held in November 2007 in Tokyo.

16. We were happy to note that the 8th China, Japan and Republic of Korea Summit was held on 20 November 2007 in Singapore.

자료: Korea. net(http://korea.net/main_2007.asp)

부록 10 : 북한에 분포하는 중요 습지대



□ 북한의 연안에 분포하는 중요습지대

습지명	면적 (ha)	소재지	습지형태	동물상
룡수호	120	함경북도 선봉군 백학리	14,15,19	오리류, 왜가리들이 많음. 알도요류, 도요류, 황새의 도중 중계지
서번포	1,612	함경북도 선봉군 부로리, 굴포리	8,10,16	농병아리류, 고니류, 오리류, 기러기류, 황새, 왜가리, 백로
만포	855	함경북도 선봉군 굴포리	14	농병아리류, 고니류, 황새, 왜가리류, 오리류, 갈매기류, 도요류, 알도요류
동번포	361	함경북도 선봉군 굴포리	8,10,16	오리
웅기호	3,000	함경북도 무산군 청진의 북동쪽 90km와 웅기의 동쪽 10~20km, 로씨야파의 국경지대	2,6,8,14	-
장연호	773	함경북도 청진의 남쪽 45km 어랑군 룡평리	8	철새, 특히 해오라기와 오리들의 번식지
무계호	192	함경북도 청진의 남쪽 48km 어랑군 무계리	8	철새, 쇠백로와 오리들의 번식 및 중계지
어랑천하구	1,200	함경북도 어랑군 룡평리	2,5,11	오리류, 알도요, 도요류, 재갈매기, 갯가마우지, 까막가마우지
속후	700	함경북도 신포시	5,14,15,19,20	봄가을 이행조류들의 휴식장소, 황새, 농병아리류, 오리류, 기러기류, 백로류, 왜가리, 도요류, 알도요류들이 있음.
룡연호 (호만포)	119	함경남도 신포시 호남포리	14,15	봄가을 이행조류의 도중 휴식장소, 농병아리류, 오리류, 왜가리, 백로, 도요류, 알도요류, 갈매기류가 많음.
함흥만 (성천강하구)	500	함경남도 함흥시	2,5,11,19	오리, 기러기, 농병아리류, 갈매기류, 도요류, 알도요류
함흥만 (금진강하구)	160	함경남도 정평군 하남리	5,11,19	오리, 갈매기, 도요류, 알도요류
함흥만 (광포저수지)	902	함경남도 정평군	2,10,14, 15,16,19	왜가리, 백로류, 물까마귀, 누른물까마귀, 붉은물까마귀, 뜸부기류, 물병아리류, 물닭류, 도요류, 알도요류, 고니류, 오리류, 기러기류, 갈매기류

습지명	면적 (ha)	소재지	습지형태	동물상
송전만 (륭홍강하구)	2,500	함경남도 금야군 해중리	3,6,11,13	이행조들의 중계지, 흰두루미, 재두루미, 고니류, 기러기류, 오리류, 도요류, 알도요류, 알락왜가리, 재기러기, 큰물닭, 학도요
송전만 (덕지강하구)	800	함경남도 금야군 해중리	3,6,11,13	오리류, 고니류, 도요류, 알도요류, 갈매기류
송전만 (금야벌)	40,000	함경남도 금야군 해중리, 문화리, 독구머리	2,6,11,19	왜가리, 벨로류, 흰두루미, 재두루미, 기러기류, 오리류, 고니류, 농병아리류, 갈매기류, 도요류, 알도요류 등이 관찰
안별벌	1,000	강원도 안변군 륙화리, 비산리, 학천리, 오계리, 월당리	5,11,19	흰두루미, 농병아리류, 오리류, 갈매기류, 맹금류
천아포	313	강원도 통천군	14,15,19	흑고니, 큰고니
동정호	494	강원도 통천군 군산리	10,16,19	오리류, 고니류, 기러기류, 농병아리류, 왜가리, 백로류
시중호	294	강원도 원산의 동쪽 25km, 통천군 강동리	10,16	왜가리, 큰고니, 흑고니, 큰기러기, 개갈매기의 중요한 번식지
삼일포	79	강원도 원산의 동남동 80km 고성군 삼일포리	14,19,20, 22	흰두루미, 큰고니, 붉은물병아리
대동강하구와 태성호	9,000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평양남서쪽 50km, 남포부근	2,3,6,8,9,11,13,14,19	농병아리류, 오리류, 기러기류, 고니류, 알도요류, 도요류, 갈매기류, 왜가리, 백로류, 물가마기류, 물닭류
온천벌	50,000	평안남도 온천군, 중산군, 남포시	6,9,17, 19	흰두루미, 검은두루미, 기러기류, 고니류, 오리류, 도요류, 알도요류, 농병아리류, 갈매기류
청천강 하구	30,000	평안남도 평양의 북서 65km 문덕군 룡림리	2,6,8,11,13,19	흰목검은두루미, 흰두루미, 재두루미
청천강하구 (박천벌)	5,000	평안북도 박천군	2,6,11,19	흰두루미, 재두루미, 검은두루미, 도요류, 물도요류, 갈매기류
청천강하구 (문덕벌)	6,000	평남남도 문덕군	6,9,11,12	흰두루미, 재두루미, 검은두루미, 기러기류, 오리류, 도요류, 갈매기류, 맹금류

습지명	면적 (ha)	소재지	습지형태	동물상
압록강하구 (비단섬)	7,074	평안북도 룡천군 신도로동자구	2,3	오리류, 도요류, 알도요류, 갈매기
압록강하구 (신도)	650	북위 39도48분~39도51분 동경 124도10분~124도17분	3	오리류, 도요류, 알도요류, 갈매기
대감도, 소감도, 선첩람도	대감도 11.5, 소감도 6.1, 대랍도 7.8, 소랍도 6.2	평안북도 신의주의 남남서 45km~85km, 정주군, 선천군, 서조서만 북동연안에서 10~20km 떨어진 곳	-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바다새
참차도	-	평안북도 철산군 가도리	-	가마우지류, 꽉새류, 갈매기류
묵이도	16	평안북도 선천군 운종리	-	노랑부리백로, 갈매기류, 가마우지류, 오리류, 꽉새류
운무도	80	평안북도 정주군 애도구	-	저어새, 까치도요, 갈매기류, 오리류, 백로류
덕도	18	평안남도 온천군 금성리	-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까치도요, 갈매기류

주 : 북한의 습지대의 종류는 다음의 분류번호를 참고

(1) 얕은바다 만과 해엽(밀물시 수심 6m이하)
(2) 하구, 삼각주
(3) 작은 섬 주변의 해안
(4) 돌바위로 이루어진 해안
(5) 모래해안
(6) 간석지
(7) 망그로브 습지
(8) 기수성의 염수호와 늪
(9) 염전
(10) 양식못
(11) 하천
(12) 하천(상류역)
(13) U자형호, 하천주변의 습지
(14) 담수호와 거기에 이어진 습지
(15) 담수호(8ha) 이하
(16) 염수호, 염수습지
(17) 저수지, 댐
(18) 관수초원, 초원(사반나)
(19) 논
(20) 관수관개지, 경작기
(21) 관수삼림, 일시적 관수림
(22)니탄지

자료 : 일본야조의회, 1996, 동아세아지역의 두루미류의 중요서식지 보호계획보고서

부록 11 : 북한의 자연보호지역

구분	명칭	위치	면적(㏊)	지정연도
생물권보호구역 (Bioshpere Reserve)	백두산	양강도	132,000	1989
자연공원 (Nature Park)	금강산	강원도	60,000	1995
	칠보산	함경북도	30,000	1995
	묘향산	평안북도	16,000	1995
	구월산	황해남도	20,000	1995
	금송호	평안남도	14,000	1995
자연보호구 (Nature Reserve)	백두산	양강도	24,000	1959
	금강산	강원도	7,600	1976
	칠보산	함경북도	5,000	1976
	묘향산	평안북도	7,000	1954
	구월산	황해남도	1,000	1976
	오가산	자강도	5,000	1995
	낭림산	자강도	6,000	1995
	관모봉	함경북도	5,000	1993
동물보호구 (Game Reserve)	동계	양강도	9,880	1959
	대흥	양강도	10,360	1959
	금속	자강도	12,406	1976
	천불	함경남도	6,904	1976
	송원	자강도	4,800	1993
	청학대	자강도	6,967	1993
	휘색봉	양강도	16,000	1993
	Dryocopus javensis	황해북도	9,960	1993
식물보호구 (Vegetation Reserve)	맹산흑송	평안남도	40	1959
	양덕 버섯	평안남도	1,653	1976
	신미도	평안북도	1,830	1959
	황표만삼	자강도	7,650	1976
	장산곶	황해남도	2,850	1959
	수양산	황해남도	1,900	1976

구분	명칭	위치	면적(㏊)	지정연도
식물보호구 (Vegetation Reserve)	멸악	황해북도	3,440	1959
	덕류산	강원도	3,500	1976
	추애산	강원도	2,900	1996
	차일봉	함경남도	2,460	1976
바다새보호구 (Seabird Reserve)	운무도	평안북도	85	1976
	대감도	평안북도	25	1976
	손촌랍도	평안북도	20	1976
	톡도	평안남도	10	1976
	손봉알섬	함경북도	25	1959
	통천알섬	강원도	24	1959
습지보호구 (이주성 조류보호구) Wetland (migratory bird Reserve)	문독	평안남도	3,000	1995
	용연	황해남도	2,000	1995
	청단	황해남도	1,000	1995
	신도	평안북도	1,000	1995
	옹진	황해남도	1,000	1995
	손봉	함경북도	3,200	1995
	나진만	함경북도	2,400	1995
	이원만	함경남도	2,500	1995
해안자원보호구 (Marine Resource Reserve)	나진만	함경북도	2,400	1996
	이원만	함경남도	2,500	1996
	나권 Ear Shell	함경남도	2,400	1996
	Sean Oyster	강원도	1,700	1996
경관보호구 (Landscape (scenic beauty Reserve)	수풍호	평안북도	27,300	1995
	태청호	평안북도	12,500	1995
	용문-백룡	평안북도	5,000	1995
	송진산	함경북도	4,000	1995
	장진호	함경남도	6,000	1995
	덕류산	함경남도	8,546	1995
	운파호	황해남도	5,930	1995
	풍소호	양강도	4,500	1995
	원봉호	양강도	6,000	1995
	위원저수호	자강도	7,000	1995
	송원저수호	자강도	9,000	1995
	서해막	남포시	8,000	1995
	장진강호	자강도	7,600	1995

자료 : 북한발표, 2002, Implementation Progres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n DPPK, IUCN 제4차 동아시아지역회의(Benefits Beyond Boundaries in East Asia) 자료.

부록 12 : 서해연안 접경지역 보호구역 지정현황

지역	구분	명칭	해당군	상세위치	비고
북한	천연기념물	만월대느티나무	개성시	개성시 송악동	제381호
		개성회화나무	개성시	개성시 북안동	제383호
		삼거리느티나무	개성시	개성시 방직동	제384호
		성균관은행나무	개성시	개성시 방직동 성균관	제386호
		성균관 느티나무	개성시	개성시 방직동	제387호
		박연폭포	개성시	개성시 북부 박연리	제388호
		개성클락새	개성시	개성시 박연리	제433호
		개성금송	개성시	개성시 고려동	제464호
		개성백송	개풍군	개풍군 연강리	제390호
		개풍은행나무	개풍군	개풍군 남포리	제391호
		개풍모과나무	개풍군	개풍군 풍덕리	제392호
		판문탱자나무	판문군	판문군 동창리	제382호
		판문흰두루미살이터	판문군	판문군 동창리, 대룡리, 림한리	제393 호
		해주우락삼	해주시	해주시 옥계동	제125호
		해주설송	해주시	해주시 구제동	제126호
		해주모과나무	해주시	해주시 영양리	제454호
		오차바위	룡연군	룡연군 오차진리	제141호
		두루미살이터	룡연군	룡연군 원촌리, 곡정리, 룡정리	제412호
		옹진재두리살이터	옹진군	옹진군 남해로동자구	제133호
		옹진참김	옹진군	옹진군 남해로동자구	제134호
		옹진이팝나무	옹진군	옹진군 립석리	제135호
		옹진온천	옹진군	진군 옹진읍	제136호
		옹진쪽가래나무	옹진군	옹진군 송월리	제138호
		강령흰두루미살이터	강령군	강령군 동포리	제130호
		강령골뱅이화석	강령군	강령군 식여리	제131호
		강령차축조화석	강령군	강령군 인봉리	제132호
		사현리왜가리번식지	벽성군	벽성군 사현리	제128호
		석담느티나무	벽성군	벽성군 석담리	제129호
		연안은행나무	연안군	연안군 호남리	제165호

지역	구분	명칭	해당군	상세위치	비고
북한	천연기념물	연안겨울새살이터	연안군	연안군	제915호
		배천온천	배천군	배천군 배천읍	제159호
		배천은행나무	배천군	배천군 배천읍	제160호
		강호염주나무	배천군	배천군 강호리	제161호
		강호능소화	배천군	배천군 강호리	제162호
		홍현리백로살이터	배천군	배천군 홍현리	제163호
		배천재두루미살이터	배천군	배천군 역구도리	제164호
	식물보호구	장산곶	룡연군	룡연반도	
	바다새 보호구	용연	룡연군	-	2,000ha
		청단	청단군	-	1,000ha
		옹진	옹진군	-	1,000ha
	바다수산자원보호구	옹진	옹진군	-	1,200ha, 참김,
		마합도	옹진군	-	1,200ha, 우뭇가사리와 해삼
		오차진	룡연군	룡연군 장산곶 남쪽에 위치	1,000ha, 전복과 해삼,
남한	습지보호지역	장봉도갯벌	옹진군	옹진군 장봉도 일대	68.4㎢
	특정도서	우도	강화군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8, 산9096	
		비도	강화군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	
		석도	강화군	강화군 서도면 주문1리 산3	
		수리봉	강화군	강화군 서도면 아차도리 산50	
		수시도	강화군	강화군 서도면 주문1리 산2	
		분지도	강화군	강화군 서도면 주문2리 산296	
		소송도	강화군	강화군 삼산면 매은리 산 535	
		대송도	강화군	강화군 삼산면 매은리 산534	
		신도	강화군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297	
남한	천연기념물	대청도의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옹진군	옹진군 백령면 대청리 43-1	식물 제66호
		갑곶리의 탱자나무	강화군	강화군 강화군 갑곶리 1016	식물 제78호
		강화사기리의 탱자나무	강화군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135-2	식물 제79호

지역	구분	명칭	해당군	상세위치	비고
남한	천연기념물	강화군 서도면의 은행나무	강화군	강화군 서도면 불음도리 산 186	식물 제304호
		물범	옹진군	전국 및 백령도, 대청도	동물 제331호
		노랑부리백로 및 괭이갈매기 번식지	옹진군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신도 전역	동물 제360호
		백령도 사곶의 사빈(천연비행장)	옹진군	옹진군 백령면 지촌리 413-2	지질 제391호
		백령도 남포리의 콩돌해안	옹진군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해안일대	지질 제392호
		백령도 진촌리의 감람암 포획 현무암 분포지	옹진군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54-2	지질 제393호
		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강화군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	동물 제419호
		백령도 두무진	옹진군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255-1	명승 제8호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김포시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일부, 김포시 한강변의 충적퇴적지역	동물 제414호
북한	야생동식물 보호구	애호지구꿩, 멧비둘기 고라니, 오소리 다람쥐, 멧토끼	강화군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12개소	
		애호지구두루미, 왜가리 백로김	김포시	김포시 월곶면 1개소	

주 : 1) 바다새 보호구 1995년 지정
2) 바다수산자원보호구 2005년 지정
자료 : 남북한천연기념물 데이터베이스(http://nm.nktech.net_2005.8.1)
북한 지리 정보 (http://nk.joins.com/asp/nk_map/index.asp)

부록 13 : 서해연안 접경지역 문화재 분포현황

□ 남한(보물 및 사적)

구분	지정번호	명칭	수량/면적(m^2)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	초축시기
보물	10	강화 하점면 오층석탑	1기	국유	강화군 하첩면 장정리 산 193	1963.1.21	고려후기
	11	사인비구주성동종	1구	국유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43-1	2000. 2.15	조선
	161	정수사법당	1동	정수사	강화도화도면 사기리 467-3	1963.1.21	조선
	178	전등사대웅전	1동	전등사	강화군 길상면	1963.1.21	조선
	179	전등사약사전	1동	전등사	강화군 길상면	1963.1.22	조선
	393	전등사 범종	1구	전등사	강화군 길상면	1963.1.22	고려
	615	강화하점면석조여래입상	1구	국유	강화군 하첩면 장정리	1977. 11.15	고려
	994	강화백련사철아미타불좌상	1구	백련사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231	1989.4.10	14C 후반 내지 16C 초의 작품으로 추정
사적	130	삼랑성	245,997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 41	1964.6.10	삼국시대
	132	강화산성	306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	1964.6.10	고려
	133	강화고려궁지	7,534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43	1964.6.10	고려
	136	참성단	5,603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산 42-1	1964.7.11	고려시대 보수
	137	강화지석묘	598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6	1964. 7.11	청동시대
	224	고려고종홍릉	2,981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 129-2	1971.12.28	고려
	225	초지진	4,241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624	1971.12.28	조선
	226	덕진진	15,018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373	1971.12.28	조선
	227	광성보	6,102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3-1	1971.12.28	조선
	259	강화선원사지	11,541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2-1	1977.11.29	고려
	306	갑곶돈	45,339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20	1984.8.13	조선
	369	석릉	2,498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 182	1992.3.10	고려
	370	가릉	2,496		강화군 양도면 육내리 산 16-2	1992.3.10	고려
	371	곤릉	1,091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산 75	1992.3.10	고려
	424	성공회 강화성당	6,452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250	2001. 1. 14	대한제국 시대

□ 북한(국보)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초축시기	재(개)건시기	비고
68	부용당(터)	황해남도 해주시 부용동	조선 1500년		
69	해주석빙고	황해남도 해주시 옥계동	고려		
70	해주9층탑	황해남도 해주시 해청동	고려		
71	해주5층탑	황해남도 해주시 옥계동	고려		
72	순명문	황해남도 해주시 영광동	고려(1391년)		해주읍성 남문
77	강서사 대웅전	황해남도 배천군 강호리	고려	1665년	
78	룡동리 고인돌	황해남도 배천군 룡동리	청동기	1572년	
79	소현서원	황해남도 벽성군 석담리	조선(1575년-1582년)		
82	해주다라니석경	황해남도 해주시 해청동	고려		
85	광조사 진철대사탑비	황해남도 해주시 학현동	고려(937년)		
86	연안읍성	황해남도 연안군 연안읍	고구려	1555년	2km
122	만월대	개성시 송악동	고려		
123	공민왕릉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고려(1365년-1375년)		
124	개성남문	개성시 북안동	조선(1391년-1393년)		
125	관음사대웅전	개성시 박연리 대흥산성내	고려(970년)	1646년	
126	대흥산성	개성시 박연리	고려		10.1km
127	개성 성균관	개성시 방직동	고려	1602-1610년	정몽주 집터
128	숭양서원	개성시 선죽동	고려말	1573년	높이 6-8m, 일명 보리참성, 밀떡성
129	발어참성	개성시 송악동	고려		외성 16km, 내성 8.5km
130	개성나성	개성시 송악동	고려(후삼국 896년)	1319-1393년	
131	개성첨성대	개성시 송악동	고려		원) 개성 만월동 동암 흥국사터(강감찬 발기)
132	흥국사탑	개성시 방직동(고려박물관내)	고려 951년	1960년	
133	령통사5층석탑	개성시 룡흥리 오관산 령통사	고려초		지공정혜조지탑
134	화장사부도	개성시 룡흥리 보봉산 화장사	고려 1370년경		원)개성시 판문군 선적리 불일사터
135	불일사 5층탑	개성시 방직동(고려박물관내)	고려 951년	1960년	원) 개성 남산동 연복사터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초축시기	재(개)건시기	비고
136	연복사종	개성시 북안동(남대문 문루내)	고려(1346년)		
137	적조사쇠부처 (철조여래좌상)	개성시 북안동(고려박물관내)	고려(1346년)		정몽주 기념비(2기)
138	표충비	개성시 선죽동	조선(1740년-1872년)		원) 개성시 장풍군 월고리 헌화사터
139	현화사7층탑	개성시 방직동(고려박물관내)	고려(1020년)		
151	현화사비	개성시 방직동(고려박물관내)	고려(1022년)		
152	광통 보제선사비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무선봉 남쪽	고려(1377년)		
153	오룡사법경대사비	개성시 룡흥리 용암선 오룡사터	고려(944년)		
155	영통사대각구사비	개성시 룡흥리 오관산 령통사	고려(1125년)		세계유산
159	선죽교	개성시 선죽동	고려		
179	왕건왕릉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고려(943년)	1993년	세계유산

부록 14 : 강도전도(江都全圖)



주 : 이 지도는 숙종 10년 병조판서가 實錄奉案使로 강화가 왔을 때 돈대 형세를 담아 제출한 것임.
자료 : 영남대학교 소장본(강화군, 『강화 옛 地圖』; 배성수, 2003 재인용)

부록 15 : 환경보호법

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

제 1 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제1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문화 위생적인 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나라의 환경을 보호 관리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2조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환경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며 공업을 비롯한 해당 경제부문이 현대적으로 발전하는 데 따라 환경을 더 잘 보호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린다.

제3조 국가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환경을 꾸리기 위하여 환경보호관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한다. 국가는 환경보호의 원칙에서 도시와 마을을 형성하여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산업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제4조 생산과 건설에 앞서 공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환경보호사업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공해방지대책을 먼저 세우고 생산과 건설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물질기술적 수단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5조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것은 전체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조국의 강산과 향토를 사랑하며 나라의 환경을 더 잘 보호 관리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환경을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환경보호과학 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제7조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의 파괴를 막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한다.

제8조 국가는 환경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 이 법은 대기, 물, 토양, 바다의 오염과 소음, 진동, 지반내려앉기, 악취 같은 환경파괴현상을 막고 보다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보호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 2 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10조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조성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좋은 생활환경을 지어주며 후대들에게 더 아름답고 문화적인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꾸리고 잘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연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 같은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한다.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2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기관은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에서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 기후변동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상태를 정

상적으로 조사 등록하며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에서는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보호 관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시와 마을, 도로와 철길 주변, 호수와 하천 주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 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를 손상,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와 관광지, 휴양지에 탄광, 광산을 개발하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짓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동굴, 폭포, 옛 성터를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건설을 할 경우 땅이 꺼져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미리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땅이 꺼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없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거나 희귀한 식물을 마구 채취하여 생물계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적으로 보호 증식하기로 된 동식물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없이 잡거나 채취할 수 없다.

제17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꾸리며 도로, 철길, 하천, 건물주변과 구획안의 빈 땅이나 공동이용장소에 나무, 잔디를 심어야 한다. 도시와 그 주변에는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나무나 풀을 심을 수 없다.

제18조 국가는 국토를 아름답게 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국토관리 총동원월간, 식수월간, 도시미화월간 같은 국토환경보호월간을 정한다. 국토환경보호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 3 장 환경오염방지

제19조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 것은 공해현상을 없애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환경보호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0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과 시설물에 가스, 먼지잡이장치와 공기여과장치를 갖추고 가스나 먼지, 악취 같은 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로와 탱크, 배관 같은 시설을 계획적으로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기술검사를 받지 않은 보이라는 운영할 수 없다.

제21조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윤전기재와 포장하지 않은 물자를 실어 먼지를 일으킬 수 있거나 어지러워진 윤전기재는 운행할 수 없으며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설비는 가동할 수 없다. 인민보안기관은 윤전기재에 대한 기술검사와 운행단속을 엄격히 하며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윤전기재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출되는 가스, 먼지 같은 것이 특수한 기상현상의 영향으로 대기를 심히 오염시킬 수 있을 경우 해당설비의 가동과 윤전기재의 운행을 조절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특수한 기상현상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나뭇잎과 오물을 제때에 처리하며 도시주민구역과 주요 도로주변에서 그것을 불태우지 말아야 한다. 오물처리장에 모아놓은 오물은 제때에 실어내야 한다.

제24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버림물을 깨끗이 정화하여 내보내며 정화되지 않은 버림물이 바다나 하천, 호수, 저수지 같은 곳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 정비하고 먹는 물의 여과소독을 엄격히 하여 주민들에게 수질기준이 정확히 보장된 먹는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취수구와 저수지, 배수구 주변에는 공장, 기업소와 건물, 시설물을 건설할 수 없으며 살초제, 살충제를 비롯한 해로운 화학물질을 칠 수 없다.

제26조 공화국의 영해, 경제수역과 항만, 포구, 갑문, 하천, 호수, 저수지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 있는 배는 기름, 버림물, 오물 같은 것을 버리거나 떨구지 말아야 한다. 자원개발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자원을 개발하거나 해안공사 같은 것을 할 경우 바다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톤수에 따르는 오염방지설비를 정확히 갖추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검사를 할 경우 오염방지설비가 갖추어져 있는가를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28조 항과 포구, 갑문, 부두를 관리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과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배에서 나오는 버림물과 오물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바다, 하천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을 정화하거나 거두어내야 한다.

제29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의 정화장이나 오물, 공업폐설물의 처리장을 바다나 하천, 호수, 저수지 또는 먹는물 원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곳에 꾸려야 한다. 박토장, 버럭장, 저탄장, 연재 및 광재처리장은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꾸리며 다 이용이 끝난 다음에는 흙을 덮고 나무를 심거나 농경지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30조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은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농약에 대한 독성검사는 위생방역기관이 한다.

제31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의 보관, 이용을 정해진 대로 하여 농약이 대기 중에 날리거나 바다, 하천, 호수, 저수지 같은 곳에 흘

러들지 않게 하며 땅속에 축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려고 할 경우에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방사성기체, 먼지, 버림물, 폐설물에 여과, 정화시설을 갖추고 방사능농도를 배출기준 아래로 낮추어야 한다. 개방상태의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주위환경에 대한 방사성오염준위를 정상적으로 조사 측정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3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 물질을 생산, 공급, 운반, 보관, 사용, 폐기하려 할 경우 방사성감독기관 또는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사성감독기관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환경보호와 인민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된 식료품, 의약품, 생활용품, 동물먹이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식료품, 의약품, 생활용품, 동물먹이 같은 것을 들여오는 경우 해당기관의 검사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해로운 물질을 내보내거나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환경을 심히 파괴시킬 수 있는 폐기물과 설비, 기술은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생산에 도입할 수 없다.

제3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정에 생기는 해로운 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를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계통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가 없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해로운 물질은 내보낼 수 없다.

제37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기관은 공해를 일으키는 공장, 기업소를 도시 밖으로 내가고 화물수송도로와 철길을 주민구역 밖으로 돌리거나 지하에 넣으며 오염피해를 받는 살림집을 생활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도시의 중심에는 공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물동량이 많은 공장, 기업소를 건설할 수 없으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

제 4 장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8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9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40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를 위한 감독 및 측정사업과 관련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필요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1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전국적인 환경감시체계를 세우고 나라의 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 장악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정확히 지도하여야 한다.

제4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과제와 설계의 작성을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하며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와 해당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해당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은 기술과제와 설계는 심사 비준할 수 없다.

제43조 준공검사기관은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설대상에 대하여 준공검사합격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44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환경보호과학연구기관, 해당기관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한 환경의 파괴를 막고 국토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그 성과를 환경보호사업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5조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지식보급과 대중교양사업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널리 소개 선전하여야 한다.

제46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 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47조 환경을 파괴시켜 인민들의 건강과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피해를 보상시킨다.

제48조 다른 나라의 배 또는 공민이 우리나라의 영역에서 환경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배, 공민을 억류하거나 손해를 보상시키며 벌금을 물린다.

제49조 환경보호질서를 어기고 대상건설을 진행하거나 공장을 운영하거나 윤전기재를 운행시킬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건물, 시설물을 철수시키고 위법행위에 이용된 물자와 돈은 몰수하며 파괴된 환경은 원상복구시킨다.

제50조 이 법을 어겨 환경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부록 16 : 바다오염방지법

주체 86(1997)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9호로 채택
주체 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은 바다오염방지사업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바다의 수질과 자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바다오염방지사업을 잘하는것은 바다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현대적인 물질기술적수단을 갖추고 바다오염방지사업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는 바다의 일정한 수역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수질보호구역을 정한다.
수질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질보호구역에서 바다를 오염시킬수 있는 탐사작업을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제5조 해안에 항, 연유저장고, 원자력발전소 같은것을 건설하여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작성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을 검토하고 해당 시설물의 건설을 합의해주어야 한다.

제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버림물을 정상적으로 정화하야여 한다.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버림물은 바다에 내보낼수 없다.

제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안에 미광, 광재, 오물 같은것을 버리려 할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제8조 항, 갑문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받아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며 항과 갑문수역이 오염되지 않는가를 정상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해당 수역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은 제때에 거두어내야 한다.

제9조 농약을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논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 수 있을 경우에는 독성이 강한 농약을 치지말아야 한다.

제10조 바다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탐사, 개발설비를 정상적으로 보수점검하며 설비운영과정에 기름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상태가 불비한 설비는 운영할수 없다.

제11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종류와 톤수에 따르는 오염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정해진 오염방지설비를 갖추지 않은 배는 항해할 수 없다.

제12조 배운영과정에 생긴 오염물질은 바다에 버릴수 없다.
항해 정박하고있는 배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처리하려 할 경우에는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기름을 싣거나 배에서 기름을 부리려 할 경우 해당 설비와 용기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4조 배로 유독성물질을 운반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독성물질의 수량과 농도를 항무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없이 유독성물질을 싣고부릴수 없다.

제15조 배를 운영하는 기고간, 기업소, 단체는 항해질서를 지켜 배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
배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에 알리고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지역의 국토환경보호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7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바다가 심히 오염된 경우 그것을 해소시키는데 필요한 로력과 설비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동원시킬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로력과 설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바다오염방지에 필요한 자료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제19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어야 한다.

제20조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1조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해당 기관은 바다오염방지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바다에 대한 감시체계를 바로 세우고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23조 바다오염방지질서를 어기고 바다자원을 탐사, 개발하거나 배를 우녕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철수시키거나 배의 운영을 중지시킨다.

제24조 바다를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벌금을 물리며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25조 이 법을 어겨 바다오염방지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부록 17 : 간석지법

간 석 지 법

2005년 7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99호로 채택

제 1 장 간석지법의 기본

제 1 조(간석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석지법은 간석지의 조사와 개간, 구조물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토를 넓히고 간석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간석지의 정의, 등급규정원칙)

간석지는 밀물때 바다물에 잠기고 썰물때 드러나는 바다가의 땅이다.

개간면적의 크기와 중요성에 따라 간석지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제 3 조(간석지의 리용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간석지는 국가의 소유이다.

국가는 간석지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 4 조(간석지의 조사원칙)

간석지의 조사를 잘하는것은 그것을 개간하고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간석지의 조사를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 5 조(간석지의 개간원칙)

간석지의 개간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다.

국가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간석지를 개간하도록 한다.

제 6 조(간석지의 구조물관리원칙)

간석지의 구조물관리를 바로하는것은 개간한 간석지를 보호하고 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간석지의 구조물관리체계를 세우고 그 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한다.

제 7 조(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간석지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 8 조(과학연구 및 기술자, 전문가양성원칙)
국가는 간석지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있게 키우도록 한다.

제 9 조(교류와 협조강화원칙)
국가는 간석지부문사업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2 장 간석지의 조사

제10조(간석지의 조사요구)
간석지의 조사는 간석지의 형성과 특성을 료해하고 개간, 리용대책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간석지의 조사기관은 간석지 조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간석지의 조사기관)
간석지의 조사에는 간석지개간, 리용을 위한 조사, 과학연구를 위한 조사 같은것이 속한다.
간석지의 개간, 리용을 위한 조사는 간석지설계기관이, 과학연구를 위한 조사는 해당 과학연구기관이 한다.

제12조(간석지조사구분)
간석지의 조사기관은 조사계획에 따라 간석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간석지의 조사는 조사내용에 따라 자연지리학적조사, 지질학적조사, 생물학적조사, 해양기상학적조사, 수문학적조사로 구분한다.

제13조(간석지의 조사방법)

간석지의 조사기관은 항공촬영 같은 선진조사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간석지의 조사속도와 과학성을 높이고 개간, 리용할수 있는 간석지를 적극 찾으며 방조제법선과 배수갑문을 비롯한 간석지구조물의 건설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14조(간석지조사에서 협동, 조사자료제출)

간석지의 조사기관은 간석지의 조사에서 서로 협동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정하여야 한다.

확정한 간석지의 조사자료는 간석지건설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제 3 장 간석지의 개간

제15조(간석지개간계획의 집행)

간석지개간을 잘하는것은 간석지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간석지의 개간계획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간석지의 개간에서 지켜야 할 요구)

간석지의 개간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농경지로 리용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갈밭, 소금밭, 양어장, 양식장, 조수력발전소와 바다저류지, 큰물조절지, 산업부지, 살림집부지, 배대피지 같은것으로 종합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국방상요구와 환경보호의 견지에서 하여야 한다.
3. 자연지리적조건이 좋고 빨리 개간할수 있는 지대부터 먼저 개간하며 모래가 많고 수심이 깊은 간석지에는 감탕잡이뚝건설을 앞세워

야 한다.

4. 채석장, 부재생산기지, 부두, 철도, 송배전선, 도로건설같은 준비건설을 앞세워야 한다.
5. 구조물을 강한 해일에도 견딜수 있게 건설하여야 한다.
6. 로력과 설비, 자재를 집중하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7. 개간한 간석지를 빠른 기간에 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간석지의 개간계획작성)

간석지의 개간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작성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과 간석지개간설계에 기초하여 개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간석지의 개간기술과제, 기술설계작성)

간석지의 개간기술과제는 건설주기관이, 기술설계는 간석지설계기관이 작성한다.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도 간석지의 개간기술과제와 기술설계를 작성할수 있다. 이 경우 간석지설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간석지의 개간기술과제는 국가계획기관이, 기술설계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심의, 비준한다.

제19조(간석지개간의 구분)

간석지의 개간은 외부망건설과 내부망건설로 나누어 한다.

외부망건설에는 방조제건설과 마감막이공사, 배수문건설이, 내부망건설에는 제방건설, 포전정리, 도로, 수로, 살림집건설 같은것이 속한다.

제20조(간석지개간의 담당자)

간석지의 외부망건설과 내부망의 하천제방, 조절지제방건설은 간석지건설기업소가, 그밖의 내부망건설은 내부망건설기업소와 간석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이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간석지개간의 선후차)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부망건설을 확고히 앞세우며 막은 간석지를 리용하기 위한 내부망건설을 적극 따라세워야 한다.

제22조(간석지개간에서 협동)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부망건설과 내부망건설에서 협동하여야 한다.

간석지개간에서 서로 피해를 주거나 난관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간석지개간설계의 준수)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의 요구를 지키며 선진공법을 적극 창안, 도입하여 건설물의 질을 높이고 조업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대상은 건설할수 없다.

제24조(간석지의 외부망건설방법)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부망건설에서 방조제를 콩크리트, 돌, 아스팔트 같은 재료로 피복하며 배수문과 배갑문, 방조제의 바다물면변동부분과 물속부분의 건설에는 국가가 정한 자재만을 써야 한다.

외부망건설은 함형부재공법, 판부재공법, 콩크리트중량부재공법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간석지의 내부망건설방법, 시설배치)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부망건설을 륙지와 잇닿은 높은 지대로부터 낮은 지대로 하며 농업용포전을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고 그에 맞게 도로, 수로를 건설하여야 한다.

갈밭, 소금밭, 양어장, 양식장은 기술공학적요구와 관리운영에 유리하게 구획을 형성하며 서로 다른 대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26조(방풍림의 조성)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간한 간석지에 방풍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도로, 주민지와 양어장, 소금밭 같은 생산기지의 주변에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

제27조(시설건설의 담당자)

개간된 간석지의 리용을 위한 살림집, 상하수도, 주민지까지의 도로건설은 해당 도, 시, 군인민위원회가, 전기, 통신시설의 건설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28조(개간한 간석지의 준공검사)

외부망과 내부망의 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준공검사를 받는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간석지는 리용할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긴다.

제29조(개간한 간석지의 등록)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간석지를 넘겨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부망과 내부망을 제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에 하여야 한다.

제30조(등록한 간석지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한 간석지를 제때에 알곡생산과 갈생산, 소금생산, 양어 같은데 리용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개간된 부침땅의 소금기를 빨리 빼야 한다.

제 4 장 간석지구조물의 관리

제31조(간석지구조물관리의 요구)

간석지구조물의 관리는 방조제 같은 구조물을 정상적으로 보수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간석지의 구조물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준공검사전까지 간석지구조물의 관리)
간석지건설지도기관은 개간한 간석지에 건설된 구조물의 관리를 위하여 간석지구조물관리소를 조직하여야 한다.
간석지건설지도기관은 간석지외부망의 준공검사가 끝나기전까지 구조물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33조(준공검사후 간석지구조물의 관리)
간석지건설지도기관은 간석지외부망의 준공검사가 끝나면 간석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간석지구조물관리소를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석지구조물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진다.

제34조(간석지구조물의 피해대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간석지의 구조물보호에 필요한 막돌, 부재 같은 보수자재를 확보하여 놓아야 한다.
발생한 자연재해를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제35조(간석지구조물의 보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간석지구조물을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간석지구조물의 보수는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로 나누어 한다.

제36조(간석지제방보호구역의 설정)
국가는 간석지의 제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석지제방축선으로부터 제방안쪽과 바깥쪽의 일정한 구간을 간석지제방보호구역으로 한다.
간석지제방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37조(간석지제방보호구역에서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간석지제방보호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설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부두시설이 없는 제방에는 배를 정박시킬수 없다.

제38조(간석지제방의 관리)

간석지제방과 하천제방, 조절지제방에 농작물을 심거나 그곳에서 집짐승을 방목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간석지제방, 하천제방, 조절지제방안쪽에 조성한 방풍림을 찍지 말아야 한다.

제39조(군중적인 간석지제방의 보호)

공민은 간석지의 구조물에 이상이 생겼거나 구조물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보받은 내용을 제때에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장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요구)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간석지개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간석지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1조(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간석지건설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간석지건설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간석지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2조(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간석지개간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정한 기간안에 집중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간석지부문의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43조(개간기간 간석지의 리용)

간석지건설지도기관은 간석지의 개간기간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마련하는데 개간지의 일부를 리용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주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4조(간석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간석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간석지건설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간석지건설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간석지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5조(간석지개간, 리용의 중지)

간석지의 개간, 리용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간석지개간계획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간석지개간을 설계와 공법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3. 승인없이 간석지를 개간하거나 리용할 경우
4. 간석지개간설계에 없는 대상을 건설할 경우

제46조(손해보상)

간석지의 구조물을 파손시켰거나 개간한 간석지를 류실시켰거나 또는 계획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정한 기간안에 집중적으로 보장하지 못하여 이미 한 투자를 허실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간석지사업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부록 1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주체94(2005)년 11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67호로 채택

제 1 장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

제1조(환경영향평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과 신청, 심의,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환경파괴와 그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고 깨끗한 환경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작성과 개발,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여부정적영향을 없애거나 최대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중요한 사업이다.

계획에는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이 개발, 건설에는 신설, 기술 개건, 증축, 개축, 이개축이 속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원칙)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원칙)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환경피해의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을 미리 막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원칙)

환경영향평가결정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은 환경보호의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계획의 작성과 개발, 건설에서 환경영향평가결정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한다.

제6조(투자원칙)

국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환경영향평가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며 환경영향평가사업을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하도록 한다.

제7조(교류와 협조)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적용대상)

이 법은 계획을 작성하거나 개발, 건설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 개발, 건설을 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2 장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과 신청

제9조(환경영향평가문건신청의 기본요구)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과 신청을 바로하는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정확히 할수 있게 하는 중요조건이다.

계획을 작성하거나 개발, 건설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정확히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기관)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은 계획작성기관과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필요에 따라 과학연구기관 또는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작성할수도 있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문건작성을 위한 조사)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작성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지역의 환경실태와 계획, 개발, 건설의 특성, 그것으로 하여 있을수 있는 환경변화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방법)

계획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은 해당 계획에 환경보호편을 주는 형식으로, 개발,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은 대상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부류별로 한다.

제13조(환경영향평가문건에 반영할 내용)

환경영향평가문건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획, 개발, 건설의 특성
2. 계획, 개발, 건설이 진행될 현지의 실태
3. 계획, 개발, 건설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예측평가한 자료
4. 부정적영향을 미리 막거나 줄이기 위한 대책

제14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시기)

계획작성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은 계획초안작성전단계, 개발,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은 건설위치지정서와 건설명시의 발급신청전단계에서 한다.

제15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

작성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심의에 제기한다.

우리나라에서 개발, 건설을 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은 대리기관을 통하여 조선말로 된 환경영향평가문건을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대리기관은 대리위임장을 함께 내야 한다.

제 3 장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

제16조(환경영향평가문건심의의 기본요구)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는 제기된 환경영향평가문건을 검토처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중요대상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를 위하여 해당 부문 전문일군들로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제17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기간)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중요대상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상에 대하여서는 심의기간을 15일간 더 연장할수 있다.

제18조(환경영향평가에서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의무)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과 환경보호기준에 맞게 환경영향평가문건이 작성되였는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9조(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심의관할)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환경영향평가문건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국토건설총계획, 내각과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승인하는 도시계획
2. 중앙기관이 담당한 개발, 건설대상과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설계를 승인하는 대상, 합영합작기업, 외국인기업
3. 도(직할시)국토환경보호기관의 심의대상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상

제20조(도(직할시)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심의관할)

도(직할시)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문건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도(직할시), 시(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과 도시계획
2. 도(직할시), 시(구역), 군이 담당한 개발, 건설대상

제21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조건보장)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조건의 보장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결정)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부결하는 리유를 밝혀야 한다.

제23조(심의에서 제기된 의견의 퇴치)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에서 부결된데 대하여 통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지적된 결함을 고치고 다시 심의해줄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승인취소)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해당 계획이 변경되였거나 개발, 건설이 승인되여 3년이 지났으나 그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승인을 취소할수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 4 장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

제25조(환경영향평가결정집행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환경영향평가승인통지를 받은데 따라 해당 계획

을 작성하거나 개발, 건설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설계의 작성)

해당 설계기관은 기술설계에 환경영향평가결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발생한 부정적영향에 대한 대책)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계획의 작성, 개발, 건설과정에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을 중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부정적영향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영향평가결정집행에 대한 검사)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개발, 건설이 완공되여 준공검사를 받는 대상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정형을 검사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요구를 집행하지 않은 개발, 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준공검사에서 합격을 줄수 없다.

제29조(환경영향평가승인을 받지 않은 대상의 부결)

국가건설감독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국가계획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계획, 개발 건설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제 5 장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0조(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지도)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환경영향평가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환경영향평가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1조(감독통제)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환경영향평가와 그 결정집행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중지, 손해보상)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평가결정을 어기고 계획을 작성하였거나 개발, 건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환경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부록 19 :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2002.11.20)
1차 개정 : '03.4.14, 정령 3715호

제 1 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제1조 (목적) ①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②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개발방법 및 구역) ①공업지구 개발은 지구의 토지를 개발업자가 임대받아 부지정리와 하부구조 건설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공업지구는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 같은 것으로 나눈다.

제3조 (투자자 및 투자보장) ①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이 투자할 수 있다.
②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③공업지구에서는 노력채용, 토지이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

제4조 (투자장려와 금지업종) ①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②하부구조 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는 특별히 장려한다.

제5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 ①공업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

공업지구 지도기관이 한다.
②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6조 (북측 타기관의 간섭배제) ①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
②필요에 따라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7조 (상속보장 및 국유화 금지) ①공업지구에서는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②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③사회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 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제8조 (신변안전 보장) ①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하지 않는다.
②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합의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 (적용법규) ①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②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2 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제10조 (개발업자) ①공업지구의 개발은 정해진 개발업자가 한다.
②개발업자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한다.

제11조 (토지임대차 계약) ①개발업자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
②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발업자에게 해당기관이 발급한 토지이용증을 주어야 한다.

제12조 (토지 임대기간) ①공업지구의 토지임대 기간은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으로 한다.
②토지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임대받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공업지구개발총계획) ①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②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심의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공업지구의 개발) ①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한다.
②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지장물 철거이설 등) ①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②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제16조 (공사착수 및 단계별 개발) ①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공업지구 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수 있다.

제17조 (하부구조 건설) ①공업지구의 하부구조 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②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 시설같은 하부구조 대상을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의 방법으로 건설할 수도 있다.

제18조 (기업 배치) ①개발업자는 하부구조 대상 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기업을 배치하여야 한다. ☞ 본항 개정('03.4.14)
②이 경우 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기업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다.

제19조 (개발업자의 영업활동)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에서 살림집 건설업, 관광오락업, 광고업 같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 (인원출입 및 물자반출입)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지구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제21조 (공업지구 관리기관) ①공업지구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한다.
②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공업지구 관리 운영사업 정형을 분기별로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지도기관의 임무)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업자의 지정
2. 본호 삭제 ('03.4.14)
3. 공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
4. 대상건설 설계문건의 접수·보관 ☞ 본호 개정('03.4.14)
5. 공업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6. 기업이 요구하는 노력, 용수, 물자의 보장
7.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북측지역 판매실현
8. 공업지구의 세무관리
9. 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제23조 (북측 관계기관의 협조) ①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공업지구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당기관과 정상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해당기관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관리기관의 구성) ①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들로 구성한다.

②관리기관이 요구할 경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들도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수 있다. ☞ 본항 개정('03.4.14)

제25조 (관리기관의 임무)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조건의 조성과 투자유치
2.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3.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4. 토지이용권, 건물, 윤전기재의 등록
5.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6. 하부구조 시설의 관리
7.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9.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사업준칙 작성
10. 이밖에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위임하는 사업

제26조 (관리기관 이사장) ①공업지구관리기관의 책임자는 이사장이다.

②이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전반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제27조 (관리기관 운영자금) ①공업지구관리기관은 운영자금을 가진다.

②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 (지대의 출입) ①남측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 수 있다.

②공화국의 다른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질서, 공업지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9조 (생활편의 및 통신보장) 공업지구에서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문화,

보건, 체육, 교육분야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받으며 우편, 전화, 팍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관광) ①공업지구의 출입,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정해진데 따라 개성시의 혁명사적지와 역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같은 것을 관광할 수 있다.
②개성시 인민위원회는 개성시의 관광대상과 시설을 잘 꾸리고 보존 관리하며 필요한 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 (광고) ①공업지구에서 광고는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 같은 것을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다.
②그러나 야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2조 (물자의 반출입) ①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②물자를 반출입하려는 자는 반출입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물자 반출입 지점의 세관에 내야 한다. ☞ 본항 개정('03.4.14)

제33조 (관세부과) ①공업지구에 들여오거나 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는 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 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그대로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 (출입·세관검사 및 검역) 검사, 검역기관은 공업지구의 출입검사,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 검역사업을 공업지구의 안전과 투자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4 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 운영

제35조 (기업창설) ①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기업창설 신청서를 내야 한다.
②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 (세관 및 세무등록) ①기업창설 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정해진 출자를 하고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한 다음 20일 안으로 해당기관에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정해진 문건을 내야 한다.

제37조 (노력채용) ①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노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 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본항 개정('03.4.14)

제38조 (경영활동) ①기업은 승인받은 업종 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업종을 늘리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 ①기업은 공업지구 밖의 공화국 영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영역에 판매할 수 있다.
②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 수도 있다.

제40조 (가격의 결정) 공업지구에서 상품의 가격과 봉사요금, 기업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의 합의하여 정한다.

제41조 (유통화폐 및 기준화폐) ①공업지구에서 유통화폐는 전환성 외화로 하며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②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

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42조 (계좌설치) ①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돈자리(계좌)를 두어야 한다.
②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공업지구밖의 남측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 본항 개정('03.4.14)

제43조 (세금) ①기업은 회계업무를 정확히 하며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같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업지구에서 기업소 특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하며 하부구조 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은 10%로 한다.

제44조 (외환반출입 및 송금보장) ①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다.
②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과 그밖의 소득금은 남측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세금없이 송금하거나 가지고 갈 수 있다.

제45조(지사, 영업소 등) ①공업지구에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해당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
②지사, 영업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 5 장 분쟁해결

제46조 (분쟁의 해결) ①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②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2조 (보완규정)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해석)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부록 20 :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주체95(2006)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82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자연환경의 보존과조성, 환경오염방지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주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의 기업과 개인(외국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기업에는 공업지구의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가 속한다.

제3조 (환경보호사업의 담당자)

공업지구의 환경보호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보호사업의 선행)

환경보호사업은 기업과 개인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공업지구에서 개발, 건설, 생산을 하려는 기업과 개인은 환경보호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제5조 (환경보호기준)

공업지구의 환경보호기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정한다.

환경보호기준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지오염, 방사성오염, 악취오염기준과 소음, 진동기준 같은 것이 속한다.

제 2 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6조 (자연환경보존과 조성의 기본요구)

기업과 개인은 공업지구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사람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 (자연환경보호구의 설정)

공업지구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호구를 정한다.
자연환경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제8조 (산림자원의 보호)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산림병해충예찰체계와 산불감시체계를 세워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없이 공업지구에서 나무를 베거나 산림을 개간할 수 없다.

제9조 (동식물자원의 보호)

기업과 개인은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거나 희귀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지 말며 그 서식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제10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력사유적의 보존)

기업과 개인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력사유적을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력사유적주변의 자연풍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력사유적주변의 건설금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력사유적주변에는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
봉사시설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다.

제12조 (수림화, 원림화)

기업과 개인은 공장, 도로, 철길의 주변과 공지에 환경보호에 유리하고 관상적 가치가 있는 나무와 잔디, 꽃을 많이 심어 공업지구의 풍치를 돋구어야 한다.

제 3 장 환경오염의 방지

제13조 (환경오염방지의 기본요구)

공업지구관리기관과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의 개발, 건설, 운영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보호계획을 작성하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보호계획에는 해당 대상의 개발, 건설, 운영계획과 대상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예측평가자료, 환경오염방지대책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4조 (환경보호계획의 제출)

기업은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보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당해연도 환경보호계획을 작성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의 설치)

기업과 개인은 환경보호기준에 맞게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검사를 받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제한)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자연환경보호구와 주민지구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스, 먼지의 배출승인)

배출구를 설치하지 않고 대기중에 가스와 먼지를 직접 내보내려는 기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륜전기재의 운행금지)

기업과 개인은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륜전기재를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

제19조 (악취방지)

기업과 개인은 개발, 건설, 생산과정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무, 비닐, 쓰레기 같은 악취발생물질을 불태울 수 없다.

제20조 (소음, 진동의 방지)

기업과 개인은 개발, 건설, 생산과정에 다른 기업이나 주민들이 소음,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기준을 초과하는 설비는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오수, 폐수의 정화)

오수, 폐수를 내보내려는 기업과 개인은 오수나 폐수를 수질오염배출기준아래로 정화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역에서의 금지행위)

기업과 개인은 하천, 호소, 저수지에서 륜전기재를 청소하거나 거기에 오물을 버리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 (토지의 오염, 류실방지)

기업과 개인은 물리화학적, 생물학적대책을 세워 토지오염을 막아야 한다.
절토 또는 성토로 인한 토사의 류출을 방지하며 폭우로 흙과 모래가 하천과 수로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지하수의 오염방지)

기업과 개인은 지하수오염물질의 발생원과 물잡이구조물관리를 바로하며 오염물질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제25조 (지반침하의 방지)

기업과 개인은 지하수의 리용과 지하구조물의 건설, 절토 또는 성토, 복구로 하여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반이 침하될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없다.

제26조 (유독성물질의 취급)

유독성물질을 취급하려는 기업은 유독성물질의 종류, 수량, 용도 같은 것을 밝힌 문건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유독성물질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하며 종류, 수량, 용도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7조 (폐기페설물의 배출량보고)

기업은 폐기페설물의 배출량을 정확히 장악기록하며 그 정형을 월에 1차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폐기페설물의 보관)

페기페설물을 보관하려는 기업은 보관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그 주변에 울타리와 경계표식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페기페설물을 담을 용기겉면에는 페기페설물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제29조 (폐기페설물의 운반)

페기페설물을 운반하려는 기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보고하며 운반도중에 페기페설물이 섞이거나 류출되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폐기페설물의 처리)

페기페설물을 처리하려는 기업은 페기페설물처리신청서를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그러나 공업지구 밖으로 내보내려는 페기페설물의 처리신청서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페기페설물처리신청서에는 페기페설물의 종류, 성분분석자료, 수량, 환경영향평가자료, 환경보호담보자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31조 (환경의 오염경보)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정화하여 내보낸 오수, 폐수가 특수한 기상수문조건과 사정으로 사람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환경오염경보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환경상태의 조사, 측정, 분석)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업지구의 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 측정, 분석하여야 한다.

조사, 측정, 분석방법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정한다.

제33조 (자료기록)

기업은 오염방지시설의 운영, 페기페설물의 보관, 처리정형을 대장에 기록하고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 (환경보호사업정형의 보고)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보호계획실행, 환경보호사업정형을 분기에 1차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독통제

제35조 (감독통제기관)

공업지구의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보호기준의 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6조 (환경감시체계의 수립)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감시체계를 바로 세우고 환경상태를 조사장악하며 기업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정상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7조 (환경보호시설의 관리)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보수주기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제재)

환경을 오염시켰거나 오염방지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또는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킨다.

제39조 (분쟁해결)

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상사중재절차로 한다.

부록 21 : 개성공업지구 개발 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102호('03.4.24)로 채택, '03.6.28발표

제1조(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공업지구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업지구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개발업자선정) 개발업자 선정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에 따라 개발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총계획의 작성)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의 작성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토지측량과 지질조사를 하고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작성하여야한다.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는 토지리용계획, 하부구조건설계획, 구역별 개발계획, 단계별 투자 및 사업추진계획 같은 것을 반영한다.

제4조(개발총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보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하부구조실태자료와 기상수문자료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제5조(개발총계획의 심의승인) 개발업자는 작성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내각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한다. 내각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대한 수정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계획적 개발 및 변경) 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을 공업지구개발총계획과 다르게 하려 할 경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제기하여야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20일안으로 제기된 내용의 처리 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건물, 부착물의 철거, 이설)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과 관련한 사업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제8조(철거, 이설, 주민 이주비용)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액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개발업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9조(개발공사착수) 공업지구의 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 수 있다.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0조(하부구조건설) 공업지구의 하부구조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시설 같은 하부구조대상을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하여 건설할 수도 있다.

제11조(하부구조시설물의 사용료) 하부구조건설부문의 투자가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하고 경영할동을 할 수 있으며 도로, 전기, 가스, 용수 같은 것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공업지구 밖의 하부구조건설) 공업지구 밖에서 공업지구까지 연결되는 하부구조건설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하부구조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개발업자가 상업적 방법으로 보장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개발업자와 협의하여 다른 투자가가 하부구조건설을 하고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

제13조(기업배치) 개발업자는 기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토지리용권과 건물을 용도별로 기업 또는 투자가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 개발업자는 기업의 배치, 토지리용권과 건물의 양도, 임대

같은 사업을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14조(건설허가) 공업지구에서 건설허가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대상건설을 하려는 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대상건설 설계문건을 내고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과제설계 문건의 보관)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건설허가를 한 대상의 과제설계 문건사본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과제설계 문건사본을 접수·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역사유적유물의 처리) 공업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 력사유적유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력사유적유물을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개발사업조건보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지구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생활상 편의보장, 물자의 반출·입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노력, 용수, 물자의 보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업자가 요구하는 공화국의 노력, 물자, 용수 같은것을 제 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발업자사이에 계약을 맺고 보장하게 할 수도 있다.

제19조(개발업자의 사업권)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의 하부구조건설사업, 에네르기(에너지)공급사업, 수송사업, 물자보관사업, 광고사업 같은 분야의 사업권을 가진다. 필요에 따라 개발업자는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 위탁할 수 있다.

부록 22 : 개성공업지구 수질환경관리 준칙

제 1 장 원칙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등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개성공단 입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버릴물(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2.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수역”이라 함은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운하를 말한다.
5.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폐수의 배출규제

제3조 (배출허용기준) ①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보호관리계획으로 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폐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설치 허가 혹은 신고(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 허가사항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배출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원료, 부원료, 공법등의 변경에 따라 새로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③ 신고사항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④ 변경허가사항 (별지 제 2호 서식)

1. 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가 또는 1일 700세제곱 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⑤ 변경신고사항 (별지 제 2호 서식)

1.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3. 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별표 7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 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별표 7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와 폐수배출 공정 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 혹은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 혹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4.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에 한한다)

⑦ 관리위원회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한 때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별지 제3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이미 교부된 허가증 뒤쪽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기재한다.

⑧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준칙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제5조 (허가조건)관리위원회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누출 또는 유출로 인하여 입주민의 건강·재산 및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점검·사후감시 등 별도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제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3조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기타 발생폐수의 전량 재이용 등 방지시설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가. 당해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특성과 사용하는 원료·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

(이하 “자가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가.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배출시설에 사용하는 물과 액체 물질의 양 및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공정도

나. 폐수를 재이용 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

다. 기타 처리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 등 관련자료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별표 8에서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④관리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4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관리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9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

제8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준공검사시 관리위원회에 가동개시 신고(별지 제4호 서식)를 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가동개시일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는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제10조・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50일. 다만, 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70일로 한다.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 부터 30일
3. 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물질을 채취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1년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보존하여야 한다.

③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선명령) ①관리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②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관리위원회에 6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때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개선기간중의 오염물질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기재한 개선계획서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 또는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⑤관리위원회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개선내용 및 개선결과 등을 확인하게 하고, 시료

를 채취하여 공정 검사기관에 그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조업정지명령)관리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배출부과금) ①관리위원회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또는 제4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호와 같이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1. 초과배출부과금
   가. 오염물질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③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납부시기 및 납부장소에 대하여는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준칙에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준칙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관리위원회의 운영 세입으로 한다.

⑦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 유기인 화합물
6. 납 및 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은 및 그 화합물
10.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2. 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 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 망간 및 그 화합물
17. 아연 및 그 화합물
18. 총질소
19. 총인

제13조 (허가의 취소 등) ①관리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2.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이 준칙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0조, 제11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지

정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 7호 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①관리위원회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한다.

제15조 (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환경기술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이를 관리위원회에 신고(별지 제8호 서식)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준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환경관리인의 임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와 동시

2. 환경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 다만,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자를 기간 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별표 7에 의한 4·5종 사업장의 경우에 준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 3 장 보칙

제17조 (공공수역의 배출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 폐기물관리에 따른 지정폐기물, 유독물, 농약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3. 하천,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척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이 오염시킨 행위

②관리위원회는 제1항1호 내지 2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기업 및 사업주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관리위원회는 행위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 (보고 및 검사 등) ①관리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지정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관리기관원은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이 준칙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다만,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존과 입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20조 (수수료) ①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위원회가 제 2항과 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제2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8$
2.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납부는 관리위원회의 준칙에 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벌금

제21조 (벌금) ①관리위원회는 별표 12의 각 항목별 벌금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위원회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을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록 23 : 서해연안 접경지역 주민설문 조사서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2005년부터 자체 연구사업으로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Marine Peace Park) 지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의 대상지역인 옹진군의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한반도 전체 연안지역 중에서도 환경상태가 양호하고, 남한 내에서 물범이 유일하게 서식하고 있으며,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가 서식하는 등 보호가치가 높은 희귀생물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연안에서 유일한 자연형 하구환경을 유지하는 지역으로 경관이 우수하고 생태적 가치 또한 매우 높습니다. 반면, 꽃게 어장을 둘러싼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해 있어 국제사회에서는 분쟁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약으로 지역주민의 거주 여건이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상태이고 관광지 개발과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사업은 천혜의 자원보고인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 풍부한 수산자원과 관광자원을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 개발하여 이를 통해 남·북간 갈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을 통해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경제개발과 환경과의 조화, 지역사회 발전 등 서해연안 접경지역 전반에 걸친 정책방향에 대해 주민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8.

문의 사항 연락처 : 육근형 책임연구원 (☎: 02-2105-275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본부 (FAX: 02-2105-2779)

설문대상자 인적사항 (해당하는 항목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 별	남 /여	직업	어업, 농업, 상업, 공무원, 회사원, 기타
연 령 대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및 이상		
거주 지역	옹진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 기타 다른 시군:_____		

Part A. 남북관계 전반 인식 조사

문1) 평소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협력 대상 ② 지원 대상 ③ 경쟁 대상
④ 경계 대상 ⑤ 적대 대상

문2) 평소 남북통일이나 남북관계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점진적으로 서서히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불필요하다
⑤ 기타 (_____)

문3) 남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할 때 다음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치인과 정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치 교류
② 학계·교육계를 중심으로 한 학술 교류
③ 예술·문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교류
④ 경제지원과 대북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교류
⑤ 이산가족 상봉, 우리말 공동사용 등 사회문화 교류
⑥ 환경보호, 희귀생물 보전 등 환경협력 분야의 교류
⑦ 공동어로 사업, 서해항로 활성화 등 해양수산 분야 협력·교류

문4) 올 10월에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 평화체제 정착에 얼마나 도움을 주리라 기대하십니까?

① 평화체제를 정착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평화체제 정착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만남에 의미는 있으나 남북 평화체제 구축에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④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인 제스추어에 불과하므로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

문5) 올 10월에 개최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분야 남북협력 진전

② 평화체제 선언 또는 공동선언문 이행계획 선언

③ 북한 핵문제 및 군축문제

④ 북방한계선(NLL, 엔앨앨) 획정문제

⑤ 공동어로 수역 설정

⑥ 기타 (_____)

Part B. 서해연안 접경지역 인식 조사

문6)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는 1999년과 2002년에 군사 충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②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③ 당장은 아니나 앞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④ 가까운 시일 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문7)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발생한 남북 군사 충돌의 가장 큰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남북 분단으로 인한 전체적인 대립상황
② 꽃게잡이 어선을 관리하는 중에 나타난 우발적인 충돌
③ 북방한계선(NLL, 엔앨앨)에 대한 남북간 의견차이
④ 기타 (_____)

문8) 서해접경 연안지역(옹진군 일원)의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잦은 중국어선 출몰과 싹쓸이 어업으로 어족자원 고갈
②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른 북한과 무력 충돌 우려
③ 어구·어망 투기 등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④ 경제적 낙후성과 교통편 불편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
⑤ 분쟁지역으로 인식되어 관광사업 등 발전 저해
⑥ 기타 (_____)

문9) 남한과 북한의 관리 수역 중간에 침입하여 어로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하다.

② 다소 심각하다.

③ 심각하지 않다.**(이 문항에 응답하신 경우 문11)으로 바로 이동)**

문10) (문9)에서 ①, ②을 응답하신 분) 이들 중국어선에 대해 적극적인 어로 활동 규제가 필요하다면 누가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① 중국 정부 측의 자체 규제

② 남·북이 각자 관할지역을 철저히 관리

③ 문제되는 해역 전체를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

문11) 최근 꽃게 등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어획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사업 2개를 선택해주세요)**

① 중국어선 감시·통제 강화

② 무분별한 어획금지 및 어획량 자율 조절

③ 해양환경 오염물질 수거사업(해양쓰레기 등)

④ 남북한 어장 공동관리, 평화수역 지정 등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

⑤ 바다목장화 사업, 서식지 보호 등 어업생산량 증대 사업

⑥ 어업 또는 채취금지 지역 등을 포함한 해양보호구역 설정

기타 (_____)

Part C. 서해연안 접경지역 해양평화공원 도입 설문

문12) 정부에서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을 남한과 북한이 협력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양평화공원(Marine Peace Park)'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제사회는 생태계·자원보호, 국가간 갈등해소,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분쟁지역을 관련 국가가 협력하여 관리하는 평화공원(peace park)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에 평화공원을 지정한 사례로 중동지역의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공동으로 지정한 홍해 해양평화공원(Red Sea Marine Peace Park)이 있습니다. 두 국가는 평화공원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보전가치고 높은 산호 지역을 보호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① 남북관계 개선이나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②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남북 관계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므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③ 지정이 되더라도 남북관계나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④ 좋은 방안이나 지정이 어려울 것이다.
⑤ 괜한 분쟁의 소지만 만드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것이 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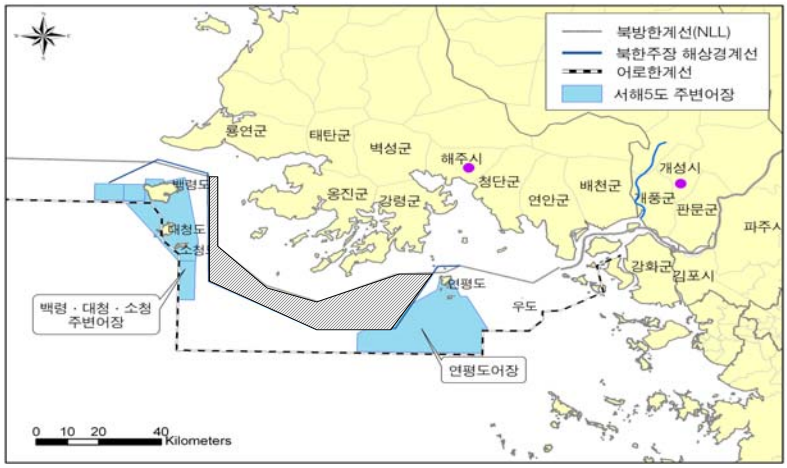
문13) 북한은 최근 북방한계선인 NLL(엔엘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남북한 해상경계를 다시 설정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은 서해5도 이남까지이며 남한의 조업구역이나 어장구역과 일부 겹치는 구역이 있습니다.

남북한 군사충돌을 막고, 평화정착을 위해 이 구역(아래 그림 참조) 일부를 **"비무장 민간인(어민)만 출입하는 평화구역"**으로 지정하고 남북이 공동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안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방한계선(NLL, 엔앨앨)을 고수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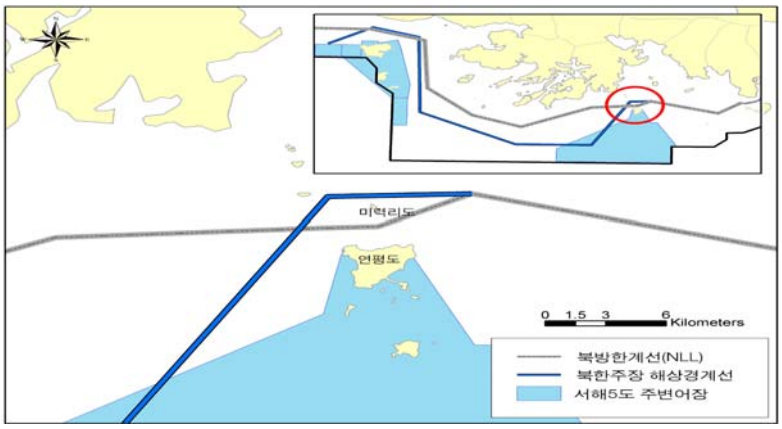
문13-1) 현재 북방한계선(NLL, 엔앨앨)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사이에는 양국이 모두 관할하지 않는 해역이 있습니다. 이 해역에 위치하는 미력리도라는 섬에 남북한 수산물 매매를 위한 일종의 해상 중간집판장(파시)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관할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추진하지 않는 것이 낫다.

③ 잘 모르겠다.

(기타의견)



문14) NLL(엔앨앨)과 공동어로구역을 묶어서 제안한 위의 평화구역 제안이 남북한 간 관계개선에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② 남북관계 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③ 오히려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문15) 현재 백령도 연안에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물범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물범은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생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남북한 간에는 이러한 희귀생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서해연안에서 환경 및 생태계보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비정치적 분야이고 보호가치가 높은 생태계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적극 추진

② 북한의 관심이 경제적 실리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경제분야 협력이 가시화 한 후에 추진

③ 종전 협정 등 서해상 평화정착이 이루어진 후에 장기적으로 추진

④ 보전가치가 크지 않으므로 추진하지 않는 것이 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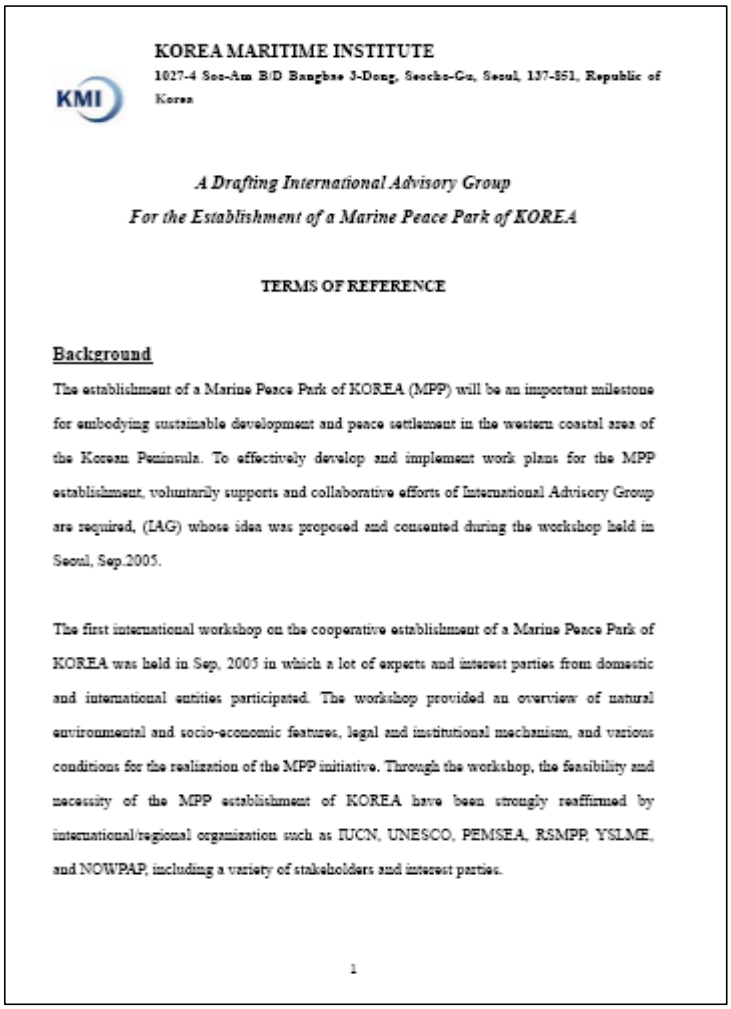
문16)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어로 행위 안전 보장을 위한 해군, 해경 인원·장비 확충
② 배편 증설 등 육지와 접근성 개선
③ 관광 등 지역개발 사업 추진
④ 주택개량, 도로 확충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⑤ 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관리 강화
⑥ 기타 (_____)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이 지역의 발전과 남북관계 개선, 생태계 보호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록 24 : 국제자문단회의 운영규칙(Terms of Reference)

1. 초안 1



KOREA MARITIME INSTITUTE

1027-4 Soo-Am B/D Banghae 3-Dong, Seocho-Gu, Seoul, 137-851, Republic of Korea

A Drafting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For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TERMS OF REFERENCE

Background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MPP) will be an important milestone for embody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eace settlement in the western coastal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To effectively develop and implement work plans for the MPP establishment, voluntarily supports and collaborative efforts of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are required, (IAG) whose idea was proposed and consented during the workshop held in Seoul, Sep.2005.

The first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was held in Sep, 2005 in which a lot of experts and interest parties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tities participated. The workshop provided an overview of natural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features,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 and various conditions for the realization of the MPP initiative. Through the workshop, the feasibility and necessity of the MPP establishment of KOREA have been strongly reaffirmed by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 such as IUCN, UNESCO, PEMSEA, RSMPP, YSLME, and NOWPAP, including a variety of stakeholders and interest parties.

1

Overall Objectives

The MPP initiative aims at the **PEACE** settlement, the **PRTOTECTION** of valuable ecosystems and the long-term ensuring **PROSPERITY** in the both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and entire Korean Peninsula. The principal mechanism of the MPP initiative is to establish the firm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ROK and DPRK. It is believed that a successful international partnership with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will reinforce the national dialogue and further cooperation in various sectors between the two Koreas.

With formulating IAG,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can share their advanced experiences and knowledge with Korean people. We believe that IAG will improve overall program effectiveness of the MPP initiative and enhance the public awareness about the need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Specific Activities

In the first IAG meeting which will be held i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on 27~30 June 2006. After the successful launching of IAG, members of IAG will undertake the following activities.

- Share the achievement and experience of the MPP initiative with other members, address constraints and weakness, and discuss a variety of solutions- political, legal, economic, financial aspects.
- Share collective professional experience and knowledge with other members and build trust & cooperation in order to devote to the Korean Peninsula's peace promo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Consolidate the above analysis and outputs into the IAG operating mechanism and discussing the agenda for the next IAG meeting.

In the 1st IAG meeting, the following activities will be added in the above-mentioned activities.

- Formulate vision, mission, and goals of the IAG
- To build institutional IAG, followings should be clearly delineated:
  A. Objectives of the IAG
  B. Scope of activities and membership
  C. Functions and roles
  D. Operational procedures and methodology
  E. The number of plenary meetings per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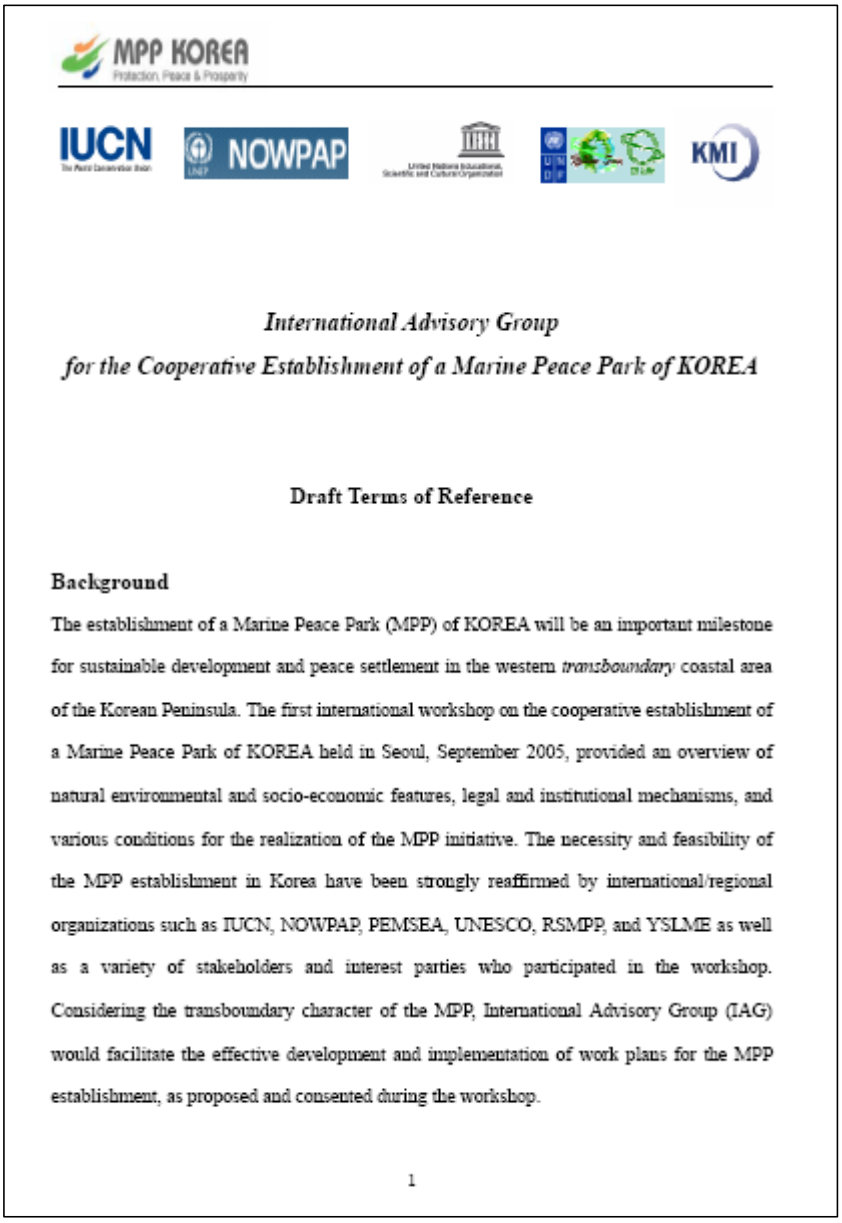
Drafting Group Membership

The IAG will be initially composed of members, the representative form IUCN, UNESCO, PEMSEA, YSLME, and NOWPAP whose expertise is drawn from the natural, social, and economic sciences. IAG membership will be expanded through the consensus among all existing members, if needed. The IAG will carry out its work in consultation with the full range of stakeholders by suggesting effective actions that need to be taken to ensure the MPP establishment and to promote continuous cooperation between ROK and DPRK.

Drafting Group Operation

KMI will provide the IAG with operational support to enable the group to carry out their tasks. The IAG report will reflect the opinion of the IAG and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reflecting the views of the KMI or its members, or any organizations with which individual members of the IAG may be affiliated.

2. 초안 2(1차 국제자문단회의 운영규칙 논의내용 반영)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for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Draft Terms of Reference

Background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MPP) of KOREA will be an important mileston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eace settlement in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The first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held in Seoul, September 2005, provided an overview of natural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features,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various conditions for the realization of the MPP initiative.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the MPP establishment in Korea have been strongly reaffirmed by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such as IUCN, NOWPAP, PEMSEA, UNESCO, RSMPP, and YSLME as well as a variety of stakeholders and interest parties who participated in the workshop. Considering the transboundary character of the MPP,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IAG) would facilitate the effectiv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work plans for the MPP establishment, as proposed and consented during the workshop.

1

Overall Objectives of the MPP Initiative

The MPP initiative aims at the **PEACE** settlement, the **PRTOTECTION** of valuable ecosystems, and the long-term economic **PROSPERITY** in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The principal mechanism of the MPP initiative is a firm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Republic of Korea (ROK)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Successful international partnerships with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would reinforce bilateral dialogue and cooperation on the MPP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between the two Koreas.

The IAG would provide a venue for international/regional organizations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knowledge on the Marine Peace Park with Korean People. We believe that the IAG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overall program effectiveness of the MPP initiative and enhancing public awareness about the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or peace, protection, and prosperity of the western transboundary coastal area.

The Vision of the IAG

The IAG is to provide advices and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Marine Peace Park between DPRK and ROK, and to foster bilateral and international dialogues and cooperation to support the MPP initiative.

Objectives of the IAG

The IAG will accomplish following objectives:

(a) To assist understanding and sharing of the overall goals of the MPP initiative

(b) To provide technical advices and guidance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MPP initiative

(c)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partnerships, and to promote knowledge and project networking

(d) To promote effective communication and awareness among all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MPP initiative

Functions and Roles of the IAG

The IAG's specific functions and roles are to:

(a) provide strategic advice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MPP initiative

(b) promote informal consultations on the MPP initiative through existing mechanisms

(c) draw attention on the MPP initiative among international entities

(d) identify appropriate expertise (legal, institut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e) identify relevant processes that may provide technical backstopping to the MPP initiative

(f) review progress and products, and to provide advices on how to adapt the MPP implementation strategy accordingly

(g) identify alternative approaches to overcome potential difficulti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MPP initiative

Operational Procedures of the IAG

The IAG will be operated with following mechanisms;

1. **Secretariat**
   - The MPP project team of KMI will act as the IAG secretariat to arrange and serve meetings of the IAG
2. **Membership**
   - The nomination of new members will be considered by the IAG secretariat and all IAG members

3. Meeting

- Once per year, preferably following the presentation of the annual report
- Meeting venue and date will be decided through the teleconference to maximize the participation
- Expenses will be covered by the secretariat on needs basis

4. Communication

- Establish an e-communication network between KMI and the IAG members, if necessary, for better understanding and further collaboration on the progress of the MPP implementation
- The secretariat jointly prepares communication on behalf of the IAG

부록 25 : 국제자문단회의 대표자 공식 임명 편지

1. IUCN-1



World Headquarters

Rue Mauverney 28

CH-1196 Gland

Switzerland

Tel.: +41(0)22 999 00 00/01
Fax: +41(0)22 999 00 02
E-mail: mail@hq.iucn.org
www: http://iucn.org/

IUCN
The World Conservation Union

Ms Jessie Lee
IAG Coordinator,
Project on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Korea Maritime Institute
Marine Environment & Coastal Management
Research Division
1027-4 Soo-Am B/D 3-Dong,
Seocho-Gu, Seoul, 137-851,
The Republic of Korea

15 June 2006

Dear Ms Le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27-30 June 2006

We have the pleasure of nominating Mr Trevor Sandwith, IUCN WCPA Deputy Chair and Leader of the IUCN WCPA Transboundary and Protected Areas Task Force as representative of IUCN and WCPA at the above-mentioned Advisory Group.

The contact details for Mr Sandwith are the following

Mr Trevor SANDWITH
Project Coordinator
IUCN WCPA Deputy Chair
CAPE Action for People and the Environment
Private Bag X7
Claremont
Western Cape 7735
South Africa
Tel: ++27 (21) 799 8790
Fax: ++27 (21) 797 3475
Email: trevor@capeaction.org.za

Please acknowledge our thanks in asking IUCN and WCPA to be part of such an important Group.

Best Regards

David Sheppard
Director, Protected Areas Programme
IUCN

Printed on Chlorine-free paper

1. IUCN-2



Asia Regional Office

63 Sukhumvit 39 Soi Prompong
Sukhumvit Road, Klongtonnua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Tel.: +(662) 662 4029
+(662) 662 4031 - 33 (Auto)
Fax: +(662) 662 4388, 662 4387
E-mail: iucn@iucnt.org

IUCN
The World Conservation Union

Ms. Jessie Lee
IAG Coordinator
Project on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Korea Maritime Institute
Marine Environment & Coastal
Management
Research Division
1027-4 Soo-Am B/D 3-Dong,
Seocho-Gu, Seoul, 137-851
The Republic of Korea

13 November 2006

Dear Ms. Le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I understand that you were able to meet with Mr. Peter Shadie, Coordinator of Asia's Protected Areas Programme during his recent visit to Seoul.

Given Mr. Trevor Sandwith's distance from Korea (he is based in Cape Town, South Africa) we would like to nominate Mr. Shadie as representative of IUCN at the above-mentioned Advisory Group.

The contact details for Mr. Shadie are the following

Peter Shadie
Coordinator
Regional Protected Areas Programme, Asia
63 Sukhumvit Soi 39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Tel: +66 2 662 4029 ext. 302
Fax:+66 2 662 4387
Email: shadie@iucnt.org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IUCN input to this important initi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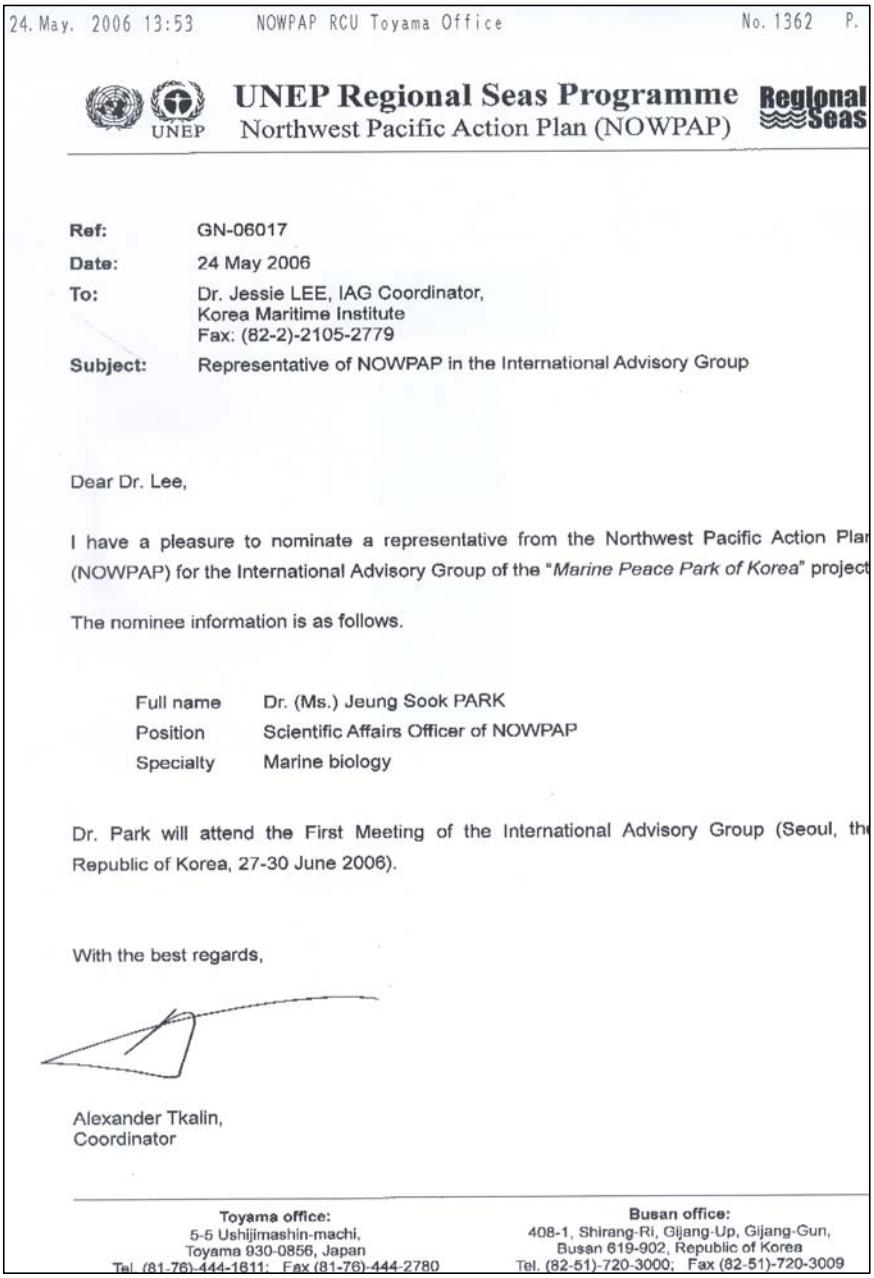
Yours sincerely,

Aban Marker Kabraji

Ms. Aban Marker Kabraji
Regional Director
IUCN Asia Regional Office

Asia Regional Sub-Office: 1, Bath Island Road, Karachi 75530, Pakistan. Tel.: ++92 21 586 1540/41/42; Fax: ++92 21 587 0287
Headquarters: Rue Mauverney 28, CH-1196 Gland, Switzerland. Tel.: ++41 22 999 0000; Fax: ++41 22 999 0002; E-mail: mail@iucn.org

2. NOWPAP



24. May. 2006 13:53 NOWPAP RCU Toyama Office No. 1362 P.

UNEP

UNEP Regional Seas Programm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Regional Seas

Ref: GN-06017

Date: 24 May 2006

To: Dr. Jessie LEE, IAG Coordinator,
Korea Maritime Institute
Fax: (82-2)-2105-2779

Subject: Representative of NOWPAP in th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Dear Dr. Lee,

I have a pleasure to nominate a representative from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for th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of the "*Marine Peace Park of Korea*" project

The nominee information is as follows.

Full name	Dr. (Ms.) Jeung Sook PARK
Position	Scientific Affairs Officer of NOWPAP
Specialty	Marine biology

Dr. Park will attend the First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Seoul, the Republic of Korea, 27-30 June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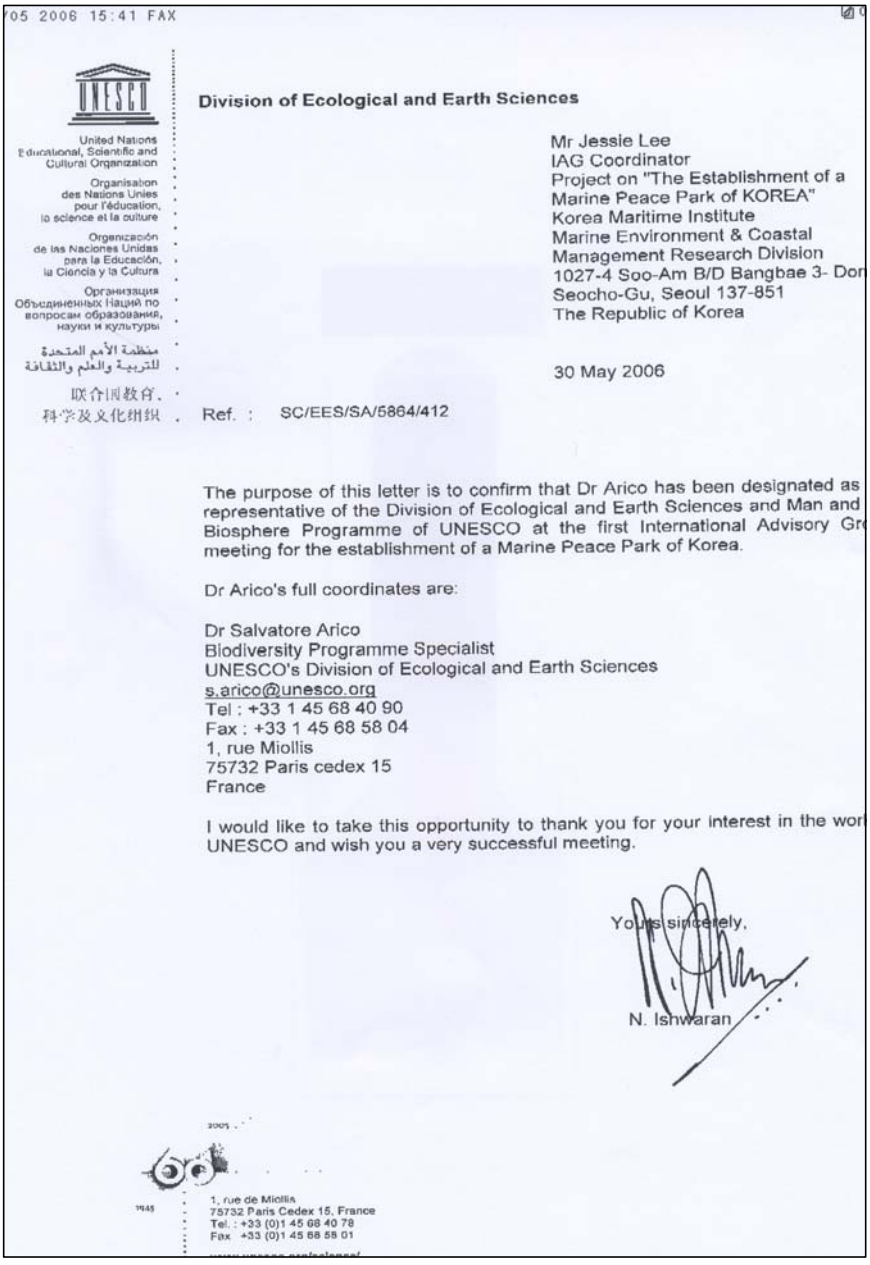
With the best regards,

Alexander Tkalin,
Coordinator

Toyama office:
5-5 Ushijimashin-machi,
Toyama 930-0856, Japan
Tel. (81-76)-444-1611; Fax (81-76)-444-2780

Busan office:
408-1, Shirang-Ri, Gijang-Up, Gijang-Gun,
Busan 619-902, Republic of Korea
Tel. (82-51)-720-3000; Fax (82-51)-720-3009

3. UNESCO



'05 2006 15:41 FAX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 pour l'éducation, la science et la culture
Organización de las Naciones Unidas para la Educación, la Ciencia y la Cultura
Организация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по вопросам образования, науки и культуры
منظمة الأمم المتحدة للتربية والعلم والثقافة
联合国教育、科学及文化组织

Division of Ecological and Earth Sciences

Mr Jessie Lee
IAG Coordinator
Project on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Korea Maritime Institute
Marine Environment & Coastal Management Research Division
1027-4 Soo-Am B/D Bangbae 3- Don
Seocho-Gu, Seoul 137-851
The Republic of Korea

30 May 2006

Ref. : SC/EES/SA/5864/412

The purpose of this letter is to confirm that Dr Arico has been designated as representative of the Division of Ecological and Earth Sciences and Man and Biosphere Programme of UNESCO at the first International Advisory Gr meet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Dr Arico's full coordinates are:

Dr Salvatore Arico
Biodiversity Programme Specialist
UNESCO's Division of Ecological and Earth Sciences
s.arico@unesco.org
Tel : +33 1 45 68 40 90
Fax : +33 1 45 68 58 04
1, rue Miollis
75732 Paris cedex 15
France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the wor UNESCO and wish you a very successful me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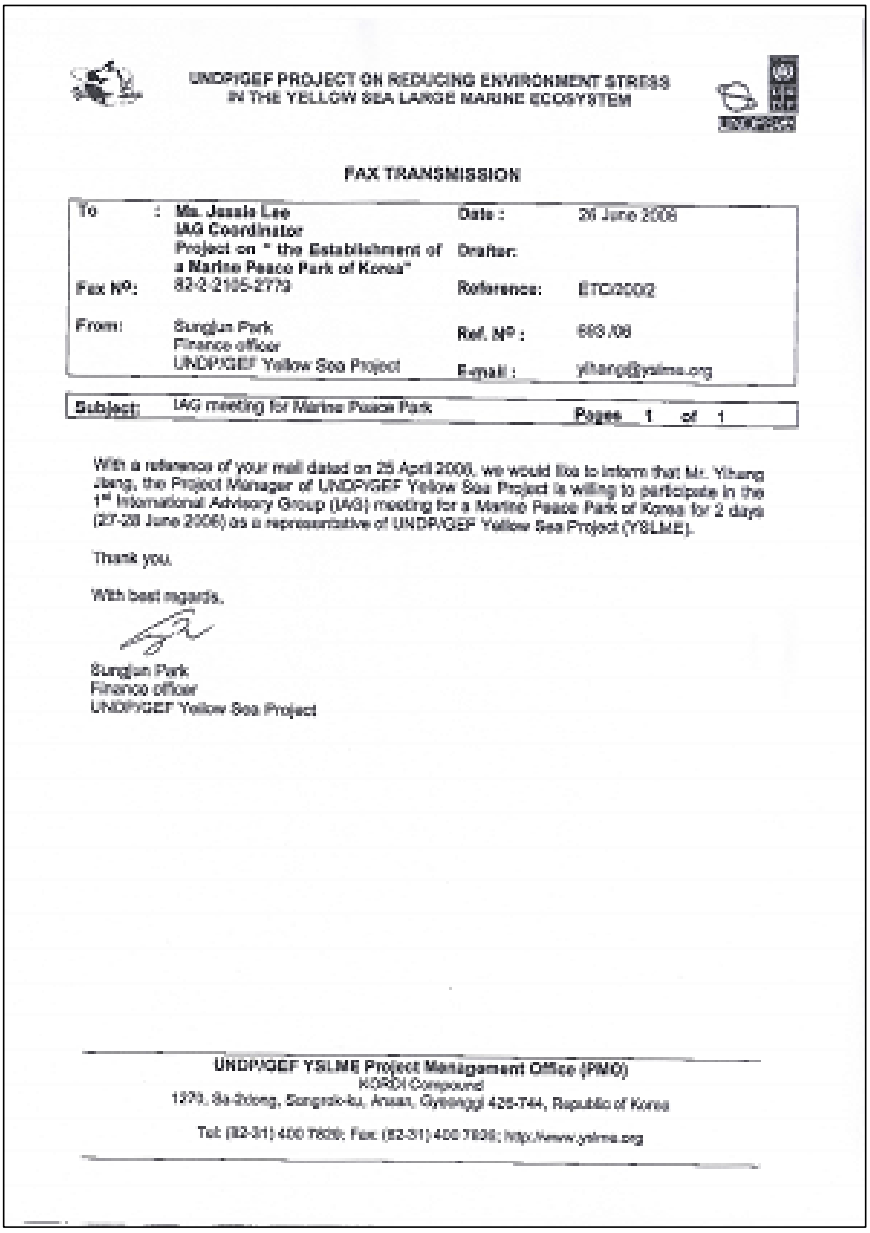
Yours sincerely,

N. Ishwaran

1945

1, rue de Miollis
75732 Paris Cedex 15, France
Tel. : +33 (0)1 45 68 40 78
Fax : +33 (0)1 45 68 58 01

4. YSLME



UNDP/GEF PROJECT ON REDUCING ENVIRONMENT STRESS
IN TH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FAX TRANSMISSION

To :	Ms. Jessie Lee IAG Coordinator Project on "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Date :	26 June 2006
		Drafter:	
Fax Nº:	82-2-2185-2779	Reference:	ETC/2002
From:	Sunglun Park Finance officer UNDP/GEF Yellow Sea Project	Ref. Nº :	693 /06
		E-mail :	yhang@yslme.org
Subject:	IAG meeting for Marine Peace Park	Pages	1 of 1

With a reference of your mail dated on 25 April 2006, we would like to inform that Mr. Yihang Jiang, the Project Manager of UNDP/GEF Yellow Sea Project is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1st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IAG) meeting for a Marine Peace Park of Korea for 2 days (27-28 June 2006) as a representative of UNDP/GEF Yellow Sea Project (YSLME).

Thank you.

With best regards,

Sunglun Park
Finance officer
UNDP/GEF Yellow Sea Project

UNDP/GEF YSLME Project Management Office (PMO)
KORDI Compound
1270, Sa-2dong, Sangnok-ku, Ansan, Gyeonggi 426-744, Republic of Korea

Tel: (82-31) 400 7836; Fax: (82-31) 400 7838; http://www.yslme.org

WWF for a living planet®

WWF-Indonesia
Jl Raya Petitenget 22
Seminyak 80361
Bali, Indonesia

Tel: +62 361 730185
Direct: +62 812 3818742
lpet@wallacea.wwf.or.id
www.wwf.or.id

September 18, 2007

Mr. Jeong-Hawn Lee
President
Korea Maritime Institute
1027-4 Soo-Am B/D Bangbae 3-Dong, Seocho-Gu, Seoul,
137-851, the Republic of Korea.

Dear Mr. Jeong-Hwan Le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vitation to Dr. Ingles to become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IAG) for the Marine Peace Park (MPP) Korea. As we requested, we are very happy to allow and designate Dr. Jose Ingles to become a member of the IAG for MPP Korea by 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 His experience in the peace park process we are working 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will be a great contribution to your cause as it will also benefit us from the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from the processes your government is undertaking.

The requested information details are as follows:
Dr. Jose Ingles, Tuna Initiative Leader,
WWW Coral Triangle Initiative, Hosted by WWF Philippines
Tel. No. +632 920 7923/26, Fax No. +632 927 0247
E-mail: ingles.jose@gmail.com/ jingles@wwf.org.ph

It is understood that Dr. Ingles' attendance to the meetings will be fully shouldered by the IAG.
We look forward to a fruitful outcome of the peace park in Korea.

Sincerely,

Dr. Lida Pet-Soede
WWW Coral Triangle Head of Program

President: HE Chi of Emeka Anyaoku
Director General: Dr Claude Martin
President Emeritus:
HRH The Duke of Edinburgh
Founder President:
HRH Prince Bernhard of the Netherlands

Registered as: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Fondo Mondiale per la Natura
WWF-Fondo Mundial para la Naturaleza
WWF-Fonds Mondial pour la Nature
WWF-Welt Natur Fonds
Also known as World Wildlife Fund

100% recycled paper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Ⅲ)

2007年 12月 27日 印刷
2007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發行人 李 正 煥
發行處 韓國海洋水産開發院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組版·印刷/서울기획문화사 2272-1533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 - 0337